

중 권

환 경 법 전

(수자원, 물환경, 물이용)

2024년 6월



환 경 부

일 러 두 기

1. 수록 법령의 범위

가. 이 법령집은 2024년 6월 현재 주요 시행중인 환경부 소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수록하였으며, 별지 서식은 제외하였습니다.

나. 개정·공포되어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의 일부 조항은 음영 처리하였습니다.

2. 수록순서

법령 수록은 분야별로 배열하였으나 일부 관련이 있는 법령인 경우에는 같이 게재하였습니다.

3.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연혁의 표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의 연혁을 본문 법령제명 아래에 법령의 공포 연·월·일과 공포번호를 제·개정 순서에 따라 표시하였습니다.

4. 본 법령집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률내용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정책→환경정책일반)에 게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제·개정 되는 법령도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에 게재하겠습니다.

전 체 목 차

상 권

제1편 녹색전환·환경일반

0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
0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5
0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5
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시행령	131
0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147
0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3
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229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61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73
10.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633
1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651
12.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669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685
14. 환경분쟁 조정법·시행령·시행규칙	735
15.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789

16.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807
17.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813
18.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819

제2편 기후변화·대기환경

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827
0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913
03. 한국환경공단법·시행령	993
0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015
05.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1091
0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599
07.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647
0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1777
09.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787
10.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1857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1923
1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961

중 권

제3편 수자원

0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987	
02.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 2093	
0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2109	
0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령 ····· 2149	
05. 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2161	
0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203	
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2277	
08.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 2325	
09.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2485	
10.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2491	
11.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 2499	
1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2505	
13.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 2517	

제4편 물환경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573	
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705	
03.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 2819	
0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827	
05.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 2947	

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955	
07.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 3017	
0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 3387	
09.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 3497	
1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 3505	
11.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 3529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723	
13.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 3835	

제5편 물이용

01. 먹는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3845	
0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3987	
0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4001	
0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031	
05.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 4047	
06. 상수원 관리규칙 ····· 4263	
07.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4285	
08.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 4301	
09.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 4447	
10.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규칙 ····· 4573	

하 권

제6편 자연보전

01.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	4603
0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4617
0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635
0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4679
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707
0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4759
0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4779
0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809
0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4861
10. 습지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4883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929
1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5199
13.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5229
14.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5355
1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5483

제7편 자원순환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01

0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5811
0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5859
0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5877
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973
06.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6157
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169
08.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6269
0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6681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6735

제8편 환경보건

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6813
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877
03.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011
04.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시행규칙	7107
0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179
0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7251
07.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277
0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477
09.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7613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701

제3편 수자원

0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87
02.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2093
0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2109
0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령	2149
05. 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2161
0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203
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2277
08.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2325
09.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485
10.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491
11.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2499
1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2505
13.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2517

제3편 수자원

0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댐의 관리 (개정 2011. 5. 30.) 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2012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2012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2013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14 제18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2015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21. 6. 15.)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2016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2016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2017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2018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2018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부과의 취소·변경 및 반환) 2020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2021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2022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2022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2022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2022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2022	제15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2012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2013 제17조(공공시설의 범위) 2014 제18조 2015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22. 6. 14.)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2016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2016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2017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2017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2018 제24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2018 제24조의2(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2018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2020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2016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2017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2018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2021 제11조 삭제 2022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2012 제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2013 제6조 2015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2016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2017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2018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2021 제11조 삭제 202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2023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2023		
제32조(등록) 2024		
제33조(납부금) 2024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2024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2024	제27조(상각액) 2024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2025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2025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2025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2026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2026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2027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2027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2027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2028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 5. 30.>	<개정 2011. 11. 30.>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2028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2028	
	제32조 삭제 2029	
	제33조 삭제 2029	
	제34조 삭제 2029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2029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2029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2030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2030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2031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2030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2031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2032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2032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2032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203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2036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2034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2036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 2036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2036 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2037 제45조의3(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2037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2037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2037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2038		
제4장 보칙 <개정 2011. 5. 30.>	제4장 보칙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2038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2038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유료·사용료의 징수) .. 2039	제12조(점유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2039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2040 제47조(청분) 2040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2040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2040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2041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2043	제48조의3 삭제 2043	제13조 삭제 2044
제5장 벌칙 <개정 2011. 5. 30.>	제5장 벌칙 <신설 2009. 9. 10.>	
제49조(벌칙) 2043 제50조 삭제 2043 제51조(벌칙) 2043 제52조(양벌규정) 2044 제53조(과태료) 2044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44	
부칙 2044	부칙 2044	부칙 2044

법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9. 9. 7 법률 제6021호 개정 2001.12.31 법률 제6587호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3. 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4. 1.29 법률 제7158호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12. 7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1.2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배기물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10.17 법률 제8659호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 3.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09. 4. 1 법률 제9597호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1. 4.12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5.30 법률 제10760호 2011. 7.21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2. 1.17 법률 제11185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5. 1. 6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보증법) 2016.12. 2 법률 제14337호 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1.17 법률 제14544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6. 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9. 8.27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0. 3.31 법률 제17175호 2021. 6.15 법률 제18284호 2022.12.27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 1.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법률)	제정 2000. 3.13 대통령령 제16756호 개정 2001. 2.24 대통령령 제17137호 (전기사업법시행령) 2001. 7.14 대통령령 제17302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2002. 7.30 대통령령 제17696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시행령) 2004. 6.29 대통령령 제18457호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2004. 7.30 대통령령 제18504호 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9. 9.10 대통령령 제21724호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3호 2011.11.30 대통령령 제23331호 2012. 6.29 대통령령 제23911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 6. 2 대통령령 제28096호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1.10 대통령령 제31154호 2021.12.16 대통령령 제32231호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7호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2000. 3.29 건설교통부령 제 233호 개정 2002. 8.13 건설교통부령 제 325호 2006. 6. 7 건설교통부령 제 51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 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1.11.30 국토해양부령 제 409호 2013. 3.23 국토교통부령 제 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 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7. 6. 2 국토교통부령 제 426호 2018. 6. 8 환경부령 제 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6.15 환경부령 제 988호 2023. 4.17 환경부령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2022. 6. 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5.>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2021. 6. 15.>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장·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 6. 1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5. 30.> 제1절 댐의 관리 등 <개정 2011. 5. 30., 2021. 6. 15.>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관리의 기본방침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6. 14.>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제1절 댐의 건설 등 <개정 2022. 6. 14.>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댐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목적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댐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목적 나.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다. 변경된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중전 제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6. 15.>]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3.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4. 관할 댐의 저수(貯水) 운영계획 5. 관할 댐과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의 경우로 한정한다) 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관할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할 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공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목적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사항 다. 변경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6. 14.] 제5조(댐관리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에서 이동 <2021. 6. 15.>]	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6. 1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14.> [전문개정 2011. 11. 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6. 14.>] 제6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6. 14.> ②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4.> 1. 홍수기, 관개기(灌漑期), 갈수기(渴水期)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水文)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홍수·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에서 이동 <2021. 6. 15.>] 제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6. 15.> 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에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6. 15.>]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1. 3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제7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	제2조 삭제 <2006. 6. 7.>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2. 6. 15.> [전문개정 2011. 11.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6.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6. 15.>]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1. 6. 15.>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6. 15.>]	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14.>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 하류의 수위 상승의 정도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18조에서 이동 <2022. 6. 14.>] 제8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20. 11. 10., 2022. 6. 14.>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9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6. 14.> 1. 사업의 개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댐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2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1. 6. 15.>]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2. 사업시행기간 3. 재원조달방법 ③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9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6. 14.> [전문개정 2011. 11. 30.]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2. 6. 14.>] 제9조(댐의 평가 실시)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14.> 1. 용수 공급능력: 댐의 이수안전도(利水安全度)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댐에서 공급이 가능한 용수량 2. 홍수 조절능력: 댐의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댐의 최고 수위 ② 환경부장관이 유입량 변화, 이수(利水)·치수(治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를 시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2. 6. 14.> 1. 유입량 변화, 이수·치수 환경변화 등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 댐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2022. 6. 14.> [본조신설 2017. 6. 2.] [제18조의3에서 이동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4. 댐 규모 및 형식 5. 수물지역, 수물면적 및 수물세대수 6. 개략사업비 7. 사업효과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2021. 6. 15.>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2021. 6. 15.>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제약요인과 그 해소방안 2. 댐 운영·관리계획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사전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2021. 6. 15.>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1. 6. 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6. 15.>] 제11조(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 2021. 6. 15.> 1. 건설의 목적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하천·환경·문화·경제·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제4호의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 댐건설이 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⑤ 사전검토협의회의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6. 14.] [제5조에서 이동 <2022. 6. 14.>]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하 “댐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3. 규모와 형식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 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 사업기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6. 15.>] 제12조(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 6. 14.>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전문개정 2011. 11. 30.]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댐건설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2022. 6. 14.> 1. 사업의 명칭 2.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6. 재원조달계획 7. 실시설계도서[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이주대책 10. 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6. 15.>]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30.>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 2016. 12. 2.7, 2018. 6. 8., 2021. 6. 15., 2022. 12. 27., 2024. 1. 30.>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2., 2022. 6. 14.) 1.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2024. 1.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6. 15.>] 제13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12. 1. 17.]	제14조(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6. 14.>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이동 <2021. 6. 15.>]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6. 12. 2.>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 17.>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의 개최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6. 14.> [본조신설 2012. 6. 29.]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개정 2012. 1. 17.>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7.>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17.>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 15.>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6. 15.>] 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6. 15.>]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댐건설사업시	제15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시장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6. 15.>]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6. 12. 2.]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1. 6. 15.>]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2022. 6.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6. 14.> [전문개정 2011. 11. 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6. 14.>]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에 댐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댐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2. 6.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긴급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6. 15.>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 15.> [전문개정 2011. 11. 30.]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 15.>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는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21. 6.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 <개정 2021. 6.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6. 15.>]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6. 14.>] 제17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2021. 12. 16., 2022. 6. 14.> 1. 도로	6. 15.) [본조신설 2017. 6.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6. 15.>]	2. 하천 3. 제방 4. 도랑 5. 유수지시설(遊水池施設) 6. 상하수도 7.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 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8. 공원 9. 철도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따른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시설 [전문개정 2011. 11. 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6. 14.>] 제18조 [종전 제1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6. 14.>]	제6조 [종전 제6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6.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21. 6. 15.) 제19조(댐사용권설정에정자) ① 댐사용권설정에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① 댐사용권설정에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효용에서 산정되는 추정투자액 2.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 그 효용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 ③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22. 6. 14.)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건설기간 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0조(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의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의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면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부담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에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에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에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① 댐사용권설정에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 2.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 3. 반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6퍼센트 4. 반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 5. 30.]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1. 6. 1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24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① 삭제 <2017. 6. 2.> 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목개정 2017. 6. 2.] 제24조의2(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정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부과의 취소·변경 및 반환)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과오납(過誤納)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취소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 12. 2.>]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 6.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 1. 30.> [본조신설 2011. 5. 30.] [제목개정 2024. 1. 30.]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3.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5.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촉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삭제 <2002. 8. 1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채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의 취소에 상응하여 그 댐사용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같은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의 증축·개축 등으로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 2.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전문개정 2011. 5. 30.] 제32조(등록) ①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3조(납부금) 댐사용권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납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산출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추정투자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① 국가는 제31조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된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금액은 해당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취소나 변경의 처분으로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장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장권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장권자는 공탁된 반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에 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에 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에 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 5. 30.]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 제33조에 따른 납부금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14.) -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6. 14.)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부기한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제36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가산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가산금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5. 30.]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당 댐을 이 법에 따른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다목적댐 인정 사유 2.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 수위와 저수량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국가는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 다목적 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조를 하거나 대출을 알선 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나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해당 댐건설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해당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 5. 30.>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태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 11. 30.>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4.> ②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1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이주정착 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 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6. 8.>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6. 8.> ③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用水)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 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32조 삭제 <2002. 7. 30.> 제33조 삭제 <2002. 7. 30.> 제34조 삭제 <2002. 7. 30.>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 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代土) 알선 및 영농 교육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댐저수구역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取水)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 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댐의 본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3. 연도별 투자계획 4. 사업의 내용·시행기간 및 시행자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2. 1. 17.>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③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개정 2024. 5. 28.>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를 위탁한 댐(제1호 및 제2호의 댐은 제외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를 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6. 14.>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전문개정 2011. 11. 30.]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0. 11. 10.〉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11. 10.〉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전문개정 2011. 11. 30.]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 그 밖에 지원사업협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협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나 통장·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半期)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①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금의 신청·교부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40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6.] [충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 <2021. 12. 16.>] 제45조의3(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재원확보계획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전문개정 2011. 11. 30.] [제45조의2에서 이동 <2021. 12. 1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댐건설기간 중에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정에정자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4장 보칙 (개정 2011. 5. 30.)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제4장 보칙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생선 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나.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 복구 등의 명령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처분 중 하천수의 사용허가: 관할 홍수통제소장 2.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그 밖의 처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 관리청”이라 한다)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전문개정 2011. 11. 30.]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댐수탁 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	제12조(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① 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2.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1. 5. 30.]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2020. 11. 10., 2022. 6. 14.>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3.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4.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결정 나.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다만,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5.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2020. 11. 10.>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2의2.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권한 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 11. 10.> 1.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2.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4.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8.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9.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0.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1.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2.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3.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4.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5.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16. 「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7.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18.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19.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20.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30.] 제5장 벌칙 <개정 2011. 5. 30.> 제4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애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5. 30.] 제50조 삭제 <2005. 12. 7.>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 2021. 6. 15.> [전문개정 2011. 5. 30.]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1. 10.> 1. 댐건설을 위한 조사 2. 댐 관련 연구 3. 댐건설사업의 시행 4. 댐 설계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11. 10.> [본조신설 2011. 11. 30.] 제48조의3 삭제 <2023. 3. 7.> 제5장 벌칙 <신설 2009. 9. 1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1.] 제5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제6021호, 1999. 9.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부칙 <제16756호, 2000. 3.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이주정착지원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댐의 실시계획의 고시일을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일로 본다. 제4조(건설중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3. 4. 17.> 부칙 <제233호, 2000. 3.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25호, 2002.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 2006. 6.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사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댐의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 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 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으로 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존의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댐관리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15조제1항의	②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 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 건설 사업 2. 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 시설구분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한다. ③댐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6조제3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 2011. 11. 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3.> (국도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도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도교통부”로 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댐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5조의5의 규정을 적용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중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고시된 댐의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기존의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으로 본다. 제9조(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	건설 ⑤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시설”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시설”로 한다. ⑨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7조중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⑩행정관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⑪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바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동법 제5조제1항”을 “동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④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69호, 2014. 12. 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 2017. 6. 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업용수법에 대하여는 당해 댐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령을 적용하되, 댐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댐의 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댐건설 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서의 허가등에 관한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천 구역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으로 본다. 1.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 구역 2.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구역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제4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37호, 2001. 2. 24.>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①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302호, 2001. 7. 14.>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7696호, 2002.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988호, 2022.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 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45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 및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토지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존의 댐에 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계획수립 등) ①법률 제6587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을 부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댐으로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댐(이하 “대상댐”이라 한다)은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으로 한다. ②대상댐의 본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한 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587호, 200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용중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댐사용권설 정예정자의 부담금 또는 당해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에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계획수립 및 시행시기와 재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댐사용권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55호, 2002. 2. 4.〉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2 이상인 경우의 재원 분담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1. 다목적댐의 경우 댐관리청 및 댐사용권자는 법 제2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 또는 납부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다만, 댐관리청이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 당해 댐의 저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당해 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⑦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납부·배분·관리 및 교부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로 본다. 부칙 〈제17854호, 2002. 12.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⑩내지 ⑳생략 부 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㉑내지 <85>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⑩내지 ㉑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18457호, 2004. 6. 29.>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18504호, 2004. 7.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댐부터 적용한다. ③(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생략 부칙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②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④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916호, 2003. 5. 2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④(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부칙 〈제19503호, 2006. 6.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158호, 2004.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의 건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률을 적용하되, 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②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②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개정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제4호·비고 제5호 및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715호, 2005. 12.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724호, 2009.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노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⑯내지 ⑮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83호, 2007. 1. 26.>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부칙 <제22613호, 2011.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댐의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31호, 201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11호, 2012. 6. 29.>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 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	24조제1항·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별표 1 제3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96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조제6호”로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⑩내지 ④⑧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④내지 ④②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154호,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②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②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① 내지 ④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① 까지 생략 ②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수 사용허가의 협의기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32231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659호, 2007. 10. 17.> 이 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⑨ 부터 ③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별표 3 제5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④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tr><td>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td><td>「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는 댐관리기본계획</td></tr></table>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별표 3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⑥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	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는 댐관리기본계획	
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는 댐관리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3> 까지 생략 <5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	라 한다)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자목의 감면대상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건설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별표 1 제3호마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분·제5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②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③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037호, 2008. 3. 28.>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법률” 제7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의 대상시설란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대상시설란 중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수도권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⑮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자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별표 1 제1호라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597호, 2009. 4.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⑮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별표 2 제2호바목(1)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⑮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⑯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중>의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⑯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⑯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⑯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④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tr><td>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사업</td><td>「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td></tr></table> ④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사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사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불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㉓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760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란의 나목16)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㉗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tr> <td>바. 수자원의 개발</td><td>「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td><td>「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 </table> 별표 3 제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바.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2항 중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185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부칙 <제34533호, 2024. 5. 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별표 7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1〉까지 생략 〈57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⑧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989호, 2015. 1. 6.> (주택도시금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금융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생략 부칙 〈제14337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자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제2항(가산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금을 강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자부담금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거나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취소된 경우 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44호, 2017. 1. 1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생략 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10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어업권”으로 한다. ⑰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175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4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26)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급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⑦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전단 및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및 제56조제5항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⑲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8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⑳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⑤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2079
[별표 2] 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2080
[별표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2080
[별표 4]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2081
[별표 5]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2081
[별표 6]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2082
[별표 7]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2083
[별표 8]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2084
[별표 9]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2085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2086

[별표 1] <개정 2018. 6. 8.>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구분	내용
1. 분리비용 잔여 편익지출법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 및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해당 용도의 분리비용을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따라 나머지 공동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2. 대체타당 지출법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따라 공동시설비를 배분하는 방법
3. 우선지출법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각 용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동시설비를 해당 용도에 배분하는 방법. 이 경우 각 용도의 우선순위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우선대체타당 지출법	다목적댐의 용도 중 중요도가 특히 높은 용도에 대해서는 우선지출법을 적용하여 공동시설비를 우선 배분하고, 그 밖의 용도에 대해서는 대체타당 지출법을 적용하여 나머지 공동시설비를 배분하는 방법. 이 경우 우선지출법이 적용되는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

1. 대체건설비: 다목적댐의 용도별로 다목적댐과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부대시설이 가지는 효용과 같은 효용을 가지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추정비용으로 한다.
2. 타당투자액: 다목적댐의 용도별로 다목적댐과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부대시설이 가지는 효용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비용을 말하며, 연간 등가편익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추정비용을 뺀 금액을 자본환원 계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분리비용: 다목적댐의 용도 중 특정 용도를 제외하여 다목적댐을 건설할 경우 추정되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절감액으로 하며,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에서 특정 용도를 제외할 경우에 나타나는 저수량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잔여 공동비용: 다목적댐건설비용에서 각 용도의 분리비용 전액을 뺀 비용으로 한다.
5. 전용시설비: 다목적댐의 용도 중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다목적댐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겸하는 다목적댐의 시설(다목적댐의 각 용도 전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용도에 배분된 비용을 포함한다.
6. 공동시설비: 다목적댐의 각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1.11.30〉

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용도별	상각률	비고
1. 발전	2.00퍼센트	내용연수 45년, 잔존가액 10퍼센트
2. 농업용수	1.82퍼센트	내용연수 55년, 잔존가액 0퍼센트
3. 홍수 조절	1.25퍼센트	내용연수 80년, 잔존가액 0퍼센트
4.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2.00퍼센트	내용연수 45년, 잔존가액 10퍼센트

[별표 3]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구분	세부사업내용
1. 생산기반 조성사업	가. 농지 조성·개량, 조림·육림, 임도·농로 건설, 공동 영농·축산·재배시설(공동 기계·자재의 구입 및 제공을 포함한다), 공동 양식·양어장(댐저수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개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 나.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 창고, 구판장, 소규모 공단 등 상공업 관련 시설 다.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관광산업 관련 시설
2. 복지문화 시설사업	가. 보건진료소, 공중화장실, 공설묘지,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전기·통신시설, 주택개량 등 의료·복지 관련 시설 나. 도서관, 체육시설, 향토자료시설, 자연학습장,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전시장, 전망대, 야영장, 공원 등 교육·문화 관련 시설
3. 공공시설 사업	하천정비, 임대주택건설, 택지개발, 도로, 교량, 광장, 주차장,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도선(渡船) 및 선착장시설

[별표 4]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추가금액(원)=200억원×(저수면적 계수+총저수용량 계수+수몰 세대수 계수+개발수요 계수)÷4

비고

1. 저수면적 계수

저수면적(km ²)	계수
15 이상	1.5
10 이상 15 미만	1.2
7 이상 10 미만	0.9
5 이상 7 미만	0.6
3 이상 5 미만	0.3
2 이상 3 미만	0.1

2. 총저수용량 계수

총저수용량(백만m ³)	계수
300 이상	1.5
100 이상 300 미만	1.2
70 이상 100 미만	0.9
50 이상 70 미만	0.6
30 이상 50 미만	0.3
20 이상 30 미만	0.1

3. 수몰 세대수 계수

수몰세대수(세대)	계수
500 이상	0.5
300 이상 500 미만	0.4
150 이상 300 미만	0.3
100 이상 150 미만	0.2
100 미만	0.1

4. 개발수요 계수

개발수요(명/km ²)	계수
130 이상	0.5
100 이상 130 미만	0.4
70 이상 100 미만	0.3
50 이상 70 미만	0.2
50 미만	0.1

※ 위 표 중 개발수요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당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 속하는 읍·면·동 전체의 인구밀도를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자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빛물이 본 댐의 저수지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 및 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산정한다.
-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시·도지사가 각 시·군·구의 재정구조 및 생활환경과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별표 6] 〈개정 2021. 12. 16.〉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 사업 내용
1. 지역지원 사업	가. 소득증대 사업	1) 공동영농시설·농기구수리시설·생산물공동저장시설·농로·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생활기반 조성사업	1) 의료기구 및 급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2)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통학차·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 4)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다. 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2)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 3)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2. 주민지원 사업	가. 주민생활 지원사업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제 친환경 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분		세부 사업 내용
	나.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 시설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학교 환경교육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의 지원사업	가. 댐저수 사용료 보조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나. 홍보 및 부대사업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마을 지원 등 대민 지원, 대 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3) 지역 홍보, 댐 견학 등 댐주변지역 홍보사업 4)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5) 주민간담회,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비고: 각 사업의 내용에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댜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제44조제1항 관련)**

- 다목적댜 및 홍수조절용댜 주변지역에 대한 댜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댜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발전 계수 금액+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억원)

기초 지원금	발전 계수 금액		용수공급 계수 금액		저수용량 계수 금액	
	연간 발전용량 (GWh)	금액	용수공급능력 (억㎥/년)	금액	총저수용량 (억㎥)	금액
2.5	800 초과	6.0	20 초과	6.0	25 초과	6.0
	550 초과 800 이하	4.0	15 초과 20 이하	4.0	20 초과 25 이하	4.0
	350 초과 550 이하	3.0	10 초과 15 이하	3.0	15 초과 20 이하	3.0
	200 초과 350 이하	2.0	5 초과 10 이하	2.0	10 초과 15 이하	2.0
	40 초과 200 이하	1.5	1 초과 5 이하	1.5	5 초과 10 이하	1.5
	5 초과 40 이하	1.2	0.5 초과 1 이하	1.2	0.5 초과 5 이하	1.2
	5 이하	0.9	0.5 이하	0.9	0.5이하	0.9

-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85-총기본지원금)×{(해당 댜 출연금÷총출연금)+(해당 댜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다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단위: 억원)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	조정금액
10 초과 30 이하	10 + 10 초과액 × 0.90
30 초과 70 이하	28 + 30 초과액 × 0.85
70 초과 100 이하	62 + 70 초과액 × 0.80
100 초과	86 + 100 초과액 × 0.75

- 댜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총출연금에서 가목의 총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댜관리청 또는 댜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지원사업구역에 대한 단위면적당 평균지원금은 해당 댜의 다른 댜주변지역지원 사업구역의 단위면적(별표 8의2제3호 각 목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당 평균지원금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댜관리청 또는 댜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댜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 댜저수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댜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비고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총기본지원금·총지원금 및 총저수면적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댜에 해당되는 다목적댜 및 홍수 조절용 댜의 출연금·기본지원금·지원금 및 저수면적의 각 합계를 말한다.
 - 가목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이 종전의 별표 7(대통령령 제00000호 댜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보다 적은 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댜관리청 또는 댜수탁관리자가 다목에 따라 산정한 그 밖의 지원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 생활용수댜 및 공업용수댜 주변지역에 대한 댜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댜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기초 지원금	용수공급 계수 금액		저수용량 계수 금액	
	생활·공업용수공급능력 (백만㎥/년)	금액	총저수용량(백만㎥)	금액
50	80 초과	40	150 초과	40
	60 초과 80 이하	30	110 초과 150 이하	30
	40 초과 60 이하	25	70 초과 110 이하	25
	20 초과 40 이하	20	30 초과 70 이하	20
	20 이하	10	30 이하	10

- 2)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9-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해당 댐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나. 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총출연금에서 가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총기본지원금·총저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댐의 경우: 같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의 출연금·기본지원금·저수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
 -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의 출연금·기본지원금·저수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
- 제1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별표 8]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물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 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한다.
-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9] <개정 2021. 12. 16.>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산정기준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면허어업 및 낚시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다.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마.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하천 부속물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4. 토석·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해당 시·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5. 식물의 재식(栽植)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6. 토지의 굴착(땅파기)·성토(흙쌓기)·절토(땅깎기) 또는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해당 시·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7. 스케이트장의 설치	토지가격의 100분의 5
8. 골재의 채취	해당 시·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에 포함한다.

0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0] <개정 2022. 6.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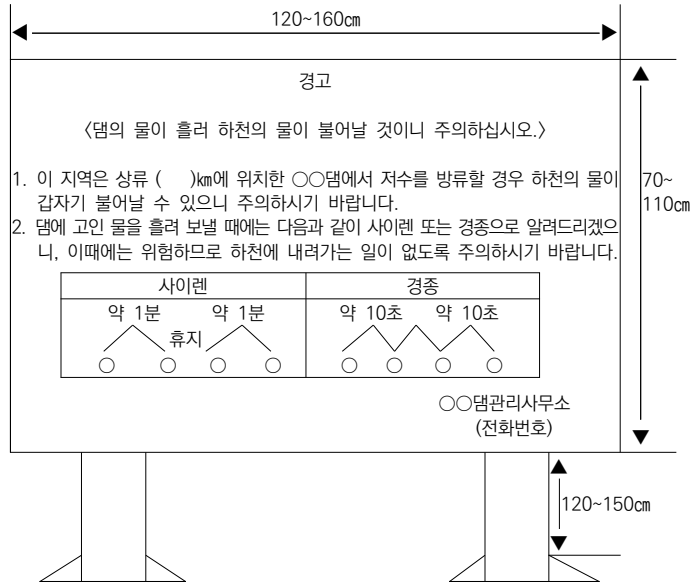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	100	150	20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경고 표지(제6조 본문 관련)	2089
[별표 2] 경고 표지(제6조 단서 관련)	2089
[별표 3]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 산출방법(제7조 관련)	2090

[별표 1] <개정 2022.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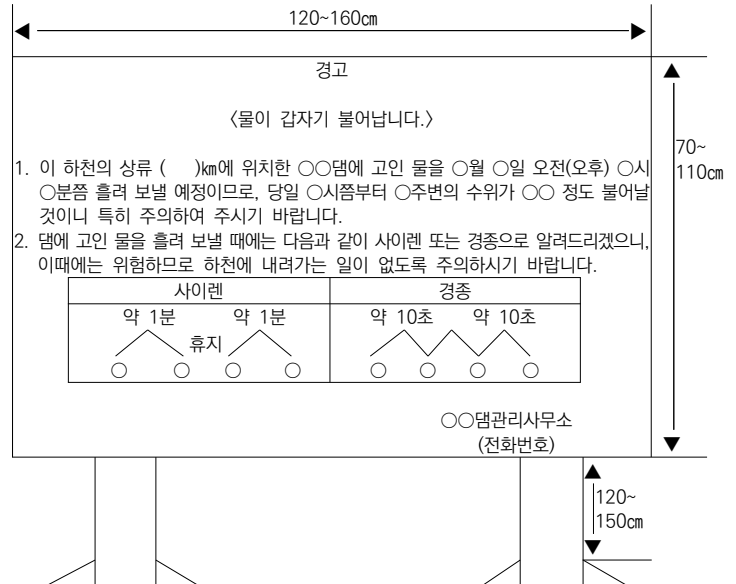
경고 표지(제3조 본문 관련)



주: “경고” 및 “위험”은 붉은 색으로, 그 외의 글자는 검은 색으로 표시한다.

[별표 2] <개정 2022. 6. 15.>

경고 표지(제3조 단서 관련)



주: “경고” 및 “위험”은 붉은 색으로, 그 외의 글자는 검은 색으로 표시한다.

[별표 3] (개정 2018. 6. 8.)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 산출방법(제7조 관련)

1. 대체건설비의 산출방법

- 가.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은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장소와 같은 장소나 설치비용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나. 다목적댐의 용도 중 발전 용도의 대체건설비를 산출할 때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이 가지는 효용과 같은 효용은 해당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효출력(kw) 및 유효전력량(kwh)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대체건설비의 범위는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및 부대비와 건설기간 중의 이자로 한다. 이 경우 건설기간 중의 이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 가. 다목적댐의 용도별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 1) 홍수 조절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효용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합계액
 - 가) 제방, 호안(護岸), 수제(水制), 그 밖의 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의 감소
 - 나) 도로, 교량, 철도, 그 밖의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의 감소
 - 다) 홍수의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의 감소(減産), 농지의 유실(流失), 가옥의 파손, 그 밖의 자산(가계자산, 사무소, 광공업 및 농어업의 상가자산, 재고자산 및 영업손실을 포함한다)의 피해 방지 또는 감소
 - 라)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준설(浚渫) 유지비의 감소
 - 마) 홍수 범람 방지로 인한 지가(地價) 상승
 - 2) 관개(灌漑)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 가) 증가된 작물생산량에 표준단가와 순이익률을 각각 곱한 연간 작물수입 증가액
- 나) 댐건설 전의 영농시설의 유지관리비에서 댐건설 후의 영농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뺀 연간 시설유지관리비 감소액
- 다) 댐건설 전의 영농에 투입되는 노동량에서 댐건설 후의 영농에 투입되는 노동량을 뺀 노동량에 노무비 단가를 곱한 노무비 절감액
- 3) 공업용수·생활용수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수량에 단위당 용수요금을 곱한 금액
- 4) 발전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력량에 해당 시설과 유사한 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요금을 곱한 금액. 다만, 전기요금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유효출력의 효용으로부터 산출된 금액과 유효전력량의 효용으로부터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5) 하천유지용수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수의 효과와 같은 수질, 하천생태나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의 합계액
- 6) 그 밖의 용도의 타당투자액: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

- 나. 영 별표 1 비고 제2호의 자본환원 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text{자본환원 계수} = \frac{i(1+i)^n}{(1+i)^n - 1}$$

(i: 이자율, n: 댐사용권 내용연수)

- 다. 다목적댐의 용도 중 특정용도의 효용이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타당투자액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라. 유효출력(kw)과 유효전력량(kwh)에 의한 발전 용도의 타당투자액 산출방법

1) kw편익=kwh당 가치×유효출력량(kw)

가) kw당 가치=kwh당 대체화력 건설비×화력의 연간 고정비율×수력 대 화력의 계수

나) 화력의 연간 고정비율은 자본비용비율(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차입금의 이자와 배당액의 합계액을 화력발전소에 투입된 총건설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감가상각비율, 보험료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비율, 운전유지비율(연료비는 운전유지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수력 대 화력의 계수

$$\frac{\text{수력}(1 - \frac{\text{1차 발전단 기준 손실률}}{\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frac{\text{발전소 내 소비율}}{\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text{보수율})}{\text{화력}(1 - \frac{\text{1차 발전단 기준 손실률}}{\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text{사고율}) \times (1 - \frac{\text{발전소 내 소비율}}{\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text{보수율})}$$

2) kwh편익=kwh당 가치×유효전력량(kwh)

가) kwh당 가치=kwh당 화력의 연료비×수화력 조정 계수

나) 수화력 조정 계수 = $\frac{\text{수력}(1 - \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text{송전손실률})}{\text{화력}(1 - \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text{송전손실률})}$

제3편 수자원

02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목 차

담사용권등록령	담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0.〉	
제1조(목적)	2097
제2조(가등록)	2097
제3조(예고등록)	2097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2097
제2장 담사용권등록부	
제5조(비치)	2098
제6조(편성)	2098
제7조(양식)	2098
제8조(기재방법)	2098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2099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 12. 30.〉	
제10조(등록)	2099
제11조(등록신청인)	2099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2099
제13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2099
제14조(가등록말소의 신청)	2100
제15조(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2100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2100
제17조(등록의 신청)	2100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2101
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2101
제1조(담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2098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2098
제3조(숫자 등의 기재)	2098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2098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2099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2100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2101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20조(지분의 기재) 2101	
제21조(신청서의 접수) 2101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2101
제22조(등록의 실시) 2101	
제23조(신청의 각하) 2102	
제24조(부기등록) 2102	제9조(부기등록) 2102
제25조(등록확인증의 발급) 2102	
제26조(경정등록) 2103	
제4장 댐사용권	
제27조(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2103	
제28조(지권등록 말소·변경) 2103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2103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2103
제29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2103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2103
제5장 저당권	
제30조(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2104	
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2104	
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2104	
제33조(부기등록) 2104	제13조(가등록) 2104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2104
제6장 삭제 (2009. 12. 30.)	
제34조 삭제 2105	
부칙 2105	부칙 2105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정 1973. 6.30 대통령령 제6744호 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0. 3.13 대통령령 제16756호 (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재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2.30 대통령령 제21932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7호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73. 8.24 건 설 부 령 제133호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 4 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9.12.31 국토해양부령 제207호 2013. 3.23 국토교통부령 제 1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 6. 8 환 경 부 령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0.>

제1조(목적) 이 영은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4.>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변경·이전·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抹消)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댐사용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부가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가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③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하였을 때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댜사용권등록령	댜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2장 댜사용권등록부 제5조(비치) 댜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 제6조(편성) 등록부에는 1개의 댜사용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7조(양식) 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 제8조(기재방법) ① 등록번호란에는 등록부에 댜사용권을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② 표시란에는 댜사용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③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댜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⑤ 을구 사항란에는 해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조(댜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댜사용권등록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댜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류 4. 등록부의 등본·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류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교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교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숫자 등의 기재) ① 등록부에 금액이나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의 글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글자 앞뒤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欄) 밖에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글자수를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 12. 30.> 제10조(등록)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1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전문개정 2009. 12. 30.] 제13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登錄名義人)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댐사용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①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4. 가등록의 말소 5.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전문개정 2009. 12. 30.] 제14조(가등록말소의 신청)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5조(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1.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소의 취하(取下)가 있을 때 3.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4.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09. 12. 30.] 제17조(등록의 신청) 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다목적댐의 위치 및 명칭 2. 댐사용권의 설정목적 3.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貯水)의 최고·최저 수위(水位) 및 저수량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6.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7. 등록의 목적 8. 신청연월일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 허가·동의·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12. 30.]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2018. 6. 8.> 1.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등록명인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0.] 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0조(지분의 기재)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1조(신청서의 접수)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신청서 접수대장의 서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 제22조(등록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3조(신청의 각하)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댐사용권 또는 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0.] 제24조(부기등록) ①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이나 등록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부기(附記)에 의하여 한다. ② 권리의 변경등록 또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5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분(副本)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고, 등록의무자에게는 등록 완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9조(부기등록) 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옮겨 적는 등록의 순위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록의 끝 부분에는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옮겨 적는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각각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폐쇄한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장 저당권 제30조(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①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한 담보한도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3조(부기등록) 저당권 이전의 등록 및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3조(가등록) ①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법사용권등록령	법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장 삭제 (2009. 12. 30.) 제34조 삭제 (2009. 12. 30.) 부칙 <제6744호, 1973.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법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7조제2항,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4>내지 <205>생략 부칙 <제16756호, 2000. 3. 13.> (법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6조제3항”을 “법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	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부칙 <제133호, 1973. 8.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 2004. 11. 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 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 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댐사용권등록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4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㊸ 부터 <138> 까지 생략	④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1932호, 2009.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㉓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3편 수자원

0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113 제2조(정의) 211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114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2114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2117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2118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 2119 제8조(행위 등의 제한) 2120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2122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2123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2123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2124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2124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2125 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2126	제1조(목적) 2113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2113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2115 제4조(주민의견 수립) 2117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2118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2119 제7조(행위 등의 제한) 2120 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2122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2123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2123	제1조(목적) 2113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2114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2122 제4조(증표) 212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129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129	
제17조(준공검사) 2130	제12조(준공검사) 2130	제5조(준공검사) 2130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2130		
제1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131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2131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2131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2131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2133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2133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관리) 2133		
제5장 보칙		
제24조(지도·감독 등) 2133	제15조(행정처분 사유) 2134	제6조(행정처분 기준) 2134
제25조(행정처분) 2133	제16조(행정처분 고시) 2134	
제26조(청문) 2134	제17조(권한의 위임) 2135	
제27조(권한의 위임) 2135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2135		
제29조(벌칙) 2135		
제30조(양벌규정) 2136		
제31조(과태료) 2136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136	
부칙 2136	부칙 2136	부칙 213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18. 6.12 법률 제15674호 개정 2020. 1.29 법률 제16902호 (형인법) 2020.12. 8 법률 제17599호 2021. 6.15 법률 제18284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11.30 법률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 1.11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2.27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 1.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댐”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5.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란 댐 및 주변지역	제정 2019. 6.11 대통령령 제29847호 개정 2021. 2.17 대통령령 제31465호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7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10 대통령령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6. 14.〉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 2019. 6.12 국토교통부령 제625호 개정 2021. 2.17 한 경 부 령 제9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댐의 효율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 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	령」 제36조에 따른 계획홍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0만세제곱미터 이상 2,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라.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발전소(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중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가 설치된 수력발전소를 말한다)의 주변지역 중 만수위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다만,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 2. 17.> 제4조(주민의견 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이나 관계 서류 내용에 대하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15.>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 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의 시행자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의 시행자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④ 제1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개정 2020. 12.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나.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3조제3항제6호의 도면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1. 2. 17.)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제7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1. 1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土石)·자갈·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7호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8. 식물재배: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사업의 시행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6.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를 포함한다)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 시행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 2021. 2. 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토지예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⑤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제4조(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 11.> 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2021. 11. 30., 2022. 12. 27., 2024. 1. 30.>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4. 1.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 대책”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제5조(준공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가스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중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 및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지도·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제25조(행정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26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15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행정처분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조치기간 등	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제29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제1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2. 17.> 1.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0.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 11. 법 제26조에 따른 청문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의 발급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への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 への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5674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9847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5호, 2021. 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625호, 2019. 6. 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 2021.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을 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tr> <td>234</td><td>「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td><td>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td></tr> </table>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⑮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599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2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225호, 2023. 1.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2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8284호, 2021. 6.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⑯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 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⑫부터 ⑤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㉔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	2143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2144

[별표 1] <개정 2021. 2. 17.>

유지관리자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조성의 기준

유지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실수입액
- 3) 직영수입: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

나. “총사업비”는 다음의 투자사업비, 임대사업원가,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투자사업비”는 다음의 용지 매수 및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지 매수 및 보상비: 토지 및 시설 매입비, 지장물(支障物)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나) 조사비: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다)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라)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마) 일반관리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합계액

바) 그 밖의 경비: 환경영향평가비, 잡지출(그 밖에 사업 관련 각종 지출), 세금, 공과금, 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

- 2) “임대사업원가”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영사업원가”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자본비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 시행자의 토지예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80만원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 시행자의 공유수면예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80만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2147

[별표]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또는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제3편 수자원

0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령

목 차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153	제1조(목적) 2153
제2조(정의) 2153	제2조(침수방지시설) 215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215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153	
제5조(기본원칙) 2154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54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2154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2155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2155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2155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 2155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2157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2156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2157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2156
제11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2157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2157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2157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2157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2158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2158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 2158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2159	제11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2159
제16조(연구개발) 2159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운영 등) 2159
제17조(국제협력) 2160	
제18조(기술 및 재정 지원) 2160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2160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2160
부칙 2160	부칙 216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 2023. 9.14 법률 제19719호	제정 2024. 3. 5 대통령령 제342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침수”란 홍수로 인한 도시하천의 범람 또는 도시지역 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특정도시하천”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로터널 -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시침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인구,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침수에 대비하여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3.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5. 특정도시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6. 유역 내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3.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2.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3.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다. 전체 기본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나.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다. 전체 기본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7항,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침수방지사설 사업의 명칭, 목적 및 개요 - 침수방지사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 침수방지사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연차별 추진계획 - 그 밖에 침수방지사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하천법」, 「하수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 전체 시행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시행계획의 변경 목적 -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 전체 시행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22호에 따른 국토연구원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6. 그 밖에 도시하천 유역 침수방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등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2. 인구 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침수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인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사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사설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재해 정보의 수집·전파, 도시침수 및 침수피해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사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침수방지사설 사업별 공정률 및 예산 집행 현황 2. 침수방지사설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현황(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침수방지사설 사업별 남은 공정 추진계획 5. 그 밖에 침수방지사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사설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사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침수위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전파·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춘 것 2. 물재해 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장비·인력 등 운영관리체계를 갖춘 것 3.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개발) 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침수방지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기술(이하 “도시침수방지기술”이라 한다) 조사·연구 2. 도시침수방지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도시침수방지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이 정한다. 제11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이하 “도시침수예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측정지점 및 기준수위 등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침수예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하수도의 실측 및 예측수위에 관한 정보 2. 하천·하수도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위험 및 침수범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도시침수를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송·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실시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구역의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침수피해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침수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침수위험 정보의 수집·전파·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4. 도시침수방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제17조(국제협력) 환경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침수피해 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기술 및 재정 지원) 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9719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고시·통보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고시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적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용 권고 5.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 제출의 접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운영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운영 부칙 〈제34291호, 2024. 3. 5.〉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편 수자원

05

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167 제2조(기본이념) 2167 제3조(정의) 2167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216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68 제6조(사업자의 책무) 2168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168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8조(물의 공공성) 2169 제9조(건전한 물순환) 2169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2169 제11조(유역별 관리) 2169 제12조(통합 물관리) 2169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2169 제14조(물의 배분) 2170 제15조(물수요관리 등) 2170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2170 제17조(비용부담) 2170 제18조(기후변화 대응) 2170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2171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2171	제1조(목적) 2167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2171	제1조(목적) 2167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2171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2171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2172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2173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172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2174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2173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2174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2175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2175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2175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2176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2176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2177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2177	
	제12조(운영규정) 2178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178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179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2180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2181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2182	
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2183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2183		
제31조(공청회의 개최) 2184	제15조(공청회의 개최) 2184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물분쟁의 조정) 2185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2185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2185
	제17조(선정대표자) 2186	제3조(선정대표자) 2186
	제18조(대리인) 2187	제4조(대리인) 2187
제33조(조정 처리) 2187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2187	제5조(조정안 등) 2187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2188	제20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등) 2188	제6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2188
	제21조(조정 비용) 2189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2189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5조(물문화 육성 등) 2191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2191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2191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2192 제38조(물관리 협정) 2192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2192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2192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2193 제42조(업무의 위임·위탁) 2193 제43조(단체의 설립) 2194 제44조(재정지원) 2195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195 부칙 2195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2190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2190 제25조(업무의 위탁) 2193 제26조(단체의 설립) 2194 부칙 2195	제7조(조정의 종료) 2190 부칙 2195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18. 6.12 법률 제15653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할 때에는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面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	제정 2019. 6.11 대통령령 제29841호 2021.10. 5 대통령령 제32024호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7호 (담간섭·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11 대통령령 제32794호 (수도법 시행령) 2022. 7.19 대통령령 제32808호 2023. 5.23 대통령령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19. 6.12 환경부령 제809호 2022. 7.19 환경부령 제99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3.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4.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과 정상적인 물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관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8조(물의 공공성)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건전한 물순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역별 관리)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12조(통합 물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할 때 수량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 기후·토지·자원·환경·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제14조(물의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물수요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의 개발·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용수를 절약하고 물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전물의 민물화 등 대체(代替)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관리에 장애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의 예방·복구 등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비용으로 받는 재원은 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8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전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전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전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 물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관리 협정(이하 “물관리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나 물관리 업무의 경험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협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2.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3.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4. 삭제 <2021. 12. 28.> 5.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기상청장 중 기상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섬진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구역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구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구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구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8조에 따른 구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구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구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구역 내 물 이동 4. 제32조에 따른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22조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구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구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구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	강구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구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구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구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④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	⑦ 간사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6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여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정책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19.>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2.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3.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국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3.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증장기 공급 전망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3.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 6. 14., 2022. 7. 11.〉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6.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 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 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 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 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7. 「사방사업법」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장비계획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1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13. 「하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제13조의 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① 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4. 국립환경과학원 5.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환경공단 8. 그 밖에 물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9.]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역 내 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6.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받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8.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증기계획 9.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1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12.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13. 「하수도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②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심의한 결과, 해당 유역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 또는 해당 유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개최 목적 2. 일시 및 장소 3. 국가계획의 안(案) 또는 유역계획의 안의 개요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계획의 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물분쟁의 조정) ①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물관리위원회에 물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당사자가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물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물분쟁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물분쟁의 경과 4. 조정의 취지 및 이유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물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관할 물관리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22. 7. 19.>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9.>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은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⑤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2. 7. 19.>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⑥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성질상 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물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물분쟁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분쟁의 내용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물분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9.>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분쟁 2.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여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⑧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물관리위원회의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2. 7. 19.> 제17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지·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	제3조(선정대표자) ①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조정)의 처리)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제32조제5항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진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관리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를 통해서만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신청의 취지·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조정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분쟁 조정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해당 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물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조정 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물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해당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1. 조정번호 및 조정대상 물분쟁의 제목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 ④ 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물분쟁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조정에 참여한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물분쟁 조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9.>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제6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2. 7. 19.>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2. 7. 19.>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신설 2022. 7. 19.>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②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일시 변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7. 19.>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9.>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에 드는 우편요금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취지 및 이유의 변경 없이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제목개정 2022. 7. 19.]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기간 내에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取下)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1. 물관리 협정의 명칭 2.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 3. 물관리 협정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4. 물관리 협정의 목적 및 내용 5. 물관리 협정의 유효기간 6. 물관리 협정의 이행확보수단 7. 그 밖에 물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②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그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관리 협정서의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5조(물문화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및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날, 물 주간(週間) 및 그 취지에 어울리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보급 사업 3.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4.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물관리 협정) ① 물관리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는 물의 이용·배분,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대상이 된 물관리 관련 지역주민 단체, 사업자 및 단체 등을 물관리 협정의 체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관리 협정의 체결 방법·내용·절차 및 그 이행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용자와 지역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당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라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5., 2023. 5. 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단체의 설립)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물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7.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의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물산업협회의 11.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1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13. 「지하수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1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가. 물관리 나. 물문화 육성·물관리 국제협력 ③ 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5653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계획 및 유역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은 제1항의 국가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29841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24호, 2021. 10.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1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부칙 〈제809호, 2019. 6. 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5호, 2022.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1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들은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94호, 2022. 7. 11.> (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제14조제3항제9호 중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2808호, 2022. 7.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부 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부 칙 <제34550호, 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관할 구역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별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2조 관련)	2201

[별표] <개정 2024. 6. 4.>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 구역
1.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낙동강 유역은 제외한다), 경기도(금강유역은 제외한다), 경상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 중 한강유역
2.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금강유역 및 섬진강유역은 제외한다), 경상북도(한강유역 및 금강유역은 제외한다), 강원특별자치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 중 낙동강유역
3.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한강유역은 제외한다), 충청북도(한강유역 및 낙동강유역은 제외한다), 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 중 금강유역
4.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낙동강유역은 제외한다), 전라북도(낙동강유역 및 금강유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중 섬진강유역, 제주특별자치도

비고: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및 섬진강유역의 범위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계영향권별 권역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호에 따라 수계별 유역 범위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0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209	제1조(목적) 2209	제1조(목적) 2209
제2조(정의) 2209	제1조의2(수자원위성) 2210	
	제2조(수자원시설) 221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210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221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11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2211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2211	
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2212	제4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2212	
	제5조(홍수위협지도·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2213	
제8조(홍수·갈수 예보의 실시) 2214		제2조(홍수예보) 2214
		제3조(갈수예보) 2215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2217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2217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2218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2219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2218
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2220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2220	
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2221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2221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2222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2222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2223	제5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2222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2223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2223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2224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2224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222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2228 제15조(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 2231 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2232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2233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2231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2234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2233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234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2233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234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2235 제18조(협의회의 운영) 2236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2236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2237 제21조(공청회) 2237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2236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2237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2238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2239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3조(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2239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2239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2239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2240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241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2241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2242 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2242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2242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2242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2243 제26조(위원장의 직무) 2243 제27조(회의) 2243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24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244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2245	제29조(전문위원) 2245	
	제30조(간사 및 서기) 2245	
	제31조(회의록) 2245	
	제32조(수당 및 여비) 2245	
	제33조(운영세칙) 2246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2246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2246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3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2246		제8조(증표) 2247
제34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사용) 2247		
제35조(손실보상) 2248	제35조(재결의 신청) 2248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2248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2248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2249	제37조(권한의 위임) 2249	
	제38조(위탁기관) 2250	
제3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251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2251		
제40조(벌칙) 2251		
제41조(양벌규정) 2251		
제42조(과태료) 2252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252	
부칙 2252	부칙 2252	부칙 225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7. 1. 17 법률 제14544호 개정 2018. 6. 8 법률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18.12.24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2019.11.26 법률 제16608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2.12.27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1. 3 법률 제19169호 2023. 8. 8 법률 제196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9.14 법률 제19719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2024. 1.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3.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수·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蒸發散量),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조사·분석하는	제정 2017. 7.17 대통령령 제28190호 개정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7호 (담간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6.27 대통령령 제335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17. 7.18 국토교통부령 제437호 개정 2018. 6. 8 한 경 부 령 제76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5.10 한 경 부 령 제109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것을 말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측 법률에 따른 기상관측은 제외한다. 3의2. “수자원위성”이란 수문조사의 실시, 수문조사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공위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자원시설”이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댐, 보(堰),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수자원관리기술”이란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및 개발, 홍수·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건천화(乾川化)와 홍수	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2. 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 [본조신설 2023. 6. 27.]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하 “하천시설”이라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 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① 수자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수자원 관리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국가는 가뭄의 장기화 등에 따라 수자원의 정상적인 배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물 등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수자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은 물순환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⑤ 수자원은 수량 확보, 용수공급 및 재해방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산업·경제현황, 지형·토양 등 유역 특성, 수문(水文) 특성, 지하수 특성 등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현황 및 치수(治水) 현황 3. 하천 환경 4.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그 결과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0. 5. 26.> ④ 하천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	대한 조사 2.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 현황, 이수 시설 현황, 수리권(水利權)의 현황, 하천유지유량 및 물 이동 특성 등에 대한 조사 3.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4. 하천환경현황조사: 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및 생태현황 등에 대한 조사 ②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 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제4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8.>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갈수(渴水) 예보 실시 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피해 상황조사 가.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나.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다.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가뭄 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 가뭄 상황조사 가. 수원(水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 나. 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다. 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라. 그 밖에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③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제5조(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사·분석 결과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 해당 하천의 지형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조사·분석 결과 2. 해당 지역의 가뭄발생 특성 및 취약성 분석 3. 해당 지역의 지형 자료 등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홍수·갈수 예보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8.>	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화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제2조(홍수예보) ① 홍수통제소장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하여야 한다. 1. 하천변 도로,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 정보 2.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 3.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친수지구의 홍수위험 정보 4. 그 밖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를 할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홍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경보를 하는 예보(이하 “홍수특보”라 한다)를 홍수주의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에 따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구역의 경찰서장, 소방서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⑧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지점 중 제3항에 따른 홍수특보 발령을 위한 측정지점(이하 “홍수특보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홍수특보지점별 기준수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지점의 위치 및 기준수위를 10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기준수위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갈수예보)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갈수예보를 관심, 주의,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갈수예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하천수사용자”라 한다)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갈수예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홍수통제소장은 수문량(水文量)을 측정하는 지점 중 제1항에 따른 갈수예보 발령을 위한 지점(이하 “갈수예보 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갈수예보지점별 계획수문량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홍수통제소장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갈수예보지점의 위치 및 계획수문량을 10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하천유역·호수·늪의 물순환 구조 파악 2. 수자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하천의 유지,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각종 구조물의 설계 4.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5. 제8조에 따른 홍수 및 갈수의 예보 6.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가 기본 계획(이하 “수문조사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19. 11. 26.>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제6조(수문조사가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가 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가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 현황분석 2.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3. 수문조사가 망의 구축 및 관리계획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기술개발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 등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계획수문량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 주요 수원(水源)의 고갈 정도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갈수예보체계를 구축하여 갈수예보를 발령할 수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과 중복될 때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9. 11. 26.>	한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위치(위도·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설치 일정 4. 수문조사 환경 5.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 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 이 경우 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수문조사 항목 8. 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19. 11. 26.>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9. 11. 26.> 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춘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교체 목적 2. 교체 내용 3. 교체 일정 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이전 목적 2. 이전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이전 일정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폐지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폐지 이유 2. 폐지 일정 3. 폐지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26.) ⑧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절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하천의 유수(流水)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유량 조사기기는 하천시설의 수위·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시설이 설치된 하천의 적절한 지점에 설치할 것 2. 강수량 조사기기는 하천·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시설의 상류집수지역 중 강수량 조사가 적합한 지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인공 구조물 4. 운하 ② 제1항 각 호의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 상황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기준 및 수문조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관측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이상 나.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다. 유역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하천시설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 방류 예정일시 3. 예정 방류량 4. 하천시설의 수위 5. 그 밖에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④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4.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자료의 공인(公認) 및 저장·배포·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립된 표준의 적용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문조사시기의 검정)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제5조(수문조사시기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문조사시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수자원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9호에 따라 수문조사시기에 대한 검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문조사시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수문조사기기가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라 수문조사시기에 검정증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대상·기준·절차 및 유효기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8.>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6. 8.>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檢定證印)을 표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⑥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4. 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제4항에 따라 변경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가뭄·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운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8. 실시설계도서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수문조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2. 측정기기·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이하 “수자원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과 그에 따른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8., 2018. 12. 24., 2022. 12. 27., 2023. 8. 8.>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자원위성의 개발 2. 수자원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3. 수자원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분석 및 배포 4.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5.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8.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해제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로 한정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치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이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과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준공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과 그에 따른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8., 2018. 12. 24., 2022. 12. 27., 2023. 8. 8., 2023. 9. 14.>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 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8.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해제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로 한정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이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사·준공인가 등과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준공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 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시행일: 2024. 9. 15.] 제14조 제15조(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① 환경부장관은 그가 관리하 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8.>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홍수통제소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 장을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가. 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 나. 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 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다. 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 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라. 유사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 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마. 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 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 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 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①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수문조사 환경이 확보·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 그 밖에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아.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자.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2. 수문현황 대장조서 가. 하천유역 개황(概況):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나. 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다. 댐·홍수조절지·저류지·하구둑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댐·홍수조절지·저류지·하구둑 현황) 라.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③ 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공사 2. 다른 법령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⑤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6. 8.>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2.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3. 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청회의 개최 3.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6. 8.> 1.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대한 자문 4.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 배분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별로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환경관서에 두며, 각 협의회의 관할 유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6. 8.>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 6. 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유역 내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자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6. 8.> 1.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렴 2.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공청회의 개최 4.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④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	제1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 지역 수자원의 이용·배분 및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4. 홍수·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 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⑥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8 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 다. <개정 2018. 6. 8., 2023. 1. 3.> 1.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 삭제 <2023. 9. 14.>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 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④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 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23. 1. 3.>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 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 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공청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판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1. 2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제때에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자원 관리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관련 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1. 24.> ④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기본이 된다. ②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3조(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바닷물의 민물화 2.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3. 빗물 활용 4. 그 밖에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한 방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순환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준에 설치된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3. 1. 3.>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는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계획의 변경, 기능 개선 등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시설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자원의 이용·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이수부분 재평가 2. 하천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치수부분 재평가 ②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재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4.> 1. 법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4. 법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5.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6.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8. 「하천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10.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2.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수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2.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 수자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지원 4.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5. 그 밖에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1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4.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필요한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필요한 사업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정책의 국제공조 및 우리나라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국제회의의 개최 4.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6. 8.>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자원 분야 국제인증 취득 및 국제규격화 지원사업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수자원 분야 관련 사업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6. 8.>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범·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전문위원)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0조(간사 및 서기)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1조(회의록)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 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수자원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장 보칙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3. 죽목(竹木)·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8조(증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한다. 제35조(손실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2.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 3. 제33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6. 8.> 1.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자료의 협조 요청 및 하천유역조사의 분석결과 제공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뭄취약지도 작성 4. 법 제8조에 따른 홍수·갈수예보 5.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수문조사시설의 중복에 대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자의 수문조사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수문조사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의 통지 8. 법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9.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징수 10.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수립시 협의 및 고시 11. 법 제15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3. 1. 3.> 1.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업무 2.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홍수·갈수 예보 업무 4.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5. 제10조에 따른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 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으로 한정한다) 6.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업무 7. 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8.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 관련 업무 9. 제24조에 따른 수자원시설 재평가 업무 10. 제25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	및 보관 12.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출입,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 요청 13.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와의 지역수 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협의 14.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15. 법 제33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 16. 법 제34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사용에 관한 권한 17.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8조(위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6.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협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 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제26조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 실용화·산업화 관련 업무 12.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13. 제28조에 따른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업무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9. 11. 26.]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제7장 벌칙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6. 8.) 부칙 〈제14544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 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하여 종전의 「하천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역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6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유역조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28190호,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을	부칙 〈제437호, 2017.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문조사시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기의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의 발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령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는 각각 제2조제3항에 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는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로 본다. 제4조(홍수피해상황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1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는 각각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로 본다. 제5조(수문조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는 제12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수문조사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으로 본다. 제8조(수자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외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본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로터널·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를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의”를 “하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자원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정보체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제26조의2제1호 중 “갑문·수문조사시설”을 “갑문”으로 한다.	라 발령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하거나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을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이 법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 제9조(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29조제5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하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호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3 및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5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조 중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894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91호, 2024.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3조제1항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50조제1항부터”를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의 제목 중 “조사”를 “정보화”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자원 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 정보체계”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포,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592호, 2023. 6. 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6항 중 “제30조제8항·제31조제5항”을 “제30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을 “하천시설”로 한다. 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7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 자료”를 “하천관리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3항·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057호, 2018. 12. 24.>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6608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69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719호, 2023. 9. 1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2조 관련)	2265
[별표 2] 협의회의 관할 구역(제17조제1항 관련)	2265
[별표 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제28조제1항 관련)	2266
[별표 4] 손실보상업무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제36조제3항 관련)	2266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2267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2조 관련)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종류			수수료(단위: 원)
1. 유속측정기기	가. 기계식		380,000
	나. 전자기식		380,000
2. 강수량측정기기	가. 원통형	1) 실내검정	10,800
		2) 현장검정	63,400
	나. 원통형 외	1) 실내검정	92,100
		2) 현장검정	144,700
	다. 히터 부착형	1) 실내검정	163,500
		2) 현장검정	216,100
3. 증발량측정기기	가. 실내검정		10,800
	나. 현장검정		63,400
4. 토양수분량측정기기			278,400
5. 증발산량측정기기			소요비용
6. 유사량측정기기			68,800
7. 수위측정기기	가. 실내검정		517,200
	나. 현장검정		622,400
8.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것(토양수분량측정기기, 증발산량측정기기 등)			각 기기 수수료의 합산

[별표 2] <개정 2018. 6. 8.>

협의회의 관할 구역(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관할 구역
1. 서울지방환경관서	한강 구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한강 하류 구역(북한강 구역은 제외한다), 아라천 구역, 안성천 구역, 서해 측 휴전선에서 안성천 하구 사이의 한강 서해권 구역
2. 원주지방환경관서	한강 구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한강 상류 구역(북한강 구역을 포함한 다), 양양 남대천 구역, 강릉 남대천 구역, 삼척 오십천 구역, 경북·강원 도계에서 동해 측 휴전선 사이의 한강 동해권 구역
3. 대전지방환경관서	삼교천 구역, 금강 구역, 안성천 하구와 금강 하구 사이의 금강 서해권 구역
4. 익산지방환경관서	만경강 구역, 동진강 구역, 영산강 구역, 탐진강 구역, 섬진강 구역, 금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 사이의 영산강 서해권 구역, 영산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섬진강 남해권 구역, 제주도권 구역
5. 부산지방환경관서	가화천 구역, 서낙동강 구역, 낙동강 구역, 회야강 구역, 태화강 구역, 형산강 구역, 영덕 오십천 구역,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낙동강 남해권 구역, 낙동강 하구와 경북·강원 도계 사이의 낙동강 동해권 구역

[별표 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

(제28조제1항 관련)

종류	업무관할
1. 총괄분과위원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국가수자원 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2. 제1분과위원회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하류 유역(북한강 유역은 제외한다), 아라천 유역, 안성천 유역, 서해 측 휴전선에서 안성천 하구사이의 한강 서해권 유역
3. 제2분과위원회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상류 유역(북한강 유역을 포함한다), 양양 남대천 유역, 강릉 남대천 유역, 삼척 오십천 유역, 경북·강원 도계에서 동해 측 휴전선 사이의 한강 동해권 유역
4. 제3분과위원회	삼교천 유역, 금강 유역, 안성천 하구와 금강 하구 사이의 금강 서해권 유역
5. 제4분과위원회	만경강 유역, 동진강 유역, 영산강 유역, 탐진강 유역, 섬진강 유역, 금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 사이의 영산강 서해권 유역, 영산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섬진강 남해권 유역, 제주도권 유역
6. 제5분과위원회	가화천 유역, 서낙동강 유역, 낙동강 유역, 회야강 유역, 태화강 유역, 형산강 유역, 영덕 오십천 유역,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낙동강 남해권 유역, 낙동강 하구와 경북·강원 도계 사이의 낙동강 동해권 유역

[별표 4] <개정 2018. 6. 8.>

손실보상업무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

(제36조제3항 관련)

손실보상금액	수수료 요율기준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비율)
1.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2.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1,000 이내
3.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1,000 이내
4.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3/1,000 이내
5. 100억원 초과	10/1,000 이내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손실보상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임·위탁 수수료 요율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또는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표의 수수료 요율 기준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과 위임·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 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1호	60만원	70만원	10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30만원	40만원	6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50만원	60만원	80만원
라.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홍수특보 발령 기준(제2조제3항 관련)	2271
[별표 2] 갈수예보 기준(제3조제1항 관련)	2272
[별표 3]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5조제3항 관련)	2273
[별표 4] 검정증인의 표시(제5조제4항 관련)	2274
[별표 5]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5조제5항 관련)	2275

홍수특보 발령 기준(제2조제3항 관련)

구분	발령 기준
1. 홍수 주의보	가. 홍수주의보 발령: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수위를 고려하여 정한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이하 “주의보수위”라 한다)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2)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3) 1) 및 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상황 및 제방 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나. 홍수주의보 변경발령: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홍수 경보	가. 홍수경보 발령: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수위를 고려하여 정한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이하 “경보수위”라 한다)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2)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 3) 1) 및 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상황 및 제방 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나. 홍수경보 변경발령: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주의보수위를 넘어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해제	가. 홍수주의보 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나. 홍수경보 해제: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

1.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각각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2.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홍수주의보의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또는 홍수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한다.

[별표 2]

갈수예보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단계	실시 기준	설정기준
1. 관심	특정지역에 갈수 발생의 징후가 감지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주의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의 계획수문량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2. 주의	특정지역이 갈수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심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주의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경계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주의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8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3. 경계	특정지역이 갈수피해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의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경계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심각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경계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5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4. 심각	갈수의 전개 규모와 범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위기발생이 확실한 경우로서 경계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심각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3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비고

1. "계획수문량"이란 하천, 댐 등 수자원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기별 최소 양을 말한다.
2. "조정계수"란 유역면적, 하상경사 등을 반영한 특성인자로서 지점의 주변상황 및 수자원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정값을 말한다.
3. "지수"란 갈수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 하천 유량, 저수량, 토양수분량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갈수예보지점별로 산정한 값을 말한다.
4. 관심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증가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상회할 경우 또는 갈수예보 (주의·경계·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으나 강수 등으로 인한 수문량 증가로 갈수피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갈수예보를 해제한다.

[별표 3]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수위측정기기

- 가. 수위측정기기의 구조 및 재질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나. 수위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검정대상기기에서 측정된 값에서 기준기(基準器)에서 측정된 값을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허용오차(수위측정기기의 종류별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오차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유속 및 유량측정기기

- 가. 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나.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3. 유사량 측정기기

- 가. 유사량 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나. 유사량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4. 강수량 측정기기(기계식)

- 가. 수수기(受水器)의 구성, 최대측정우량 또는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를 말한다)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다. 수수기는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 라. 수수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마. 수수기의 안지름이 200mm 이상인 측정기기의 검정은 안지름 200mm인 측정기기를 기준으로 한다.
- 바. 자기 우량계 및 사이펀식 우량계는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사. 자기 우량계의 저수통은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 아. 사이펀식 우량계는 사이펀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배수시간은 13초 이내여야 한다.
- 자. 우량승(雨量升)의 재료는 유리이거나 내구성이 유리 수준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 차. 우량승의 눈금은 0.1mm마다 새겨져 있어야 하고, 상단에 0.1mm의 눈금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가외 눈금과 수수기의 지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카. 우량승의 눈금 선은 중심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하고, 기차는 $\pm 0.02\text{mm}$ 이내여야 한다.
- 타. 저울형 설량계의 수수구 테두리는 눈(雪)이 잘 달라 붙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파. 저울형 자기설량계의 한 눈금이 나타내는 값은 5mm 이하여야 한다.
- 하. 저울형 자기설량계는 원활히 작동하여야 하고, 펜의 배울조정장치 및 시도조정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강수량 측정기기(전자식)

- 가. 수수기의 구성과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다. 접합부에 물이 새지 않아야 하고 물을 넣어 누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 라. 수수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수평조정을 위한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증발량 측정기기(소형)

- 가. 재질은 청동이거나 내식성(耐蝕性)이 청동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 나. 테두리는 청동 주물이거나 청동 주물 수준 이상의 두꺼운 판으로 용접되어 있어야 하고, 구경은 원형이어야 한다.
- 다. 접합부의 도금 및 도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라. 배수구는 밑 부분에서 6cm 정도에 있어야 하고, 각도는 아래쪽을 향하여야 한다.
- 마. 배수구를 밀봉한 후 24시간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 바. 증발량이 디지털 값으로 표시되는 장비인 경우에는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의 정확도는 오차범위 이내여야 하고, 즉시 가감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증발량 측정기기(대형)

- 가. 재질은 아연도금 철판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되어 만수(滿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내·외면은 회백색으로 도장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수위측정기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부척(浮尺)은 상하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 다. 부척침의 끝부분은 관측하기 쉽게 가능하면 보촉하여야 한다.
- 라. 수위측정기를 받쳐주는 금속류는 청동이거나 내식성이 청동 수준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 마. 수위측정기의 눈금은 1mm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바. 증발량이 디지털 값으로 표시되는 장비의 경우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의 정확도는 오차범위 이내여야 하고, 즉시 가감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8. 증발산량 측정기기

- 가. 증발산량 측정기기는 풍속측정기기, CO₂ 측정기기 및 H₂O 측정기기를 최소한 갖추되 각각 나누어져 있어야 하고, 각 기기별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 나. 외부에 설치하는 로거 등의 자료처리장치는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방수 및 방습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외부에 설치되는 로거 등의 자료처리장치는 주변 고압선 등으로부터 유도전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폐되어 있어야 하고, 접지단자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라. 관측장비의 요소별 검정점 및 최소표시 단위는 전자식 측기 검정점 및 최소표시 단위에 준한다.

9. 토양수분량 측정기기

- 가. 토양수분량 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나. 토양수분량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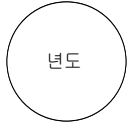
검정증인의 표시(제5조제4항 관련)

1.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
가. 검정필증

◀ 60mm ▶		40mm ▲ ▼
검정필증		
검정번호	제 호	
수문조사기기명		
수문조사기기번호(일련번호)	호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 30mm ▶ ▶ 30mm ▶		

비고 : 검정필증이 잘 보이고 손상이 되지 않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나.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비고
	앞면	뒷면		
검정필 봉인			원형지름 6mm	
검정필 고무인			원형지름 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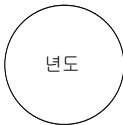
2. 검정이 면제된 수문조사기기

가. 검정면제필증

◀ 60mm ▶		40mm
검정면제필증		
검정번호	제 호	
수문조사기기명		
수 문 조 사 기 번호(일련번호)	호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 30mm ▶	◀ 30mm ▶	

비고 : 검정필증이 잘 보이고 손상이 되지 않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나. 검정면제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비고
	앞면	뒷면		
검정 면제필 봉인			원형지름 6mm	
검정 면제필 고무인			원형지름 8mm	

[별표 5]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5조제5항 관련)

종 류	구 분	검정 유효기간(년)
1. 수위측정기기		3
2. 유속 및 유량측정기기		2
3. 유사량측정기기		5
4. 강수량측정기기		3
5. 증발량측정기기		5
6. 증발산량측정기기		5
7. 토양수분량측정기기		5
8. 두 종류 이상의 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수문조사기기		각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유효기간

비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검정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후 검정을 하는 중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검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제3편 수자원

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283	제1조(목적) 2283	제1조(목적) 2283
제2조(정의) 2283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228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84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2284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2284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2286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2284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2284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2287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2286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2287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2287	
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2289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2287	
제9조(행위제한 등) 2290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2289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2292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2290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2290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2293	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2293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12조(사업시행자) 2293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2294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2295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2295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2296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2296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2296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2298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2297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2298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특례) 2302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2302 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2303 제1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2303 제20조(준공검사) 2303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2305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2305 제23조(선수금) 2306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306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306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2307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2307 제28조(청문) 2308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2308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2309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2309 제32조(기금의 조성) 2310 제33조(기금의 용도) 2310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2310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2310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2310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2303 제16조(준공검사) 2303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2304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2305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2305 제20조(선수금) 2306 제21조(국유·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2306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2307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2308 제24조(적정수익) 2309 제25조(기금의 조성) 2310 제26조(기금의 용도) 2310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2303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2304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2305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230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2311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2311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312	
	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2313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2313		
제6장 보칙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2314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314		
제41조(권한의 위임) 2315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2315		
제43조(양벌규정) 2315		
제44조(과태료) 2315		
부칙 2316	부칙 2316	부칙 23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10.12.29 법률 제10421호 개정 2011. 7. 21 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도로법) 2015. 1. 6 법률 제12993호 2015. 7. 24 법률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주택법) 2016. 5. 29 법률 제14232호(환경영향평가법) 2016.12.27 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7. 1. 17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 2. 8 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2018. 4. 17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6. 8 법률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31 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1.11.30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 1.30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2011. 4. 28 대통령령 제22909호 개정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위험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6.15 대통령령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간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아려운 병명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1.26 대통령령 제3141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 1.21 대통령령 제32352호(간정평가 및 간정평가사제 관련 법률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87호(국가유신기본법 시행령)	제정 2011. 4. 29 환경부령 제354호 개정 2013. 3. 23 환경부령 제 1 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12.28 환경부령 제96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18. 6. 8.>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8. 6. 8.> 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6. 8.> ⑤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⑥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1 지행도 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수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작도가 있거나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⑦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를 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 2024. 5. 7.) 1.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3.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자연환경 및 국가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 사업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주된 기능의 변경 2.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친수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등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⑨ 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8. 6. 8.>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 지정일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사업의 명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자원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 제1항제1호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행위제한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축목의 별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및 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축목(竹木)의 별채 및 식재: 축목을 캐내거나 베거나 심는 행위 8.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때 해당 지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친수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친수구역의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3. 친수구역에 원형대로 남겨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설계도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및 도시사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②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 ④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에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수립·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명칭 2.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 ④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손실보상·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개요 2. 위탁사업의 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탁사업 비용의 조달·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5.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6. 위탁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친수구역의 명칭·위치 및 대행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③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⑤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에 관한 보고 및 환경부장관의 검토·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탁”은 “대행”으로, “수탁자”는 “대행 할 자”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방법 3. 토지이용 현황 4.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위치도 2. 친수구역에 존치하려는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3.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1.) ④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처분 계획서 10.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친수구역 경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친수구역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친수구역 면적이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5. 친수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⑤ 법 제13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친수구역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명세,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3.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계획(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승인·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의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2021. 1. 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1. 19., 2016. 12. 27., 2017. 1. 17., 2017. 2. 8., 2018. 4. 17., 2018. 6. 8., 2020. 5. 26., 2021. 11. 30.,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유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협의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4. 1.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목적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제1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사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친수구역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31., 2018. 6. 8., 2022. 1. 2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 신청서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도면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①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검사 연월일 5. 조성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공급 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2020. 12. 31.)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국유·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상수도·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단채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1. 도로·철도·마리나항만, 수도·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방송·통신시설 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 ②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후단, 제9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수구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을 위한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 시행기간 5.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친수구역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5. 제33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친수구역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본다.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31.>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2. 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	$\{가-(나+다+라)\} \times \bigcirc \text{평균수질} = \frac{10}{100}$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조사, 연구·개발 비용 2. 하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지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0. 5. 26.>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2021. 12. 28.>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24.>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⑤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 하천관리·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 6.>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③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0421호, 2010.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tr> <td>243</td><td>「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td><td>친수구역</td></tr> </table>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7>까지 생략 <63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부칙 <제22909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tr> <td>18. 친수구역조성사업</td><td>「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td><td>「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td></tr> </table>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의 제1호에 더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tr> <td>더. 친수구역조성사업</td><td>「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td><td>「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tr> </table> 부칙 <제23718호, 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18.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더.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부칙 <제354호, 2011. 4. 29.> 이 규칙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18.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더.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28호, 2012. 7. 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별지 제6호서식 수신인란,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직인란, 별지 제8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958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993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33호, 2015. 7.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⑰ 및 ⑱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797호, 2016. 1.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89〉부터 〈146〉까지 생략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⑭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42호, 2014. 12. 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16호, 2015. 6.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32호,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26844호, 2015. 12.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3)부터 ⑧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69호, 2017. 2.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②4)부터 ②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2)까지 생략 ⑧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4)부터 ⑧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8)까지 생략 ⑩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9)부터 ⑩99)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00)까지 생략 ③0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5607호, 2018. 4. 1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⑩ 및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30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4조제4항 후단”을 “환경영향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로·하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도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17호, 2021. 1.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0〉부터 〈64〉까지 생략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34487호, 2024. 5. 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52〉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3편 수자원

08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336	제1조(목적) 2336	제1조(목적) 2336
제2조(정의) 2336		
	제2조(하천시설) 2337	
	제3조 삭제 233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33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337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2338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2338		제2조(권리·의무승계의 신고) 2339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2339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39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2339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2340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2340	제3조(하천의 고시) 2341
제8조(하천관리청) 2341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2342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2342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2343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2342		제5조 삭제 2344
제11조 삭제 2344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2344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2345
제12조(홍수관리구역) 2344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2345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2346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2346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2346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2346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2346		
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개정 2017. 1. 17.>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16조 삭제 2348	제9조 삭제 2348	제9조 삭제 2348
제17조 삭제 2348	제10조 삭제 2348	제10조 삭제 2348
제18조 삭제 2348	제11조 삭제 2348	제11조 삭제 2348
제19조 삭제 2348	제12조 삭제 2348	제12조 삭제 2348
제20조 삭제 2348	제13조 삭제 2348	
제21조 삭제 2348	제14조 삭제 2348	
	제15조 삭제 2348	
	제16조 삭제 2348	
	제17조 삭제 2348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2348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2348	
	제17조의3(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2349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2349	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2349	
제23조 삭제 2350	제19조 삭제 2350	
제24조 삭제 2350	제20조 삭제 2350	
	제21조 삭제 2350	
	제22조 삭제 2350	
	제23조 삭제 2350	
제25조(하천기본계획) 2350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2350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2350
제25조(하천기본계획) 2352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2352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2353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2353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354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2354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2355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대상시설) 2355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2357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2356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2358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2357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358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2358 제30조(공사비의 예치) 2359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2360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2361 제33조 삭제 2362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2358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2360 제16조(준공인가 신청) 2361
제31조 삭제 2362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2362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2366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2366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2367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2368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2371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2371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2371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2366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2366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 2369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2369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2370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2372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2371	제40조(재결의 신청) 2373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2373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2373 제43조(변상금의 징수) 2374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2375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2375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2375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2373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2373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2373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375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사설의 설치 등) 2376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376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2377
제40조 삭제 2378	제47조 삭제 2378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2378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2378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2378	제23조 삭제 2378
제42조 삭제 2379		제24조 삭제 2378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2379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2379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2379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2380	제25조(보전지구·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2380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2380	제51조(납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2381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2381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2382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2382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2382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2382	
제48조(원상회복의무) 2382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2383	제27조 삭제 2383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7장 삭제 <2018. 6. 8.>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2383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2384	제28조 삭제 2383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2384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2384	제29조 삭제 2384
		제30조 삭제 2384
		제31조 삭제 2384
		제32조 삭제 2384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2385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2385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6조(하천수의 보전) 2386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2387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2388	
제51조(하천유지유량) 2388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2388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2389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2389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2390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2390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2390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2391	
	제64조(간사) 2391	
	제65조(회의) 2391	
	제66조(회의록) 2391	
	제67조(수당 및 여비) 2391	
	제68조(운영세칙) 2392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 신청 등) 2392	제69조(조정신청) 2392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2392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2393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2393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2393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2394	제72조(비용의 부담) 2394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2394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2394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2395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2395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2396	제74조(시·도의 비용부담) 2396	
	제75조(시·군·구의 비용부담) 2397	
제62조(검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2397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2397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64조(비용보조) 2397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2397	
제65조(부담금의 귀속) 2398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2398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2398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2399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2399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2399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 2399	
제9장 감독	제9장 감독	제9장 감독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2399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2400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2401		
제72조(하천관리원) 2401		제34조(하천관리원증) 2402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2402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2402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2402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2403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2403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2403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2403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2403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2403		
제10장 보칙	제10장 보칙	제10장 보칙
제75조(타인의 토지예의 출입 등) 2404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2405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2405	제83조(재결의 신청) 2405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2405		
제7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2406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2407	제84조(매수절차) 2407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2407
	제85조(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2407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2408	제86조(매수기한) 2408	
	제87조 삭제 2408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2409	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2409	
	제89조(비용) 2409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2409	제90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2409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등) 2410
제83조(하천표지) 2410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2413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2413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2413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2413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2413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2413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2414	제93조 삭제 2415	
제87조 삭제 2415	제94조 삭제 2415	
	제94조의2 삭제 2415	
	제94조의3 삭제 2415	
	제95조 삭제 2415	
	제96조 삭제 2415	
	제97조 삭제 2415	
	제98조 삭제 2415	
	제99조 삭제 2415	
	제100조 삭제 2415	
	제101조 삭제 2415	
제88조(협회의 설립) 2415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2415	
	제103조(정관 기재사항 등) 2415	
	제104조(협회의 감독) 2415	
제89조 삭제 2416	제105조(권한의 위임) 2416	제41조 삭제 2416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2416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2416
제91조(청문) 2416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2416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2424	
	제106조(위탁기관) 2425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425	제106조의2 삭제 2426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2426 제94조(벌칙) 2426 제95조(벌칙) 2426 제96조(벌칙) 2427 제97조(양벌규정) 2427 제98조(과태료) 2428 부칙 2429	제11장 벌칙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428 부칙 2429	제11장 삭제 〈2012. 6. 18.〉 제43조 삭제 2429 부칙 2429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정 1961.12.30 법률 제892호 개정 2007. 4. 6 법률 제8338호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3.21 법률 제8974호 (간축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31 법률 제9313호 (자연공원법) 2009. 4. 1 법률 제9605호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 4.14 법률 제106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 1.17 법률 제11194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31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도로법) 2015. 1. 6 법률 제12994호 2015. 1.28 법률 제13084호(산업표준화법) 2015. 8.11 법률 제13493호 2015.12.29 법률 제13689호 2016. 1.19 법률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808호 2017. 1.17 법률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3.21 법률 제14722호 2018. 2.21 법률 제15405호 2018. 6. 8 법률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18. 6.12 법률 제15684호 2018. 8.14 법률 제15742호 2018.12.24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학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2 법률 제17732호 2020.12.31 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1. 7.27 법률 제18352호 2022. 6.10 법률 제18915호 2022.12.27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1. 3 법률 제19171호 2023. 8. 8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8.16 법률 제19667호 2023. 9.14 법률 제19702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 1.30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제정 1962. 3.22 각령 제548호 개정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 7.27 대통령령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11.16 대통령령 제21824호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30 대통령령 제21931호 2010.12.20 대통령령 제22540호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4.10 대통령령 제23716호 2012. 4.10 대통령령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6.28 대통령령 제27282호 2016. 7.19 대통령령 제27362호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 7.17 대통령령 제2819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9.19 대통령령 제28327호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5호 2020. 1.21 대통령령 제30358호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7.31 대통령령 제3088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20. 8.26 대통령령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6호	제정 1962. 5.30 경제기획원령 제13호 2008. 4.16 국토해양부 제 6 호 2009. 3.26 국토해양부 제1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11.24 국토해양부 제181호 2011. 4.11 국토해양부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6.18 국토해양부 제475호 2012.10.31 국토해양부 제528호 2013. 3.23 국토교통부 제 1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13.12.30 국토교통부 제54호 (행정정보기반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8. 7 국토교통부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국토교통부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6.30 국토교통부 제322호 2016. 8.31 국토교통부 제357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12.30 국토교통부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7.18 국토교통부 제43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9.21 국토교통부 제449호 2018. 6. 8 국토교통부 제52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 2.12 국토교통부 제593호 2019. 2.22 국토교통부 제597호 2021. 3. 2 국토교통부 제828호 2021. 8.27 국토교통부 제882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12.28 국토교통부 제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4.17 국토교통부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12.14 국토교통부 제1065호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2024. 2.20 법률 제203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 2023. 1. 3.>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 1.21 대통령령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2 대통령령 제339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삭제 <2017. 1. 17.>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 3.>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洩)·수로터널·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21. 12. 28.> 제3조 삭제 <2017. 7. 17.>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0.>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④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시행일: 2024. 8. 21.] 제3조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0. 12. 31.> ④ 하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2020. 12. 31.>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4조·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2조(권리·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2. 6. 18., 2013. 3. 23., 2018. 6. 8., 2021. 12. 28.>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 2023. 8. 8.>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 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삭제 <2018. 8. 14.>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본조신설 2019. 2. 8.]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9. 2. 8.>]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말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⑤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⑦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 6. 9.> ⑧ 시·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결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제5조에서 이동 <2019. 2. 8.>]	제3조(하천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3. 3. 23., 2021. 12. 28.>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③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지정될 하천구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 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7.>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0. 12. 31.> ⑤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5. 8. 11.>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경우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21. 12. 28.>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5조 삭제 <2016. 6. 30.>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7.> ③제7조제6항,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 1. 3.>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17.>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21. 12. 28.>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도도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自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2020. 6. 9.>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2020. 12. 31.>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6.> 1. 댐·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수문 및 배수펌프장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③ 삭제 (2017. 1. 17.)		② 삭제 (2018. 6. 8.) ③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 :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 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홍수조절지·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 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 : 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 : 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 :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 :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 :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 :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삭제 (2016.6.30)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 :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 :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개정 2017. 1. 17.) 제16조 삭제 <2017. 1. 17.> 제17조 삭제 <2017. 1. 17.> 제18조 삭제 <2017. 1. 17.> 제19조 삭제 <2017. 1. 17.> 제20조 삭제 <2017. 1. 17.> 제21조 삭제 <2017. 1. 17.>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①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3.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4.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19.]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 삭제 <2017. 7. 17.> 제10조 삭제 <2017. 7. 17.> 제11조 삭제 <2017. 7. 17.> 제12조 삭제 <2017. 7. 17.> 제13조 삭제 <2017. 7. 17.> 제14조 삭제 <2017. 7. 17.> 제15조 삭제 <2017. 7. 17.> 제16조 삭제 <2017. 7. 17.> 제17조 삭제 <2017. 7. 17.>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이하 “하상변동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하천의 종단·횡단 등의 측량 2. 하상(河床) 재료의 채취 및 유수량(流砂量) 측정 3. 하상변동량 산정 및 연도별 하상변동 분석 4. 하천수치모형을 이용한 장래 하상변동 예측 5. 그 밖에 하상변동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방법 ②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및 섬진강의 하천구간 중 댐 직하류, 다기능보 상하류, 지류 합류부, 취수시설을 설치구간 등	④ 삭제 <2017. 7. 18.> ⑤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7. 7. 18., 2018. 6. 8., 2021. 12. 28.>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 삭제 <2017. 7. 18.> 제10조 삭제 <2017. 7. 18.> 제11조 삭제 <2017. 7. 18.> 제12조 삭제 <2017. 7. 1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0.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	퇴적 및 세굴(洗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되, 하상변동이 큰 곳은 1년마다, 하상변동이 작은 곳은 5년의 범위에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하상변동조사는 홍수기 이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수시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홍수기 전이나 홍수기에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시기 및 주기, 자료의 처리 및 활용과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16. 7. 19.] 제17조의3(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하상변동조사 종사자는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16. 7. 19.] 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6., 2016. 7. 19., 2017. 7. 17.> 1. 삭제 <2017. 7. 17.>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2020. 12. 31., 2023. 1. 3.> ④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2023. 1. 3.> [제목개정 2017. 1. 17.] 제23조 삭제 <2017. 1. 17.> 제24조 삭제 <2017. 1. 17.>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 삭제 <2017. 7. 17.> 2의2. 삭제 <2017. 7. 17.> 2의3. 삭제 <2017. 7. 17.> 2의4. 삭제 <2017. 7. 17.>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4. 삭제 <2017. 7. 17.> 5. 삭제 <2017. 7. 17.> 6. 그 밖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21. 12. 2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21. 12. 28.> [제목개정 2017. 7. 17.] 제19조 삭제 <2017. 7. 17.> 제20조 삭제 <2017. 7. 17.> 제21조 삭제 <2017. 7. 17.> 제22조 삭제 <2017. 7. 17.> 제23조 삭제 <2017. 7. 17.>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21. 12. 28.>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6., 2016. 6. 28.>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2021. 7. 27., 2023. 1. 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2023. 1. 3.>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7.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 지구에 관한 사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1. 7. 27., 2023. 1. 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2023. 1. 3.>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 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1.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3. 해당 하천유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것 ② 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7.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⑥ 제9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시행일: 2024. 8. 21.] 제25조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①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본조신설 2016. 7. 19.]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6.>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공사예정공정표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6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7. 7. 17., 2023. 12. 12.> 1.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갑문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 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 3.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 [본조신설 2023. 12. 14.]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⑧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⑨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1의2.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 [본조산설 2012. 4. 10.]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2023. 12. 12.> 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하천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⑤ 하천관리청은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⑩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 8. 16.> ⑪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2.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공사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③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6., 2013. 3. 23., 2021. 12. 28.> 1. 재해복구공사 2.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내용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말한다. 제30조(공사비의 예치)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	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사채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하천공사실시계획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인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6. 6. 30.>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4. 하천공사의 위치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 2020. 12. 31.> ⑧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⑨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8. 16.> ⑪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5. 하천공사의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4.>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31조 삭제 <2017. 1. 17.>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2007. 12. 27., 2008. 3. 21., 2008. 12. 31., 2009. 4. 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7. 1. 1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31., 2022. 12. 27., 2023. 8. 8., 2023. 9. 14.>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②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제105조에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17. 7. 17.>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삭제 <2024. 1. 30.>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0. 12. 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 2020. 12. 31., 2023. 8. 16.> 1.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30조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3. 삭제 <2017. 1. 17.>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8항·제28조제4항·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2020. 12. 22., 2020. 12. 31., 2023. 8. 16.> ⑦제1항·제3항·제4항·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 <신설 2024. 1. 30.>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별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이 여러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3. 1. 3.>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1. 제1순위 :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 :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24., 2013. 3. 23., 2021. 12. 2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I 급(맹독성) 또는 II 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I 급 또는 II 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2020. 12. 31.> 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 2. 21., 2020. 12. 22.>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 2017. 9. 19.>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2.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3. 건축물, 선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2. 22.]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4., 2019. 2. 22.> ② 영 제32조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점용허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6. 30.> ③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30.>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21. 12. 28.> ⑤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18., 2013. 3. 23., 2016. 6. 30., 2021. 12. 28.>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8., 2016. 6. 30.>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22., 2021. 12. 28.> 1. 하천시설의 신설·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2020. 6. 9.>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0. 8.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경우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9. 21.]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2. 어업권자·양식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하천점용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1. 진출입 제한 2. 수질지표의 악화, 수생물종 또는 개체수의 감소 등 수질·수생태계 훼손 3. 하천의 수위 상승, 유수(流水) 소통 지장, 하천의 유실(流失)·세굴 등 하천의 안전성 저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결과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하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1. 기득하천사용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허가 나.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④ 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9. 19.> ⑤ 하천점용허가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2021. 12. 28.>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17. 9. 21.]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제목개정 2017. 9. 19.] 제40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2023. 8. 16.>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6. 6. 28., 2020. 7. 31.>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2.>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7.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1.>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삭제 <2018. 8. 14.>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2. 21.> ④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제목개정 2015. 8. 11.]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6. 9.>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留)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	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8., 2021. 12. 28.>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철도 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9. 2. 8.>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삭제 <2019. 2. 8.>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행위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8.> [제목개정 2016. 6. 28.]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 매몰(埋沒), 수위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2. 8.>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2019. 2. 12.>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 위치도 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가. 위치도 나. 공사설명서 3. 삭제 <2019. 2. 12.>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6. 6. 30.>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6. 6. 30.]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	2019. 2. 8.)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2. 8.> 1. 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 2.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정보 3.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4. 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③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 [제목개정 2018. 8. 14.] 제40조 삭제 <2017. 1. 17.>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 삭제 <2017. 7. 17.>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19. 2. 8.> 1. 방류량 2. 방류 시작 시각 3. 방류기간	이상 총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2.> 1. 댐등의 계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나. 강수량·유입량·방류량·용수공급량·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다. 수질에 관한 자료 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 마. 댐등의 관리대장 [제목개정 2019. 2. 12.] 제23조 삭제 <2017. 7. 18.> 제24조 삭제 <2017. 7. 1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 ③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제42조 삭제 <2017. 1. 17.>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 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3. 특이한 경관·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해당 지구 및 그 범위와 지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때에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보전지구·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46조 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여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6. 12. 30.>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	수 있다. 1. 하도(河道) 선형·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저수로와 강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 11. 16.]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 등”이라 한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2. 2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1. 토석·모래·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7장 삭제 <2018. 6. 8.> 제27조 삭제 <2018. 6. 8.> 제28조 삭제 <2018. 6. 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1. 4. 14., 2013. 3. 23., 2018. 6. 8.>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8., 2018. 6. 8.>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수의 사용목적 2. 하천수의 사용기간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 취수허가 사용량 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29조 삭제 <2018. 6. 8.> 제30조 삭제 <2018. 6. 8.> 제31조 삭제 <2018. 6. 8.> 제32조 삭제 <2018. 6. 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2. 6. 10.>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2. 6. 10.>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⑧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⑨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6. 10.> ⑩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10.>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10.>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 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0. 12. 22.>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7항 및 제11항,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6. 10.> [본조신설 2015. 12. 29.]	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6. 6. 28.]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 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16., 2013. 3. 23., 2018. 6. 8.>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 21.]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11. 16., 2009. 12. 15., 2017. 9. 19.>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장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②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물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4.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 댐·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6.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7.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③ 삭제 <2009. 11. 16.>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하천의 권역·수계·명칭 및 등급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4.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8.) ⑤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 구성)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2. 8.> 1.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2.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가.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 나.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추천하는 자 5.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 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간사) ① 조정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조정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65조(회의) ① 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66조(회의록) ① 조정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조정 내용,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7조(수당 및 여비)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8. 8. 14.>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③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20. 5. 26.> ⑤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⑥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18. 6. 8.>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⑦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⑧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 의 거부 및 중지)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③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법 제54 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17.>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제72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든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 4. 녹음·속기·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17.>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17.>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58조에 따른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유지·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 8. 16.>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3.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매수·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76조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하천의 관리에 드는 비용 ②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등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화·공유화된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3. 법 제85조에 따라 양여된 폐천부지등의 처분금 4. 삭제 <2016. 7. 19.> 5. 그 밖에 하천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제9조제1항(제27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용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③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	제74조(시·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 법 제59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하천이 있는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2. 법 제60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1 이내 3.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28.>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도에 부담시키려는 시·도지사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 3.> 제62조(경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결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1.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75조(시·군·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4. 10.>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 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등은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 6. 10.>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 삭제 <2009. 11. 16.>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1. 하천의 유지·보수비 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제9장 감독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	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8., 2021. 12. 2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의 징수 및 하천의 유지·보수비용의 사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8., 2021. 12. 28.> 제9장 감독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9장 감독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8. 6. 8., 2020. 6. 9., 2020. 12. 31.>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12. 31.〉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제33조·제38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증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8. 6. 8., 2020. 12. 31.>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닻이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매년 5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방·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시행일: 2024. 8. 21.] 제74조 제10장 보칙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10장 보칙	경찰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④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율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8. 11., 2017. 1. 17., 2018. 6. 8., 2020. 12. 31.>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6. 9., 2020. 12. 31.>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제77조(감득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제83조(재결의 신청) 법 제76조제3항(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제7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6. 1. 19., 2017. 1. 17., 2020. 6. 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4. 삭제 <2017. 1. 17.> ②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0. 6. 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3. 삭제 (2017. 1. 17.) [제목개정 2016. 1. 19.]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0. 6. 9.>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을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등의 사용·수익이 불가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삭제 (2016. 1. 19.)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③ 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제목개정 2016. 1. 19.]	제84조(매수절차)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19.,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하천관리청은 제85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③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이하 “매수예상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과 인근지역 내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9.> ④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정방법 등을 준용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31., 2022. 1. 21.> ⑤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라 한다)의 판정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1., 2016. 6. 30.>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16. 6. 30.]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6. 1. 19.>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 7. 19.>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등: 매수청구 당시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 청구인이 하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 2.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 법 제33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 [제목개정 2016. 7. 19.] 제86조(매수기한)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87조 삭제 <2016. 7. 19.>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①하천관리청은 매수가 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 1. 19.>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 2. 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개정 2016. 1. 19.]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	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 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 3. 납부토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6. 납부고지사유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하천관리청에 내야 한다. 제89조(비율) 법 제8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제90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6. 1. 19., 2017. 1. 17., 2020. 12. 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제83조(하천표지) ①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 9. 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천명표지: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2. 하천거리표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나.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이하 “하천명표지”라 한다)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7. 9. 21.>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거리표지(이하 “하천거리표지”라 한다)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 9. 21.>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⑥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하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설치할 것 2. 설치방향은 하천이용자의 하천 접근 경로, 하천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하천이용자가 쉽게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⑦ 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하천명표지는 하천과 하천의 합류지점 부근, 하천이 국도·지방도 또는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명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설치하고, 하천명표지 중 미관형 하천명표지는 하천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하천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천명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하천거리표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되,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하천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나. 등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지점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에는 사각기둥형 하천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거리표지를 설치한다. 3. 하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곳일 것 4. 하천이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5.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하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⑧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속·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河川網圖)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환경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⑫ 하천관리청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 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 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가격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	[본조신설 2012. 6. 18.]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보존·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21. 12. 28.>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4., 2011. 4. 11., 2016. 6. 30., 2021. 12. 28.> 1. 위치도 2. 지적도 및 구적도 3.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4.	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가격 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의 가격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 6. 28., 2022. 1. 21.>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사비는 공사준공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5.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지대장 등본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2016. 8. 31., 2021. 12. 28., 2023. 12. 14.>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1., 2013. 3. 23., 2020. 12. 31.) 제87조 삭제 <2017. 1. 17.> 제88조(협회의 설립) ①하천 관련 학계·연구기관·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 삭제 <2017. 7. 17.> 제94조 삭제 <2017. 7. 17.> 제94조의2 삭제 <2017. 7. 17.> 제94조의3 삭제 <2017. 7. 17.> 제95조 삭제 <2017. 7. 17.> 제96조 삭제 <2017. 7. 17.> 제97조 삭제 <2017. 7. 17.> 제98조 삭제 <2017. 7. 17.> 제99조 삭제 <2017. 7. 17.> 제100조 삭제 <2017. 7. 17.> 제101조 삭제 <2017. 7. 17.>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103조(정관 기재사항 등)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회원의 자격 6. 임원 및 직원 7. 총회 및 이사회 8. 재정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제104조(협회의 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89조 삭제 <2016. 1. 19.>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 2021. 12. 28., 2023. 12. 12.>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도지사가 허가	제41조 삭제 <2016. 6. 30.>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2. 28.>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아.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차.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타. 삭제 (2016. 7. 19.) 파.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거. 삭제 (2016. 7. 19.) 너.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안성천·삼교천·만경강·동진강·탐진강·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다.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라.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마.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차.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타.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파.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거.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너.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더.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 삭제 (2016. 7. 19.) 머.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버.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서. 삭제 (2016. 7. 19.) 어.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 지방하천에 있어서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폐천부지등이 국유인 토지만 해당한다)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2. 4. 10., 2013. 3. 23., 2016. 6. 28., 2016. 7. 19., 2017. 7. 17., 2021. 12. 28., 2023. 12. 12.>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마. 삭제 (2016. 6. 28.) 바. 삭제 (2023. 12. 12.) 사.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차.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카. 삭제 (2017. 7. 17.) 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파.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하.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거.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너.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 및 그 대행공사의 준공고시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머.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명령 버.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외한다) 서.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어.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복합허가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처. 법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에 따른 권한 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퍼. 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노.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도.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로.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 모. 법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소.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오.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등 조.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활용 초.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 코.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토.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3.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2009. 11. 16.,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 2017. 7. 17., 2018. 6. 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5. 삭제 〈2017. 7. 17.〉 6. 삭제 〈2017. 7. 17.〉 7. 삭제 〈2017. 7. 17.〉 8. 삭제 〈2017. 7. 17.〉 9. 삭제 〈2017. 7. 17.〉 10. 삭제 〈2017. 7. 17.〉 11. 삭제 〈2018. 6. 8.〉 12. 삭제 〈2018. 6. 8.〉 13. 삭제 〈2018. 6. 8.〉 14. 삭제 〈2017. 7. 17.〉 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16. 삭제 〈2017. 7. 17.〉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18. 삭제 〈2017. 7. 17.〉 19. 삭제 〈2018. 6. 8.〉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조정·사용증지 및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0조제2항의 통보 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 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 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 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7의2. 삭제 (2017. 7. 17.) 28. 삭제 (2016. 7. 19.) 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31.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2.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시·도지사가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경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17. 1. 17., 2018. 8. 14., 2020. 12. 31., 2023. 8. 16.> 1. 삭제 <2017. 1. 17.> 2. 삭제 <2017. 1. 17.> 3. 삭제 <2017. 1. 17.> 4. 삭제 <2017. 1. 17.> 5. 삭제 <2017. 1. 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 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 7. 삭제 <2017. 1. 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훈련 업무 ④ 삭제 <2016. 1. 19.>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	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부터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시·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본조신설 2009. 12. 30.]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협회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1. 6., 2018. 6. 8.> 1.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0. 6. 9.>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삭제 <2017. 1. 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 1. 17.>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	제11장 벌칙 제106조의2 삭제 <2020. 3. 3.>	제11장 삭제 <2012. 6. 1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1. 6., 2018. 2. 21., 2018. 6. 8.>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 <2009. 4. 1.> 8.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하다.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1. 17.>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삭제 <2017. 1. 17.>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8. 6. 8., 2020. 12. 31.> [전문개정 2009. 4. 1.]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하천은 이 법에 따른 국가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은 이 법에 따른 지방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은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본다. 제4조 (하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하천예정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로 본다. 제6조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안구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으로 본다. 제7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20763호, 2008. 4.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제43조 삭제 <2023. 4. 17.> 부칙 <제6호, 2008. 4.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호, 2009. 3. 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2009.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 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이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은 각각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유수사용 목적의 점용허가에 한한다)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로 본다. 제10조 (하천수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유수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11조 (하천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하천감시원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원으로 본다. 제12조 (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천표지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표지로 본다. 제13조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도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⑫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 2012.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7항·제8항,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2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하천표지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연장 등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7항·제8항,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2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수문조사시기 검정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기 검정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하천표지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천표지는 제38조의2,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하천표지로 본다. 부칙 <제528호, 2012. 10. 3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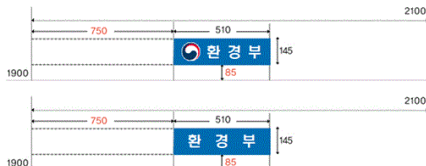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⑬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⑯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6조, 제28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제13항, 제42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별표 5의2 제5호가목(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4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 2014. 8. 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⑦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⑯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을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신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점용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천법” 제8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천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하천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⑳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호, 2014. 12. 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41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7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82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 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 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41호,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744호, 2009. 9.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37호, 2017. 7. 1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하거나 수문조 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을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49호, 2017. 9. 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㉕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㉖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5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24호, 2009.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③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931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593호, 2019. 2. 12.〉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 2019. 2. 22.〉 이 규칙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 2021.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⑮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⑯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⑰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⑱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하천에 대하여 시행 중인 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40호, 2010.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2829호, 2011. 4. 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716호, 2012. 4. 10.〉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부칙 〈제882호, 2021. 8.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58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4항·제5항, 제26조,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제13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4항·제5항, 제26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3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3조 중 “국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5호자목(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동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⑨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⑩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18호, 2012. 4. 10.>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8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28호, 2012. 7. 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도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가) 국가하천(예): 환경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중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를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를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환경부,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국토관리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자연공유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②자연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3항·제4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별표 3 비교의 제3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제3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부분	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부,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을 “처리기관: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호, 2023.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㉞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㉟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㊱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82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및 제105조제3항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납부금을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금지지역의 공고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362호, 2016.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청구 대상 토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9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㉔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아목중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㉖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㉗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㉘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한다. 제3조(하상변동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90호, 2017. 7. 1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㉕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㉖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㉗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data-bbox="146 805 565 887"> <tr> <td>182</td><td>「하천법」 제10조</td><td>하천구역</td></tr> <tr> <td>183</td><td>「하천법」 제11조</td><td>하천예정지</td></tr> <tr> <td>184</td><td>「하천법」 제12조</td><td>홍수관리구역</td></tr> </table> ㉙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	182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183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184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제2조 중 “수로터널·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를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의”를 “하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자원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정보체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제26조의2제1호 중 “갑문·수문조사시설”을 “갑문”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	
182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183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184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의 점용 등의 허가 ㉔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㉕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㉖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㉗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㉘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을 작성·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3 및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5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5〉부터 〈388〉까지 생략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㉔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㉔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㉔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㉔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부칙 〈제28327호, 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및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항, 제55조의2제1항 및 제69조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생략 부칙 〈제29515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② 부터 ③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④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358호, 2020.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86호, 2020. 7. 3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30977호, 2020. 8. 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②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한다. ③부터 ③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26호, 2021.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3호, 2008. 12. 31.> (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1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①까지 생략 ②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㉔ 부터 ㉔ 까지 생략 부칙 <제9605호, 2009. 4.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로 한다. ㉔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9조제4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제2항·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서목·키목·허목, 같은 호 노목부터 로목까지, 같은 호 보목·코목·토목·호목, 제105조의2제1항·제2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국토관리청이”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로, “지방국토관리청의”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 까지 생략 <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6>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6> 부터 <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3949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제11194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1〉까지 생략 〈64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제2항, 제86조,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3항, 제9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의2, 제94조제1호, 제96조제3호 및 제9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제5항, 제30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제8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31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유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994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4호, 2015. 1. 28.> (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3493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하천예정지에 관한 특례) ① 하천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를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폐지하거나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폐지되거나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하천예정지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부칙 〈제13689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808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 안의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 제33조, 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44호, 2017. 1. 1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조사”를 “정보화”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자원 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 정보체계”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6항 중 “제30조제8항·제31조제5항”을 “제30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을 “하천시설”로 한다. 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7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 자료”를 “하천관리 자료”로 하며,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14722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8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작물 설치에 위한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05호, 2018.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94조제1호 및 제96조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54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및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684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2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라목, 제7조제2항제4호, 제38조제1항제3호, 제72조제1항 및 제9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7호, 2018. 12. 24.〉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732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의2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또는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6항의 개정규정(제33조제9항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5항·제8항·제9항, 제39조제2항, 제45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제2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제18352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5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수의 사용허가조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71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등의 내용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홍수관리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다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⑤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667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9702호, 2023. 9. 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⑫ 법률 제19590호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333호, 2024. 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하천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삭제 <2017. 7. 17>	2467
[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2467
[별표 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2468
[별표 3의2]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	2469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2470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2470

[별표 1] 삭제 <2017. 7. 17>

[별표 2] <개정 2016. 6. 28.>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보수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점용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6.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7.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8.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제1항제4호에 따른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팅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9.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별표 3] (개정 2021. 1. 5.)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기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土石)·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아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선박 등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역) 1) 갑지: 월액 20,000원 2) 을지: 월액 10,000원 3) 병지: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구분	산정기준												
	나. 5톤 이하 유선												
	<table><tr><th>지역등급</th><th>동력선</th><th>무동력선</th></tr><tr><td>1) 갑지</td><td>월 100,000원</td><td>월 50,000원</td></tr><tr><td>2) 을지</td><td>월 60,000원</td><td>월 30,000원</td></tr><tr><td>3) 병지</td><td>월 20,000원</td><td>월 10,000원</td></tr></table>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다. 고무보트는 나뭇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뭇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뭇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뭇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뭇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5. 토석·사력의 채취	가. 해당 시·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 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구분	산정기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운동장·플장·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	토지가격의 5/100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비교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시·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별표 3의2] <개정 2021. 3. 9.>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5.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손실보상금액	수수료 요율기준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비율)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1000 이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1000 이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3/1000 이내
100억원 초과	10/1000 이내

※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한다.
3. 손실보상업무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위탁수수료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위임(위탁)자와 수임(수탁)자는 매수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업무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다.

[별표 5]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3호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법 제98조 제3항제1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나. 삭제 <2017. 7. 17.>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3호	30만원	40만원	60만원
라. 삭제 <2017. 7. 17.>				
마.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5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축목·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6호	50만원	60만원	80만원
아.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98조 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자.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7호	50만원	60만원	80만원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삭제 <2017. 7. 18.>	2475
[별표 2] 삭제 <2017. 7. 18.>	2475
[별표 3] 삭제 <2017. 7. 18.>	2475
[별표 4]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2475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2476
[별표 5의2]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2476
[별표 5의3]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2477
[별표 5의4]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2481
[별표 6] 삭제 <2016. 6. 30.>	2483

[별표 1] 삭제 <2017. 7. 18.>

[별표 2] 삭제 <2017. 7. 18.>

[별표 3] 삭제 <2017. 7. 18.>

[별표 4] <개정 2021. 8. 27.>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土石)·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점용목적	첨부서류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 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
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공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별표 5의2] 〈신설 2017. 9. 21.〉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점용(행위)의 목적	제출기간
1. 토지의 점용	10일
2. 하천시설의 점용	14일
3.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20일
4.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60일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20일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20일
7.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20일
8. 식물의 식재	5일
9.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20일
10. 선박의 운항	12일

[별표 5의3] <개정 2021. 12. 28.>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1. 표지내용

- 가. 하천 그림표지
- 나. 법 제7조에 따른 하천구분
- 다. 하천명
- 라. 영문 하천명
- 마. 하천관리청

2. 규격: 2,100mm × 1,200mm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3. 표지판 색채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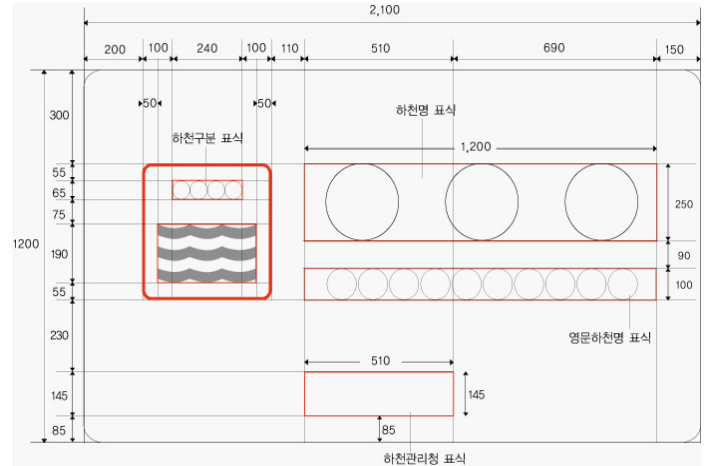
-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 2) 선 및 글자: 흰색(N9.5)으로 한다.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 2) 선, 글자 및 수계도(水系圖): 흰색(N9.5)으로 한다.
- 3) 상징그림: 해당 하천을 대표하는 동식물 또는 해당 하천에서 할 수 있는 레저 활동 등을 알릴 수 있는 그림으로서 하천관리청이 선정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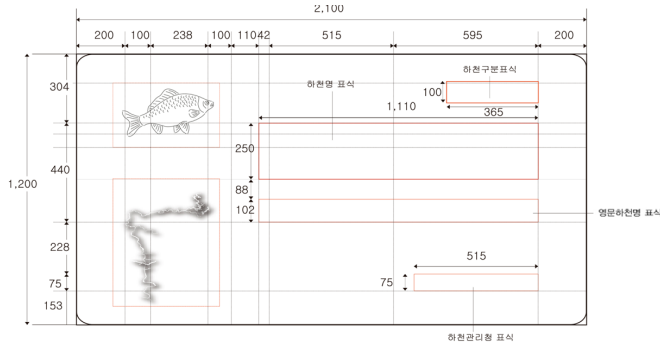
4. 표지 구성(단위: mm)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08.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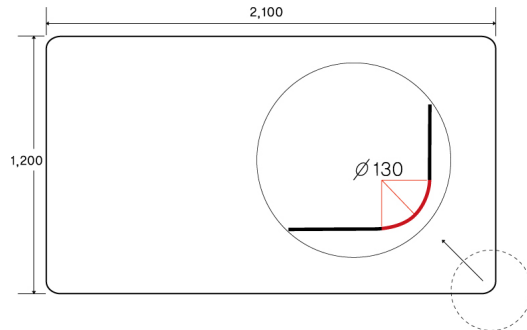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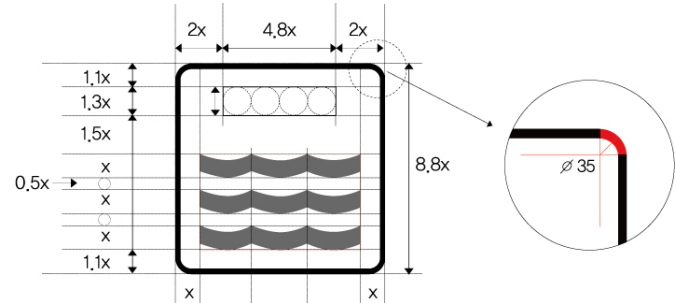
5. 세부규격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표지판 테두리선(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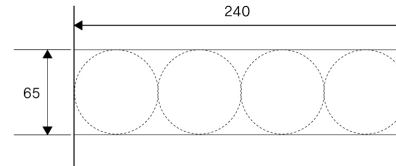


2) 그림표지 테두리선

가) 기본규격: $X = 50\text{mm}$ 나) 외곽선 굵기: 12mm 

3) 하천구분 표식 부분(단위: mm)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산돌고딕 볼드 190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0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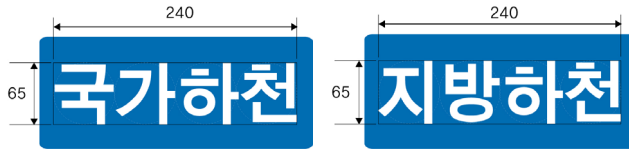
산돌고딕 볼드 190 포인트
자폭 100% 자간 0

국가하천

지방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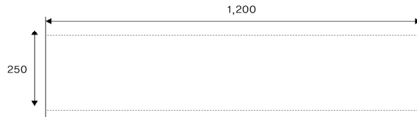
다) 하천구분 표식 부분 상세규격

① 국가하천



4)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mm)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한양 헤드라인 미디움 75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① 2자



② 3자



③ 4자



④ 5자



5) 영문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mm)

가) 기본규격



나) 영문글씨체: 단메드 40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다)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어문규범에 따르며, 한글 하천명을 기준으로 하여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6)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단위: mm, 하천관리청의 심벌마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가하천(예): 환경부



08.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나) 지방하천(예):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글자는 기재된 치수에 맞추어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나. 미관형 하천표지

- 1) 하천명(영문 하천명을 포함한다), 하천구분 및 하천관리청 표시 부분은 일반형 하천명표지의 글씨체를 따르되, 미관형 하천명표지의 표지구성 규격에 맞도록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2) 상징그림 및 수계도는 미관과 시인성(視認性)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다.

6. 재질 구성

- 가.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mm)
- 나. 표지요소: 커팅시트
- 다. 기둥: 스테인레스스틸 가공

[별표 5의4] <개정 2021. 8. 27.>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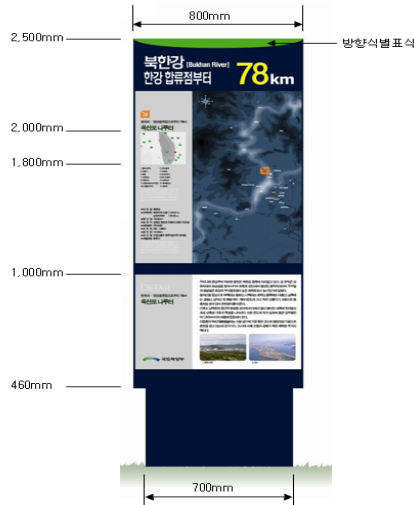
1. 입간판형

가. 표지내용

- 1) 하천명
- 2) 위치 및 거리 정보
- 3) 하천정보
- 4) 안내지도
- 5) 생태 및 관련지역 정보

나. 규격

가로 800mm × 세로 2,5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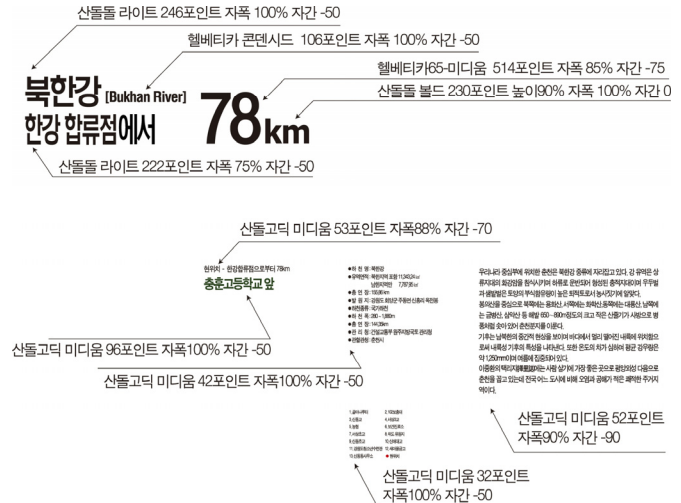


08.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다. 색채

- 1) 바탕은 남색(7.5PB 2/6),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으로 한다.
 - 2) 방향식별표식: 우안(右岸)은 빨강(7.5R 4/14), 좌안(左岸)은 밝은 초록(2.5G 5/10)으로 한다.
-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 (이하 같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mm)
- 2) 표지요소: 지성색 프린팅 및 부식(腐蝕)
- 3) 콘크리트 기초

08.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2. 동근기둥형

가. 표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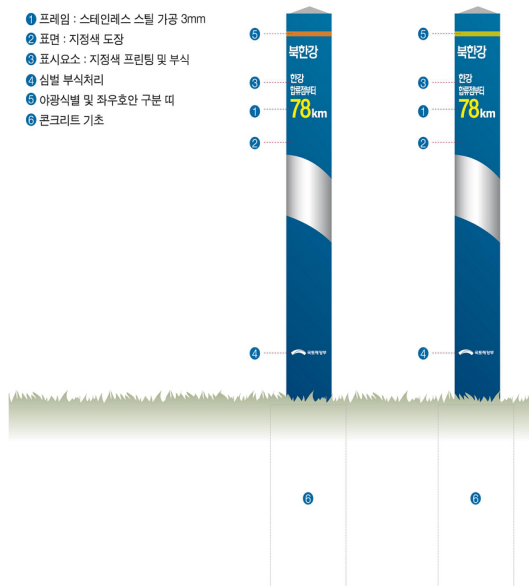
- 1) 하천명
-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 1) 높이: 1,700mm
- 2) 지름: 200mm

제작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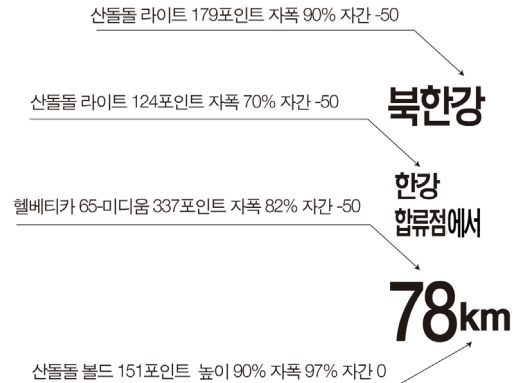
- ① 프레임 : 스테인레스스틸 가공 3mm
- ② 표면 : 지정색 도장
- ③ 표시요소 :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
- ④ 심벌 : 부식처리
- ⑤ 야광식별 및 좌우호안 구분 띠
- ⑥ 콘크리트 기초



다. 색채

-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밝은 회색(N8.5)으로 한다.
-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mm)
- 2) 표면: 지정색 도장
- 3) 표시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
- 4) 심벌: 부식처리
- 5) 야광식별 및 좌우호안 구분 띠
- 6) 콘크리트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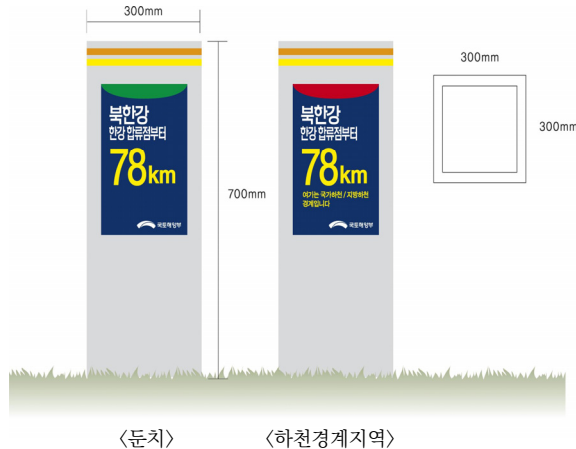
3. 사각기둥형

가. 표지내용

- 1) 하천명
-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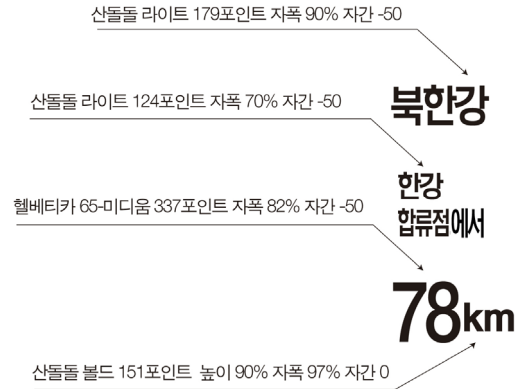
300mm × 300mm × 700mm



다. 색채

-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진노랑(2.5Y 8/14) 또는 주황(2.5YR 6/14) 띠로 한다.
-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 1) 재질: 화강석, 폴리카보네이트(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 야광식별 띠, 유포지(油布紙)에 실사출력
- 2) 마감: 조각, 연마

[별표 6] 식재 <2016. 6. 30.>

09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2489
제2조(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2489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2489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2489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2489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2489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2490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2490
제9조(분쟁조정신청)	2490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2490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2490
부칙	2490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6.14 환경부령 제767호
개정 2022. 2.23 환경부령 제97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3.>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수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流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간 및 종료 시간
-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제9조(분쟁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서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67호, 2018.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20호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4호, 2022.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목 차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2495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2495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2495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2495
제5조(제방)	2495
제6조(호안)	2495
제7조(수제)	2495
제8조(하상유지시설)	2496
제9조(보)	2496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2496
제11조(내수배제시설)	2496
제12조(방수로)	2496
제13조(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2496
제14조(주운시설)	2497
제15조(하구시설)	2497
제16조(여울과 소)	2497
제17조(천수시설 등)	2497
제18조(세부 기준)	2497
부칙	2497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개정 2021. 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12.28. 환경부령 제95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縱斷構造)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 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溜)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하천부지 이용계획

제5조(제방) ①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치수계획규모(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2. 세굴(洗掘), 침투, 활동(滑動)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②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콘크리트, 강재(鋼材)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③ 제방고(堤防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독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별표 3에 따른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1:3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조건, 물이 흐르는 단면 유지 및 장애물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3보다 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의 윗부분 또는 비탈면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제방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6조(호안) ① 호안(護岸: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水利的)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粗度),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7조(수제) ① 수제(水制: 물이 흐르는 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하안의 침식이나 호안의 파손 방지
2. 저수로나 유로(流路)의 유도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 생태계 보전

4. 경관 개선

5. 유량 확보

② 수제의 규모, 형식 및 배치는 수리적으로 안정되고 물이 충분히 흘러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하여 세굴, 퇴적, 물 흐름 및 수위 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하상유지시설) ①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상류·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保護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9조(보) ① 보(보: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舟運) 및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바닥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흐르는 물의 월류(越流)를 허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轉倒),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프(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堤内地)보다 높은 때에는 제방의 누수(漏水) 및 습윤화(濕潤化)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가동보(可動狀): 조작이 가능한 보

2. 고정보(固定狀): 조작이 불가능한 보

⑤ 가동보 기동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排水位),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가동보의 가동부(可動部)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⑦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①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문(水門):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관(通管): 원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3. 통문(通門):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②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을 말한다), 수충부(水衝部: 물살이 강하게 부딪히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③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水密性: 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1조(내수배제시설)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방수로) ① 방수로(放水路: 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적·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3조(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①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설치할 수 있다.

1. 저류지(貯流池):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변에 설치한 시설
2. 홍수조절지: 하류지역 하천의 홍수량을 저감시키거나 흐름을 늦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분류를 횡단하는 구조물(분류의 방류량을 조절하는 제수문(制水門)을 포함한 다과 분류 주변의 저류공간인 조절지(홍수 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부와 수문조작을 통하여 조절지 내의 수위를 조절하는 유출수문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제반 시설
- ②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의 규모와 형식은 분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한다.
- ③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4조(주운시설) ① 주운시설(하천에서 선박이 다니거나 정박할 수 있도록 설치한 주운수로 및 갑문시설 일체를 말한다)은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정박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폭과 수심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 운항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운수로로는 파랑(波浪) 및 홍수에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주운수로를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교량 상부구조의 하단과 물 표면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④ 갑문시설의 위치와 규모는 하천 상황 및 통행 선박의 종류·규격·통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5조(하구시설) ①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②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潮汐),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하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개선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향 구간 내 이수·지수·환경·수질·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여울과 소) ①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및 하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여울: 폭기(曝氣)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

2. 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 ②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흐름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17조(친수시설 등) ①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만 설치한다.

- ②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운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 ③ 친수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정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28.>

부칙 <제306호, 2016.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21. 8.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58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11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목 차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2503
제2조(유지·보수등의 기준)	2503
제3조(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2503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2503
제5조(안전점검)	2503
제6조(보수)	2503
제7조(재해대책)	2503
제8조(하천보수원)	2504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2504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2504
제11조(보고)	2504
부칙	2504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정 2012. 3.30 국토해양부령 제451호
개정 2013. 3.23 국토교통부령 제 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12.28 환 경 부 령 제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보수등의 기준) ①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보관할 것
-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3조(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 하천관리청〔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위치 및 유지·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
 2. 유지·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 유지·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유지·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 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4. 하천공사 현황

5.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2. 하천시설(기계설비를 포함한다)의 도색, 윤활제 주입 등 하천시설 관리
3.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溜) 등 하천의 자연생태공간 관리
4. 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樹木), 잔디, 그 밖의 식물류 생육 관리

제5조(안전점검)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 여야 한다.

-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② 하천관리청은 연 2회 이상 하천에 대한 정기보수(매년 5월 31일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와 10월 이후부터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대책) ①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응급복구대책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3. 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하천보수원)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 순찰 및 점검 자료
2. 일상적 관리 자료
3. 안전점검 자료
4. 보수 조치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1조(보고)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부칙 <제451호, 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보수등의 계획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하천관리청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2012년도 유지·보수등 계획 및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958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편 수자원

1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목 차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2509	제1조(목적) 2509
제2조(적용대상) 2510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2509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511	제3조(보상청구) 2510
제4조(보상재원) 2511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2511
제5조(통지) 2511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2511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2512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2512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2512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2513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2513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2513
제8조(보상금의 공탁) 2513	
제9조(등기 등) 2513	
부칙 2514	부칙 251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 2009. 3.25 대통령령 제9543호 개정 2020. 4. 7 대통령령 제17240호 2021. 7.27 대통령령 제1835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09. 6.25 대통령령 제21553호 개정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 1.21 대통령령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군·구·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기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기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대상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을 측량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변경·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변경·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보상청구 서식,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올라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청구) 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1.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작제 <2010. 11. 2.> 3. 인감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 4. 7.>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한다. 제5조(통지)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1. 2.) 1. 주민등록표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지적도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청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군·구·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 ⑦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보상청구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청구서에 제2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 및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8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서와 의견서 등 그에 첨부된 서류 및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인지와 해당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을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상대상자의 결정 2. 보상계획의 수립 3. 보상금액의 사정(査定)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할 구역의 주민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감정평가사 등 보상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되, 출석위원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① 시·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8조(보상금의 공탁)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9조(등기 등) ①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21. 7. 27.>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1. 21.> 1. 감정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들이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부칙 <제9543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 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부칙 <제17240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절차 통지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부칙 <제18353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53호,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송이 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8> 까지 생략 <17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6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1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한다. <62>부터 <64>까지 생략

제3편 수자원

13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목 차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2524	제1조(목적) 2524
제2조(법인격) 2524	
제3조(사무소) 2524	
제4조(자본금 및 출자) 2524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2525
제5조(등기) 2525	제3조(설립등기) 2525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2525
	제5조(이전등기) 2526
	제6조(변경등기) 2526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526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2526	
제7조 삭제 2526	
제8조(대리인의 선임) 2526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2526
	제8조(등기 신청인) 2527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2527
	제10조(관할 등기소) 2527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2527
제9조(사업) 2527	제12조(교육훈련계획) 2528
	제13조(기술지원) 2529
	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2529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2530	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2530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30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2530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2531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2532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2532	제18조(준공인가) 2532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2533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2534
제14조(차입금)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2534
제15조(사용계약)	제22조(사채의 응모) 2534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2535
제16조의2(비용부담)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2535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2535
제17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2535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2536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제28조(사채 원부) 2536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제29조(채권의 이전) 2536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2536
제21조(인가의 특례)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2537
제21조의2 삭제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2537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2537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2538
	제35조 삭제 2538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2541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2541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2541	
제26조(「하천법」의 준용) 2542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2542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2542	
제28조 삭제 2542	
제29조(강제징수) 2542	제36조(징수 위탁) 2542
제30조 삭제 2542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2542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543	
제33조(국·공유재산의 양도 등) 2543	제37조(협의 등) 2543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2544	
제35조 삭제 2544	
제36조(교부금) 2544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2544
제37조(국고보조) 2544	제39조(국고보조) 2544
제38조(감독) 2544	
제39조 삭제 2544	
제40조(벌칙) 2544	
제41조(과태료) 2545	
부칙 2545	부칙 2545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정 1987.12. 4 법률 제3997호 개정 1990. 4. 7 법률 제4232호 1991.12.14 법률 제4429호 (수도법) 1993.12.27 법률 제4630호 1994. 3.24 법률 제4748호 (사방사업법) 1995.12.29 법률 제511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6.12.30 법률 제5227호 1999. 2. 8 법률 제5893호 (하천법) 1999. 2. 8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 1999. 2. 8 법률 제5914호 (공유수면관리법) 1999. 9. 7 법률 제6021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001. 1.16 법률 제6366호 2001.12.31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유위하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3.12.31 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1.19 법률 제8256호 2007. 1.2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12.27 법률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 3.28 법률 제9054호 2009. 1.30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 3.25 법률 제9544호 2009. 4. 1 법률 제96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1. 4.12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2.12.18 법률 제11593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5.21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5.12.29 법률 제13691호 2017. 1.17 법률 제14549호	제정 1988. 6.17 대통령령 제12464호 개정 1989. 8.18 대통령령 제12781호 (자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0. 9. 4 대통령령 제13097호 1992.12. 9 대통령령 제13771호 (수도법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채정경제원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간설교통부약그소속기관직제) 1997. 3.22 대통령령 제15314호 2000. 3.13 대통령령 제16756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 4.17 대통령령 제17196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유위하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7. 4.20 대통령령 제20020호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7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6.17 대통령령 제24617호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3호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7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16 대통령령 제344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 2. 21 법률 제15407호 2018. 6. 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20. 3. 31 법률 제17180호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4. 13 법률 제18033호 2021. 6. 15 법률 제18284호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2. 12. 27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8. 16 법률 제19667호 (하천법) 2023. 10. 24 법률 제19759호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④ 국가는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2020. 3. 31., 2021. 6. 15.) ⑤ 삭제 <2020. 3. 31.>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10. 12. 13.]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7. 공고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1. 19.]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조 삭제 (2009. 3. 25.)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다. 주된 사무소 및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31., 2021. 4. 13.>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한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8조(등기 신청인) 공사의 등기 신청은 사장이 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0. 12. 13.] 제10조(관할 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에 대해서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 12. 13.]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4. 삭제 (2020. 3. 31.)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다. 삭제 (2020. 3. 31.)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공감리·시험·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2조(교육훈련계획)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5. 26.>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⑥ 삭제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	26., 2018. 6. 8.)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4. 교육훈련 과정별 교수과목 5. 교육훈련의 수요 전망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③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3조의 3에서 이동 <2010. 12. 13.>] 제13조(기술지원)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1. 기술지원의 목표 2. 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 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0. 12. 13.>] 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으로 한다)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댐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댐 상류의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대행받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로 한정한다) 2.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문개정 2020. 9. 29.] 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催告)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16.]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2020. 12. 31.〉 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② 삭제 〈2020. 3. 31.〉 ③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 2022. 6. 14.〉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과 대체 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6.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1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1.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2. 삭제 〈2020. 9. 29.〉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제10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 12. 13.〉]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인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0. 12. 1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0. 12. 13.>]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3. 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0. 12. 13.]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0. 12. 13.>] 제18조(준공인가) ①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3. 용지조서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水沒地)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환지(換地) 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25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③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 12. 13.>]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사업의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13.]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 12. 13.>]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은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12. 18.,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0. 12. 13.>]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① 공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6. 17.>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6. 17., 2018. 6. 8.> [전문개정 2010. 12. 13.]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0. 12. 13.>] 제22조(사채의 응모)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 9.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 12. 13.>] 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사장은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은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 12. 13.>] 제24조(사채 인수기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0. 12. 13.>]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3. 6. 1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 12. 13.>]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3. 6. 17.>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3. 6. 17.]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 12. 13.>]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0. 12. 13.>] 제28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10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0. 12. 13.>] 제29조(채권의 이전)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0. 12. 13.>]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5조(사용계약)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0. 12. 13.>]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의 요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10. 12. 13.]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0. 12. 13.>]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 [전문개정 2010. 12. 13.] [제30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10. 12. 13.>] 제35조 삭제 <2024. 4. 16.>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다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협의·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3. 3. 23., 2014. 1. 14., 2015. 12. 29., 2018. 6. 8.,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1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17. 삭제 (2020. 3. 31.)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09. 3. 25.]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25.]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삭제 <2020. 3. 31.>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은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④ 삭제 <2023. 10. 24.> ⑤ 삭제 <2023. 10. 24.> ⑥ 삭제 <2023. 10. 24.>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전문개정 2009. 3. 25.]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9. 3. 25.]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09. 3. 25.]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09. 3. 25.] 제28조 삭제 <2003. 12. 31.> 제29조(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이득금·가산금·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한다)·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0조 삭제 <2003. 12. 31.>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제36조(징수 위탁)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광역시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담이득금·가산금·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징수교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10. 12. 13.>]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3조(국·공유재산의 양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7조(협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 내용(사업계획서, 협의 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 확인서(미등기 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2.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3. 등기부 등본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1. 미등기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 아닌 토지 2. 관리청 명칭이 첨기(添記) 등기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3. 25.] 제35조 삭제 <1996. 12. 30.> 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8조(감독)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3. 25.] 제39조 삭제 <2009. 3. 25.> 제40조(벌칙)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귀속재산 [전문개정 2010. 12. 13.] [제35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0. 12. 13.]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0. 12. 13.>] 제39조(국고보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10. 12. 13.] [제38조에서 이동 <2010. 12. 13.>]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부칙 <제3997호, 1987. 1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15조 후단중 “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중 “사업시행자(산업기지개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사업시행자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중 “관할도지사·시장·군수와 산업기지개발공사는”을 “관할도지사·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44장(제30조 내지 제56조의2)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8조제4항,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75조제2항중 “대한주택공사·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사설립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공사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64호, 1988.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②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수자원공사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수자원공사 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⑥ 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⑦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⑧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 ⑨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④산업기지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명의로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은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고 있는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공사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행위로 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정부의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출자한 동산·부동산 및 권리는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국가가 건설중인 정수시설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4232호, 199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9호, 1991. 12. 14.〉 (수도법)	2. 한국수자원공사 ⑩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목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 ⑪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수자원공사 ⑫공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⑬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삭제한다. ⑭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9조의2·제19조 내지 제23조의2·제25조 내지 제30조·제31조·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⑮공업용수도시설관리관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⑯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⑰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도·감독 제3조(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사용자가 체결한 용수공급등의 계약과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에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 한다. ⑮내지 ⑯생략 부칙 <제4630호, 1993. 12. 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8호, 1994. 3. 24.> (사방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제5111호, 1995. 12. 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대한 요금등은 각각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요금등으로 본다. 부칙 <제12781호, 1989. 8. 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②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3097호, 1990. 9.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공업용수”를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용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업용수”를 “용수”로 한다. ②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5227호, 1996. 12. 30.>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3호, 1999. 2. 8.>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②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911호, 1999. 2. 8.>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⑤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914호, 1999. 2. 8.>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록필의 통지) 건설부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당해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관리권의 이전·소멸 2. 저당권의 설정·이전·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제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하여 이를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수도시설관리권·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등록부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로 한다. ②등록부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5호·제20조제1항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31조중 “공업용수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6조제3호·제37조제1항·제47조제3항·제2절 제목·제53조 내지 제58조·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및 제68조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부칙 <제13771호, 1992. 12. 9.> (수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021호, 1999. 9. 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및 동법제45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6366호, 2001. 1. 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9호, 2001. 12. 31.>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고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0>생략 <211>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2>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외고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3조의5, 제14조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8>내지 <205>생략 부칙 <제15314호, 1997.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6756호, 2000. 3. 1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7조중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196호, 2001. 4. 17.> 이 영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4호, 2002. 12.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058호, 2003. 12. 31.〉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요금·사용료 및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을 “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⑤ 생략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5〉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 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내지 〈87〉생략	부칙 〈제20020호, 2007.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⑲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2조 생략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생략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56호, 2007. 1.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83호, 2007. 1. 26.>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 생략	<11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215호, 2008. 12. 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3> 까지 생략 <184>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27호, 2010.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617호, 2013. 6. 17.>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③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418>까지 생략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819호, 2007. 12. 27.〉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1073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㉔ 부터 ㉔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㉔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㉔ 및 ㉔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6> 까지 생략 <6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제4항·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㉔ 및 ㉔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12호, 2024. 4. 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054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9544호, 2009. 3.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 <제9618호, 2009. 4. 1.>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산업은행이”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을 “같은 법 제111조에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따른"으로 한다. 〈53〉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69〉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까지 생략 〈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7〉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93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채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4>까지 생략 <64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2663호, 2014. 5. 21.>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91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4549호, 2017.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07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제2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호,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제2호,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로, “건설사업”을 “건설 또는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1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제17조의2, 제2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를 “환경부”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180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033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8284호, 2021. 6.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8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667호, 2023. 8. 16.>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9759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한국수자원공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2569

[별표] 〈개정 2010.12.13〉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공사비	요율
100억원 이하	9.0퍼센트 이내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퍼센트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퍼센트 이내
500억원 초과	7.0퍼센트 이내

〈비 고〉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수수료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탁사업 또는 수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가산한다.
6. 조사, 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 상의 공사비로 본다.

제4편 물환경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573
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705
03.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2819
0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827
05.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2947
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955
07.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3017
0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387
09.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3497
1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3505
11.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3529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723
13.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3835

제4편 물환경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581	제1조(목적) 2581	제1조(목적) 2581
제2조(정의) 2582	제2조(사육동물) 2582	제2조(배출시설) 2582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2582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2583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2584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2584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2584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 2584
제6조 삭제 2585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4. 3. 24.>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2585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2585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2585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2587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2587	제3조의4(토지 출입증) 2587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2588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2588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2589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2589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2590		
제3장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 3. 24.>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2591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2591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2591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591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2593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593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2594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2594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2596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2596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2596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259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2598	제10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면제) 2597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2597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2598	제11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 2597	제10조(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2597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2599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2598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2598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2599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2598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2599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2599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2601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2599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2602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2602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 2603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2602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2604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시공) 2603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액비의 제공) 2604
		제13조(액비 살포기준) 2605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2605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2605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2606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606
제18조(허가취소 등) 2607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2606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2609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2609	제17조(행정처분기준) 2608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2609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2609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2609
제19조(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2610		
제20조(퇴비·액비의 품질관리) 2610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 2610		
제22조(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26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2611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2612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2612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2612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2612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2613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2615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2615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2616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2616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2617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2614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2617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감독) 2618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2618 제25조 삭제 2619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 2618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2619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2621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622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2619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2620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621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2621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2622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2622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2623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2622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2623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2623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2625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625
제29조(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2624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625		
제31조(결격사유) 2625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2626		
제33조(과징금 처분) 2628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2628	제33조 삭제 2628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2628	제21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2628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2628
	제22조 삭제 2628	
		제35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2629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2630		제36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2629
제36조(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2631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2631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2631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2631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2632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2632
제7장 보칙		
제37조의2(가족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632	제23조의2(가족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2632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2633
제37조의3(가족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2633	제23조의3(가족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2633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2633
제38조(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2633		제40조(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2633
		제41조(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2634
		제42조(교육과정 등) 2634
		제43조(교육계획) 2635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2635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2635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2635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2636	제46조(가족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2637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2637		제47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2637
제4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2637		제48조(출입·검사 등) 2638
제41조(보고·검사) 2638		제49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263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국고보조) 2639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2639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2639	제24조(처리실적 보고) 2639	제50조(수수료) 2640
제45조(수수료) 2640		제50조의2 삭제 2640
제46조(청분) 2640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2640	제25조(권한의 위임) 2640	
	제26조(업무의 위탁) 2641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41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2642	제51조(규제의 재검토) 2642
제8장 벌칙		
제48조(벌칙) 2643		
제49조(벌칙) 2644		
제50조(벌칙) 2645		
제51조(벌칙) 2647		
제52조(양벌규정) 2648		
제53조(과태료) 2648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648	
부칙 2651	부칙 2651	부칙 265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6. 9.27 법률 제8010호 개정 2007. 4.11 법률 제8354호 (축산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10. 2. 4 법률 제10035호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28 법률 제10973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30 법률 제11965호 (산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와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3.24 법률 제12516호 2015.12. 1 법률 제13526호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3호 (폐기물관리법) 2018. 3.20 법률 제15510호 2018.10.16 법률 제15829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4.13 법률 제18027호 2022.12.31 법률 제1920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3. 8.16 법률 제19656호	제정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개정 2008. 1.11 대통령령 제205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0.10.13 대통령령 제22445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 3.24 대통령령 제26158호 2016. 5.31 대통령령 제27198호 2017. 3. 8 대통령령 제27932호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 2 대통령령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9.14 대통령령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2. 2.22 대통령령 제32503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2022. 4.12 대통령령 제32572호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7호 (염간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대통령령 제3319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2007.10. 1 환경부령 제250호 개정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6.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11. 8 환경부령 제383호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1.11.22 환경부령 제432호 2011.12.30 환경부령 제441호 2012.11. 1 환경부령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1.20 환경부령 제486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 3.25 환경부령 제599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염안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6. 6. 2 환경부령 제657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5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3.23 환경부령 제750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2.20 환경부령 제849호 2021. 9.16 환경부령 제942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2. 3.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 4.14 환경부령 제982호 2022.11. 1 환경부령 제1002호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 3. 24〉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 3. 25〉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19. 12. 20〉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혐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2. 12. 31.>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기기본계획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연도별·구역별·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운반·처리 현황과 수집·운반·처리 계획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시·도 관할 1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3. 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군·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되거나 변경·지정·고시된 경우 [본조신설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조 삭제 (2010. 2. 4.)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4. 3. 24.)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설치계획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4.) ③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제목개정 2015. 3. 24.]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 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 16.)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사(이하 “가족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족분뇨실태조사 결과를 가족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가족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가족분뇨실태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분뇨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족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족분뇨실태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이 과다하거나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가족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가족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 가족분뇨의 발생량 다. 퇴비·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족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한량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족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14.>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족분뇨, 퇴비·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토양·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담수산·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洩) 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지역·지점 및 조사방법 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족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5. 3. 24.]	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4. 3. 24.]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존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		[본조신설 2015. 3. 25.]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4. 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 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지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장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 3. 24.〉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22. 4. 12.>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6.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③ 제2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4.>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0.>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14. 3. 24.]		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할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0.>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할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군·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 배출시설이 연결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0. 13., 2015. 3. 24., 2022. 4. 12.> -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糞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10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3. 24.>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1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3. 25.>]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3. 25.>] 제10조(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糞)과 요(尿)(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요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5. 3. 25.>]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①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대통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0. 10. 1.3, 2012. 7. 20., 2015. 3. 24., 2022. 4. 12.>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1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5. 31.>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 [본조신설 2014. 3. 24.] [제목개정 2015. 12. 1.]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본조신설 2015. 3. 24.]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6. 2.]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6. 6. 2.>]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 3. 25.]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6. 6. 2.>]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 3. 25.>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개정 2015. 3. 25.> ⑤ 삭제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합격을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3. 24.]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 2022. 2. 22.> -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전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전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 퇴비·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조신설 2015. 3. 24.]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 -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③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5. 12. 1.]	2. 퇴비·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15. 3. 24.]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본조신설 2016. 6. 2.]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6. 6. 2.>]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14.>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 지역난방시설 나. 산업용보일러 다. 제철소 로(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액비)을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4. 3. 24.]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6. 6.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조신설 2015. 3. 24.]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그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24.>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3. 25.]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6. 6. 2.>] 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3. 25.>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④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2. 4. 12.>	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 ⑥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5.> 1. 가축분뇨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 2.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또는 공동자원화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것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4. 14.> [전문개정 2015. 3. 25.]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15. 3. 25., 2022. 4. 1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6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4. 14.> [전문개정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증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증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증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경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3. 제18조에 따른 사용증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증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 [본조신설 2014. 3. 24.]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0조(퇴비·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축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 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2조(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이하 “퇴비·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업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 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협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류지역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15. 3. 25.]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 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5. 3. 25.> 1. 시설의 개요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 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 연간 관리비 소요예산액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		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 3. 25.> ③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방류수의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⑤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처리시설을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⑦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제6항 각 호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명칭 및 주소 2.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 3.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6. 설치하려는 지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사육 마릿수 및 장래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마릿수 7.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8. 재원 및 매 회계연도의 예정 공사비에 관한 서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3. 25.>]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일 것 2. 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 질소 및 총 인의 양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질소와 인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 유입기준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3. 25.>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 3. 25.>]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③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2. 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3. 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⑩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또는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6. 2.> [본조신설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행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감독)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3. 25.]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		같다.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전용의 수집·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5.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제25조 삭제 (2022. 11. 1.)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만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0., 2015. 3. 25.>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④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패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외한다) 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수집·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0.>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5., 2022. 4. 14.>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6. 12. 30., 2022. 4. 1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 ④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 3. 25., 2022. 4. 14.> [제목개정 2015. 3. 25.]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4. 3. 24.] 제28조(가족분뇨관련영업) ① 가족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족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족분뇨수집·운반업: 가족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족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족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족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② 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	제17조(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족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족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3. 24.>	제30조(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분뇨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족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족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능력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1항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족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30조의2(가족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24.>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 전 ②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⑨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과 관련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9조(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 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 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 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12. 1., 2017. 1. 17., 2020. 5. 2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 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 3. 25.]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정역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4. 3. 24.]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2.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4.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철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자가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감용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시설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3. 2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3. 24.> 제22조 삭제 <2015. 3. 24.>	제33조 삭제 <2015. 3. 25.>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4. 1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⑥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1. 22.>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1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3. 25.> 제35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36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8항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사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⑦ 설계·사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⑧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사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⑨ 설계·사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4. 3. 24.]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사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营业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 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사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22. 4. 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6조(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7장 보칙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장부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뇨 또는 액비의 인제·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해당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또는 살포자와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기록을 검색·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37조의3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료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하는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제·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	3.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5.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존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본조신설 2015. 3. 24.]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 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3. 25.]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족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2. 가족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시공업자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야 한다. <개정 2012. 11. 1.> 1. 신규교육 :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교육 : 법 제32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족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 3. 25.> 제41조(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0.> 1. 삭제 <2020. 2. 20.>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족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시공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42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족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0.>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과정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3조(교육계획)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25.]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3.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4. 제20조에 따른 퇴비·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 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전문개정 2014. 3. 24.] 제4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경우에는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제47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0.>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설계·시공업자 ②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신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 6. 2., 2020. 2. 2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신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 2.> 제48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8.,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2조(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24조(처리실적 보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문개정 2014. 3. 24.]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4. 3. 24.]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2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제50조(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 11. 8., 2015. 3. 25.> 제50조의2 삭제 <2011. 12.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24.>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제2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5. 3. 24.]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4.>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②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 3. 2.>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1. 3. 2.>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2. 20.>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장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18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 -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9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제6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	- 제21조 및 별표 7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 삭제 <2021. 3. 2.> [전문개정 2015. 3. 24.]	-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 삭제 <2016. 12. 30.> [전문개정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4. 3. 24.]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8. 제27조제6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2.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4. 3. 24.]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1.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및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9.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10. 제25조제10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준 자 1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16.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전문개정 2014. 3. 24.]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방해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 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받아야 하는 자 6. 제27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자 10.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4. 3. 24.]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3. 24.] [2014. 3. 24. 법률 제12516호에 의하여 2010. 9.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 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5. 3.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3.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1.>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거나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제29조제4항(제34조제7항에서 준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9.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에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2.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4.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7.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부칙 <제8010호, 2006. 9.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축산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처리시설로 본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중 동별 제2조제8호의2의 퇴비화시설 및 동조제8호의3의 액비화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화시설로 본다.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10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3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부칙 <제250호,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외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허가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과,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대한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제5조(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가족분뇨수집·운반업, 가족분뇨처리업, 가족분뇨시설관리업 또는 가족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营业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배출부과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축산폐수”를 “가족분뇨”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족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족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족분뇨”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족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족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항 또는 제2항 ③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④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⑤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⑥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족분뇨관련 영업자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호, 2007. 10.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⑦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분뇨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⑧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족분뇨”로 한다. 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를 “가족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⑪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한다. 별표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족분뇨공공처리시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분뇨수집·운반업, 가족분뇨처리업 및 가족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족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⑯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②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83호, 2010.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2호, 201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 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54호, 2007. 4. 11.> (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⑪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⑫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41호, 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 2012. 11.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86호, 2012.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등의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류수질기준 중 총질소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총질소기준을 적용한다. 1. 기타지역의 허가대상배출시설 또는 특정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500mg/L 2. 기타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600mg/L 제4조(방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관하여 방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7> 까지 생략 <2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47조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②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③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각각 “가축분뇨”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44호, 2008. 1. 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부터 ②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에 따른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부터 ②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9호, 2015.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7 제2호다목제16호·제17호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502〉까지 생략 〈5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50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8.3.23〉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젓소·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사슴·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18.3.23〉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소·젓소·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제3조(위탁사용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1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035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는 규모 미만의 시설”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3.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3.23)]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8.3.23)] 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보를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 2016. 6. 2.〉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분뇨 고체연료 성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족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1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③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973호, 2011. 7.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1>까지 생략 <49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③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420호, 2010. 10. 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2445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750호, 2018.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 2020.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호·제4호 및 제4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채용되는 기술관리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4 제1호: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4 제2호: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5호, 2013. 7.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 2022. 4. 14.〉 이 규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 2022. 11. 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 2023. 1. 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입)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516호, 2014. 3. 24.> 제1조(시행입)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과 제48조제1호·제6호, 제49조제2호·제4호·제5호·제10호, 제50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 제51조제2호·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16호·제17호,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1조제9호 및 제53조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공동처리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위승계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그 지위를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8호, 2015. 3. 24.> 제1조(시행입)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6 제10호·제11호 및 별표 9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 24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가 완료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시공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제6조(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조치명령·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자는 제3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간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또는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98호, 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32호, 2017.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②까지 생략 부칙 <제2995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16호, 2021. 3. 2.> (규제 재검토키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6호, 2021. 9.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용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2018년 3월 24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본조신설 2015.12.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2.1>]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503호, 2022. 2. 22.>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호나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2572호, 2022. 4. 12.>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②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8.3.20] 제11조(가축사육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 사육제한구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12.1>] 제12조(농협조합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협조합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12.1>] 제13조(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바이오에너지시설의 신고는 제외한다)한 재활용신고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신고자로 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2.1>] 제14조(바이오에너지시설의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시설은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2.1>] 제1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	부칙 <제33192호, 2022. 12. 30.>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산 또는 한정치산 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2.1>] 제16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2.1>] 제1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12.1>] 제1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2.1>]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0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4조의2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4조의2제2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으로, “제22조제1항 후단”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50조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2.1>]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에서 이동 <2015.12.1.>] 부칙 <제13526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의2, 제8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9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81호, 2016. 12. 27.>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⑤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3호, 2017. 11. 28.>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부칙 <제15510호, 2018. 3.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9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027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3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7조제2항·제4항·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9208호, 2022. 12. 3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656호, 2023. 8. 16.〉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2675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2675
[별표 3]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2676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2677
[별표 5]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2678
[별표 6]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2679
[별표 7]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2681
[별표 8]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2682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2682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frac{\text{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text{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frac{\text{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text{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dots$$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frac{\text{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text{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frac{\text{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text{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dots$$

5.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가축의 방목 사육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frac{\text{제1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text{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 \frac{\text{제2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text{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 \dots$$

6.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19. 7. 2.>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1. 퇴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소·젖소	염분	2.5% 이하

2. 액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돼지·젖소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염분	2.0% 이하
	구리	70mg/kg 이하
	아연	170mg/kg 이하

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

나.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별표 4] <신설 2015.3.2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text{과징금 금액} = \text{사용중지일수} \times \text{1일당 부과금액(30만원)} \times \text{가축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50㎡ 이상 1,000㎡ 미만	0.1
1,000㎡ 이상 2,000㎡ 미만	0.2
2,000㎡ 이상 3,000㎡ 미만	0.4
3,000㎡ 이상 5,000㎡ 미만	0.8
5,000㎡ 이상 10,000㎡ 미만	1
10,000㎡ 이상	2

나. 소, 젖소 또는 말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100㎡ 이상 900㎡ 미만	0.1
900㎡ 이상 2,400㎡ 미만	0.2
2,400㎡ 이상 3,600㎡ 미만	0.4
3,600㎡ 이상 5,000㎡ 미만	0.8
5,000㎡ 이상 6,000㎡ 미만	1
6,000㎡ 이상	2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	0.1
2,500㎡ 이상 7,500㎡ 미만	0.3
7,500㎡ 이상 12,500㎡ 미만	0.6
12,500㎡ 이상	1

라. 방목 사육시설

종류	사육 마릿수	부과계수
돼지	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	0.1
	715마리 이상	0.3
소·젖소·말	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	0.1
	75마리 이상	0.3
닭·오리	1,500마리 이상	0.1
양·사슴	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	0.1
	1,500마리 이상	0.3

[별표 5] <개정 2018. 12. 11.>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600리터 이상).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arm roll)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2.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1개소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나.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 측정산업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량 3) 총 질소 및 총 인 4) 대장균 군수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7)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퇴비·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액비 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수질 분야로 한정한다),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만, 퇴비·액비화시설의 관리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고

- 2개 업종 이상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나목의 경우 사무실에 한정한다)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 2의2.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가축분뇨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 표 제3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능력란의 항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등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라. 법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바.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사. 「하수도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아.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흡인식 차량, 암물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 차량, 암물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개정 2022. 4. 12.>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위반한 경우 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인 경우 다.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200톤 이상 300톤 미만인 경우 라.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300톤 이상인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5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경우 나. 그 밖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1억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5천만원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라. 흡인식 차량 또는 암를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7.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 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5천만원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0.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1.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7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2.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8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3.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9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별표 7] <개정 2018. 12. 1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퇴비·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액비 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비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실험기기와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퇴비·액비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8] 〈개정 2015.3.24.〉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2.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재활용 실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3. 가축분뇨위탁·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5.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6.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별표 9] 〈개정 2022. 4.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50	7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0	300	4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50	70	1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법 제53조 제3항제1호	200	300	4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마.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50	70	100
바.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50	70	100
사.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법 제53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처리업자로서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자. 법 제14조제3항, 제29조제4항(법 제3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경우				
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6)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5호	60	80	100
7)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6호	법 제53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1호	50	70	100
저.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2호	50	70	100
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3호	50	70	100
커.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4호	50	70	100
터.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5호	50	70	100
퍼.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6호	50	70	100
허.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7호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8호	50	70	1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	2689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2689
[별표 3]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	2691
[별표 4]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2691
[별표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2692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2693
[별표 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2693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2694
[별표 8]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2699
[별표 9]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2700
[별표 10]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8조 관련)	2701
[별표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2701
[별표 12]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2702
[별표 13]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	2702
[별표 1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	2703
[별표 15]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2703

[별표 1] 〈신설 2015.3.25.〉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의3제3항 관련)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 가. 조사기관
 - 나. 조사기간
3. 조사내용
 - 가. 조사대상 지역 또는 지점 현황
 -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 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 현황
 - 1)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가축별, 시설별)
 - 2) 가축분뇨 처리현황(개별, 위탁 등)
 -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 나. 조사지역 또는 조사지역별 오염도 현황
 - 위치,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항목별 오염도 등
 - 다. 오염기준 초과지역 현황
 - 위치, 기준초과 내역, 초과원인 분석, 조치내용 등
 - 라. 실태조사 지역 변경(추가) 현황
 - 조사계획대비 변경 또는 추가된 조사지점의 종류, 위치 등 현황, 변경(추가)사유 등
5. 결과분석 및 종합의견
 - 가. 오염기준 초과지점 특성에 따른 분석
 - 나. 향후 추진방안 등 종합의견
 - 초과원인 분석 내용, 조치내용, 초과지점 관리 향후 관리방안 등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2] 〈개정 2015.3.25.〉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스킴·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퇴비화시설

-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액비화시설

- 가.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이오가스화 시설

- 가.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2)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4)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크름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라.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 가.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 나.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2)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 라. 성형시설 또는 가공시설은 건조·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마.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사.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개정 2015.3.25.>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제9조 관련)

(단위: ㎡/마리)

구분	초지	농경지	
		논	밭·과수원
젖소	1,330 이상	2,550 이상	1,650 이상
돼지	140 이상	260 이상	170 이상

[별표 4] <개정 2020. 2. 20.>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지역	항목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40 이하	120 이하
	총유기탄소량(TOC, mg/L)	120 이하	200 이하
	부유물질량(SS, mg/L)	40 이하	120 이하
	총질소(T-N, mg/L)	120 이하	250 이하
	총인(T-P, mg/L)	40 이하	100 이하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120 이하	150 이하
	총유기탄소량(TOC, mg/L)	200 이하	250 이하
	부유물질량(SS, mg/L)	120 이하	150 이하
	총질소(T-N, mg/L)	250 이하	400 이하
	총인(T-P, mg/L)	100 이하	100 이하

비고

-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의2] <개정 2020. 2. 2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		단위	기준
길이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mm	40 이하
저위발열량		kcal/kg	3,000 이상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
수분		%	20 이하
회분		%	30 이하
황분		%	2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1.2 이하
	카드뮴(Cd)		9.0 이하
	납(Pb)		200.0 이하
	크로뮴(Cr)		70.0 이하

※ 비고

- 성형제품의 형태는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저위발열량(低位發熱量: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숨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회분[灰分: 유기질이 회화(灰化)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 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것),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력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회분이 30%를 초과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9. 12. 20.>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발효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
4.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6] <개정 2020. 2. 2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액비,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다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 1) 정화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 2) 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1.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별표 기 <개정 2023. 1. 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2호·제13호,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제15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설치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폐쇄명령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7호	사용중지명령 1개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폐쇄명령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8호	경고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9호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사용중지명령 3개월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1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1호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사용중지명령 3개월
12)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3)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6항제1호	경고	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2)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6항제2호	경고	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3)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6항제3호	경고	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4)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6항제4호	경고	처리금지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다. 가족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5)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흡입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5)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5호 본문	허가취소			
16)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7)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8)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가)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가)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8)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위 8) 외에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9호				
가)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8] <개정 2019. 12. 20.>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1.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2계열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고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처리과정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5.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거나 시설 외부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가축분뇨관로는 도기·콘크리트·벽돌, 그 밖에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하고,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가축분뇨관로의 방향·경사도 또는 단면적이 변화하는 곳, 단층(斷層)이 생기는 곳, 가축분뇨관로가 합쳐지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15.3.25.>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현황

가. 지리·지형

나. 기온 및 강우량(과거 5년 이상)

다. 토지이용 현황

라. 하천수계 및 이수(利水) 현황(주요 취수장 현황 포함)

마. 지역 재정규모 및 재원

2. 축산 현황 및 전망

가. 지역가축분뇨의 질적 특성

나.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사육 동태(10년 후 전망 포함)

다.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10년 후 전망 포함)

3. 가축분뇨처리체계

가. 가축분뇨처리 실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포함)

나. 연차별 가축분뇨처리계획

다. 가축분뇨처리 관련 부서의 조직·체계

4. 기존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위치,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

나. 유지관리 상황 등

5.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면적, 지목(地目), 지역구분 등

나. 입지 여건(방류선, 동력, 용수확보관계 등)

다. 주거지역과의 관계

라. 도시계획 및 장래 증설계획과의 관계

마.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및 운반거리 등 그 밖의 사항

6.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처리방식

나. 처리방식별 대안 비교(3개 방식 이상)

1) 소요 부지 면적

2) 처리방식의 안정성·내구성

3) 운영관리의 난이도

4)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

7. 방류지점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지점 및 방류선 현황

나. 시설 설치 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상수원·취수장·유원지 등과의 관계

라. 방류지점이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8.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종사자 확보방안

나.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9. 소요 재원 확보방안

가. 사업비(시설비·보상비 등)의 계산

나. 자금조달방법

10.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가. 관련시설의 위치, 용량, 처리방식 및 사업기간

나. 관련시설에서의 연제처리 가능성

11.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농지법」

다. 그 밖의 관련 법규

[별표 10] <개정 2015.3.25.>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8조 관련)

1. 설치기준

- 가.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나.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여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다.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운영기준

- 가. 가축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하거나 생산된 재활용(판매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사. 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검사 또는 분석하거나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아. 퇴비·액비 관리내역 및 액비 살포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 자.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 차.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초지 또는 농경지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토지소유자로부터 액비의 살포동의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미리 액비의 살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1] <개정 2015.12.22.>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삭제 <2015.12.22.>
- 3.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4.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 5.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2] <개정 2015.12.22.>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 삭제 <2015.12.22.>
5.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설계·시공된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8. 펌프 등 기계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20. 2. 20.>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1. 공공처리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처리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명하는 자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비고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4] <신설 2015. 3. 25.>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

1.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
2.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전자인계서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공·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고의로 훼손·분실하거나 자료의 조작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5] <개정 2015. 3. 25.>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0,000원	5,000원
2.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30,000원	15,000원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23,000원	14,000원

제4편 물환경

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714	제1조(목적) 2714	제1조(목적) 2714
제2조(정의) 2714		
제3조(적용 범위) 2715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2715	
		제2조(적용범위) 2716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2716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2716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2717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2717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718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2718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2718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2718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2719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719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2719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720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2721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2721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2721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2721
	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2722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2722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2722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272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2723	제7조(수질기준) 2723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723
제8조(토지등의 매수) 2723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2723	제8조(연평균 수질) 2723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2723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2725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2724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2726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2726	제10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2726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2726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2727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728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2728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2728
		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2729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2729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2730	제10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2730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730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2730
		제18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2731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2731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2732	제11조(사업장 관할) 2732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2732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2732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2733
		제23조(조치명령 등) 2734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2735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2735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2735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2736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2736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2736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273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과징금) 2739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738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2738
제15조(허가 제한) 2740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2738	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2739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2741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2741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739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2742	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2742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2740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2742	제18조의3(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2742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 삭제 2742		제30조 삭제 2742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2742		제31조 삭제 2742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743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2743	제32조(관거의 관리) 2742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2743
제21조(주민지원사업) 2743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2744	제34조(수질 유지기간) 2744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2745	제3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2746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746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2747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2747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274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2749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2749	
제2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2749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2750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2750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2750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2750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2750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4조(수질개선사업) 2751		
제25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2752	제26조(통보 등) 2752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2751
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2753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2755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2756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2755	제28조(자료의 제출) 2756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2755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2757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2756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2757	
	제31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2758	
	제32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2758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2759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2758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2759	
	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2760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2760		
제32조(기금의 재원) 27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기금의 용도) 2761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2762 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2764 제8장 보칙 제37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2764 제38조(개선 요청 등) 2764 제39조(청문) 2765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2766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768 제9장 벌칙 제41조(벌칙) 2768 제42조(양벌규정) 2769 제43조(과태료) 2769 부칙 2770	제35조(기금의 용도) 2761 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2762 제37조(권한의 위임) 2766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2767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67 제37조의4 삭제 2768 제38조(과태료의 부과) 2769 부칙 2770	제39조(규제의 재검토) 2768 부칙 277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2. 1. 14 법률 제6605호 개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3.12.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12.29 법률 제777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6. 9.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법률 제8806호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4호 (건축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29 법률 제927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8.12.31 법률 제9307호 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자관리법)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8. 4 법률 제11020호 (산림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7.30 법률 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반제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1.28 법률 제12366호 2014. 3.18 법률 제12454호 2015.12.2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2016. 1.27 법률 제13872호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7.13 대통령령 제17678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 소수기관직제)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7.26 대통령령 제18067호 (건설교통부와 소수기관직제)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 등중개정령) 2004. 8.10 대통령령 제1851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환경부와 소수기관 직제) 2005. 9.30 대통령령 제19069호 2006.12. 4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사법·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7호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2.31 대통령령 제22599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28 대통령령 제25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5. 9 대통령령 제25344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 7.28 대통령령 제25518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7.12 대통령령 제27339호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정 2002. 7.29 환경부령 제125호 개정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 소수기관직제시행규칙)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소수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사법·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사법의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환경부령 제311호 2010. 1.28 환경부령 제360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5. 9 환경부령 제556호 2014. 7.29 환경부령 제570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26 환경부령 제666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1.17 환경부령 제742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2.17 환경부령 제789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충해가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8. 5 환경부령 제936호 2022. 3.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을 보는 서식 장부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4.13 환경부령 제1028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12.27 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094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12.31 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1. 5.18 법률 제18168호 2021. 6.15 법률 제18284호(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2.12.27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8.16 법률 제19657호 2023.12.26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경쟁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4. 1.30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018. 1.23 대통령령 제28606호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1호(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여러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4호 2023. 5.23 대통령령 제3347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2.13 대통령령 제3422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이하 “금강수계”라 한다)와 금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금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 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설,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 7.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본조신설 2014. 7. 28.]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9., 2020. 12. 1., 2021. 8. 5.>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 1. 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금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전문개정 2008. 12. 24.]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4. 7. 29.]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 17.>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7. 28.> 1. 삭제 <2010. 11. 2.>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2019. 1. 8.>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금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④ 삭제 <2014. 7. 28.>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 -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 2021. 3.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2018. 12. 17., 2021. 8. 5.>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금강 본류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영 별표 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대청댐 상류지역(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다)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 그 밖에 위원회가 금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4. 7. 28.]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제10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24.]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 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 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제10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 7. 2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우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0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통보를 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2014. 5. 9., 2021. 8. 5.>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이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신설 2014. 1. 28.> 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8. 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8.>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 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 4. 28.,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자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10. 1.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指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6. 1. 27.>	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1.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 ②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6.>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2.>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4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4. 1. 28., 2016. 1. 27.,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2021. 3.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0조제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제15조(허가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		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4. 7. 29.〉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2014. 1. 2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 삭제 <2017. 11. 28.>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3. 제18조의2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 [전문개정 2008. 12. 24.] 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중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 제18조의3(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2016. 7. 12.>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08. 12. 24.]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6. 7. 12.>]	제30조 삭제 <2018. 1. 17.> 제31조 삭제 <2018. 1. 17.> 제32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금강본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제3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7. 28.]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4. 5. 9., 2014. 7. 28.>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5.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6.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7. 28.]	제3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 해당 시·군·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본조신설 2014. 7. 29.]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8.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7. 28.>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28.>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개정 2014. 7. 28., 2021. 3. 9.>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1. 법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1. 3. 9.> ⑧ 삭제 <2021. 3. 9.> [전문개정 2008. 12. 2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9. 12. 20.>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삭제 <2023. 4. 13.>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2023. 4. 13.>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4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의 협의를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전문개정 2008. 12. 31.]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6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4. 1. 28.] 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 2016. 12. 27., 2022. 12. 27., 2024. 1.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轉用許可)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 4. 15.>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 1. 3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삭제 <2024. 1. 30.> ⑤ 삭제 <2024. 1. 30.>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1. 국가 또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제9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가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용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 금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회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2. 금강분류 [전문개정 2008. 12. 24.] 제28조(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군수는 제27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 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농산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 12. 24.] 제31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2.> 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8. 12. 24.] 제32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7. 12.>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 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16., 2021. 3.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12.] 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 12. 27.]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3. 8. 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전문개정 2007. 12. 27.]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1. 3. 9., 2024. 2. 13.>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 1. 28.> ②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4.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5. 환경기초조사업 6.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7. 비점오염저감사업 8.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9.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1.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2.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3.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4.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전문개정 2008. 12. 24.] 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 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감량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12. 31., 2023. 12. 26.>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금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장 보칙 제37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 4.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38조(개선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發電用)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9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7. 12. 27.]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삭제 <2018. 1. 23.> 4. 삭제 <2018. 1. 23.>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의 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6.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조치결과와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30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0.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조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24.]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6. 1. 27.] 제9장 벌칙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4. 3. 18.)	[본조신설 2012. 1. 6.]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16. 7. 12.)] 제37조의4 삭제 (2021. 3. 9.)	제3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1.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2016년 1월 1일 1의2. 제20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2.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3.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4. 삭제 (2018. 1. 17.) [본조신설 2014. 4. 3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 11. 28.>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2. 삭제 <2017. 11. 28.> 3. 삭제 <2017. 11. 28.>	제3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삭제 (2008. 12. 31.) ⑤ 삭제 (2008. 12. 31.) ⑥ 삭제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부칙 (제6605호, 2002.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군(광역시의 군 및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부칙 (제17678호, 2002. 7. 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제21조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③(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25호, 200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⑤내지 ⑯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⑬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31일까지 3. 군(광역시외의 군 및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 제5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6조(관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계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구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조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6655호, 2002. 2. 4.>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도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도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부칙 <제18067호, 2003. 7. 2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차전원처리를위한가색방사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5호, 2004. 8. 10.>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②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내지 ③생략 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토지보상에관한특별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916호, 2003. 5. 2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 〈제19069호, 2005.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5호, 2006. 12.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기반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016호,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본문 중 “수질환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9〉 제3조(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360호, 2010.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75호,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②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 2014.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 2014. 7. 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3 및 제3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호, 2016.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6조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87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년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제33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42호, 2018. 1. 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한다. ⑨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부터 ③③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④ 까지 생략 ④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⑥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⑤⑤까지 생략 부칙 <제789호, 2018.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⑫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99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조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조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36호, 2021.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호, 2023.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은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유기탄소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으로 본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7호, 2014. 1.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344호, 2014.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18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㉗내지 ㉞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39호, 2016. 7. 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7조제2호, 제26조, 제28조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㉞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⑥ 부터 ③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06호, 2007.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67번 다음에 67번의2부터 67번의4까지를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data-bbox="126 221 565 381"> <tr> <td data-bbox="126 221 180 271">67의2</td><td data-bbox="180 221 415 271">「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td><td data-bbox="415 221 565 271">건축 등 허가제한지역</td></tr> <tr> <td data-bbox="126 271 180 322">67의3</td><td data-bbox="180 271 415 322">「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td><td data-bbox="415 271 565 322">폐수매출시설 설치제한지역</td></tr> <tr> <td data-bbox="126 322 180 381">67의4</td><td data-bbox="180 322 415 381">「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td><td data-bbox="415 322 565 38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td></tr> </table>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⑥ 부터 ③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4〉 까지 생략 〈50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매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606호, 2018. 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1호, 2019. 1. 8.〉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24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 3)가)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매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3조제67항…〈생략〉…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부터 〈66〉 까지 생략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95항…〈생략〉…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0호, 2024. 2. 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⑯ 부터 <94> 까지 생략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276호,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307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 부터 ③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⑨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⑪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⑨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⑮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⑭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16호,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③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020호,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부터 ㉔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3〉까지 생략 〈49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⑭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㉔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66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의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기등기를 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야 한다.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454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㉔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872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⑮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⑯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⑪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094호, 2017. 11. 28.〉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68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생략 부칙 〈제18168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4호, 2021. 6.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㉔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657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39호, 2023. 12.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태경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 <생략>...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2803
[별표 1의2]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2803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2804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2조제1항 관련)	2806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2806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807

[별표 1] 〈신설 2014.7.28〉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 만 해당한다.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4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5. 생수 생산업	11202	세병(洗瓶)·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 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개정 2021. 3. 9.〉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2] (개정 2021. 3. 9.)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에 나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 중 큰 양으로 한다.

-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6} - 할당오염부하량
 (2)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6} 의 산정방법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을 산정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조업시간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 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2011년	5,800원	25,000원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총인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21. 3. 9.〉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2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 2) 학자금·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개정 2021. 3. 9.〉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주민지원사업 대상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4.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5.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	특별지원사업

비고

1.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마. 삭제 <2018. 1. 23.>				
바. 삭제 <2018. 1. 23.>				
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4호	300	400	500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5호	300	400	500
자.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6호	300	400	50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2811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제10조 관련)	2812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1조제3항제1호 관련)	2813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1조제4항 관련)	2813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4조 관련)	2814
[별표 6] 삭제 <2018. 1. 17.>	2815
[별표 7]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2조제2항 관련)	2815
[별표 8]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5조제1항 관련)	2816
[별표 9] 시·군·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제35조제2항 관련)	2817

[별표 1] <개정 2016. 7. 26.>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또는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금강수계 내의 지역과 금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금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 분	범 위
대전광역시	전 지 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연기면·연동면·부강면·장군면·연서면·천의면·전동면·소정면(고동리, 대곡리만 해당한다)·조치원읍·동지역(반곡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가람동·한솔동·나성동·새롬동·다정동·어진동·충촌동·고운동·아름동·도담동)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당목리·칠장리·두교리만 해당한다)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사리면(노송리·중흥리·소매리·사담리·방축리만 해당한다)·청안면(효근리·문방리·읍내리·금신리·청용리·조천리만 해당한다)
	보은군 내북면(아곡리·이원리·하궁리·신궁리·용수리·상궁리·서지리·세촌리·두평리·대안리·법주리만 해당한다)·속리산면(도화리·삼가리·구병리·만수리만 해당한다)·마로면·보은읍·산외면(문암리·구티리·봉계리·아시리·백석리만 해당한다)·삼승면·수한면·장안면·탄부면·회남면·회인면

구 분	범 위
	음성군 금왕읍(삼봉리·봉곡리·유포리·유촌리·신평리·본대리·쌍봉리·행제리·사창리·오선리·용계리·내송리·도청리·내곡리·각회리만 해당한다)·대소면·맹동면·삼성면(선정리·천정리·용성리·상곡리·청용리·양덕리·덕정리·대사리·대야리·대정리에 한한다)·원남면(보룡리·삼용리·덕정리·마송리·보천리·조촌리·문암리·주봉리만 해당한다)·음성읍(삼생리·동음리·초천리·갑우리만 해당한다)
	청주시 상당구(낭성면 추정리·관정리·현암리·무성리,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영동, 북문로1가, 북문로2가, 북문로3가, 수동, 남문로1가, 남문로2가, 문화동, 서운동, 서문동, 탑동, 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용암동, 용정동,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운동동, 월오동, 남주동, 석교동만 해당한다)·서원구·흥덕구·청원구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계룡시
	부여군 구룡면·규암면·남면·내산면·부여읍·석성면·세도면·양화면·옥산면·은산면·임천면·장암면·초촌면·충화면·흥산면
	서천군 기산면·마산면·마서면(도삼리·계동리·봉남리·장선리·신포리·산내리·어리만 해당한다)·문산면·서천읍(군사리·태월리·둔덕리·동산리·삼산리·화금리·두왕리·사곡리·화성리만 해당한다)·시초면·한산면·화양면
	천안시 동면·목천읍(동리·서리·교촌리·서흥리·덕전리·송전리·석천리·동평리·운전리·지산리·교천리·신계리·남화리·천정리·응원리만 해당한다)·병천면·북면·성남면·수신면
	청양군 남양면·대치면·목면·운곡면(위라리·효제리만 해당한다)·장평면·정산면·청남면·청양읍(읍내리·백천리·교월리·벽천리·적누리·정좌리·군량리·장승리·송방리·청수리·학당리만 해당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무주군, 완주군
	고창군 성내면·신림면(외화리·도림리·무림리·송용리만 해당한다)·흥덕면(하남리·석우리·동사리·제하리·송암리·신송리·용반리·치룡리·흥덕리만 해당한다)

구 분	범 위
	군산시 개정면(아산리·발산리·통사리만 해당한다)·나포면·대야면·서수면·성산면(여방리·대명리·성덕리·산곡리·창오리·둔덕리만 해당한다)·옥구읍·옥산면(금성리·옥산리·당북리만 해당한다)·옥서면·임피면·회현면
	부안군 계화면·동진면·백산면·변산면(중계리·대항리만 해당한다)·보안면(부곡리·상림리·상임석리·하임석리·월천리·남포리·영전리만 해당한다)·부안읍·상서면·주산면·줄포면(난산리·대동리·신리·장동리·파산리만 해당한다)·하선면·행안면
	장수군 계남면·계북면·장계면·장수읍(선창리·노하리·노곡리·송천리·장수리·개정리·동촌리·두산리·수분리·용계리만 해당한다)·천천면
	정읍시 감곡면·고부면·덕천면·북면·산외면·소성면·신태인읍·영원면·웅동면·이평면·입암면·정우면·칠보면·태인면·수성동·하북동·장명동·구룡동·상동·금봉동·송산동·부전동·쌍암동·내장동·시기동·연지동·농소동·영파동·흑암동·용계동·공평동·망제동·하모동·상평동·교과동·삼산동·진산동·신월동·용산동·교암동·신정동
	진안군 동향면·부귀면(궁항리, 황금리, 봉암리, 거석리, 수항리, 두누리, 오룡리, 신정리만 해당한다)·상천면·안천면·용담면·정천면·주천면·진안읍(운산리·군상리·물곡리·구룡리·죽산리·가막리·군하리·단양리·반월리·오천리·가림리만 해당한다)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신곡리·우하리·효곡리·봉산리만 해당한다)·모동면·모서면·화남면(중농리·임곡리·평온리·동관리만 해당한다)·화동면(반곡리·보미리·양지리·신촌리·평산리·선교리·이소리·판곡리만 해당한다)·화서면(봉촌리·울림리·사산리·상용리·상현리·금산리·신봉리·달천리·상곡리·지산리만 해당한다)

[별표 2] <개정 2008.12.31>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제10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bigcirc \text{평균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bigcirc \text{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cdots}{\text{측정횟수}}$$

$$\bigcirc \text{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c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3]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1조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기준배출수질} = e^{(\text{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cdot \text{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dots}{\text{측정횟수}}$$

$$\cdot \text{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닐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_{(a+1)}$$

· a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정수부분, b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_1, X_2, X_3, \dots, X_a, \dots, X_n$ 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_a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_{(a+1)}$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0.1.28>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1조제4항 관련)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text{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실측 평균수질}} \times 10^6$$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2014.7.29>

행정처분의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조 제8항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60일	폐쇄명령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나.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조업정지	폐쇄명령		

비고: 나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 기간 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별표 6] 삭제 <2018. 1. 17.>

[별표 7]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2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시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허용량(L/m)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 강하가 $0.2N/cm^2$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규정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을 채워 넣기 전에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 검사

1) 맨눈 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관거의 균열, 침입수 유무,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유량계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 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 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 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 가) 건기 시 기준(우기 시는 비가 그친 후 비가 내리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분석 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을 하여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16. 7. 26.>

[별표 8] <개정 2014.7.29>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5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 가. I 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 나. II 지역(특별대책지역 안의 수변구역): 4
- 다. III 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I 지역·II 지역·IV 지역 외의 특별대책 지역): 3
- 라. IV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2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I 지역의 면적 × 5) + (II 지역의 면적 × 4) + (III 지역의 면적 × 3) + (IV 지역의 면적 × 2)]

비고: “해당 지역”이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 가. 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20을 곱한 금액
- 나. 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 다. I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 라. IV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08을 곱한 금액

4. 지역별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9] <개정 2014.7.29.>

시·군·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times \{(MA \div TA \times 0.5) + (MP \div TP \times 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8에 따른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편 물환경

03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목 차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2823
제2조(협의·조정 대상)	2823
제3조(회의)	2823
제4조(자문위원회)	2823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2823
제6조(실무위원회)	2823
제7조(사무국)	2824
제8조(여론의 수집)	2824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2824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2824
제11조(운영세칙)	2824
부칙	2824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2. 4. 15 대통령령 제17577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 (농림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0. 3. 4 대통령령 제22070호
 2012. 7.24 대통령령 제239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8. 6 대통령령 제25541호
 2017. 1.31 대통령령 제27820호
 2021. 9. 7 대통령령 제31970호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협의·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31.>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1.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 및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10. 3. 4.]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21. 9. 7., 2021. 12. 28.>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4. 8. 6., 2021. 9. 7.>
1. 전북지방환경청장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2. 삭제 <2021. 12. 28.>
3. 중부지방산립청장
4.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21. 9. 7.>
 1. 금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개정 2012. 7. 24., 2021. 9. 7.>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전문개정 2010. 3. 4.]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4.]

부칙 <제17577호, 2002. 4. 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 ③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금강환경관리청장”을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시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금강환경관리청”을 각각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 ④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부칙** <제19463호, 2006. 4. 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 ⑥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⑬내지 ⑭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⑭내지 ⑫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70호, 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79호, 2012. 7. 2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541호, 201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7820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70호, 2021.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1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4편 물환경

0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836	제1조(목적) 2836	제1조(목적) 2836
제2조(정의) 2836		
제3조(적용 범위) 2837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2837	
		제2조(적용범위) 2838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2838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2838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2839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2839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840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2840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2840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2841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841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2840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842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2840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2843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2842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2843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2843
	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2843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2843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2844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284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2846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2845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2845 제9조(수질기준) 2846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2846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2847 제11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2848	제7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2844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2845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846 제10조(연평균 수질) 2846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2847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2848 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2849	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2849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2849 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2850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2851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의 대상) 2852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2852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852 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2853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의 대상) 2853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2853 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2854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2854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2855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2848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851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2852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2854	제13조(사업장 관할) 285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2857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2858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2858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2858 제1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2860 제1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2861	제25조(조치명령 등) 2856 제26조(행정처분기준) 2857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2858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2860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2861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861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2862
제14조(과징금) 2861		
제15조(허가의 제한) 2862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2863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2863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2864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2864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관리) 2864	제20조의3 삭제 2864	제32조 삭제 2864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2864 제34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 .. 2865 제35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 2865 제36조 삭제 2865 제37조 삭제 2865
제19조 삭제 28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2865		제38조(관거의 관리) 2865
제21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866		제39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2866
제22조 삭제 2866		제40조 삭제 2866
		제41조 삭제 2866
		제42조 삭제 2866
		제43조 삭제 2866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3조(주민지원사업) 2867	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2867	제44조(수질 유지기간) 2867
제23조(주민지원사업) 2868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2868	제4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2868
	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2870	제4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869
		제4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2870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2872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2871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2872	제24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2872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2873		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2873
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2873	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2873	제4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2874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2874	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2874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4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2875
제26조(수질개선사업) 2875	제27조(통보 등) 2876	
제27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287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인·허가등의 의제) 2877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2879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2879		
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2879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2880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2880	
	제29조(자료의 제출) 2880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2881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2881	
	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2882	
	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2882	
	제34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2883	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2883
	제34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2883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2884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2884		
제34조(기금의 재원) 2884		
제35조(기금의 용도) 2885		
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2887	제36조(기금의 용도) 2886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2888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2887	
제38조(기금의 회계기관) 288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39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2889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2889 제41조(개선요청 등) 2890 제42조(청문) 2891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2891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893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2894 제45조(양벌규정) 2895 제46조(과태료) 2895 부칙 2896	제38조(권한의 위임) 2891 제38조의2(업무의 위탁) 2892 제3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93 제38조의4 삭제 2893 제39조(과태료의 부과) 2895 부칙 2896	제49조(규제의 재검토) 2893 부칙 289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2. 1. 14 법률 제6606호 개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등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3. 12. 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 2004. 12. 31 법률 제7292호 (수해해학물질관리법) 2005. 3. 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 27 법률 제801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4. 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 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 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 11 법률 제8371호 (해기물관리법) 2007. 5. 17 법률 제848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 12. 27 법률 제8807호 2007. 12. 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 21 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2008. 3. 21 법률 제8974호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 12. 31 법률 제9310호 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1. 4. 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 28 법률 제10616호 (환경변경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8. 4 법률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7. 30 법률 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 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1. 28 법률 제12367호 2014. 3. 18 법률 제12457호 2014. 3. 24 법률 제12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5. 12. 2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제정 2002. 7. 13 대통령령 제17676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소속기관직제)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4호 2003. 7. 26 대통령령 제18067호 (건설교통부와소속기관직제)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68호 2006. 12. 4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6호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7호 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집단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전자문서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0호 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 28 대통령령 제25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5. 9 대통령령 제25343호 2014. 7. 28 대통령령 제25517호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7. 12 대통령령 제27338호 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1. 23 대통령령 제28605호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2호	제정 2002. 7. 29 환경부령 제123호 개정 2002. 8. 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 10. 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12. 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 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민환경과 혁신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12. 31 환경부령 제310호 2009. 8. 3 환경부령 제345호 2012. 6. 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병령서식 개선을 위한 공공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5. 9 환경부령 제555호 2014. 7. 29 환경부령 제569호 2014. 12. 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 12. 31 환경부령 제58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12. 31 환경부령 제633호 (병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공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 7 환경부령 제662호 2016. 12. 30 환경부령 제68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 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1. 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주택법 등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1. 17 환경부령 제744호 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래의 법령명칭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7. 17 환경부령 제875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8. 5 환경부령 제935호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4. 13 환경부령 제1029호 2023. 10. 19 환경부령 제105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1.27 법률 제13873호 2016. 1.27 법률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27 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096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1. 5.18 법률 제18169호 2021. 6.15 법률 제18284호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2.12.27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4.18 법률 제19360호 2023. 6. 7 법률 제19427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 8.16 법률 제19658호 2024. 1.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7.21 대통령령 제30863호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3호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7호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25 대통령령 제33431호 2023. 5.23 대통령령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역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대통령령) 2024. 2.13 대통령령 제3421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1. 11. 16., 2014. 1. 28., 2018. 1. 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잦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 7. 21.>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5호 이상 9호 이하의 가구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독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 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자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	을 말한다.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	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 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放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 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본조신설 2014. 7. 28.]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20. 12. 1., 2021. 8. 5.>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조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4. 7. 2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4. 1. 28., 2021. 5. 1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승인·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개정 2014. 7. 28.> 1. 낙동강본류: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한다):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관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2014. 1. 28.> 1.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 1. 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9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전문개정 2008. 12. 24.]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 17.>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7. 28.> 1. 삭제 <2010. 11. 2.>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2019. 1. 8.>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④ 삭제 <2014. 7. 28.>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2021. 8. 5.>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삭제 <2021. 8. 5.>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6. 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역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장 오염총량관리의 실시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	제11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 2021. 3.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역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4. 7. 28.] 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2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24.]	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 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낙동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7.>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7. 7.>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7.]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		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 7. 7., 2021. 8. 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7.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제13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7.>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를 이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2014. 5. 9., 2021. 8. 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 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 유량계(합산유량계)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계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8. 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5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 유량계(합산유량계)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계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8. 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5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 4. 28., 2014.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전문개정 2008. 12. 31.] 제26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2조제9항(법 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 8. 3., 2014. 7. 29.> ② 관리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6. 1. 27.>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1.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2.>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7.>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7.]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7.>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6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 7. 12., 2021. 3.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제15조(하기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별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합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1. 6. 15.> [전문개정 2007. 12. 27.]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삭제 <2014.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빗물·오수·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전문개정 2008. 12. 24.]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2016. 7. 12.>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08. 12. 24.] 제20조의3 삭제 <2021. 3. 9.>	제32조 삭제 <2014. 12. 31.>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17.>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6. 4., 2014. 3. 24., 2017. 1. 17.)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수배출시설 중 「환경정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③ 삭제 <2014. 3. 24.> ④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⑦ 삭제 <2014. 3. 24.>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3. 24.] 제19조 삭제 <2017. 11. 28.>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① 「환경정보전법」 제51조에 따른		2. 「환경정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제34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제35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제36조 삭제 <2018. 1. 17.> 제37조 삭제 <2018. 1. 17.> 제38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1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22조 삭제 <2016. 1. 27.>		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0조 삭제 <2016. 7. 7.> 제41조 삭제 <2016. 7. 7.> 제42조 삭제 <2016. 7. 7.> 제43조 삭제 <2016. 7.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해당 시지역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이 1개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21., 2023. 4. 25.>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를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	제4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 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7. 28.]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제4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8. 5.>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비율 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나.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 전체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의 댐주변지역 면적 비율 2.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 해당 시·군·구의 주민편의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본조신설 2014. 7. 2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24. 2. 6.>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6.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7. 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제4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4. 8. 7.] 제23조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7. 28.] 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14. 7. 28.>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28.>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개정 2009. 6. 30., 2014. 7. 28., 2021. 3. 9.>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30.,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말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제4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 기준)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8. 3., 2014. 7. 29.> 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8. 3.,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21. 3. 9.) 1.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⑦ 삭제 <2021. 3. 9.> ⑧ 삭제 <2021. 3.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24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	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 방향 2. 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3.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9.]
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9. 12. 20.>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삭제 <2023. 4. 13.>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1. 1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6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2018. 1. 17., 2023. 4. 13. >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전문개정 2008. 12. 31.] 제4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시장·군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7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4. 1. 28.] 제28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 2016. 12. 27., 2022. 12. 27., 2024. 1.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 4. 15.)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 1. 3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삭제 <2024. 1. 30.> ⑤ 삭제 <2024. 1. 30.>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7.>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제11호·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용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2. 6. 14., 2023. 4. 25.> 1. 낙동강본류 2.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다목적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제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전문개정 2008. 12. 24.] 제29조(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낙동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20. 7. 21.>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군 지역 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농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 [전문개정 2008. 12. 24.]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2.> 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8. 12. 24.] 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7. 12.>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4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34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16., 2021.	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3.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12.]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 12. 27.]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3. 4. 18., 2023. 8. 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지원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삭제 (2016. 1. 27.)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전문개정 2007. 12. 27.]	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8. 1. 16., 2019. 1. 8., 2020. 7. 21., 2021. 3. 9., 2024. 2. 13.>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2002년 7월 14일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및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의2.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가. 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나. 원수에 대하여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 원수 중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월평균 농도와 과불화옥탄산(PFOA)의 월평균 농도의 합계가 리터당 0.07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라. 원수 중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월평균 농도가 리터당 0.48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마. 원수의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 1. 28.> 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34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8. 환경기초조사사업 9.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2.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3.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4.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5.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전문개정 2008. 12. 24.]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7. 12. 27.]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31., 2023. 6. 7.>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판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판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장 보칙 제39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 4.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2020. 12. 31.> 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41조(개선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이전(移轉)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潮流)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42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 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삭제 <2018. 1. 23.> 4. 삭제 <2016. 7. 12.> 5. 삭제 <2018. 1. 23.>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사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 명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6. 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 명령 7.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조치결과와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8. 삭제 <2016. 7. 12.>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10.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1. 법 제32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2의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13. 제12조제3항에 따른 구역의 하단지점에서의 수질의 측정·확인 [전문개정 2008. 12. 24.] 제38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6. 1. 27.]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 제3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2016. 7. 12.>] 제38조의4 삭제 <2021. 3. 9.>	제4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4. 3. 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설치·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11. 28.>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4. 12. 31.> 1.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임소정원: 2016년 1월 1일 1의2.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2. 제24조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3.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4. 삭제 <2014. 12. 31.> 5. 제35조에 따른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선 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6. 삭제 <2018. 1. 17.> [본조신설 2014. 4. 3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4. 삭제 <2016. 1.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4. 삭제 <2017. 11. 28.> 5. 삭제 <2017. 11. 28.>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3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삭제 <2016. 1. 27.> 9. 삭제 <2016. 1. 27.> 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④ 삭제 <2008. 12. 31.> ⑤ 삭제 <2008. 12. 31.> ⑥ 삭제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부칙 <제6606호, 2002.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7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부칙 <제17676호, 2002.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건설된 댐의 댐주변지역에 대하여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 및 “댐건설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제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이후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함에 있어서 협의·조정당시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낙동강 최하류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부칙 <제123호, 200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2004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완충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의 여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狀), 수질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지역별 수질과 연동하여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⑦내지 ⑯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 제5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6조(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거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이용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재이용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8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1년간”으로 하고,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단단지토 고시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산단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및 과징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⑯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984호, 2003.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7호, 2003. 7. 2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5호, 2004. 8. 10.>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③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⑥생략 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보아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6655호, 2002. 2.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⑧내지 ③생략 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 <제19068호, 2005.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5호, 2006. 12.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916호, 2003. 5. 2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내지 ⑰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016호,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터 ⑱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 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9> 제3조(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345호, 2009.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292호, 2004. 12. 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 부터 ②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 2014.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 2014. 7. 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3 및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⑧ 내지 ⑩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86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86호, 2014. 12.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 2016.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⑩ 내지 (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87호, 2009. 6. 30.>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2〉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0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97호, 2011. 11.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⑧부터 ②0까지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①1까지 생략 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744호, 2018. 1. 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7호, 2014. 1.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 2020.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35호, 2021.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㉑내지 ㉔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㉔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343호, 2014.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17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 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⑧ 부터 ③ 까지 생략	부칙 <제27338호, 2016. 7. 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호, 제21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5호, 제32조제2항, 제34조의2, 제38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제12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생략 부칙 〈제8807호, 2007.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0번 다음에 70번의2부터 7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data-bbox="126 711 565 871"> <tr> <td>70의2</td><td>「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td><td>건축허가 제한지역</td></tr> <tr> <td>70의3</td><td>「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td><td>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td></tr> <tr> <td>70의4</td><td>「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td><td>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td></tr> </table>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허가 제한지역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⑩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㉔까지 생략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허가 제한지역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5> 까지 생략 <50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0호, 2008. 3. 21.> (도시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605호, 2018. 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2호, 2019.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63호, 2020.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23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 3)가) 비고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생략>…, 제13조제68항…<생략>…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⑭ 부터 <67> 까지 생략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및 <7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⑥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⑦부터 ⑳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431호, 2023. 4.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19호, 2024. 2. 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생략〉…제96항…〈생략〉…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 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⑲ 부터 〈95〉 까지 생략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 조”로 한다. 〈9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10호, 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기존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제18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 여 건,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狀), 수질오염사 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하는 공업지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고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⑥ 부터 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⑫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⑱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⑰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16호,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③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020호,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4〉까지 생략 〈49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부터 ㉔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4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㉒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2367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가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457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9호, 2014. 3.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 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7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⑨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095호, 2017. 11. 28.>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경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69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4호, 2021. 6. 15.>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②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60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427호, 2023. 6.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658호, 2023. 8.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228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2931
[별표 1의2]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2931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2932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3조제1항 관련)	2934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3조제2항 관련)	2935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2935

[별표 1] <신설 2014.7.28>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 만 해당한다.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4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5. 생수 생산업	11202	세병(洗瓶)·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개정 2021. 3. 9.>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2] (개정 2021. 3. 9.)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과 나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⁶ - 할당오염부하량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⁶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을 산정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조업시간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제(합산유량제)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제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은 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2011년	5,800원	25,000원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총인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지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나.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다.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라.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마.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바.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를 곱한 값
사.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아.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오염총량초과과징금} = (\text{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times \text{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text{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21. 3. 9.>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3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 2) 학자금·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개정 2014.7.28>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상수원관리지역과 중북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4.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5. 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	특별지원사업

비고

- 상수원관리지역에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을 오염물 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2호	300	400	500
바.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3호	300	400	500
사. 삭제 <2018. 1. 23.>				
아. 삭제 <2018. 1. 23.>				
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6호	300	400	500
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7호	300	400	500
카. 삭제 <2016. 7. 12.>				
타. 삭제 <2016. 7. 12.>				
파. 삭제 <2016. 7. 12.>				
하.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10호	300	400	50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2939
[별표 2]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2940
[별표 3]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2조 관련)	2941
[별표 4]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2941
[별표 5]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2942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2942
[별표 7]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제34조 관련)	2943
[별표 8] 삭제 <2018. 1. 17.>	2944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	2944
[별표 10]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	2946
[별표 11]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	2946

[별표 1] (개정 2016. 7. 7.)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낙동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낙동강 또는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낙동강수계 내의 지역과 낙동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낙동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 분	범 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식만동·죽동동·봉림동·강동동·대저1동·대저2동·명지동·생곡동·구랑동·범방동·지사동·미음동
	금정구 금성동
	북구 구포동·금곡동·만덕동·덕천동·화명동
	사상구 감전동·괘법동·염곡동·오라동·덕포동·삼락동·주례동·학장동
대구광역시	전 지 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이천리·소호리만 해당한다)
강 원 도	대백시 금천동·동점동·문곡동·소도동·장성동·철암동·화전동·황지동·통동·백산동·혈동
경상북도	안동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봉화군(춘양면 중 우구지리는 제외한다),
	청송군(부동면 중 내룡리·라리·항리는 제외한다)
	경주시 산내면(내일리·대현리·신원리·외칠리·내칠리·우라리·감산리·외곡리·일부리만 해당한다), 서면(하화리만 해당한다)
	문경시(동로면 명전리, 가은읍 완창리의 일부는 제외한다)
	포항시 죽장면(가사리·감곡리·두마리·매현리·방흥리·봉계리·석계리·월평리·일광리·입암리·정자리·지동리·침곡리·합덕리·현내리만 해당한다)
	영주시(부석면 남대리·단산면 마락리는 제외한다)

구 분	범 위
	영천시 고경면(가수리·고도리·논실리·단포리·대성리·대의리·덕암리·덕정리·도암리·동도리·부리·삼귀리·삼산리·삼포리·상덕리·상리리·석계리·오류리·용전리·전사리·차당리·창상리·창하리·청정리·초일리·칠전리·파계리·학리·해선리만 해당한다)·조교동·망정동·야사동·연하동·신기동·문내동·문외동·창구동·과전동·오미동·녹전동·도림동·매산동·교촌동·성내동·화흥동·오수동·쌍계동·대전동·서산동·도동·금노동·범어동·작산동·봉동·도남동·본촌동·채신동·괴연동·완산동·금호읍·대창면·북안면·신령면·임고면·자양면·청동면·화남면·화북면·화산면
	상주시 냉림동·낙상동·중덕동·화산동·계산동·신봉동·가장동·양촌동·지천동·오대동·흥각동·성하동·성동동·거동동·인평동·서곡동·모서면(대포리만 해당한다)·낙양동·개운동·연원동·남장동·내서면·인봉동·북룡동·서성동·서문동·화개동·외담동·현신동·병성동·도남동·무양동·초산동·부원동·죽전동·만산동·남적동·공검면·낙동면·사벌면·외남면·외서면·은척면·이안면·중동면·청리면·함창읍·화동면(어산리만 해당한다)·공성면(거창리·금계리·도곡리·무곡리·봉산리·산현리·영오리·오광리·옥산리·용신리·용안리·이화리·인창리·장동리·초오리·평천리만 해당한다)·화북면(유유리·장암리·상오리만 해당한다)·화서면(상곡리·하송리만 해당한다)·화남면(동관리만 해당한다)
	영양군 석보면·영양읍·일월면·임암면·청기면·수비면(신암리·계리·송하리·죽파리만 해당한다),
	울진군 서면(광화리·전곡리만 해당한다)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창원시 동읍·대산면·북면
	마산시 내서읍
	사천시 곤명면(금성리·마곡리·본촌리·상정리·성방리·송림리·신흥리·연평리·은사리·작팔리·청곡리·봉계리만 해당한다)·곤양면(홍사리만 해당한다)
	양산시 교동·유산동·어곡동·다방동·남부동·중부동·북부동·명곡동·상북면·물금읍·신기동·북정동·산막동·호계동·동면(사송리·내송리·석산리·금산리·가산리만 해당한다)·원동면·하북면
	진주시 가좌동·호탄동·강남동·망경동·주악동·칠암동·본성동·남성동·인사동·동성동·대안동·평안동·수정동·장대동·충안동·계동·봉곡동·봉래동·수정동·상대동·상봉동·하대동·상평동·신안동·옥봉동·이현동·유곡동·초전면·장재동·하촌동·판문동·평거동·귀곡면·금곡면·금산면·명석면·문산읍·미천면·내동면·대곡면·대평면·사봉면·수곡면·이반성면·일반성면·지수면·진성면·집현면

구 분	법 위
	고성군 개천면·영오면·영현면·대가면(갈천리·송계리·신전리만 해당한다)
	하동군 옥종면
전라북도	남원시(아영면·인월면·운봉읍·산내면만 해당한다)
전라남도	구례군(산동면 좌사리만 해당한다)

[별표 2] <개정 2017. 1. 19.>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1.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 것
2. 빗물 등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는 곳에 설치할 것
3. 식생(植生), 초지대,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가. 경사도는 100분의 5 이하로 하고 유출수가 이 지대를 통과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나. 설치 폭은 각각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초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낙동강분류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비고: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될 경우 이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갈음하여 사업장에서 유출되는 빗물 등을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낼 수 있는 관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08.12.31>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2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bigcirc \text{평균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bigcirc \text{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cdots}{\text{측정횟수}}$$

$$\bigcirc \text{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c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4]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bigcirc \text{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text{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1.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기준배출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right)$$

$$\cdot \text{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cdots}{\text{측정횟수}}$$

$$\cdot \text{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cdots\}}{\text{측정횟수} - 1}}$$

2.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_{(a+1)}$$

- a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정수부분, b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_1, X_2, X_3, \cdots, X_a, \cdots, X_n$ 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_a 는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_{(a+1)}$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bigcirc \text{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실측평균수질}} \times 10^6$$

-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조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차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60일	폐쇄명령

위반 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해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18조 제6항	조업정지	폐쇄명령		
나.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60일	폐쇄명령
라.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에 조업을 한 경우		조업정지	폐쇄명령		

비고: 나목 및 라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별표 기] <개정 2014.12.31.>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제34조 관련)

- 삭제 <2014.12.31.>
-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유출차단시설 등에 대한 설치·운영기준
 - 일반사항
 -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 내 조업장해 시 수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와 그 조치의 설명 등을 적은 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집수시설은 자연유하식 구조로 하며, 집수시설의 규모는 사업장에 대한 초기 강우량과 소화수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규모, 대상 독성물질 종류, 저장·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집수시설은 평상시에는 비워 놓아야 한다.
 - 수압·토압·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바닥과 벽은 처분 시점까지 충분히 밀봉하여야 한다.
 - 집수시설은 과충전이 제때에 인지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 다수의 저장소 또는 배출시설에 하나의 공동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용적량은 개별 시설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양 중 최대의 용적량을 기준으로 한다.
-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 설치·운영기준
 -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의 역류능력은 수질오염물질 종류 및 시설 종류·용량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압·토압·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빈틈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포집공간을 설치해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야 한다.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8] 삭제 <2018. 1. 17.>

[별표 9]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아니하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누수 허용량 (L/m)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text{N}/\text{cm}^2$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을 채워 넣기 전에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 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 검사

1) 맨눈 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관거의 균열, 침입수 유무,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유량계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16. 7. 7.>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가) 건기 기준(우기 시는 비가 그친 후 비가 내리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분석 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을 하여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합류식 하수도월류수(Combined Sewer Overflows: CSOs) 및 초기강우 오염부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처리구역 또는 처리 분구(分區)에서 발생하는 합류식 하수도월류수와 분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의 초기 강우 오염부하의 발생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 지점 또는 처리구역 및 처리 분구의 주요 우수토실(토사 등이 관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류식 관거인 경우 우수관의 토구(吐口)에서 측정한다.

3) 유량측정

가)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수로형 유량측정기, 적산유량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나) 계절별(동절기 제외) 2회 이상 우기 시에 측정한다. 이 경우 유량측정일 이전 5일 이상 비가 내리지 아니한 날을 선택하여 측정한다.

다) 합류식 하수도월류수 및 분류식 관거의 우수 유출수는 월류 또는 유출이 시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 측정하고, 월류 또는 유출 초반부에는 가능하면

짧은 간격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강우 상태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수질조사 및 조사횟수

가) 분석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나) 조사횟수: 측정 시마다 시료를 6회(강우 초반부는 4회, 후반부는 2회) 채취한다.

[별표 10] <개정 2014.7.29>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 가. I 지역(상수원보호구역): 3
 - 나. II 지역(수변구역): 2
 - 다. III 지역(댐주변지역. I 지역 및 II 지역은 제외한다): 1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I 지역의 면적 × 3) + (II 지역의 면적 × 2) + (III 지역의 면적 × 1)}

비고: “해당 지역”이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 가. 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9를 곱한 금액
 - 나. 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7을 곱한 금액
 - 다. I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4를 곱한 금액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11] <개정 2014.7.29>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times \{(MA \div TA \times 0.5) + (MP \div TP \times 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10에 따른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편 물환경

05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목 차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2951
제2조(협의·조정 대상)	2951
제3조(회의)	2951
제4조(자문위원회)	2951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2951
제6조(실무위원회)	2951
제7조(사무국)	2952
제8조(여론의 수집)	2952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2952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2952
제11조(운영세칙)	2952
부칙	2952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2. 4. 15 대통령령 제17576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 (농림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0. 3. 4 대통령령 제22069호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19호
 2021. 9. 7 대통령령 제31969호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협의·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31., 2024. 6. 4.>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1.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10. 3. 4.]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7., 2021. 12. 28.>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9. 7., 2024. 6. 4.>

 1. 대구지방환경청장
 2. 삭제 <2021. 12. 28.>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3. 남부지방산림청장
4.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전문개정 2010. 3. 4.]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4.]

부칙 〈제17576호, 2002. 4. 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 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63호, 2006. 4. 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3조 생략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⑯ 내지 ⑳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69호, 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819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69호, 2021.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1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제34550호, 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4편 물환경

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961 제2조(정의) 296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96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963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2963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2965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2966 제7조 삭제 2968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2968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2970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2972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29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961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2964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2965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2965 제5조 삭제 2968 제6조 삭제 2968 제7조 삭제 2968 제8조 삭제 2968 제9조 삭제 2968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2968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29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961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2963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2968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2970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2972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2972 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297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2978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2978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2974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2974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2979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2978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2978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2980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 2979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2979
제13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981	제15조(의견제출 기간) 2981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2979
제1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2983	제16조(설치기준 등) 2981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2982
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2984	제17조(수질검사) 2983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2983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2984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984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2985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2985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2985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2985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2986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2986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2987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298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2987 제22조(연구·개발 촉진 등) 2988 제23조(재정지원 등) 2988 제24조(보고 및 감사) 2988 제24조(보고 및 감사) 2989 제25조(청분) 2989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2990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2992 제28조(과태료) 2992 제28조(과태료) 2994 부칙 2996	제4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 2990 제20조(업무의 위탁) 2991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2992 제5장 벌칙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2992 부칙 2996	제4장 보칙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2987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2988 제20조(규제의 재검토) 2992 부칙 299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0. 6. 8 법률 제1039호 개정 2013. 7.16 법률 제11908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도로법) 2015. 3.27 법률 제13260호 2016. 1.27 법률 제13876호 2016. 1.27 법률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17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8.12.24 법률 제16080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2. 1.11 법률 제18750호(수도법) 2022.11.15 법률 제19045호(간축법) 2022.12.13 법률 제19087호 2024. 1.23 법률 제20115호 2024. 1.30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2011. 6. 8 대통령령 제22967호 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5.22 대통령령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 7.16 대통령령 제25479호 (소자·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 4.20 대통령령 제26205호 (소자·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6. 8 대통령령 제3172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 3.25 대통령령 제3255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자극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2011. 6. 9 환경부령 제417호 개정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17 환경부령 제564호 2015. 9. 4 환경부령 제613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2.24 환경부령 제852호 2022.12.19 환경부령 제1013호 (차적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 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의2.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전망 등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법 제6조제1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 3. 27.>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16. 1. 27., 2017. 1. 17., 2022. 1. 11.>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2.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3.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2024. 1. 23.>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 3. 27.>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16. 1. 27., 2017. 1. 17., 2022. 1. 11., 2024. 1. 23.>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4. 1. 23.>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4. 1. 23.> [시행일: 2024. 7. 24.] 제6조 제7조 삭제 (2016. 1. 27.)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제5조 삭제 (2021. 12. 28.) 제6조 삭제 (2021. 12. 28.) 제7조 삭제 (2021. 12. 28.) 제8조 삭제 (2021. 12. 28.) 제9조 삭제 (2021. 12. 28.)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 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3.> ④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3.> ⑤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2. 12. 13.>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5. 26., 2022. 12. 13.>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2024. 1. 23.>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4.> 1. 음용(飲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수기 등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 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 1. 23.>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2024. 1. 23.>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3., 2024. 1. 23.> 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3., 2024. 1. 23.> ⑥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2024. 1. 23.> ⑦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2. 12. 13., 2024. 1. 23.> ⑧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5. 26., 2022. 12. 13., 2024. 1. 2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4. 7. 24.] 제8조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2022. 11. 15.>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류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제7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3.> ⑤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4., 2020. 2. 24.>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⑦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2. 12. 13.> ⑧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2.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 9. 4.> 1. 청소·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2. 세척·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3.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4.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5.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6.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13.)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2. 12. 13.> 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5. 26., 2022. 12. 13.>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2022. 11. 15., 2024. 1. 23.>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4. 삭제 <2024. 1. 2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삭제 (2024. 1. 23.) 6. 삭제 (2024. 1. 23.) 7. 삭제 (2024. 1. 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23.)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 1. 23.)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2024. 1. 23.> ⑤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3., 2024. 1. 23.> ⑥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3., 2024. 1. 23.> ⑦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2024. 1. 23.> ⑧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2. 12. 13., 2024. 1. 23.> ⑨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2. 12. 13., 2024. 1. 23.> ⑩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속하거나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2. 12. 13., 2024. 1. 23.> ⑪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5. 26., 2022. 12. 13., 2024. 1. 23.) [시행일: 2024. 7. 24.] 제9조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2020. 2. 24.) 1.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圖: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용을 나타낸 도면) 3. 공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6.]	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 6. 8.> ⑤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5.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사업의 효과 분석서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7. 17.> [제목개정 2014. 7. 17.]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17.>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면허·승인·해제·심사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의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사용개시 예정일 6. 그 밖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 ⑥ 삭제 <2018. 6. 8.>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7. 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처리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승인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제15조(의견제출 기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 17., 2018. 1. 16.> 1. 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③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제목개정 2013. 7. 16.]	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온배수 재이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 2014. 5. 22., 2014. 7. 16., 2019. 7. 9., 2022. 3. 25.>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 4. 20.> 8. 삭제 <2011. 11. 23.>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가 좁은 경우 2.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것이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설치비 또는 운영관리비가 덜 드는 경우 [전문개정 2014. 7.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제목개정 2013. 7. 16.]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1. 그 밖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 7. 17.>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2. 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3.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7. 17.>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5. 9. 4.> 1.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6.]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9.〉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7., 2020. 2. 24.〉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분기(分岐)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16.) [제목개정 2013. 7. 16.]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0. 5. 26.) 1.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7.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사설업 등록을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제목개정 2013. 7. 16.]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시공할 것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6.> [제목개정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5. 9.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5. 9. 4.> [제목개정 2014. 7. 17.]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험기기의 변경 2. 기술인력의 증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 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제목개정 2013. 7. 16.]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17.> [제목개정 2014. 7. 17.] 제4장 보칙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연구·개발 촉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 물의 재이용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기술지원 사업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의 기술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4. 7.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2022. 12. 13.> -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 -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2022. 12. 13., 2024. 1. 23.> - 제8조제6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 -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일: 2024. 7. 24.] 제24조 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17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2024. 1. 23.> 1. 제17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시행일: 2024. 7. 24.] 제25조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5.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6. 삭제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1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검사 중 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제20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1.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2.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 2.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3. 제16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4. 제17조에 따른 하·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14년 7월 17일 5.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7월 17일 [전문개정 2014. 7. 16.] 제5장 벌칙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1의2.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2. 제15조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014년 7월 17일 3.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17일 [본조신설 2014. 4. 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2. 13.> -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2. 13.> -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 제8조제4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제9조제8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제9조제10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3. 27.>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2. 13., 2024. 1. 23.> 1.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24. 1. 23.>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2. 13., 2024. 1. 23.> 1.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6.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제9조제1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3. 27., 2024. 1. 23.> [시행일: 2024. 7. 24.] 제28조 부칙 <제10359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 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부칙 <제22967호, 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417호, 2011.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 2014. 7. 1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 2015.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II.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13호, 2011. 11.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한다. 제2조(중수도 등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 재이용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중수도의 소유자들”이라 한다)의 선택에 따라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화장실용수 또는 세척·살수용수로 본다. 다만, 중수도의 소유자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도시 재이용수의 변경된 용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시·도지사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 등 유지용수로 본다. 부칙 <제74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 부칙 〈제11908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온배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 2020.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 2022. 12. 1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 2023. 1. 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260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6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58호, 2014. 5. 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479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④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80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로 한다. (32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205호, 2015. 4. 2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750호, 2022. 1.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9045호, 2022. 11. 15.〉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9087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로 한다. 〈24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20115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⑮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28948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14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9742호, 2019. 5. 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하수도정관”을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28호, 2021.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2251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2557호, 2022. 3.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868호, 2022. 8. 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2호, 2022. 12. 30.〉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3007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3008

[별표 1] (개정 2022. 8. 9.)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제도설비 한 세트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총대장균군수

2) 결합잔류염소

3) 탁도(NTU)

4) 삭제 <2017. 12. 12.>

5)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6) 냄새

7) 색도(도)

8) 총질소(T-N)

9) 총인(T-P)

10) 수소이온농도(pH)

11) 염화물

12) 농업용수 측정항목: 알루미늄(Al), 비소(As), 총붕소(B-total), 카드뮴(Cd), 6가 크로뮴(Cr⁶⁺), 코발트(Co), 구리(Cu), 납(Pb), 리튬(Li), 망간(Mn), 수은(Hg), 니켈(Ni), 셀레늄(Se), 아연(Zn), 시안(CN),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전기전도도

비고

1.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 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

를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인력

용량	기술인력
10,000m ³ /일 이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10,000m ³ /일 이상 50,000m ³ /일 미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50,000m ³ /일 이상 100,000m ³ /일 미만	1) 수질관리기술사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100,000m ³ /일 이상	1) 수질관리기술사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용량	기술인력
	나)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1의2. 해당 분야의 경력은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2. 수질관리기술사는 상하수도기술사, 화공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공학박사(수질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 또는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 나.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 다.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5.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2.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250	35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1호	150	200	300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제1호	50	70	100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2호	150	200	300
마.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3호	150	200	300
사.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250	350	500
아.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4호	150	200	300
자.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제2호	50	70	100
차.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5호	150	200	300
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6호	150	200	300
타.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파.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7호	15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하.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거.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8호	150	200	300
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250	350	500
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제3호	50	70	100
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4호	500	700	1,000
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500	700	1,00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3013
[별표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	3014
[별표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	3015

[별표 1] <개정 2018. 1. 17.>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mL)	불검출	1,000이하	1,000이하	불검출	1,000 이하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비고 2의 기준을 따를 것
결합잔류염소 (mg/L)	0.2이상	-	-	0.1 이상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5 이하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 (도)	20 이하	-	-	10 이하	-	
총질소 (T-N)(mg/L)	-	-	-	10 이하	20 이하	
총인 (T-P)(mg/L)	-	-	-	0.5 이하	0.5 이하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mgCl/L)	-	-	250 이하	-	-	

비고

-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타 사업장으로 중수도 원수를 이송 후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수도 원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중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중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

[별표 2] (개정 2019. 12. 20.)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제14조 관련)

구분	청수·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충전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ml)	불검출	1,000 이하	1,0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직접 식용	불검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함
결합잔류염소 (mg/L)	0.2 이상	-	-	0.1 이상	-	간접 식용	200 이하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직접 식용	2 이하		
						간접 식용	5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5 이하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8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도)	20 이하	-	-	10 이하	-	-			
총질소 (T-N) (mg/L)	-	-	-	10 이하	20 이하	-			
총인 (T-P) (mg/L)	-	-	-	0.5 이하	0.5 이하	-			
수소이온 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구분	청수·화장실 용수	세척·살수 용수	조경 용수	친수 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 용수
염화물 (mgCl/L)	-	-	250 이하	-	-	-			
전기전도도 (μ S/cm)	-	-	-	-	-	직접 식용 700 이하	간접 식용 2000 이하		

비고

1.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직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적용하고, 간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쳐 먹는 경우에 적용하며,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위: mg/L)

알루미늄 (Al)	비소 (As)	총붕소 (B-total)	카드뮴 (Cd)	6가크로뮴 (Cr ⁶⁺)	코발트 (Co)	구리 (Cu)	납 (Pb)
5 이하	0.05 이하	0.75 이하	0.01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0.2 이하	0.1 이하
리튬 (Li)	망간 (Mn)	수은 (Hg)	니켈 (Ni)	셀레늄(Se)	아연 (Zn)	시안 (CN)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2.5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0.2 이하	0.02 이하	2 이하	불검출	불검출

2.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 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의 경우 알루미늄(Al), 총붕소(B-total),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의 급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 발광분광법에 준하되, 코발트(Co)는 측정파장 228.616, 정량한계 0.01mg/L, 리튬(Li)는 측정파장 670.784, 정량한계 0.50mg/L로 한다.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여 송수하는 수질에 대하여 적용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재처리수의 기준보다 강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4호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설계·시공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제4편 물환경

07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034	제1조(목적) 3034	제1조(목적) 3034
제2조(정의) 3034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3035
		제3조(수질오염물질) 3035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3035
		제5조(공공수역) 3035
		제6조(폐수배출시설) 3035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3036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3036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3036
		제8조의3(물놀이행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3037
제3조(책무) 3038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고시) 3039	제9조(오염총량관리수질의 승인신청) 3040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3038	제3조(오염총량관리수질의 고시·공고 등) 3039	제10조(총량관리 단위구역 수질 측정방법) 3041
제4조의2(오염총량관리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3039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3041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3041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3041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3041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3042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3042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3042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기준 등) 3043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3043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3044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3044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3044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3044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3046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3045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3045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3048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3048	제17조(조치명령 등) 3046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3048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3047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3048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3048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3049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3051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3052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3052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3052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3053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3053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3054		
제6조의2(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3054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3054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054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 1. 17.〉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6.〉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절 총칙 <개정 2013. 7. 30.>	제1절 총칙	제1절 총칙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3055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3055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3056		제23조(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3055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3057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3056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3058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3057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3059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3057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3059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등) .. 3058
제10조의3 삭제 3060	제16조 삭제 3060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3059
제11조 삭제 3060	제17조 삭제 3060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3059
	제18조 삭제 3060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3060	제19조 삭제 3060	
	제20조 삭제 3060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3061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3061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3061
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3061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3061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3062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3063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3063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3065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3065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3065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3065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3066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3066	…………… 3066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3066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 3067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3068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 3069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 3069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 3069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 3069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 3070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 3070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 3070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 3070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 3070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 3071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 3072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절차 등) … 3071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 3072
제20조(납시행위의 제한) …… 3073	제27조(납시금지구역 또는 납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 3073	제29조(납시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 3074
		제30조(납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 3074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 3075	제28조(수질오염경보) …… 3075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3075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3075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3075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 3076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 3076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 3077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 3077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등) …… 3078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 3079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3079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 3080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 3080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7. 1. 17.)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3081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3082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3083 제23조(오염원 조사) 3084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3084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3085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3086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3087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3087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3088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 1. 17.> 제28조(정기적 조사·측정 및 분석) 3089 제29조 삭제 3090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3091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3091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3091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3092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3083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3085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3088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3088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6.>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측정 및 분석 등) 3089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3092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3081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3082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3082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 3083 제32조(오염원의 조사) 3084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3085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3086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3086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3091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3091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3092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2조(배출허용기준) 3093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3094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3101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3102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3102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3106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3107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3094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3100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3102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3107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배출허용기준) 3093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 3094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3095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3096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 서류 등) 3097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3097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3100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3101 제40조(관계전문기관) 3102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3102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3103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3104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3105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3105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310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3109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3108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3109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3110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3110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3110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3113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3113		제51조(개선명령 등) 3114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3114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3114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3114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3114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3115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검사의 면제) .. 3115	
제38조의7(결격사유) 3115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3115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 3116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3116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3117	제39조(개선기간 등) 3117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3117		
제40조(조업정지명령) 3118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3118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들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3118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들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3119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3120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3121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3122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배출부과금) 3123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3123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125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3125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3125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3127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129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3122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 3123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3129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3131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 3125
제43조(과징금 처분) 3131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3133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3133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3135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3133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3136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36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3137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 등) 3137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3137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3137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3138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3138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3139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3138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3140	제59조(개산원료일) 3139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 등)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140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3142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3142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 3143	 3140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3143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3143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3144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3144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3144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3145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3146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3145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3146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운영) 3146
제47조(환경기술인) 3147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3147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3147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6. 1. 27.>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 1. 17.>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 1. 19.>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3147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3147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3149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3148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 3149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 3150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3150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3150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3152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3151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3151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3153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3151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153 제66조 삭제 3154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3154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3154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 3155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3155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3155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3155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3156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3156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3156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3157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3158	
제49조의6(강제징수) 3157		
제49조의7(보고 등) 3158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3158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3160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 3158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3160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3161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3160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3161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3161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3162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3163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3165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3165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3. 7. 30.〉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3166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3166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3172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3173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3174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3174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3162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3166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3167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3169 제75조(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3171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3172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 3174	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3162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3166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3169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3169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 3170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 ... 3171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3171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지역) 3172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3173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 3173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 3174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175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연구) 317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3176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3176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178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3178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3178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3179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 3179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3180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3179
제57조의2(기술개발·연구) 3181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3180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3181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3180
제59조(고령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3181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3181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3181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3. 7. 30.〉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 6. 16.〉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3182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3181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3183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3183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3182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3184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3184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3183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3183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3184
제6장 폐수처리업	제6장 폐수처리업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3184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3185	제79조 삭제 3185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 3185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3185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3189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3187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3188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3189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3190
제63조(결격사유) 3191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3191		
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3193		
제66조(과징금 처분) 3193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193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3193
제7장 보칙 <개정 2013. 7. 30.>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3194	제79조의3(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3194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3194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3195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3195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3196 제95조(교육계획) 3196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3197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3197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3197 제99조(자료제출협조) 3197 제100조(교육경비) 3198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 3198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3200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3200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3200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3198		
제68조의2(신고포상금) 3200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3200	
제69조(국고 보조) 3201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3201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3202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3202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3202
제72조(청문) 3203		
제73조(수수료) 3203		제106조(수수료) 3203
제74조(위임 및 위탁) 3204	제81조(권한의 위임) 3204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3211	
	제83조(보고) 3211	제107조(보고) 3211
	제84조(업무의 위탁) 3211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13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3213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3213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214		
제8장 벌칙 <개정 2013. 7. 30.>	제8장 벌칙	제8장 삭제 <2013. 9. 5.>
제75조(벌칙) 3214		제108조 삭제 3214
제76조(벌칙) 3215		
제77조(벌칙) 3215		
제78조(벌칙) 3216		
제79조(벌칙) 3217		
제80조(벌칙) 3218		
제81조(양벌규정) 3218		
제82조(과태료) 3218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218	
제82조(과태료) 3220		
부칙 3223	부칙 3223	부칙 3223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 2005. 3.31 법률 제7459호 개정 2006. 10. 4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7. 1. 3 법률 제8209호 2007. 1. 19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 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5. 17 법률 제8466호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 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09. 5. 21 법률 제9697호 2009. 6. 9 법률 제9770호 (수용·진동관리법) 2010. 3. 22 법률 제10152호 2010. 3. 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권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 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2011. 4. 28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 등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 25 법률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1. 8. 4 법률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58호 2013. 3. 22 법률 제11670호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7. 30 법률 제11979호 2014. 1. 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3. 24 법률 제12519호 2015. 12. 1 법률 제13530호 2016. 1. 27 법률 제13879호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 12. 27 법률 제14490호 2017. 1. 17 법률 제14532호 2017. 12. 12 법률 제15194호 2018. 10. 16 법률 제15832호 2019. 8. 2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 11. 26 법률 제16605호 2020. 2. 18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관청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인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 정을 위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법)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개정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1호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12. 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1호 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 6. 22 대통령령 제22213호 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2. 1. 17 대통령령 제23352호 2012. 7. 5 대통령령 제23938호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력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4. 1. 28 대통령령 제25127호 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3호 2015. 5. 26 대통령령 제26249호 2015. 10. 21 대통령령 제26704호 2016. 4. 28 대통령령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9호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3. 27 대통령령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 무사업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64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 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10. 15 대통령령 제30126호 2019. 11. 24 대통령령 제31186호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7호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49호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 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2007. 12. 28 환경부령 제263호 개정 2008. 4. 7 환경부령 제283호 2008. 10. 29 환경부령 제307호 2009. 6. 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 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0. 4. 2 환경부령 제366호 2010. 6. 30 환경부령 제374호 (수용·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 10. 1 환경부령 제380호 2011. 2. 9 환경부령 제397호 2011. 10. 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2. 1. 19 환경부령 제443호 2012. 7. 5 환경부령 제465호 2012. 7. 20 환경부령 제4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2. 8. 2 환경부령 제470호 2012. 10. 5 환경부령 제309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2012. 12. 31 환경부령 제4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9. 5 환경부령 제515호 2013. 12. 31 환경부령 제533호 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 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 17 환경부령 제56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14. 11. 24 환경부령 제577호 2014. 12. 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4. 12. 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 12. 31 환경부령 제586호 2015. 6. 16 환경부령 제600호 2015. 12. 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족분노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6. 5. 20 환경부령 제652호 2017. 1. 19 환경부령 제688호 2017. 6. 26 환경부령 제705호 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9호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 12. 31 환경부령 제839호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0.12.31 법률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1. 1.12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 4.13 법률 제18030호 2021. 9.24 법률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4. 1.23 법률 제20116호 2024. 1.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 4. 4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5.23 대통령령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기덕도상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2. 3 환경부령 제848호 2020.11.27 환경부령 제890호 2021. 6.30 환경부령 제921호 2021. 9.16 환경부령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1.12.10 환경부령 제954호 2022. 3.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4. 4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17 환경부령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2018. 1. 17.>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2020. 11. 2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洑) 또는 독(「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도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전문개정 2013. 7. 30.]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본조신설 2018. 1. 1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1. 17.>]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 17.>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환경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율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 1. 19.]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저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 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1.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제,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오염총량 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②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별표 7에 따라 측정할 수질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이하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한다)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이후 별표 7에 따라 측정할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7.> 1. 삭제 <2012. 1. 17.> 2. 삭제 <2012. 1. 17.>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3.>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수질이 2년간 연속 총량관리단위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종기(終期)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같을 것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③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 2019. 10. 15.)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①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명세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명세 및 측정기기 부착 명세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1.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 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2.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3.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 ② 오염할당사업자들은 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조치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9.>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합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합당 오염부하량등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합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본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사업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8조(오염합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부과계수는 2.0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 17.>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 17.> 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1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7. 1. 17.> 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8. 1. 16.]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제목개정 2018. 1. 16.]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1. 16.> ②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항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16.> [제목개정 2018. 1. 16.]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 후 해당 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달라진 경우 3.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완료 예정일과 실제 이행완료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다시 점검한 날 이후의 기간에만 다시 측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기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것 ③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이미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 또는 환급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 16.> [제목개정 2018. 1. 16.]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부과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예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전문개정 2023. 12. 12.] ④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체납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환이나 그 밖의 사정이 변화되어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6.> [제목개정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7.>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연구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6조의2(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3. 7. 30.]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 1. 17.) 제1절 총칙 (개정 2013. 7. 30.)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삭제 (2017. 1. 17.) ③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6.) 제1절 총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 제1절 총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8. 1. 17., 2019. 10. 17.)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정보를 위한 측정망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 퇴적물 측정망 8. 생물 측정망 9.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7.) [제목개정 2019. 10. 17.] 제23조(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1. 1. 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2. 27.]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2021. 12. 1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2. 도심하천 측정망 3.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운영기관 5. 측정자료의 확인방법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⑦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7. 1. 17.)]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		③ 삭제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9조의2에서 이동 <2017. 1. 17.>]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삭제 <2018. 1. 17.> 2. 삭제 <2018. 1. 17.> 3. 삭제 <2018. 1. 17.> 4. 삭제 <2018. 1. 17.> 5. 삭제 <2018. 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 17.>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7. 1. 17.]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 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수면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17.]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물환경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2. 하천·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의 결정·고시, 물환경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10조의3 삭제 <2016. 1. 27.> 제11조 삭제 <2017. 1. 17.>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16조 삭제 <2017. 1. 17.> 제17조 삭제 <2017. 1. 17.> 제18조 삭제 <2017. 1. 17.> 제19조 삭제 <2017. 1. 17.> 제20조 삭제 <2017. 1. 17.>	야 한다. <개정 2018. 1. 17.>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신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9. 10. 15.>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 1. 19.> [제목개정 2017. 1. 1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6. 1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5. 6. 1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시·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2024. 2. 6.)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5. 6. 1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시·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7. 30.] [시행일: 2025. 8. 7.] 제15조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전문개정 2013. 7. 30.] [시행일: 2025. 8. 7.] 제16조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조사할 하천·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 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 3.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본조신설 2013. 7. 30.]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鰐覆),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5. 6. 1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상수원 호소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顛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개정 2024. 2. 6.>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 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인체등유해성물질		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시행일: 2025. 8. 7.] 제17조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써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3. 7. 30.]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에게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은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12. 16.> [제목개정 2015. 5. 26.]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 16.]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9., 2018. 6. 12.> 1. 하천·호소(湖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 1. 2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③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호소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19조의2에 따라 물환경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할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삭제 <2012. 1. 1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13. 7. 30.]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0. 11. 24.>	2. 삭제 <2012. 1. 19.>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오수·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8. 1. 17., 2022. 3. 31.>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1. 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2.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원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를거나 이로온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 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낚시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 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1. 29., 2020. 11. 27.>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문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 삭제 <2007. 5. 17.> ③ 삭제 <2007. 5. 17.> ④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⑤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 항목,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제목개정 2013. 7. 30.]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수질오염경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경보(藻類警報) 2. 수질오염감시경보 ②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 16.> ③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4.>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6. 12.> 1. 해당 하천·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	원의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면·동 계시판 또는 일간신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해당 하천·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호소등의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3. 7. 30.]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는 행위 2. 해당 하천·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2.>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 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 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 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9.]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17. 1. 1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0. 3. 22.]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외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서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22.]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 (2017. 1. 19.)]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 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보관·저장·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가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외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23.>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4는 제30조의5로 이동 <2017. 1. 19.>]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4에서 이동 <2017. 1. 1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대행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23.> ⑦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⑧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개선계획의 수립·시행과 환경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본조신설 2014. 3. 24.] [시행일: 2025. 1. 24.] 제21조의4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7. 1. 17.>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면적·지형 등 하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7. 1. 17.>]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한다.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1. 댐, 보(湫),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모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 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2.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6.]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0. 11. 2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1. 9. 24.>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사회·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본조신설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7.> 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	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중전 제29조제5는 제29조제6으로 이동 <2018. 1. 16.>]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본조신설 2018. 1. 17.]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17.]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본조신설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17.]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 3.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사업의 대상 지역 및 해당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수생태계의 복원 목표 2.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 3. 복원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수질·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4. 복원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5. 복원사업의 분야별·연차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6.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수생태계의 개선 효과 [본조신설 2017. 1. 17.] [제2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7로 이동 <2018. 1. 16.>]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 1. 17.> 제28조(정기적 조사·측정 및 분석)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 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9조의6에서 이동 <2018. 1. 16.>]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6.>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측정 및 분석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29조 삭제 <2016. 1. 27.>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6.> 1. 호소의 생성·조정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 현황 4.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 제3항제4호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사·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 [제목개정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8. 27.]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가 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본조신설 2012. 7. 5.]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2.]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1. 4. 13.> ⑥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 4. 1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3.>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21. 12. 10.> [제목개정 2021. 12. 10.]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4. 11. 24., 2019. 10. 15.>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7. 1. 17.>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1. 24.]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4. 3., 2014. 11. 24.>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경우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경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9. 10. 15.> ⑦ 법 제33조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10. 15.>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2.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3.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0.>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3. 4. 4.>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 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3. 4. 4.> -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4.>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 4. 4.>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 전 2. 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제2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⑤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3. 4. 4.>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2. 7. 20., 2014. 11. 24., 2017. 1. 17., 2019. 10. 15.>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 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0. 16.>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6.>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3. 7. 30.]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9. 10. 17.>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본조신설 2015. 12. 1.]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11. 24.>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9. 10. 17., 2021. 12. 10.>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절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3. 삭제 <2021. 12. 10.>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20. 11. 27.>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2. 삭제 (2021. 12. 10.)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9. 10. 17., 2021. 12. 10.>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 삭제 <2021. 12. 10.> 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5조(공동방지사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사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이하 “공동방지사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 2021. 12. 10.> 1. 공동방지사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사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사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사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사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사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용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사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7.> 1. 공동방지사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사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사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3.>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2018. 1. 17.> [제목개정 2014. 1. 2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 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3. 7. 30.]	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1. 28.]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7.>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 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 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 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1. 17.)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 28.,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 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 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산설 2016. 1. 27.,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	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2.> ④ 시·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지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동·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선정방법·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5., 2015. 6. 16., 2017. 1. 19., 2021. 12. 10.> 1.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20. 11. 2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기 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4., 2023. 4. 4.> ③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4. 4.>	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검사의 면제)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본조신설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6. 1. 27.]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9조(개선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8. 1. 17.〉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0.〉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가.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	2. 영 제40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폐수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3. 영 제40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간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내 ③ 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9. 12. 20.> ④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제목개정 2021. 12. 10.]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9.]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8조의6 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2. 영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 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 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7. 1. 19.]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 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본조신설 2017. 1. 19.]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할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④ 공동방지사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 <개정 2010. 2. 18., 2023. 4. 4.>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평균치"라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 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사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4. 4.>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은 시·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7. 1. 19., 2018. 1. 17.> 1.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확정배출량에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사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목개정 2017. 1. 1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준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사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7.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8.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9.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를 한 경우 13. 제38조의4제2항·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1. 4. 13.> 1.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8.]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4. 4.>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 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 시설 운영일자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도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기간과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검사 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18., 2017. 1. 17.>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① 시·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50조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7. 1. 19.>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2.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제54조에 따라 조정을 거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 까지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 -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59조(개선완료일) ①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제5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 취소일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 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2.> 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배출	2.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증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6.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 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6.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 7. 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7. 5.> [제목개정 2012. 7. 5.]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채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환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제8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시·도지사가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제54조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1.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29.]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절차·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8. 1. 17.]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①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 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 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의2서식 에 따른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여 별지 제30호의 3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7. 1. 17.]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6. 1. 27.)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에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목개정 2014. 1. 28.]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 1. 17.)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 1. 1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	4. 설치·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9. 6. 26., 2010. 2. 18., 2011. 10. 28., 2012. 7. 5., 2017. 1. 17., 2019. 10. 15.>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 <2019. 10. 15.>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목개정 2017. 1. 17.]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17. 1. 17.]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 1. 17.>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 1. 17.>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7. 1. 17.>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6. 1. 27.]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	5. 시설개선충당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제목개정 2017. 1. 17.]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 17.〉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4. 28., 2017. 1. 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제목개정 2017. 1. 17.]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①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9. 10. 1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 [제목개정 2017. 1. 17.]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시행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서식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19. 10. 15.)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17. 1. 17.]	제66조 삭제 <2017. 1. 19.>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목개정 2017. 1. 19.]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19.]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 1. 19.]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③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 17.> 1. 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전문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4. 13.>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17.]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 27.>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17.]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 1. 19.> [제목개정 2017. 1. 19.]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폐수 유입률 및 폐수처리의 효율 제고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2.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하역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3.>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일: 2025. 1. 24.] 제50조의2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제목개정 2017. 1. 17.]	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7. 1. 17.]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폐수의 수량·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의 승인(이하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 1. 23.>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⑤ 제3항에 따라 시행자의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오·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배수설비의 부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료 하역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옥내(屋內)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⑧ 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관리자"라 한다)는 제7항에 따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1. 23.> ⑨ 배수설비설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1. 23.> ⑪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 23.> ⑫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23.) [전문개정 2017. 1. 17.] [시행일: 2025. 1. 24.] 제51조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①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배수설비설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3.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 시행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의 이전·철거 등 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51조의2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51조의3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3. 7. 30.)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15. 5. 26.)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2. 7. 20., 2017. 1. 19.)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 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21. 11. 23.>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4. 12. 31., 2019. 10. 17.>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26., 2017. 1. 17.> 1.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계획 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5. 6. 16., 2019. 12. 31., 2020. 11. 27.> 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⑤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0. 16.>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유출흐름 등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 6. 16., 2019. 12. 31.>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 4. 2., 2014. 1. 29., 2015. 6. 16., 2019. 10. 17.>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10. 15.]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② 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부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9., 2019. 10. 17.>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 10. 17.>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 10. 17.>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9. 10. 17.>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변경허가·신고 또	제75조(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행명령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이행 또는 설치·개선 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시설 설치·개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은 설치·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운영기준과 설치·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19. 10. 17.>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 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6항·제7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18. 10. 16.> ⑩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3. 7. 30.]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3.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 상수원에 증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7. 14.>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 중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구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본조신설 2013. 12. 30.]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정하는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중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2018. 10. 16.>]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2. 3.] [중전 제78조의3은 제78조의6으로 이동 <2020. 2. 3.>]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본조신설 2018. 10. 16.]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종전 제78조의4는 제78조의7로 이동 〈2020. 2. 3.〉]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 시·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시·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5.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6.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0.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 ④ 법 제5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5.> 1.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2. 종합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방안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계획을 평가대상연도의 11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 대상연도의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을 보완·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본조신설 2017. 1. 17.]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 [본조신설 2016. 1. 27.] [제53조의3에서 이동 (2018. 10. 16.)]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2021. 11. 23.>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78조의3에서 이동 (2020. 2. 3.)] 제78조의7(증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증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19. 10. 17.] [제78조의4에서 이동 (2020. 2. 3.)]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삭제 (2021. 11. 23.)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 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절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단체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3. 7. 30.]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불투수면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7. 1. 19., 2018. 1. 17., 2019. 10. 17., 2021. 12. 10.〉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7조의2(기술개발·연구)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9조(고령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써 인하여 경작자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령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 1. 29.]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3. 7. 30.)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2021. 4. 13.>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2021. 4. 13.>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 6. 16.)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 2017. 1. 19.>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⑥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1. 4. 13.)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1. 4. 13.)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1. 4. 13.) ⑨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16.,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	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16., 2017. 1. 19.) [제목개정 2015. 6. 16.]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 6. 16., 2019. 10. 17., 2021. 12. 10.) [제목개정 2015. 6. 16.]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2021. 12. 1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6. 1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19.>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7.>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②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7.> 1.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 연중 운영기간 5.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 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행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1. 27.] 제6장 폐수처리업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 (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 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 삭제 〈2018. 1. 16.〉	6.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8. 물놀이행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행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7.〉 1. 물놀이행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행 수경시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 4. 4.〉 1. 제3항제1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제3항제2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행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 야 한다. 〈개정 2019. 10. 17., 2023. 4. 4.〉 [본조신설 2017. 1. 19.] 제89조의3(물놀이행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 2제4항에 따른 물놀이행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 10. 17.〉 [본조신설 2017. 1. 19.]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 17.>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9. 11. 26.>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삭제 <2021. 12. 10.> [전문개정 2020. 11. 27.]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마.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기구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 1. 29., 2019. 12. 31.>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신설 2020. 11. 2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확인할 것 6.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7.> 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0. 11. 27., 2021. 12. 10.> 1.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관을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10.> [본조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1. 12. 10.]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선명령의 경우: 1년 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0.> 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나. 조치명령의 내용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 1. 17., 2019. 11.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제63조제1호·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지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3. 7. 30.]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		다. 이행기간 ③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0.> [본조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1. 12. 10.]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8. 10. 16., 2019. 11. 26.>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 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13. 7. 30.]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2019. 11. 26.,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 제7장 보칙 <개정 2013. 7. 30.>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7장 보칙 제79조의3(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	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29.] 제7장 보칙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0.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본조신설 2019. 10. 15.] [종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19. 10. 15.>]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7. 1. 19., 2020. 11. 27.>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제목개정 2017. 1. 19.]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 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 5., 2017. 1. 19.>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 사업자		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19.>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15. 6. 16., 2017. 1. 19.> 1.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영시설의 적절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영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적정성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처리량·재고량 등 수탁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의2. 측정기기의 운영상황 확인 및 운영관리기준의 준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테이프·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30., 2014. 12. 24., 2017. 1. 19.>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51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7. 1. 19.> [제목개정 2017. 1. 19.]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9.> 1. 수소이온농도 2.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제목개정 2017. 1. 1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4. 13.)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79조의3에서 이동 <2019. 10. 15.>]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7. 30.]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3.>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담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3. 1. 5.>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 - 제35조제3항·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3. 7. 30.]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 -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제53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전문개정 2013. 7. 30.]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5., 2020. 2. 3., 2020. 11. 27., 2021. 12. 10.>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	변경신고: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5.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 2. 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3., 2020. 11. 27., 2021. 12.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1의2.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2019. 10. 15., 2020. 11. 24., 2021. 11. 23.>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 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 <2020. 11. 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8.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9.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의뢰 15. 삭제 (2014. 1. 28.)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7.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18.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23.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도지사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27.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8.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9.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 2021. 11. 23.>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9.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 9의2.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의 협의 및 변경협의 9의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 10. 삭제 (2019. 10. 15.)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의 수립 11의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 12. 삭제 (2021. 11. 23.) 13. 삭제 (2017. 1. 17.) 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4의2.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15. 삭제 (2015. 5. 26.) 1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의3.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16의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료의 접수 17.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17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1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고시 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 2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와 제7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인정 22.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이행명령등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의 수리 및 이행상태의 확인 22의2. 법 제56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접수, 검토 및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 22의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23.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제3호의5,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 28., 2018. 1. 16., 2019. 10. 15., 2020. 11. 24., 2021. 11. 2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 기준의 설정 5.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및 분석 6.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6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정보의 제공 6의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위반 사항을 직접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시·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 7. 20., 2018. 1. 16., 2019. 10. 15., 2023. 5. 2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	제107조(보고)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 10. 15.>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 11. 23.> 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19. 10. 15., 2021. 11. 23., 2023. 5. 23.>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4.> 1.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종전 제84조의2는 제84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2023. 3. 7.> 1. 제31조에 따른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2의2. 제3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2022년 1월 1일 2의3. 제35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방법: 2022년 1월 1일 2의4. 제38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 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59조 및 별표 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16., 2015. 6. 16., 2019. 12. 31., 2021. 12. 10., 2023. 4. 17.> 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 4. 삭제 <2021. 12. 10.> 5. 삭제 <2019. 12. 31.> 6.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4.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신고·변경신고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5. 제79조의3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84조의2에서 이동 <2017. 3. 27.>]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6. 1. 27.] 제8장 벌칙 <개정 2013. 7. 30.>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8. 10. 16.>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	관리 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19. 12. 31.> 11. 제90조제1항·제2항·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기간: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0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전문개정 2014. 4. 30.] 제8장 벌칙	관리 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19. 12. 31.> 11. 제90조제1항·제2항·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기간: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0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전문개정 2014. 4. 30.] 제8장 삭제 <2013. 9. 5.> 제108조 삭제 <2013. 9. 5.>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증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4. 3. 24., 2019. 11. 26.〉 -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 -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 삭제 <2016. 1. 27.〉 -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사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 삭제 (2019. 11. 26.)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9. 11. 26.>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2010. 2. 18.]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삭제 <2017. 1. 17.> 4. 삭제 <2017. 1. 17.>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9. 11. 26.>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2024. 1. 23.>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삭제 <2017. 1. 17.> 4. 삭제 <2017. 1. 17.> 4의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 2024. 1. 23.>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증설 전에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시행일: 2025. 1. 24.] 제82조		
부칙 <제7459호, 2005.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신고에 관한 적용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에 관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제4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부착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수중 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별표 7 비고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국제회의산업육성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④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	를 부칙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장 구분</th><th>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th><th>부칙기한</th></tr> </thead> <tbody> <tr> <td>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td><td>2,000㎥/일 이상 사업장</td><td>2008년 9월 30일까지</td></tr> <tr> <td>별표 13에 따른 2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td><td>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사업장</td><td>2009년 9월 30일까지</td></tr> <tr> <td>별표 13에 따른 3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td><td>200㎥/일 이상 700㎥/일 미만인 사업장</td><td>2010년 9월 30일까지</td></tr> <tr> <td rowspan="3">공공하수처리시설</td><td>100,000㎥/일 이상인 시설</td><td>2008년 5월 19일까지</td></tr> <tr> <td>10,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인 시설</td><td>2008년 11월 19일까지</td></tr> <tr> <td>2,000㎥/일 이상 10,000㎥/일 미만인 시설</td><td>2009년 11월 19일까지</td></tr> <tr> <td rowspan="2">폐수종말처리시설</td><td>처리용량 10,000㎥/일 이상인 시설</td><td>2008년 5월 19일까지</td></tr> <tr> <td>방류량 700㎥/일 이상 처리용량 10,000㎥/일 미만인 시설</td><td>2008년 11월 19일까지</td></tr> </tbody> </table> ②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사업장 및 이 영 시행 이후 착공을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기한이 다음 각 호의 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부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한으로 한다.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	부칙기한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2,000㎥/일 이상 사업장	2008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2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사업장	2009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3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200㎥/일 이상 700㎥/일 미만인 사업장	2010년 9월 30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10,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인 시설	2008년 11월 19일까지	2,000㎥/일 이상 10,000㎥/일 미만인 시설	2009년 11월 19일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 1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방류량 700㎥/일 이상 처리용량 10,000㎥/일 미만인 시설	2008년 11월 19일까지	서, 최초로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을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이전까지 측정된 것”으로 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5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등록된 폐수처리업자는 별표 20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라목(1) 및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폐수처리업자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	부칙기한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2,000㎥/일 이상 사업장	2008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2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사업장	2009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3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200㎥/일 이상 700㎥/일 미만인 사업장	2010년 9월 30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10,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인 시설	2008년 11월 19일까지																								
	2,000㎥/일 이상 10,000㎥/일 미만인 시설	2009년 11월 19일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 1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방류량 700㎥/일 이상 처리용량 10,000㎥/일 미만인 시설	2008년 11월 19일까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제38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며,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며,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	1.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008년 5월 19일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008년 9월 30일 제4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는 별표 7 비고 5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로 본다. 다만, 하수·폐수적산유량계는 측정·기록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관제센터에 하수·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시기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차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다”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다”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⑧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⑪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⑬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⑭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⑮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차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⑯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⑰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⑱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⑲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⑳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㉑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㉒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㉓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	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㉖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24조 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42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㉔유동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㉔우한미군기지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3호, 2008.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㉔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㉔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㉔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㉔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㉔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조”로 한다. ㉔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물질 제29조제1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으로,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66호, 2010.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보전법」제48조”로 한다. ㉓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㉖ 환경범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 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로 한다. ㉗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환경범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3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의	⑩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80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지정된 “클로로폼” 및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클로로포름”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제397호, 2011.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 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38호, 2006. 10.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61호, 2008.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제작성·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43호, 2012.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5호, 2012.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09호, 2007.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본다. 제3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49조·제49조의2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 ②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470호, 2012. 8. 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 2012. 10. 5.>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낙시어선업법」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93호, 2012. 12.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 2013.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부 칙 〈제826호, 2007. 1. 19.〉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 내지 ⑰ 생략 제24조 생략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3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 〈제22051호, 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란의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 〈제22073호, 2010. 3. 9.〉 (산림보호법 시행령)	조제4호·제5호,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비고의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현황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5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따라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계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단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⑳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산림유전자 원보호림·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33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0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13호, 2010. 6.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초법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543호, 2014.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새로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기업의 등록을 한 자 ⑩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520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 차목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38호, 2012.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 2014. 7.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생략 부칙 〈제577호, 2014.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 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제4항제1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 4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⑯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86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600호, 2015.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 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무역거재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	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45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7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1조제2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사설 설치 등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6호가목 후단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 한다. 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보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 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7) 및 별표 13의2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보전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㊱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㊱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㊱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㊱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8호, 2017.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㉔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5773호, 2014.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4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제4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 본문, 별표 16 제2호아목(3) 본문 및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20 제1호자목(6)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 부칙 〈제26249호, 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변경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7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704호, 2015. 12. 1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 ②유동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유동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7113호, 2016. 4.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471호, 2016. 8. 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주한미군기지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한시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89호, 2016.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착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4호·제6호·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로 교체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 내구연한 도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제705호, 2017. 6. 26.〉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㉖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해의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시설의 위치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도 지사가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4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 제2호가목6)가)(1), 같은 6)나)(1), 같은 6)다)(1), 같은 6)바)(1), 같은 호 다목1)가)(1), 같은 목 2)가)(1) 및 같은 목 3)가)(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환경개선비용담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동조제11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사목·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0> 까지 생략 <5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신재생에너지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⑯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⑥ 부터 <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 ⑩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97호, 2009.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로 한다. ①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①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①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②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제42조제3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①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①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①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9770호,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2호, 2010. 3.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②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 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㉓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⑫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㉓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7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⑦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16호,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4) 및 같은 호 카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1), 같은 목 (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2)(마), 같은 목 (5)(다) 및 (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⑯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20호,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⑲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⑳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호"로 한다. ⑰부터 ㉔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258호, 2012. 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0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7조 제2항제6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1>까지 생략 <50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과금"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과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②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으로 한다. (5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⑫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환경”으로 한다. 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⑮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다. 다만, 제43조제6항,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질자동측정기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829호, 2019.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및 제2호 및 같은 목 2)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4호”로 한다. 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6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중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중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③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 2020.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제890호, 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251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76조·제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4호·제7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의 협의 및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지역·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공업지역·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 여건, 폐수의 성상(性狀)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및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고, 협의 시 정한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을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931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 있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6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 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⑧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부칙 <제921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3530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지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및 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54호, 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 2023. 1. 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27호, 2023.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 제6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48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본다. 제9조(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㉞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설”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 입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28964호, 2018. 6. 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26호, 2019.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⑯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으로 한다.	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설”로 한다. ⑧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118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탁처리폐수를 위탁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수처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527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나목 1)가)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90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측정망 설치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따른다. 부칙 〈제32149호, 202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사·측정 및 분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3항제4호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223호, 2021. 12.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⑳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 또는 변경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으로 본다. 제4조(물환경목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으로 본다. 제5조(대권역·중권역·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대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2호, 2022. 12. 30.〉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3호, 2023.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자동측정자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도의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5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⑪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⑮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⑯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㉞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를」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⑨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⑩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⑪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㉔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㉔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 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㉞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㉞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㉞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㉞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㉞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㉞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㉖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㉗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로 한다. 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㉚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㉛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㉖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㉗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㉘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㉙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률」 제33 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㉕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㉖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5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13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60〉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6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제5항·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 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제5항·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4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항, 같은 조 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차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65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의3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6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6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8조의5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의8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다. 〈8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제11호"로 한다.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94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2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72조제1호의3, 제73조, 제78조제13호의2·제1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5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관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탁처리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제5항·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제7항·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7항·제8항·제10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을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으로 한다. ⑤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605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치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이 법 시행일 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43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의 요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관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 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④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030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9호, 2021. 9.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116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준공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설치·관리자는 제51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231호, 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3295
[별표 2]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	3297
[별표 3]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	3297
[별표 4]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3298
[별표 5]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301
[별표 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3302
[별표 7]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	3302
[별표 8]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3304
[별표 8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3305
[별표 9]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3306

[별표 10] 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3307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3307
[별표 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3308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3308
[별표 14]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3309
[별표 1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3310
[별표 15]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	3310
[별표 16]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	3311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3312
[별표 17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	3313
[별표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3313

[별표 1] <개정 2021. 3. 9.>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text{오염총량초과과징금} = \text{초과배출이익} \times \text{초과율별 부과계수} \times \text{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text{감액 대상 과징금}$$

비고: 감액 대상 과징금은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2.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이란 수질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수질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초과배출이익} = \text{초과오염배출량} \times \text{연도별 과징금 단가}$$

나. 초과오염배출량이란 법 제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이나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times \text{배출기간}$$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begin{aligned}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농도} \times 10^{-6} - \text{할당오염부하량} \\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유량} - \text{지정배출량}) \times \text{배출농도} \times 10^{-6} \end{aligned}$$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일일유량은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오수 및 폐수총량을 말한다.

3. 배출농도는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배출농도를 말하며,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4.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조업시간}$$

비고: 1.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2.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3.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 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이나 (2)의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도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 함유량, 그 밖에 오수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용수량을 빼는 방법에 의한 산정

2) 배출기간

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이나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기 시작한 날(배출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초과 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법 제4조의6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다. 연도별 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수질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과징금 단가
2004	3,000원
2005	3,300원
2006	3,600원
2007	4,000원
2008	4,400원
2009	4,800원
2010	5,300원
2011	5,800원

비고: 2012년 이후에는 2011년도 과징금 단가에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으로 하며,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2011년도 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3.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초과율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4.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구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수·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 계수
10,000 이상	·최초의 위반행위: 1.8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7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6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5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4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3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50 이상 2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2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1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를 곱한 값

[별표 2] <개정 2020. 11. 24.>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및 대상 항목

(제28조제2항 관련)

1. 조류경보

구분	대상 항목	발령 대상	발령 주체
가. 상수원 구간	남조류 세포수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측정하는 하천·호소 중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호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나. 친수 활동 구간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측정하는 하천·호소 중 수영, 수상스키, 낚시 등 친수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호소	

비고: 환경부장관은 조류경보 발령 대상 외에도 조류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호소를 관찰지점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수질오염감시경보

대상 항목	발령 대상	발령 주체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질소, 총인, 전기전도도, 총유기탄소량,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클로로필-a, 생물감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중 실시간으로 수질오염도가 측정되는 하천·호소	환경부장관

0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3] <개정 2015.12.10.>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

(제28조제3항 관련)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경보단계	발령·해제 기준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 1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 1,00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조류 대발생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인 경우

나. 친수활동 구간

경보단계	발령·해제 기준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이상 1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비고

- 발령주체는 위 가목 및 나목의 발령·해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강우 예보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조류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 남조류 세포수는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아나베나(Anabaena), 아파니조메네(Aphanizomenon) 및 오실라토리아(Oscillatoria) 속(屬) 세포수의 합을 말한다.

2. 수질오염감시경보

경보단계	발령·해제기준
관심	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단계	발령·해제기준
	나.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주의	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2배 이상(수소이온농도 항목의 경우에는 5 이하 또는 11 이상을 말한다) 초과하는 경우 나.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수소이온농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기전도도, 총 질소, 총 인, 클로로필-a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경계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심각	경계경보 발령 후 수질 오염사고 전개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한 경우
해제	측정항목별 측정값이 관심단계 이하로 낮아진 경우

비고:

-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등 수질오염감시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항목이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그 기준초과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수소이온농도 항목이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5 이하 또는 11 이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생물감시장비 중 물벼룩감시장비가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양쪽 모든 시험조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9. 7. 2.>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여유량 확인·통보
경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조류 대발생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납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방류량 조정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해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비고

1. 관계 기관간의 팔호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류경보를 발령하기 전이라도 수면관리자, 홍수통제소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수온 상승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방류량을 늘리는 등 조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친수활동 구간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납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3) 필요한 경우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 조류 제거 조치
경계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납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경계경보 발령 2)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3) 필요한 경우 조류제거물질 실태 등 조류 제거 조치
해제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비고

1.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수질오염감시경보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 조사 및 관심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수면관리자	물환경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및 수질분석 강화
	유역·지방 환경청장	1) 관심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원인 조사 및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주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 조사 및 주의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수면관리자	1) 수체변화 감시 및 원인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1) 정수의 수질분석을 평시보다 2배 이상 실시 2) 취수장 방제 조치 및 정수 처리 강화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1)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 조사 지원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원인 조사 결과 보고 3)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정수처리 기술 지원
	유역·지방 환경청장	1) 주의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관계 기관 합동 원인 조사 및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조사 및 경계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4)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
경계	수면관리자	1) 수체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3) 사고 발생 시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1) 정수처리 강화 2) 정수의 수질분석을 평시보다 3배 이상 실시 3) 취수 중단, 취수구 이동 등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1) 원인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조사 지원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원인 조사 결과 통보 3) 정수처리 기술 지원
	유역·지방 환경청장	1) 경계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원인조사대책반 구성·운영 및 사법기관에 합동단속 요청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4)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시행 총괄 5) 정수처리 기술 지원
심각	환경부장관	중앙합동대책반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조사 및 경계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4)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
	수면관리자	1) 수체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3) 중앙합동대책반 구성·운영 시 지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1) 정수처리 강화 2) 정수의 수질분석 횟수를 평시보다 3배 이상 실시 3) 취수 중단, 취수구 이동 등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 4) 중앙합동대책반 구성·운영 시 지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1)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조사 지원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시료분석 및 조사결과 통보 3) 정수처리 기술 지원
	유역·지방 환경청장	1) 심각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중앙합동대책반 구성 요청 4) 중앙합동대책반 구성 시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국립환경과학원장	1) 오염물질 분석 및 원인 조사 등 기술 자문 2) 정수처리 기술 지원
해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관심 단계 발령기준 이하 시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수질오염감시경보 해제 요청
	유역·지방 환경청장	수질오염감시경보 해제

[별표 5]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대상 행위	항목	기준
수영 등 물놀이	대장균	500(개/체수/100mL) 이상
어패류 등 섭취	어패류 체내 총 수은(Hg)	0.3(mg/kg) 이상

비고: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개정 2019. 7.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 배출시설에서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의 설치장소와 폐수처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폐수를 수집·이송·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 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수집·이송·처리·저장되어야 한다.
- 폐수를 수집·이송·처리·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 또는 차단 공간과 저류시설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빗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재처리할 수 있도록 세정식·응축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특별대체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정 2020. 11. 24.>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가.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나.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다.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라.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마.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폐수처리업자 중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를 하는 자(이하 "폐수수탁처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부대시설 가. 자동시료채취기 나. 자료수집기(Data Logger)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수탁처리업자의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3. 적산전력계		가.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다.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4. 적산유량계	가. 용수 적산유량계	1)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2)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3)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나.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다)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비고

- 위 표 제1호의 부착 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1호 각 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해야 한다.
- 위 표 제2호의 부착 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2호 각 목의 기기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사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사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 공동방지사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하되,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4종 및 제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제33조에 따른 방지사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마.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 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 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비연속식(Batch type, 2개 이상 비연속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 아.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원폐수에서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할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 가.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 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 비고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사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 표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폐수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 나.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다만,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폐수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9. 측정기기 부착의 유예
- 가. 2007년 11월 30일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제4종 또는 제5종의 사업장이 제3종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나.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이나 처리용량이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사설로서 2007년 11월 30일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2007년 11월 30일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다.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등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할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 라. 폐수수탁처리업자는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도록 방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제4종 또는 제5종의 사업장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별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0.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 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도지사등에게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등은 별 제38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으로 본다.

[별표 8] <개정 2021. 11. 23.>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1.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부착방법

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나. 지역적 여건이나 하수·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장등은 시설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리용량이 200㎥/일 미만인 개별 처리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그 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성질·상태의 원폐수 또는 하수를 2개 이상의 처리시설(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최종 방류구에 처리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처리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여야 한다.

2.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사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등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로 측정되는 자동 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8의2] <개정 2019. 10. 1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제38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대 이상 갖출 것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수질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 제1호나목의 측정기기 또는 장비가 같은 목 1)부터 5)까지의 항목 중 둘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와 위 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며, 위 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위 표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위 표 제1호나목의 측정기기 또는 장비에 대하여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측정·분석 항목에 대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위 표 제2호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으로 한다.
5.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9] <개정 2017. 1. 17.>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사업장 규모	제1종사업장 (단위: m ² /일)					제2종 사업장	제3종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부과계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적용 한다.

[별표 10]

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
1.5	1

비고: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1] <개정 2017. 1. 17.>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초과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초과율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까지
부과계수	2.0	2.2	2.4	2.6	2.8

비고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 100
2.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작을 경우와 공공배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3. 제1호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고: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사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사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text{폐수배출량} = \text{용수사용량} - (\text{생활용수량} + \text{간접냉각수량} + \text{보일러용수량} + \text{제품함유수량} + \text{공정 중 증발량} + \text{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text{공정 중 발생량}$$
-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14] <개정 2019. 10. 15.>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1.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단위: 원)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물질	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경우	250
	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한 경우	450
부유물질		250
총 질소		500
총 인		500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망간 및 그 화합물		30,000
아연 및 그 화합물		30,000
페놀류		150,000
특정유해물질	시아노화합물	150,000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
	유기인화합물	150,000
	비스 및 그 화합물	100,000
	납 및 그 화합물	150,000
	6가크롬화합물	300,000
	폴리염화비페닐	1,25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 비교: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유기탄소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2.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 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질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인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크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망간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아연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페놀류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특정유해물질	시아노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구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수은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기인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스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납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6가크롬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폴리염화비페닐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트리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 비교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유출·누출계수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400퍼센트 이상,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을 적용한다.

[별표 14의2] <개정 2020. 11. 2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text{과징금} = \text{조업정지일수} \times \text{1일당 과징금}$$

비고

1.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별표 15]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방법

$$\text{일일기준초과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times 10^{-6}$$

비고: 1.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배출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일일유량의 산정 방법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일일조업시간}$$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의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별표 16] <개정 2010.2.18>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일반기준

- 가.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제46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를 말한다)함으로써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 부과와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
-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삭제 <2010.2.18.>

2.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	○처음 위반한 경우				
	사업장 규모	2,000㎡/일 이상 4,000㎡/일 미만	4,000㎡/일 이상 7,000㎡/일 미만	7,000㎡/일 이상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부과계수	1.5	1.6	1.7	1.8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3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3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제4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2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5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1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비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처음 위반한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별표 17] <개정 2017. 1.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 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별표 17의2] <개정 2020. 11. 2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text{과징금} = \text{영업정지일수} \times \text{1일당 과징금}$$

비고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7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별표 18] <개정 2021. 1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1호			
1) 물로만 세차한 경우		50	50	50
2) 합성세제,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100	100	100
마.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의2	500	700	1,000
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댐시금지구역에서 댐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2	100	200	300
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댐시제한구역에서 댐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2호	30	60	100
아.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3호	60	80	100
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200	600	1,000
차.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2	500	700	1,000
타.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3	500	700	1,000
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4	500	700	1,000
하.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5	500	700	1,000
거.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200	600	1,000
너. 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00	600	1,000
러.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4호	60	80	100
버. 법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서.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1,000	1,000	1,000
여.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영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영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처. 법 제6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00	700	1,000
커.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00	700	1,000
터.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300	500	1,000
퍼.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4호의2	50	70	100
허.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5호	60	80	100
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6호	60	80	10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3319
[별표 2]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3320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3322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3323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3329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3330
[별표 7] 총량관리 단위구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3331
[별표 8]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3331
[별표 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3332
[별표 1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3332
[별표 10의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3334
[별표 11] 통행제한 도로·구간(제27조제2항 관련)	3335
[별표 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3336
[별표 12의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30조의5 관련)	3337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3338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3352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3353
[별표 14의2]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3355
[별표 1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3355
[별표 14의4]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3357
[별표 1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제71조 관련)	3357
[별표 16]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제72조 관련)	3358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3358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3360
[별표 18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	3362
[별표 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3363
[별표 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3365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	3366
[별표 20의2]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3371
[별표 20의3]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3372
[별표 21]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3373
[별표 21의2]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3374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3374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3386

[별표 1] <개정 2021. 12. 10.>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 시설	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 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 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	면허대상 모두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 시설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시설구분	대상	규모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일 것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일 것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1대 이상일 것

시설구분	대상	규모
7. 복합물류 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8. 거점소독 시설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개정 2020. 11. 27.>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 구리와 그 화합물
- 납과 그 화합물
- 니켈과 그 화합물
- 총 대장균군
- 망간과 그 화합물
- 바륨화합물
- 부유물질
- 삭제 <2019. 10. 17.>
- 비소와 그 화합물
- 산과 알칼리류
- 색소
- 세제류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수은과 그 화합물
- 시안화합물
- 아연과 그 화합물
- 염소화합물
- 유기물질
- 삭제 <2019. 10. 17.>
- 유류(동·식물성을 포함한다)
- 인화합물
- 주석과 그 화합물
- 질소화합물
- 철과 그 화합물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황과 그 화합물
32. 유기인 화합물
33. 6가크롬 화합물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5. 트리클로로에틸렌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7. 벤젠
38. 사염화탄소
39. 디클로로메탄
40. 1, 1-디클로로에틸렌
41. 1, 2-디클로로에탄
42. 클로로포름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44. 1,4-다이옥산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6. 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48. 브로모포름
49. 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51. 나프탈렌
52. 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하이드린
54. 톨루엔
55. 자일렌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59. 과불화옥탄산(PFOA)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별표 3]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하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 2) 질산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1 102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3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 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04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105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08	
11) 설탕 제조시설	107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074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1073 1079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12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6) 담배 제조시설	12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직 및 가공사 제조시설	131 132 133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3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39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142 15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 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 는 시설은 제외한다.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152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6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7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18 581 592 733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191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 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0111	○ 가스화수·염(鹽)류제거·황산화물 제거·납성분 제거·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스테 빌라이즈(원유 등에 함유된 부탄보다 낮은 끓는 점의 성분을 증류로 제거하여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정류탑)·개질·접촉분해·수소첨가분해·이 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알킬화·중합시설 을 포함한다.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클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 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 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을 포함한다.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 학 물질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 설)에 한정한다.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0112	○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 학 물질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 설)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0119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20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 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 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 설을 포함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52 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업 및 정제업 제조시설	20492	
33)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132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0499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 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311 20312 20313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0493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20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0494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0202 20203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8) 바이오 연료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20495	○20499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 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3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21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032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22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041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31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0421 20422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23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33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0424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39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66 20491	○26293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55) 1차 철강 제조시설	241	○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및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 제조시설	24113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4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24221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9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2429	
62) 금속주조시설	243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25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283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282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284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261 262	○ 26293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265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32 33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70) 화력발전시설	35113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1) 수도사업시설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 세병(洗瓶)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연적 700제곱미터 이상)	46314 46315 47213 47214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 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61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381 382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 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96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 분진, 세정·응축시설 (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 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명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2) 제1호부터 제81호 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시설	○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9. 12. 20.>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 가. 스크린
- 나. 분쇄기
- 다. 침사(沈砂)시설
- 라. 유수분리시설
-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 바. 혼합시설
- 사. 응집시설
- 아. 침전시설
- 자. 부상시설
- 차. 여과시설
- 카. 탈수시설
- 타. 건조시설
- 파. 증류시설
-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 가. 화학적 침강시설
- 나. 중화시설
- 다. 흡착시설
- 라. 살균시설
- 마. 이온교환시설
- 바. 소각시설
- 사. 산화시설
- 아. 환원시설
- 자.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 가. 살수여과상
- 나. 폭기(瀑氣)시설
-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 바. 안정조
-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별표 6] <개정 2019. 12. 20.>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한다.
-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透水性)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2) 소용돌이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7] <개정 2012.1.19>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text{가. 평균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text{나. 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dots}{\text{측정횟수}}$$

$$\text{다. 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 (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8]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기준배출수질} = e(\text{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cdot \text{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dots}{\text{측정횟수}}$$

$$\cdot \text{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_{(a+1)} \text{로 산정한다.}$$

· a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정수부분, b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1, X2, X3, ..., Xa, ...,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a는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text{추가 지정 배출량(L/일)} = (\text{할당 오염부하량/실측평균수질}) \times 10^6$$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로서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10] 〈개정 2019. 10.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1. 방류수 수질기준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illegible]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와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 분	수질기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유기 탄소량 (TOC) (mg/L)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부유물질 (SS)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0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구 분	수질기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총인 (T-P) (mg/L)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군 수 (개/mL)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생태독성 (TU)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와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지역

구 분	범 위
I 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구 분	범 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 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또는 총인(T-P) 항목의 수치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 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 지역 및 Ⅱ 지역을 제외한다)
Ⅳ 지역	Ⅰ 지역, Ⅱ 지역 및 Ⅲ 지역을 제외한 지역

[별표 10의2] 〈개정 2020. 11. 27.〉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1. 방제조치에 사용된 방제 자재·약품 등 소모된 물품 비용. 다만,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
3. 방제조치를 위하여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오염물질과 관련된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통행제한 도로·구간(제27조제2항 관련)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팔당호	일반국도 제6호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 경유: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용담대교 입구) ○종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신원역 교차로)	12.7km
	일반국도 제45호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태하정로(도마삼거리) ○종점: 경기도 하남시 태하정로(팔당댐 앞)	6.7km
	지방도 제342호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산수로(광동하수처리장 사거리) ○종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18km
	일반국도 제45호 (북한강 강변)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종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금남교차로)	21km
잠실	특별시도 제254호 (잠실철교)	○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철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잠실철교 북단	1.3km
	특별시도 제278호 (올림픽대교)	○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올림픽대교 북단	1.5km
	일반국도 제43호 (천호대교)	○시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교 북단	1.2km
	특별시도 제248호 (광진교)	○시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광진교 북단	1.1km
대청호	지방도 제509호	○시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익면 회남문의로(상장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익면 회남문의로(문익사거리)	1.8km
	지방도 제604호~ 지방도 제32호	○시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하석로(하석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익면 대청호반로(문익사거리)	11.3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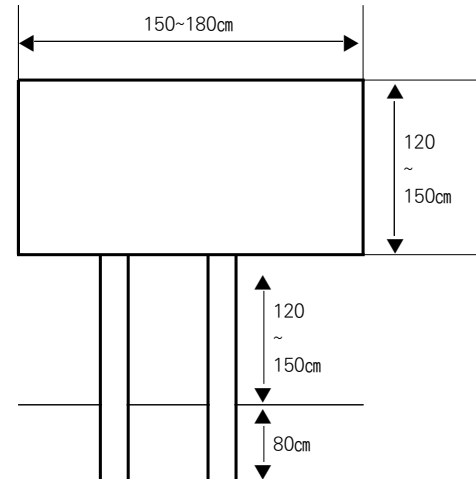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지방도 제32호	○시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신촌사 입구) ○종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교	9km
	국가지원 지방도 제32호	○시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산탄진동 55)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익면 미천고은로(미천리)	9.6km
	지방도 제629호	○시점: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비룡삼거리) ○종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검문소삼거리)	19km
	지방도 제571호	○시점: 대전광역시 동구 회남로(세전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교	18km
보령호	지방도 제617호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늑전교삼거리)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도화삼거리)	10km
	시도 제1호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보령호로(화산교삼거리)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늑전교삼거리)	4.3km
	농어촌 도로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댐)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도화삼거리)	10.5km
용담호 (금강)	지방도 제795호 (댐 인접)	○시점: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진용로(정천면휴게소삼거리) ○종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진용로(용담댐삼거리)	20.0km
	군도 제22호 (댐 인접)	○시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정주천로(영강교 부근) ○종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주용로(지방도 제795호 합류점)	5.5km
주암호	시도 제8호	○시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암호길(광천리 170-2)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북교리 산89-10)	25km
	일반국도 제15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북교리 산89-10)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합수목교삼거리)	5.3km
동북호	군도 제23호~ 농어촌도로 제101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경치리삼거리) ○종점: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백아로(구산삼거리)	11.7km
	군도 제4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물염로(신기마을 입구)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물염로(다곡삼거리)	7.5km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상사호 (이사천)	군도 제1호	○시점: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노동길(지방도 제58호 합류점, 쌍지삼거리) ○종점: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노동길(지방도 제857호 합류점)	9km
회야호	군도 제18호	○시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북동천로(뫼산소류지 입구)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대북동천로(회야댐초소 앞)	4.2km
덕동호	지방도 제945호	○시점: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보불로삼거리) ○종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감로(장항삼거리)	11.7km
운문댐 (낙동강)	국도 제20호 (댐 관통)	○시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지방도 제69호 합류점) ○종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지방도 제921호 합류점)	12.9km
남강댐 (낙동강)	시도 제7호 (댐 상류)	○시점: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로(정곡리 완사) ○종점: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로(금성리 장신)	3.1km
	시도 제18호~지방도 제1049호 (댐 인접)	○시점: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대평로(진주대로삼거리) ○종점: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호반로(삼거리)	18km
밀양댐 (낙동강)	지방도 제1051호 (댐 인접)	○시점: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로(댐관리소 입구) ○종점: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배내로(고점사거리)	8km

[별표 12] <개정 2020. 11. 27.>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1. 안내판의 규격



- 두께 및 재질: 3밀리미터 또는 4밀리미터 두께의 철판
- 바탕색: 청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

가. 낚시금지구역

알림

1. 이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입니다.
2. 낚시금지구역에서는 하천·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경찰서장

나. 낚시제한구역

알림

1. 이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제한구역입니다.
2. 낚시제한구역에서는 하천·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문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 아.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경찰서장

비고 : 제2호사목 및 아목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별표 12의2] <개정 2017. 1. 19.>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30조의5 관련)

1. 설치기준

-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위치는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 다. 완충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라. 유입시설은 배수구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적정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에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및 수질의 이상징후를 상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갖추 수 있다.
- 사. 저류시설은 대상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안정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구조 및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 아.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저류로 인해 바닥에 퇴적된 퇴적물의 처리·제거를 위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자. 배출 및 이송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의 배출, 이송 또는 연계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차. 부대시설은 환기시설, 실시간 운영관리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한다.

2. 운영기준

- 가.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전담관리인은 사고발생 시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다. 평상시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운영 중이더라도 사고유출수 유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라.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하여야 한다.
- 마.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저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처리 수준을 정하고, 저류시설에 유입된 사고유출수 또는 초기우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이송 및 연계처리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 사.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아. 완충저류시설은 연계처리하는 하수·폐수 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개정 2021. 12. 10.>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교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I 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 b), 약간 좋음(I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III), 약간 나쁨(IV), 나쁨(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지역구분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지역구분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총유기 탄소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총유기 탄소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75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나.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목	수소 이온 농도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페놀류 함유량	시아 함유량	크롬 함유량	용해성 철 함유량	아연 함유량	구리 함유량	카드뮴 함유량	수은 함유량	유기인 함유량	비소 함유량	납 함유량	6 가크롬 함유량	용해성 망간 함유량	불소 함유량	P C B 함유량	총 대 장 균 단 위	(총대장균단위수)		색도	온도	총질소	총인	트리 클로로 에틸렌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음이온 계면 활성제																								
		광유류	동식물 유지류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群)	(mL)	(도)	(℃)	(mg/L)	(mg/L)	(mg/L)	(mg/L)	(mg/L)	
청 정	5.8 ~ 8.6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1 이하	0.02 이하	0.0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3 이하																												
가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나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특례	5.8 ~ 8.6	5 이하	30 이하	5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3. 별표 4 제2호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 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구분	총질소 배출허용기준(mg/L)
청정지역	30 이하
가지역	120 이하
나지역	120 이하
특례지역	120 이하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항 목					
수소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트다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항 목	지역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청정지역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5.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의 생태독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18) 48),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31),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6. 생태독성은 영 별표 13에 따른 1종 및 2종 사업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항 목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트다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 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 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항 목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항 목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로오(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항 목 \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폐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강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로오(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로디아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수)(m)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삭제 <2013.9.5>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 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항 목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트다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f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항 목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하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방류하는 경우
-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자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항 목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mg/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항 목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대장균군수(mf)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그 원인인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8)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mg/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아나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용해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트다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폐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퍼클로레이드(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아크릴아미드(mg/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mg/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방류하는 경우
- 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정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항 목	동식물유지류 (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mg/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로(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에피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퍼클로레이트(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아크릴아미드(mg/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mg/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주석(mg/L)		0.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에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나. 다음 시설에서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
-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 1)에 해당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생태독성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다.
6.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되, 방류수 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3의2]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물질명	기준농도(mg/L)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아크릴아미드	0.015
나프탈렌	0.05
폼알데하이드	0.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스티렌	0.0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안티몬	0.02

[별표 14] <개정 2021. 12. 10.>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발생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인쇄, 자동식 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며, 입력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바.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사.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아.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3. 영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가.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 나.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다.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제42조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마. 제42조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바. 가목 단서에 따라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4의2] <개정 2019. 12. 20.>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자료 수집기 및 측정 기기	점검	일반 점검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측정기기 교정 ·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 부의 부품은 제외)	사전
		긴급점검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원인규명과 수리	사후
	상태정보 발생	가동중지· 점검중	·원인규명과 수리준비(제작업체에 의뢰) ·수리·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	사후
		통신불량 동작불량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	
	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		·자료수집기(중간자료수집기) 점검, 전기설비 자체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전기안전 점검 등	사전
기타	정도 검사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사전
			·정도검사 기간	
	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시료펌프 순간정전 후, 자동교정 후, 기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 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			사후

비고 : 개선사유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4의3] <개정 2023. 1.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52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38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5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0일 이상 갖추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4) 법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8조의7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8조의9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5) 법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7호				
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다)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6) 업무정지 기간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개월	등록 취소		

[별표 14의4] <신설 2021. 12. 10.>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1. 조사 항목: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조사 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3. 조사 횟수

조사대상별 구분	측정횟수
가.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분기 1회
나. 가목에 따른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2. 공동방지사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장	반기 1회
다.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3종 사업장	반기 1회

[별표 15] <개정 2019. 12. 3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제71조 관련)

1.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려는 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방류량, 약품투입량, 관리·운영자,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법 제38조의5에 따라 관제센터로 측정자료가 전송되는 항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일당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방류수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삭제 <2017. 1. 19.>

[별표 16] <개정 2019. 12. 20.>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제72조 관련)

1. 폐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유입되는 오수·폐수가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다른 폐수관로·맨홀 또는 오수·폐수받이와 연결되어야 한다.
2. 관 종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폐수관로의 기초 지반은 관로의 종류, 매설토양의 특성,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을 고려하여 관로의 침하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관로를 시공할 경우에는 경사 검사, 수밀(水密) 검사 및 영상촬영 검사를 활용하여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관경(관지름)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의 기점·중점·합류점·굴곡점과 관경·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防臭)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을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별표 17] <개정 2019. 12. 2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 나.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한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라.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기상 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인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시설유형별 기준
 -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가) 자연형 저류지는 지반을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하여 설치하는 등 경사면의 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나) 저류지 계획최대수위를 고려하여 제방의 여유고가 0.6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다) 강우유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에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입·유출구 아래에 웅덩이를 설치하거나 모래와 돌을 깔아야 한다.
- 라) 저류지의 호안(湖岸)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식생 등의 방법으로 경사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 마)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저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 등의 저류지에서는 조류 및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하여 용해성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 수위가 변동하는 저류지에서는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수가 수위별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점에서 소류력이 작아지도록 설계한다.
- 아) 저류지의 부유물질이 저류지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 여과용 갯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 저류지는 퇴적토 및 침전물의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며,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

2) 인공습지

- 가) 인공습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 : 1 이상으로 한다.
- 나)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습지 전체 면적 중 50퍼센트는 얇은 습지(0 ~ 0.3미터), 30퍼센트는 깊은 습지(0.3 ~ 1.0미터), 20퍼센트는 깊은 못(1 ~ 2미터)으로 구성한다.
- 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0.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라) 물이 습지의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심을 유지하고, 물 이동이 원활하도록 습지의 형상 등을 설계하며, 유량과 수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마) 습지는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먹이사슬로 수질정화가 촉진되도록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엽식물 등의 수생식물과 조류,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 소형 어패류 등의 수중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 바) 습지에는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유량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 생물의 서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5종부터 7종까지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킨다.
- 아) 부유성 물질이 습지에서 최종 방류되기 전에 하류수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출구 부분에 자갈책석, 여과망 등을 설치한다.

3) 침투시설

- 가) 침전물(沈澱物)로 인하여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 나)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 라) 침투도랑, 침투저류조는 초과유량의 우회시설을 설치한다.
- 마) 침투저류조 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지하 관로 등 비상배수시설을 설치한다.

4) 식생형 시설

길이 방향의 경사를 5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가)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류시간, 여과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여과재 통과수량을 고려하여 여과 면적과 여과 깊이 등을 설계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 가) 입자성(粒子性)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입자상 수질오염물질의 침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면적 부하율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다) 슬러지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3) 스크린형 시설

가) 제거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의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단시간에 발생하는 유량을 차집(遮集)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앞 단계 저류조를 설치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미생물 접촉시설에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미생물 접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생물정화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별표 18] <개정 2019. 12. 2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植生)을 제거·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공습지의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다) 인공습지의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어야 한다.
- 라) 인공습지에서 식생대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유로(流路)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생식물을 잘라내는 등 수생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마) 인공습지 침사지의 매몰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50퍼센트 이상 매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침투시설

- 가)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식생형 시설

- 가)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
- 나)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 다)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라)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처리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가) 전(前) 처리를 위한 침사지(沈砂池)는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망 사이의 협잡물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가) 다량의 슬러지(sludge) 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자 테스트(Jar-test)를 실시하거나 자 테스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등을 이용하여 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 다) 주기적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미생물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 나) 오염물질 부하량의 변화가 심한 강우유출수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미생물의 활성(活性)을 유지하도록 한다.

[별표 18의2] <신설 2020. 2.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

검사 항목	세부 항목	검사 기준	검사방법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가. 오염물질 제거원리의 적합성	1) 저류, 침전, 여과, 침투 등 비점오염물질의 저감방법이 적합할 것 2)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용된 장치 및 재료가 적합할 것	서면검사
	나. 설치 방법의 타당성	1) 강우유출수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의 유입과 비점오염저감시설로부터 유출이 가능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효과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나 유량 측정이 가능할 것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가질 것 4) 강우유출수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할 것(비점오염저감시설의 외부에서 우회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가. 오염물질 제거효율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유입된 오염물질량과 비점오염저감시설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량을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산정(침투시설 등 제거효율 실험이 불가능한 시설은 제외한다)할 것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실험
	나. 통수(通水) 능력	오염물질로 인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내 물의 흐름이 저하되거나 막힘이 발생하는 정도를 손실수두(損失水頭, 물의 흐름에 의해 생긴 에너지, 압력 등의 손실을 물기둥으로 나타낸 값)와 투수속도(透水速度)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검사 항목	세부 항목	검사 기준	검사방법
3.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가.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	1) 전력량, 용수 사용량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적절할 것 2) 시설 유형별 유지관리 주기가 적절할 것	서면검사
	나. 유지관리 방법의 편의성	1) 유지관리 방법 설명서에 제시된 유지관리 방법이 적절할 것 2) 시설 내부의 장치, 재료 등의 교체 및 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 3) 시설 내부의 슬러지 및 협잡물의 제거가 가능한 구조일 것	

비고

- 제2호나목의 검사 기준란의 손실수두는 관로를 통해 강우유출수를 연속적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의 손실수두 및 손실수두 환원 정도를 말한다.
- 제2호나목의 검사 기준란의 투수속도는 시설 표면의 공극(空隙)을 통해 강우유출수를 유입시키는 시설의 단위시간당, 단위면적당 통과유량을 말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가두리 양식업시설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에 뜨는 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 시설	1) 시료찌꺼기·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육상수조식 해수양수업 시설	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
2. 골프장		1)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조정지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 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한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위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5) 강우 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밀리미터 강우 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핵산추출물을 30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자봉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원	1) 별표 1 제5호가목 또는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하며, 별표 1 제5호나목 또는 제6호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나목9)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페놀, 구리(동)함유량, 납함유량, 디클로로메탄, 셀레늄함유량,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폼알데하이드로 한정한다.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 14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 하되,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4)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여과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복합물류 터미널시설	가. 강우시 사업장 바닥의 비점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핵산추출물질 5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 시설이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나. 비점오염물질의 흘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사업장 내 노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거점소독시설	1) 소독 조치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를 위하여 소독 시 수질오염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적은 거점소독시설의 경우에는 발생한 소독수를 흡수할 수 있는 매트 등으로 소독수 저장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으며, 매트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회수된 소독수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직접 처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 비고 : 1.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과 기타수질오염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9의2] 〈개정 2019. 10. 17.〉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2. 관리 기준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0] 〈개정 2021. 12. 10.〉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

구분 \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1. 기술능력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저장시설	1) 폐수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반입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퍼센트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수는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탁폐수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시설은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	1)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의 각각 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반입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퍼센트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수는 성상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재이용 폐수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의 저장시설은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 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 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	1) 처리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를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또는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증발농축시설 나) 건조시설 다) 소각시설 라) 허가기관이 가)부터 다)까지의 시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폐수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은 7.5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위 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처리능력 합을 말하며, 증발농축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건조시설과 같이 주처리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재이용하고자 하는 폐수의 재이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이용 후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 또는 허가기관이 이와 같은 시설과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 능력은 재이용시설을 최대 가동 시 배출되는 폐수 용량이어야 한다. 4) 폐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증발농축시설 (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

구분 \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3) 폐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증발농축시설 (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조시설 (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 (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1) 처리능력은 2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의 시설은 응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조시설 (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 (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1)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

구분 \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구분 \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3)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휴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산소측정기를 비치하고,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물리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 처리 또는 후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 처리능력은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상폐수는 허가기관에서 물리화학적처리시설	질 방지시설과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를 갖추어야 한다. (6)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부대시설 (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로 한정한다. (3) 삭제 (2014.1.29) (4) 폐수처리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생물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처리 또는 후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 처리능력이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상폐수는 허가기관에서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로 한정한다. (3) 삭제 (2014.1.29) (4) 생물화학적처리에 필요한 약품류 등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 (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7)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	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세제곱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1세제곱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폐수운반장비는 운반폐수에	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세제곱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1세제곱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제용기(유가품인 경우만 해당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

구분 \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폐수운반 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 12(1016)]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운송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폐수운반 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폐수운반 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 12(1016)]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운송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	가. 실험실	1) 공장 안에 설치하고 구획되어 있을 것 2) 바닥과 내면은 불연성 재료로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을 것 4) 위 3)에서의 배수시설을 통한 실험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 5)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 6)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구분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7)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제2호가목의 저장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나. 실험기기·기구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 총유기탄소량(TOC) 4) 부유물질(SS) 5) 페놀 6) 시안 7) 총크롬 및 6가크롬 8) 아연 9) 구리 10) 카드뮴 11) 비소 12) 납 13) 용해성 망간 14) 플루오르 15) 수은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재생·이용 폐수에 함유된 특정 수질유해물질 성분

비고 : 1.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을 함께 하려는 때는 같은 요건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실험기기·기구 또는 시약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폐수처리업자 또는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는 환경관련사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실험실·실험기기 및 기구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기술능력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받은 폐수(이하 "수탁폐수"라 한다)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폐수가 발생한 공정과 폐수의 성분·성상 등을 파악한 후, 혼합 처리 과정에서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이하 "유해성등"이라 한다)을 확인(이하 "혼합확인"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의 혼합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위탁자에게 수탁폐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 유해성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 다.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의 혼합비율은 수탁폐수와 혼합하려는 폐수의 양의 비율로 한다.
- 라. 폭발성 가스를 측정할 경우에는 주변에 전기, 불꽃, 화염, 마찰열 등 발화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시행한다.
- 마. 혼합확인을 하는 자는 보호장갑, 보호경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2. 수탁폐수 간 혼합확인 시 확인사항

-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유해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사항 및 확인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확인사항	확인기준
1) 부식성	수소이온농도	pH 2.0 이하 강산성 또는 pH 11.5 이상 강염기
2) 폭발성	가연성가스농도	메탄 10% 이상
3) 자연발화성	자연발화 여부	5분 이내 자연발화 여부
4) 유해성	황화수소농도	10ppm 이상
	이산화탄소농도	1.5% 이상
	산소농도	18% 미만 또는 23.5% 이상

- 나. 가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할 때에 유해성등의 확인기준을 초과하여 폭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그 밖에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자의 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폐수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반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다.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할 때 10℃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나 가스·연기·악취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혼합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확인사항별 확인방법

가. 부식성

- 1)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는 내부식성(부식을 견디는 성질) 용기에서 혼합한다.
- 2) 혼합 직후의 수소이온농도(pH)와 10분간 교반(휘저어 섞임) 후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 3) 수소이온농도의 측정은 pH 측정기기를 활용해야 한다.

나. 폭발성 및 유해성

- 1)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는 밀폐용기에서 혼합한다.
- 2) 밀폐용기의 공기층에 흡입용 호스를 삽입한 후 가스농도측정기로 혼합직후의 가스농도와 30분 후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다. 자연발화성

- 1) 혼합 직후의 온도와 10분간 교반 후의 온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 2) 혼합폐수를 규조토 또는 실리카겔을 채운 500ml 용량의 자기(瓷器)로 된 용기에 부어 5분 이내에 발화하는지를 확인한다.

4. 기타

- 가.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같은 성상의 수탁폐수에 대해서는 혼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배출공정 등의 변경으로 수탁폐수의 성상이 변경되었거나 성상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해야 한다.

- 나. 수탁폐수 중 사진현상 등과 관련된 폐수(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부호 중 P-1부터 P-6까지의 폐수를 말한다. 이하 "사진폐수"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지 않고 해당 사진폐수만을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다. 혼합확인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공인기관의 검정·교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교정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라. 폐수처리업자는 혼합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20의3] 〈신설 2020. 11. 27.〉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1. 저장시설

- 가. 저장용량은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일 것
- 나.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을 것
- 다.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 라.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마.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처리시설

- 가. 개별 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처리시설의 합인 처리능력 기준을 준수할 것
- 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와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라.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마.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 바.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별표 21] <개정 2021. 12. 10.>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1.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 책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12.22.>
3. 삭제 <2015.12.22.>
4. 폐수처리를 수탁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거를 지연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2014.1.29>
6. 폐수는 처리방법별(재이용업의 경우 성장별)로 분리하여 수거·운반 및 저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와 관련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 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며, 거짓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8. 폐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퍼센트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반기별로 수탁폐수(재이용폐수를 포함한다)의 위탁업소별·성장별 수탁량·처리량(재이용량을 포함한다)·보관량 및 폐기물처리량 등을 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허가를 받은 폐수운반장비로 수탁폐수 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하는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2. 운반장비·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은 항상 허가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별표 13의 “나지역”에 입지한 시설 중 하수처리구역 또는 공공폐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입지한 시설은 별표 13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4.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15. 별표 20 제2호나목3)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에 한정하여 수탁해야 하며, 그 폐수는 해당 처리방법별로 분리·저장해야 한다.
16. 소각시설의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는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초기 승온은 850℃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대상 폐수를 투입하여야 한다.
17.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별표 20 제2호나목3)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3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 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컴퓨터
 - 이동형 통신수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
-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해야 한다.
-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기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인계내역 입력 :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다만, 인계내역을 입력하려는 자가 수탁처리폐수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인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인계내역을 확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 인수내역 입력 :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
- 그 밖에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폐수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별기준
 -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5일
나)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1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제1항제7호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영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지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9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0호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 방지사설에 유입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희석인정 취소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업정지 3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4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2조 제1항제13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9)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0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10)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그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법 제44조 본문	사용중지			
나)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 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다) 그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라) 그 지역이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6호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열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2)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5호	허가취소			
13)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제2항제3호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14)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4항	경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비고: 1.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1) 또는 9)의 개선명령 기간은 8개월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2. 8)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8)의 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조치 또는 개선 완료일까지, 5)와 10)의 가)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5. 2), 4), 5), 6), 8)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7. 비고 6에도 불구하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7) 또는 13)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1)의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11.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법 제50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른다.

나.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가) 사업장 안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나) 사업장 안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2)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3)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측정항목 별 상태정보(동작불량·통신불량·일시정지)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나)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5) 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6)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측정기기가 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경우 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3 제2항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4 제2항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8)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3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비고: 1. 1), 4), 7)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7)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5)의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적용한다.

다.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 (1) 외의 경우 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법 제42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법 제35조 제3항, 법 제42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법 제40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바)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그 밖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법 제40조				
가) 폐수(위탁처리폐수 및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폐수처리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수등 액상 수질오염 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비고: 1. 위 표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3)의 가)의 경우 조업정지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2)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사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나)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4)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5) 4)의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허가취소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8)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9)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4호				
가)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사용중지			
나)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쇄명령			
다)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10)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제2항제3호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 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무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비고: 1. 사용중지기간은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2.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3)의 조업정지기간은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신고일까지로 한다.
4.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마.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 제53조제5항 및 영 제75조에 따른 저감시설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나) 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 제7항	저감시설 설치명령			
		저감시설 개선명령			

바. 기타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9항	경고	사용중지		
		경고	경고	사용중지	
2) 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	법 제60조 제7항·제8항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비고: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비교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일까지, 2)의 경우에는 조치를 끝낸 날까지로 한다.

사.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본문	허가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4)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허가요건에 미달된 경우 가) 허가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나) 1월 이상 실행실이 없는 경우 다)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 라)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저장시설이 허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아) 처리시설이 허가요건에 위반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자) 그 밖의 허가요건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6)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 변경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운반차량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감차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폐수를 운반하거나 성상 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운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8) 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영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나) 그 밖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9)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처리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10)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5)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 기한까지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6)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7)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	법 제64조	허가취소			
18)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4조	허가취소			
19)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0)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폐수처리업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1)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2) 폐수방류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시료채취가 쉽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허가취소
23)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이 아닌 폐수를 수탁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4) 자가측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5) 측정기기(하수·폐수적산유량계)의 고장을 방지하거나 측정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6) 폐수처리업의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7)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4호				
가) 폐수처리업자가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폐수처리업자가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비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가목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그 기준 중 제2호 사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

[별표 23] <개정 2020. 11. 2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황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 처리 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현황	수시	허가(변경허가)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4. 폐수처리업에 대한 허가·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5.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
6. 환경기술인의 자격별·업종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
7.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8.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9.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0. 배출업소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1. 과징금 부과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2.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1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4. 골프장 땀·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15. 측정기기 부착시설 설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6.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7.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변경 등록, 관리대행능력 평가·공시 및 행정 처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9. 수생태계 복원계획(변경계획) 수립·승인 및 시행계획(변경계획) 협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20. 수생태계 복원 시행계획(변경계획) 협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0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396	제1조(목적) 3396	제1조(목적) 3396
제2조(정의) 3396		
제3조(적용 범위) 3397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3397	
		제2조(적용범위) 3397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3398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3398	제3조(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3398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3398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3399	
	제5조의2(수변구역의 지정·해제) 3399	제4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3399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400	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3400	제5조(안내판 등의 설치) 3400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3400	제5조의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401	제5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3400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402	제5조의5(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3402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3402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3403	제6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3403
	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3403	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3403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3404		제8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340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3404	제7조(수질기준) 3404	제8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3404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3404 제10조(연평균 수질) 3404
제8조(토지등의 매수) 3405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3405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3405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3407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3406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3408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3408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3408	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3408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3408 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3409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3410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3411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3411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411 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3412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3412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3413 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3413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3414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3415 제25조(조치명령 등) 3415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3416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3410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3411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3413	제11조(사업장 관할) 3413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3417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3417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3417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3417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3418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341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과징금) 3420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3419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3420
제15조(허가 제한) 3422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3420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3420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3422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3423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421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3423	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423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3422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 삭제 3424		제32조 삭제 3424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3424		제33조 삭제 3424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3424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3424	제34조(관거의 관리) 3424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35조(관거에 관한 개선평형 등) 3424
제21조(주민지원사업) 3425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3425	제36조(수질 유지기간) 3425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3426	제36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3427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3427	제36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3427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3428	제37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3428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3429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342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자료의 요청 및 처리) 3430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3430	제38조(수질오염방지사설에 대한 지원) 3431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3430	제25조(수질오염방지사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3431	
제23조(수질오염방지사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3431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4조(수질개선사업) 3432	제26조(통보 등) 3433	제39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3432
제25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3432		
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3433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3436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3437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3436	제28조(자료의 제출) 3437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3436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3438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3437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3438	
	제31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3438	
	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3439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3440	제40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3440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34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9. 2. 8 법률 제5932호 2001. 1.16 법률 제6362호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3.12.30 법률 제7016호 (자연개발촉진법)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12.29 법률 제7781호 2006. 9.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1.2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2007. 4.11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14호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치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31 법률 제9314호 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 5.31 법률 제10335호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치법) 2013. 7.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7.30 법률 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1.28 법률 제12369호 2015. 2. 3 법률 제13172호 2015.12.2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 1.27 법률 제13889호	제정 2002. 7.13 대통령령 제17677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소속기관직제)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7.26 대통령령 제18067호 (건설교통부와소속기관직제)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 등중개정령) 2004. 8.10 대통령령 제1851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 9.30 대통령령 제19070호 2006.12. 4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사범·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8호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2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체별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28 대통령령 제25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5. 9 대통령령 제25345호 2014. 7.28 대통령령 제25519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7.12 대통령령 제27340호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1.23 대통령령 제28607호	제정 2002. 7.29 환경부령 제124호 개정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12.31 환경부령 제312호 2010. 1.28 환경부령 제361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간선헤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변형서식 개선을 위한 강금강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5. 9 환경부령 제557호 2014. 7.29 환경부령 제571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변형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강금강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26 환경부령 제667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강금강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1.17 환경부령 제743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병영유아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8. 5 환경부령 제937호 2022. 3.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4.13 환경부령 제1030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12.27 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7.1.17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4호 2020.3.24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1.5.18 법률 제18172호 2022.12.27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8.16 법률 제19664호 2023.12.26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4.1.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1호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반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5호 2023. 5.23 대통령령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2.13 대통령령 제3422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라 한다)와 해당 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해당 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적용범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암호·동북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류 지역 또는 제3조에 따른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및 지류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전문개정 2008. 12. 24.]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이란 장흥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5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 [중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4. 7. 28.)]	제4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	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24.] [제5조의2에서 이동 <2014. 7. 28.>]	제5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5조의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조신설 2014. 7. 28.] 제5조의5(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본조신설 2014. 7. 28.]	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상류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1. 댐으로부터 해당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유하거리(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2. 댐으로부터 제1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제8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9., 2020. 12. 1., 2021. 8. 5.>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4. 7. 29.]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농산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 1. 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전문개정 2008. 12. 24.]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7. 28.> 1. 삭제 <2010. 11. 2.>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 17.>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2019. 1. 8.>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영산강·섬진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④ 삭제 <2014. 7. 28.>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가목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경계로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 2021. 3.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4. 7. 28.]	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그 밖에 위원회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은 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 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 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2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7. 12. 27.]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2014. 7. 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산강·섬진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 7. 2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 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 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 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2014. 5. 9., 2021. 8. 5.>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 유량계(합산유량계)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8. 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5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8.>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전문개정 2008. 12. 31.]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10. 1. 2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 4. 28.,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6. 1. 27.>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1.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여 한다. <개정 2016. 7. 2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2.> ④ 제14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6.>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나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4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 7. 12., 2021. 3.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28.)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제15조(허가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2014. 1. 2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과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2016. 7. 12.>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08. 12. 2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 삭제 <2017. 11. 28.>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제32조 삭제 <2018. 1. 17.> 제33조 삭제 <2018. 1. 17.> 제34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5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제36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 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7. 28.]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 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⑫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농업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체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	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업·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5.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6.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간 합의로 선정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7. 28.]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36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 해당 시·군·구의 주민편의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본조신설 2014. 7. 29.] 제36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개정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7. 28.>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28.>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개정 2014. 7. 28., 2021. 3. 9.>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1. 법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제37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수립지침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1. 3. 9.> ⑧ 삭제 <2021. 3.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3(자료의 요청 및 처리) 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군수는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8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9. 12. 20.>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삭제 <2023. 4. 13.>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2023. 4. 13.>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4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5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제39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시장·군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 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제26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 2016. 12. 27., 2022. 12. 27., 2024. 1.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 4. 15.)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28.)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7.>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借入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제9호·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주암호·동북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 지댐·수어호 및 탐진호(계곡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수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8조(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군수는 제27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 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산강·섬진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7조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1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2.> 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8. 12. 24.] 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7. 12.>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3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 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16., 2021. 3.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	제40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1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산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12.] 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 12. 27.]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3. 8. 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전문개정 2007. 12. 27.]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1. 3. 9., 2024. 2. 13.>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퇴적물준설사업 4.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운영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 1. 28.) ②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1. 수질개선헌계를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비점오염저감사업 6.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7.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9.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0. 환경기초조사업 11.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2.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4.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5.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6.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7.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전문개정 2008. 12. 24.] 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설 2014. 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13. 3. 23., 2020. 12. 31., 2023. 12. 26.>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영산강·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37조(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 4.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38조(개선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조류발생 등으로 인하여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9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 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12.〉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삭제 〈2018. 1. 23.〉 4. 삭제 〈2018. 1. 23.〉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의 명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6.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30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채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채납액만 해당한다) 10.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조사 [전문개정 2008. 12. 24.]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임직원 [전문개정 2016. 1. 27.]	수(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16. 7. 12.>] 제37조의4 삭제 <2021. 3. 9.>	제4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2016년 1월 1일 1의2.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2. 제24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와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3.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4. 삭제 <2018. 1. 17.> [본조신설 2014. 4. 3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장 벌칙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4. 3. 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 11. 28.>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제3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 삭제 <2017. 11. 28.> - 삭제 <2017. 11. 28.> -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④ 삭제 <2008. 12. 31.> ⑤ 삭제 <2008. 12. 31.> ⑥ 삭제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부칙 <제6604호, 2002.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의 경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군(광역시의 군 및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7677호, 2002. 7. 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대하여 제21조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③(불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칙 <제124호, 200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협의·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⑪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 군(광역시의 군 및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 제5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6조(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거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측리기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부칙 <제6655호, 2002. 2. 4.>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	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④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8067호, 2003. 7. 2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직국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5호, 2004. 8. 10.>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⑪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⑫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⑮내지 ㉔생략 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용예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예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⑨내지 ⑩생략 부칙 <제665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 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91호, 2003. 5. 2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 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한 경과학원”으로 한다. ①내지 ⑩생략 부칙 <제19070호, 2005. 9. 3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5호, 2006. 12.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II등 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 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 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 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 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내지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016호,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②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312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9〉 제3조(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361호, 2010.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㉒내지 ㉓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	제5조 생략 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 2014.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 2014. 7. 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3 및 제4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 2016.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75호,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⑬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88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하천수 사용자에게 대한 것만 해당한다)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 전단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	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생략 부칙 〈제743호, 2018. 1. 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여러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㉔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②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②내지 ②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④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2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37호, 2021.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 2023.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유기탄소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으로 본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④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7호, 2014. 1.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5345호, 2014.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⑤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 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19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40호, 2016. 7. 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7조제2호, 제28조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08호, 2007.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40번 다음에 140번의2부터 140번의4까지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⑱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data-bbox="126 221 565 421"> <tr> <td data-bbox="126 221 423 291">140의2</td><td data-bbox="423 221 565 291">「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td><td data-bbox="423 221 565 291">건축허가 제한지역</td></tr> <tr> <td data-bbox="126 291 423 362">140의3</td><td data-bbox="423 291 565 362">「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td><td data-bbox="423 291 565 362">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td></tr> <tr> <td data-bbox="126 362 423 421">140의4</td><td data-bbox="423 362 565 421">「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td><td data-bbox="423 362 565 42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td></tr> </table>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②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 부터 ③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40의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허가 제한지역	140의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40의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607호, 2018. 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1호, 2019. 1. 8.〉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25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	
140의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허가 제한지역									
140의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40의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3> 까지 생략 <5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생략>…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⑦ 부터 <68> 까지 생략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 3)가)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1호, 2024. 2. 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략〉···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5〉 부터 〈97〉 까지 생략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9〉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276호,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312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⑯ 부터 ㉔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㉖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㉖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㉖ 부터 <75> 까지 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5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616호,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020호,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⑱부터 ㉔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4〉까지 생략 〈50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8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68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영산강·섬진강수계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가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463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1388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5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099호, 2017. 11. 28.〉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72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664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39호, 2023. 12.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 〈생략〉 …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5 관련)	3483
[별표 1의2]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3483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3484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2조제1항 관련)	3486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3486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3487

[별표 1] <신설 2014.7.28>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5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 만 해당한다.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4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5. 생수 생산업	11202	세병(洗瓶)·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 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개정 2021. 3. 9.>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2] (개정 2021. 3. 9.)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에 다목의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 중 큰 양으로 한다.

- | |
|--|
|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6} - 할당오염부하량 |
| 2)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6} |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을 산정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조업시간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 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2011년	5,800원	25,000원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총인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지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오·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21. 3. 9.〉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2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 2) 학자금·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개정 2014.7.28〉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	특별지원사업

비고

1.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마. 삭제 <2018. 1. 23.>				
바. 삭제 <2018. 1. 23.>				
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4호	300	400	500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5호	300	400	500
자.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6호	300	400	50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영산강·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3491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2조 관련)	3492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3492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3493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관련)	3493
[별표 6] 삭제 <2018. 1. 17.>	3494
[별표 7]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34조제2항 관련)	3494
[별표 8]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1항 관련)	3496
[별표 9]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2항 관련)	3496

영산강·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또는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내의 지역과 영산강·섬진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 분	범 위
광주광역시	전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악양면·적량면·청암면(중이리·평촌리·명호리·목계리·상이리에 한한다)·하동읍·화개면·횡천면·양보면·진교면(안심리·백내리만 해당한다)·금남면(계천리·덕천리·진정리·대송리만 해당한다)
전라북도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금동·천거동·조산동·금지면·노암동·어현동·신촌동·대강면·대산면·덕과면·도동동·월락동·고죽동·식정동·갈치동·동충동·보절면·사매면·산동면·송동면·수지면·쌍교동·왕정동·신정동·화정동·용정동·이백면·주생면·주천면·죽항동·향교동·광치동·산곡동·내척동
	정읍시 산내면
	장수군 번암면·산서면·장수읍(대성리·덕산리·식천리·수분리만 해당한다)
	진안군 마령면·백운면·부귀면(세동리·신정리·오룡리만 해당한다)·성수면·진안읍(연장리·가림리·정곡리·군하리만 해당한다)

구 분	범 위
전라남도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순천시 낙안면(석흥리·평사리·목촌리·금산리만 해당한다)·상사면(도월리·봉래리·응령리·용암리·쌍지리·용계리만 해당한다)·송광면·송주읍·외서면·월등면·주암면·황전면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진상면·진월면·옥곡면·광영동
	목포시 옥암동
	보성군 겸백면·노동면·문덕면·미력면·보성읍·북내면·웅치면·울어면
	구례군 간전면·광의면·구례읍·마산면·문척면·산동면(수기리·계천리·원달리·위안리·대평리·내산리·둔사리·시상리·관산리·원촌리·탑정리·외산리·신학리·이평리만 해당한다)·용방면·토지면
	강진군 울천면·병영면·성전면·작천면·군동면(파산리·화산리·용소리·풍동리·장산리·덕천리·금강리·석교리·라천리·쌍덕리만 해당한다)
	영암군 군서면·금정면·덕진면·도포면·미암면(두덕리·미암리·선황리·채지리만 해당한다)·삼호읍(동호리·산호리·서호리·서창리·망산리·용암리·용당리만 해당한다)·서호면·시종면·신북면·영암읍·학산면
	함평군 나산면·대동면·손불면(동암리·죽장리·대전리·산남리·공산리만 해당한다)·신광면(함정리·원산리·삼덕리·월암리·계천리·백운리·보여리·동정리·북흥리·송사리·가덕리만 해당한다)·엷다면·월야면·학교면·함평읍(기각리·내교리·수호리·자룡리·성남리·대덕리·만흥리·진양리·함평리·옥산리·장교리·장년리만 해당한다)·해보면
	장흥군 부산면·유치면·장흥읍·장동면·장평면
	무안군 몽탄면, 무안읍(매곡리·용월리·고철리·성내리·성암리·교촌리·성동리·성남리만 해당한다)·삼향면(옹포리·남악리·맥포리만 해당한다)·일로읍
	영광군 군남면(대덕리만 해당한다)

[별표 2] <개정 2008.12.31>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2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bigcirc \text{평균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bigcirc \text{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cdots}{\text{측정횟수}}$$

$$\bigcirc \text{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c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3]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bigcirc \text{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bigcirc \text{기준배출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right)$$

$$\cdot \text{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cdots}{\text{측정횟수}}$$

$$\cdot \text{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c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bigcirc \text{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_{(a+1)}$$

1) a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정수부분, b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2) $X_1, X_2, X_3, \cdots, X_a, \cdots, X_n$ 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3) X_a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4) $X_{(a+1)}$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0.1.28>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5조제5항 각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3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bigcirc \text{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실측평균수질}} \times 10^6$$

-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2014.7.29>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차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해당 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법 제12조 제8항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60일	폐쇄명령

위반 사항	해당 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나.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조업정지	폐쇄명령		

[별표 6] 삭제 <2018. 1. 17.>

[별표 7]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34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아니하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누수 허용량(L/m)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text{N}/\text{cm}^2$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되서는 아니 된다.
 -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을 채워 넣기 전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연결 및 내부 검사
- 1) 맨눈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검사
 -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관거의 균열, 침입수 유무,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2) 유량측량
 -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유량계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 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 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 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 3) 수질조사
- 가) 건기 기준(우기 시는 비가 그친 후 비가 내리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분석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을 하여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16. 7. 26.>

[별표 8] <개정 2014.7.29>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가. I 지역(상수원보호구역): 1.1

나. II 지역(수변구역): 1.0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times$ (해당 지역의 면적 $\times$ 해당 지역의 가중치) $\div$ {(I 지역의 면적 $\times$ 1.1) +
 (II 지역의 면적 $\times$ 1.0)}

비고: “해당 지역”이란 I 지역, 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times$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div$ (I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 II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9] <개정 2014.7.29>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2항 관련)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times \{(MA \div TA \times 0.5) + (MP \div TP \times 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8에 따른 I 지역, 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편 물환경

09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목 차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3501
제2조(협의·조정 대상)	3501
제3조(회의)	3501
제4조(자문위원회)	3501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3501
제6조(실무위원회)	3501
제7조(사무국)	3502
제8조(여론의 수집)	3502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3502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3502
제11조(운영 세칙)	3502
부칙	3502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2. 4. 15 대통령령 제17575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0. 3. 4 대통령령 제22071호
 2012. 7. 24 대통령령 제239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1호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협의·조정 대상)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31.>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1. 광주광역시·전라북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주민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산업계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 1명. 다만, 광주광역시·전라북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수변구역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정된 시·군의 주민대표 각 1명씩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10. 3. 4.]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7., 2021. 12. 28.>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21. 9. 7.>
 1. 전북지방환경청장
 2. 삭제 <2021. 12. 28.>
 3. 서부지방산림청장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4.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21. 9. 7.>
 1.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개정 2012. 7. 24., 2021. 9. 7.>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전문개정 2010. 3. 4.]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4.]

부칙 <제17575호, 2002. 4. 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 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⑮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영산강환경관리청”을 각각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⑰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63호, 2006. 4. 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㉔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㉞내지 ㉟생략

제3조 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⑦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71호, 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79호, 2012. 7. 2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부칙 〈제27821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251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9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1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3509	제1조(목적) 3509	제1조(목적) 3509
제2조(정의) 3509	제2조(유기성 물질) 3509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350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51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3510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3510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3511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생산 계수의 산정) 3511
	제4조(생산목표율 등) 3511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3513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3513	제5조(자료 제공 요청) 3512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3513
제7조(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3513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3514
제8조(과징금) 3514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3514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3514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3516
제9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3516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3516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3517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3517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3517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3518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3518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3518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3518		
제14조(재정지원) 3519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3516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3519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3519
제16조(지역 주민의 참여) 3519		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3520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3520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352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3521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3521 제2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522 제21조(과태료) 3522 부칙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3521 제11조(규제의 재검토) 3522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522 부칙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3521 제15조(규제의 재검토) 3522 부칙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2022.12.30 법률 제1915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2.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 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바이오가스 이용”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	제정 2023.12.26 대통령령 제3404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성 물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제정 2023.12.28 환경부령 제106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된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 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②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 수율 등을 고려한 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 두 이상인 사업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사업자 ② 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시행령]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4조(생산목표율 등)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이란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을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목표율(이하 “생산목표율”이라 한다)을 말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의 산정)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2.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을 제외한 양 ③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산목표율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시행일] 제4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5조(자료 제공 요청) 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 정보,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가축 사육두수 등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자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축출별 반입량, 처리 유형별 현황 등 가축분뇨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 공공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가. 하수찌꺼기 배출량: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 내에서의 하수찌꺼기 배출량 나. 분뇨 배출량: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의 분뇨 배출량 다. 가축분뇨 배출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별 관할 구역의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豚糞)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2. 민간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 가. 가축분뇨 배출량: 사업자별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 나. 가축분뇨 처리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별 돈분 반입량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별 처리할 의무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라 한다)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평균 처리비율,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및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별 바이오가스 평균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립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공공의 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양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6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7조(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민간의 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민간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경과확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제3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②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라 한다) 이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제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라 한다)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가. 거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가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증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8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일] 제6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나. 거래 일시 및 거래자 정보 2.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제6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1일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가 1000Nm³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m³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징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 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도·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제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시설 개선·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4. 그 밖에 각종 인가·허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에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고시금액”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거나 위탁처리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데 활용된 유기성 폐자원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이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의 양은 총 생산목표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말한다. 1.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행일] 제6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환경부령 제1068호(2023. 12. 28.)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 가스 생산량을 산정·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산정·작성 및 보고, 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면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검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보고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적합성을 검토하여 그 양을 확정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성분 등의 검사를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분석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2.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3.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 4.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현황 ②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적합성 검토·확정·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전년도 운영현황(유기성 폐자원별 반입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포함한다)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적합성 검토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로 본다.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 발생,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 요청, 자료의 접수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운반·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운반·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운반·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이외의 에너지 작물 등을 유기성 폐자원과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		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가스 운반·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주민의 참여)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개선·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3. 민간의무생산자(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민간의무생산자로 고시된 자로 한정한다)로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자는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4.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의 지원·관리 5.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 6.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7. 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정한다. 1. 투자금의 총 한도: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지원·관리 2.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생산·활용사업의 지원·관리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 독촉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센터는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제출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일] 제1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3.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부 칙 〈제1915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 칙 〈제34047호, 2023. 12. 26.〉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제2호가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부 칙 〈제1068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4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3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장기 생산목표율(제4조제1항 관련)	3527
[별표 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3527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3528

[별표 1]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1.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장기 생산목표율(제4조제1항 관련)

1. 공공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

- 가. 2025년: 50%
- 나. 2030년: 50%
- 다. 2035년: 60%
- 라. 2040년: 70%
- 마. 2045년: 80%
- 바. 2050년: 80%

2. 민간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

- 가. 2026년: 10%
- 나. 2030년: 10%
- 다. 2035년: 50%
- 라. 2040년: 60%
- 마. 2045년: 70%
- 바. 2050년: 80%

[별표 2]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1.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과징금의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text{과징금(원)} = \text{목표미달성분(MJ)} \times \text{미달성 연도의 도시가스 요금(원/MJ)}$$

비고

1. “목표미달성분(MJ)”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목표미달성분(MJ)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Nm³) - 달성량(Nm³)] × 바이오가스 발열량 (23.9 MJ/Nm³)
2. “미달성 연도의 도시가스 요금(원/MJ)”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1.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30	70	1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50	80	100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30	70	100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50	80	100

제4편 물환경

11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540	제1조(목적) 3540	제1조(목적) 3540
제2조(정의) 354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542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3543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3544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3544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3545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3545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3546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3547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3546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3547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3548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3547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3548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3549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3548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3549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3549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3551	제4조(토지 출입증) 3551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3550	제6조(손실보상) 3551	제5조(재결신청서) 3552
제9조(손실보상) 3551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3552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3552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 3552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3553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3553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3555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3553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3555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3556	
	제10조(설치기준 등) 3556	제5조의3(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및 배치) 3557
제12조(설치기준 등) 3556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검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3558	제11조(사용의 공고) 3559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3557
제14조(타공사의 시행) 3559		제7조 삭제 3559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3559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 3559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3559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 3559	제13조(인·허가 등의 의제) 3562	
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3563	제9조(관리의 범위) 3562
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3560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3563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3562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3564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3563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 3566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 3567	제12조(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3566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3567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3566
제19조의3(결격사유) 3569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 3571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 3567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3570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3567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3571	제15조의4(성과평가) 3572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3568
	제16조(기술진단 등) 3573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3569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3572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3571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571
		제13조의8(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572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기술진단 등) 3573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3575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3573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3574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3574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정사유) 3576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3575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3576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3575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3577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3578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3577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3578	제19조(점용허가) 3578	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 3577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3578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3580	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3577
제24조(점용허가) 3578		제15조(사용제한) 3578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3579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3579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3580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3579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3579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등 <개정 2010. 6. 8.>	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 6. 8.>	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 6. 9.>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3581	제21조 삭제 3581	제18조 삭제 3581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3582	제19조 삭제 3581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3584		제20조 삭제 3581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3585		제21조 삭제 3581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3585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582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3586		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3582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3586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3583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3584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3586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3586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3586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587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589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3588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3592	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3592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3588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3594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3594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3589
제36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3595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3591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3595		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3592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3597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3597	제29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 3595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3598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3600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 방법 등) 3595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3603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3603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3596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3596
제41조(분뇨처리 의무) 3604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3599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3605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3608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3600
제43조(분뇨의 처리) 3606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3601
제44조(분뇨의 재활용) 3606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3603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의 지역) 3604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3605
		제3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3606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3606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3607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3608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3608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장 하수·분뇨 관련 영업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3608 제46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3610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3611 제48조(결격사유) 3611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3611 제50조(과징금) 3613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3614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3615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3619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3620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3622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3608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3613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3614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3615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3619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제4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3608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3609 제46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3609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3611 제4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3612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3613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3614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 ... 3614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3615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3615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3616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3617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3617 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3618 제58조(검사방법 등) 3618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3618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 3619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3619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3619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3620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622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3622		제65조(시공감독자의 자격) 3622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3623	제3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 3623	제66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3622
제6장 비용부담 등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3623		
제58조(비용분담) 3624		
제59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3624	제34조(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3624	
제60조(검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3624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3624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3624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3626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3625		
제63조(국고보조) 3625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3626		
제65조(사용료 등) 3626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제66조(기술관리인) 3626	제37조(기술관리인) 3626	
제67조(교육) 3627	제38조(교육) 3627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3627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3627
제68조(장부의 기록·보존) 3629	제39조(교육계획 등) 3628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3629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3631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3631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3632		
제69조(보고·검사) 3632	제40조(보고·검사 등) 3632	제71조(출입·검사 등) 3632
		제72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3633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3633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3633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0조(수수료) 3633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3633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3633		
제72조(청문) 3634		
제73조(강제징수 등) 3635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3635	제41조(권한의 위임) 3635	제74조 삭제 3636
	제42조(권한의 위탁) 3636	제75조 삭제 3636
		제76조 삭제 3636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637	
		제7장 삭제 〈2008. 11. 13.〉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3637	제77조(규제의 재검토) 3637
	제42조의4 삭제 3638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638		
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3639		
제76조(벌칙) 3639		
제77조(벌칙) 3640		
제78조(벌칙) 3641		
제79조(양벌규정) 3641		
제80조(과태료) 3642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642	
부칙 3645	부칙 3645	부칙 3645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정 2006. 9.27 법률 제8014호 개정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12.27 법률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9. 1. 7 법률 제9334호 2009. 1.30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신발보호법) 2009. 6. 9 법률 제9774호 (축광·수로조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5호 (한강개성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0. 6. 8 법률 제1035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4. 5 법률 제10652호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11.14 법률 제11084호 2012. 2. 1 법률 제11264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15호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3.18 법률 제12466호 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5. 2. 3 법률 제13171호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 1.27 법률 제13888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10.16 법률 제15843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반물유여 정비를 위한 한강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52호 2021. 6.15 법률 제18284호 (열간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 7.20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2. 6.10 법률 제18914호	제정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11 대통령령 제205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 5.21 대통령령 제2078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11. 5 대통령령 제21105호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 6.26 대통령령 제21571호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7.16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개발공사법 시행령)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1. 2. 9 대통령령 제22663호 2011. 6. 8 대통령령 제2296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9.30 대통령령 제23193호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4호 2012. 5.14 대통령령 제23783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2.20 대통령령 제24242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5.22 대통령령 제25358호 (간접기술진흥법 시행령) 2014. 7.16 대통령령 제25478호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간감정 및 고위시설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5. 2.16 대통령령 제26105호 2015. 4.20 대통령령 제26205호 (소해·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 9.13 대통령령 제27496호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	제정 2007.10. 1 환경부령 제249호 개정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3.20 환경부령 제282호 2008.11.13 환경부령 제308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4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0. 2.26 환경부령 제363호 2010. 6.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 2.17 환경부령 제399호 2011. 6. 9 환경부령 제41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10. 6 환경부령 제425호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2. 5.15 환경부령 제455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2.11. 1 환경부령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1.15 환경부령 제494호 2013.11.29 환경부령 제526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17 환경부령 제563호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11. 6 환경부령 제619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양저장 등 중수처리 정비를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6.27 환경부령 제660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2.20 환경부령 제723호 (자전거에서의 불합리한 하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역노출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2022.12.27 법률 제19127호 2023. 3.21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8. 8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 1.30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법률)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26 대통령령 제278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17 대통령령 제31162호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반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7.13 대통령령 제31887호 2022. 1. 4 대통령령 제32317호 2022.12. 6 대통령령 제33025호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 5.23 대통령령 제33479호 2023. 6.20 대통령령 제33555호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기타도신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3.19 대통령령 제34318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2.24 환경부령 제851호 2021. 2. 1 환경부령 제902호 2021. 7.13 환경부령 제930호 2021. 9.16 환경부령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2. 1. 6 환경부령 제964호 2022. 3.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12. 9 환경부령 제1008호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6.28 환경부령 제10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2021. 1.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7., 2010. 6. 8.,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2. 27.>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의 추진전략·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1. 1. 5.>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본조신설 2013. 1. 15.]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7. 17.>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삭제 <2016. 6. 27.>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변경·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거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키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 15.]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6. 27.]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2012. 2. 1., 2013. 7. 16.> ②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 5. 26.>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2021. 1. 5., 2022. 12. 27.>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제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8.]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장계획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3. 1. 15., 2014. 7. 17., 2020. 2. 24.>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1. 6. 15.> ⑤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⑥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2. 2. 1., 2013. 7. 16.>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2. 7. 20., 2012. 12. 20.>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마. 합류식하수관로·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마. 합류식하수관로·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8., 2014. 7. 17., 2017. 1. 19., 2018. 1. 17.>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1. 7. 21., 2013. 7. 16.>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5.> 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 10. 24., 2013. 1. 15.>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손실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4.>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본조신설 2022. 1. 4.]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1. 7.)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4. 7. 16.>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 7.> ⑤ 삭제 <2013. 7. 16.>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삭제 <2014. 7. 16.>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4. 7. 16.>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15., 2014. 7. 17.>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관로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기간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본조신설 2009. 6. 30.]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⑥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 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20. 5. 26.> ⑦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⑧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20. 5. 26.>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22. 12. 27.>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 5. 14.>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4. 7. 16.>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08. 11. 5., 2011. 2. 9., 2011. 10. 28., 2011.	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로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강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지대나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한 곳 등에 적정하게 배치할 것 2. 수질오염 저감(低減)을 위한 시설: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오염된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3.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시설: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곳에 배치할 것 [본조신설 2012. 5. 15.]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검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결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 등(이하 “검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검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검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검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11. 23., 2012. 12. 20., 2014. 5. 22., 2014. 7. 16., 2016. 9. 13., 2017. 1. 26.)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 4. 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21. 1. 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개정 2020. 5. 26.>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3. 7. 16.>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시·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	제7조 삭제 <2012. 5. 15.>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협의·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6., 2007. 4. 11., 2007. 12. 27., 2008. 3. 21., 2009. 1. 7., 2009. 6. 9., 2010. 4. 15., 2011. 11. 14.,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20. 5. 26., 2021. 7. 20.,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7. 16.>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 4. 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임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승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2020. 5. 26., 2024. 1.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 30.> [제목개정 2013. 7. 16.]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	제9조(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4. 7. 17.>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②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2. 2. 1.>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방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7. 17.>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	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삭제 <2009. 6. 26.>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1. 2. 9., 2014. 7. 16., 2022. 1. 4.>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 11. 5., 2018. 1. 16.>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3. 1. 15., 2013. 11. 29., 2014. 7. 17.>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9.> 1. 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분기별 추진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1. 1. 5.> 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항목·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5., 2014. 7. 16., 2022. 1. 4.> 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2. 1. 4.> [제목개정 2014. 7. 16.]	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 2013. 11. 29.>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 11. 29.>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9.>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9.> [제목개정 2014. 7. 17.]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2조(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3., 2009. 6. 30., 2014. 7. 17.> 1. 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유리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 6. 30.>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1. 5.) ⑦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제목개정 2012. 2. 1.]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 1. 4.>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2. 12. 20.]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22. 12. 9.> 1. 삭제 <2015. 11. 6.> 2. 삭제 <2015. 11. 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15.]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2. 2. 1.]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9.> 1. 상호·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15.]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16. 1. 27., 2017. 1. 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상호·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15.]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본조신설 2013. 1. 15.]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정역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4제1항(제2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2. 2. 1.]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 5.>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2022. 1. 4.>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 15.]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13. 1. 15.]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2. 2. 1.]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대행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대행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20.>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⑤ 삭제 <2022. 1. 4.> [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2. 12. 20.] [제42조의3에서 이동 <2012. 12. 20.>] 제15조의4(성과평가) ①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2.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②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제13조의8(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0조(기술진단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진단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4. 7. 16., 2022. 12. 6.>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4. 7. 17.>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의2. 하수관로 1의3. 하수저류시설 2. 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4. 7. 17.>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2.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5. 15.]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4.]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2. 12. 20., 2015. 2. 16., 2022. 1. 4.>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 12. 20., 2022. 1. 4.> [본조신설 2012. 5. 14.]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 2022. 1. 6., 2022. 12. 9.> 1. 삭제 <2014. 7. 17.> 2. 삭제 <2014. 7. 1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 2022. 1. 6.> [본조신설 2012. 5. 15.]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②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1. 1. 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1. 11. 14.]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 2022. 1. 6., 2022. 12. 9.> [본조신설 2012. 5. 15.]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4.]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3. 1. 15., 2022. 1. 6.> [본조신설 2012. 5. 15.] 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영 별표 1의5 제4호에 따른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4호의 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6., 2022. 12. 9.> [본조신설 2014. 7. 17.] 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20. 5. 26.>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1. 7.>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26.>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5조(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5. 26.>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7. 16.> 1. 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2. 시·도지사의 경우: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검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5. 14.>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15.]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자 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자 [본조신설 2021. 1. 5.]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등 〈개정 2010. 6. 8.〉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 6. 8.〉 제21조 삭제 〈2011. 6. 8.〉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 6. 9.〉 제18조 삭제 〈2011. 6. 9.〉 제19조 삭제 〈2011. 6. 9.〉 제20조 삭제 〈2011. 6. 9.〉 제21조 삭제 〈2011. 6. 9.〉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 6. 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2. 30.>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 11. 30., 2009. 6. 26., 2018. 1. 16.>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30.> 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7. 17., 2022. 1. 6.>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硬質)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노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 17.>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키지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9. 1. 7.] [제목개정 2021. 1. 5.]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개정 2009. 6. 26.>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② 삭제 <2012. 5. 15.>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시험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5.> - 연구·시험의 목적 및 내용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 사후관리 방안 [본조신설 2009. 6. 30.]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4. 7. 17.]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서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말한다. <개정 2010. 2. 26., 2017. 1. 19.>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 1. 삭제 <2014. 7. 17.> 2. 삭제 <2014. 7. 17.>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④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2021. 7. 13.)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 11. 6., 2020. 2. 24., 2022. 12. 9.)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⑤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개정 2012. 5. 14., 2012. 12. 20., 2022. 1. 4.>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21. 7. 13.>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공중 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3.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착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6., 2014. 7. 17., 2021. 7. 13.>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7. 16.]	② 법 제34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개인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공동관리하는 각 개인하수도 시설·설비의 규모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징수비용을 정할 것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설비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부터 해당 시설·설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 7. 16.]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2.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14. 7. 17.]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건물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9., 2014. 7. 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09. 1. 7., 2017. 1. 17.,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2009. 1. 7., 2017. 1. 17.>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제29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1. 13., 2018. 1. 17.>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1., 2014. 7.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5., 2014. 7. 17.〉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7. 17., 2022. 12. 9.〉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1. 7., 2011. 4. 28., 2020. 5. 26., 2021. 1. 5.> 1.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법 제38조제1	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14. 7. 17., 2022. 12. 9.>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9.>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등록을 한 자 5. 삭제 <2021. 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산설 2021. 1. 5.>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환경설비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본조산설 2022. 1. 4.]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1. 13., 2013. 1. 15., 2017. 1. 19., 2018. 1. 17., 2019. 12. 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이나 단수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 7. 17.>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⑦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결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17.)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7.)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⑪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⑫ 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 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 8. 11., 2021. 7. 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④ 법 제3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3.> ⑤ 법 제39조제12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2021. 7. 13.>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9. 12. 20., 2021. 7. 13.>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7. 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	제4장 분뇨의 처리	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 7. 17.>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환경부장관(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 7. 17.>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조정을 할 때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43조(분뇨의 처리)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		제3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추어 것 3. 수집·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3., 2014. 7. 17.>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 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 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제5장 하수·분뇨 관련 영업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21. 7. 13.>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사항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4. 7. 16.>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 7. 13.>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21. 7. 13.>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7., 2021. 7. 13.>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제4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17.>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46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⑦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⑧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제46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 4. 5., 2015. 2. 3., 2017. 1. 17., 2020. 5. 26., 2021. 1. 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삭제 <2011. 11. 14.> 11. 삭제 <2011. 11. 14.> 12.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4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6. 30.>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②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2022. 12. 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2. 12. 27.> ⑤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13. 8. 6., 2020. 3. 24.,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0., 2023. 6. 20.>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 2023. 6.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9. 6. 30.> [제목개정 2009. 6. 30.]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2022. 12. 27.)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 2022. 12. 27.>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② 삭제 <2022. 1. 4.>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0. 6.>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4. 7. 17.>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⑤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⑦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	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행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 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0. 6.>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4. 7. 17.>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2. 제조시설의 변경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기 전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3., 2010. 2. 26., 2011. 10. 6., 2015. 11. 6., 2021. 2. 1.>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5. 26.) ⑤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관기술인증원 2. 재질검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①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성능 및 재질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24.>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 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2. 24.] 제58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 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2020. 5. 26.)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4와 같다.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이 등록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0. 6.>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3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4. 7. 17.>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⑤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제51조제4항·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 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처리시설을 제조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4. 삭제 (2011. 11. 14.) 15.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본다. (개정 2020. 5. 26.) 제5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 6. 30.) ② 삭제 (2009. 6. 30.) [제목개정 2009. 6. 30.]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66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①법 제56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6. 6. 27.)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3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본조신설 2011. 9. 30.] 제6장 비용부담 등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 27.> [제목개정 2014. 7. 17.]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용분담)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60조(검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검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검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제34조(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20. 5.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 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5. 26.>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7장 보칙 제66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7. 1. 17., 2020. 5. 26.>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제7장 보칙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제6장 보칙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교육)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17. 1. 17., 2018. 1. 16.> 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입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9.>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사실대로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자를 포함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1. 2. 9., 2012. 12. 20.>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19조의4·제49조·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3. 분뇨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제39조(교육계획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8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 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경계선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다. 하수관로 및 토구(土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 시설의 위치나 명칭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가. 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 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로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 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1. 1. 5.]		및 명칭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2. 2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4.>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69조(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20. 5. 26., 2021. 1. 5.> 1. 관리대행업자 2. 기술진단전문기관 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5. 분뇨수집·운반업자 6.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7. 처리시설제조업자 8. 처리시설관리업자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제40조(보고·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수·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오수·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71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 사고·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 운영상 통합 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8.,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2020. 5. 26.> -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14.]	제72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1. 1. 5.>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 5.]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2. 5. 1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2. 12. 20., 2014. 7. 16., 2022. 1. 4., 2022. 12. 6., 2023. 6. 20.>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삭제 <2014. 7. 16.>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삭제 <2014. 7. 16.>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②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4의4.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의5.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4의6.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6.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8.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제3호·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2. 12. 20., 2023. 5. 23.> 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제74조 삭제 (2012. 5. 15.) 제75조 삭제 (2012. 5. 15.) 제76조 삭제 (2013. 1. 15.)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012. 2. 1., 2020. 5. 26.〉	2009. 9. 21., 2009. 12. 24., 2012. 12. 20.)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삭제 〈2009. 9. 21.〉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③ 법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이란 각각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산설 2022. 12. 6.〉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1조나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3, 제20조의3 또는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산설 2014. 8. 6.] [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제7장 삭제 〈2008. 11. 13.〉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④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1. 1. 5.> ⑤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⑥ 삭제 <2012. 2. 1.> ⑦ 삭제 <2012. 2. 1.>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2014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 3. 3.> [전문개정 2013. 12. 30.] [제4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4로 이동 <2014. 8. 6.>] 제42조의4 삭제 <2022. 12. 6.>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 사유: 2017년 1월 1일 4. 제42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다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2. 1.] 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3. 18., 2021. 1. 5.>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2. 2. 1., 2020. 5. 26., 2021. 1. 5.>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8항·제51조제3항·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2020. 5. 26., 2021. 1. 5.>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제1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11.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 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5. 삭제 (2011. 11. 14.)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한 자 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 삭제 (2011. 11. 14.)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11. 14.]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7.]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 6.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11. 14., 2021. 1. 5., 2022. 6. 10., 2022. 12. 27.>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 1. 제4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2021. 1. 5.>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4항을 위반하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 5. 14.]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4의2.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삭제 <2021. 1. 5.>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20. 5. 26., 2021. 1. 5.>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4.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3. 7. 16.> ⑦ 삭제 <2009. 1. 7.> ⑧ 삭제 <2009. 1. 7.> 부칙 <제8014호, 2006. 9.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를 말한다)·인가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를 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부칙 <제20289호, 2007. 9.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4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49호,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하수·분뇨 찌꺼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류수수질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1일 처리용량이 2세제곱미터이하인 오수처리시설(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33조에 따른 정화조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변구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하고,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이행명령 그 밖의 행위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营业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어촌정비법」 또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마을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마을하수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당 2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③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입 검사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이 법의 시행일 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름,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⑦ 향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분뇨처리시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과 별표 6 비고란 제2호 중 “수질환경보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③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부터 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	⑮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⑮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부터 ㉔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544호, 2008. 1. 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2호, 2008.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에 대하여는 별표 12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를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의 정화조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때에는 별표 12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호, 2008.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 2009. 6. 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26.> 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 2010.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의처리어업관련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어업관련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어업관련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2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⑯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789호, 2008. 5. 2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②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생략 부칙 〈제21105호, 2008.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⑰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99호, 2011.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 2011. 6.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25호, 2011.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⑮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⑯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2조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⑰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⑱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⑲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⑳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⑬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71호, 2009. 6. 26.〉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에 등록된 법인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55호, 2012. 5. 15.〉 이 규칙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 2012. 11.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㉔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㉕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㉖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㉗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㉘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㉙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제2조(「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4호, 2013. 1. 15.〉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 2013.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 2014.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㉔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 한다. ㉔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㉔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㉔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㉔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실시한다. ㉔「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9호,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1744호, 2009. 9.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1> 부터 <5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⑯부터 ㉔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619호, 2015.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보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 2016. 6. 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 전단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㉔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㉔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㉔ 부터 ㉔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420호, 2010. 10. 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 〈제22663호, 2011.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2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723호, 2017. 12. 2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제2항”을 “동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㉔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㉕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㉖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㉗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2967호, 2011. 6. 8.〉 (들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II.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제23193호, 2011.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II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III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㉔ 지방소도음역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㉖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 분뇨 ㉗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㉚ 도량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3313호, 2011. 11.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23464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정화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83호, 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2 제6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는 2012년 8월 1일까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정도관리”로 본다.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㉗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 2020.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7조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2호, 2021.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 2021.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㉞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 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㉟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㊱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㊲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㊳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㉟ 및 ㊲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155호, 2012. 10. 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242호, 201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설관리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 2022. 1. 6.>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8호, 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0호, 2023. 1. 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41호, 202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58호, 2014. 5. 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478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제2조(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 분뇨 제2조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 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 타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약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05호, 2015.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05호, 2015. 4. 2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④내지 ④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④내지 ④6생략 제10조 생략	제1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445호, 2016. 8.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⑮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496호, 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두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8819호, 2007. 12. 27.>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⑥ 부터 ④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 부터 ③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투경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 악취물질 제거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화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고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따라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대상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0> 까지 생략 <52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806호, 2017. 1.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제4조 생략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생략 부칙 <제9334호, 2009. 1.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④6까지 생략 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②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 까지 생략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보안림·산림유전 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74호, 20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④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62호, 2020. 1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87호, 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하수도법」 제34조제3항”을 “「하수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6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35호,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32317호, 2022. 1. 4.〉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5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92호, 2022. 12. 30.〉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0359호, 2010. 6.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552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45조제5항(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48조제3호, 제80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제7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3555호, 2023. 6. 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8호, 2024. 3.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사설업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⑤부터 ③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084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제9호의2 및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64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9>까지 생략 <510>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15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9호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25조제2항제1호, 제34조의2 및 제8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와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지방상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9〉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66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8호,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64〉 및 〈6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71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3제1호, 제20조의3제1호 및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13888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7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19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43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9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경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52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의3제4호, 제46조, 제48조제4호, 제54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0조제4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76조, 제77조제11호, 제8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하수의 유입신고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등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으로,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으로,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를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으로, “제45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을 “제45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8284호, 2021. 6. 15.〉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310호,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18914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기술진단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2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3. 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한다. ㉞ 및 ㉟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251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⑤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3683
[별표 1의2]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3683
[별표 1의3]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3685
[별표 1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3686
[별표 1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3687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3688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3689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3689
[별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3691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3692
[별표 6] 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3693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369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3695

[별표 1] 〈신설 2022. 1. 4.〉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 〈개정 2022. 1. 4.〉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 2)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 1) 준설차량
-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 3) 연막시험용 배풍기
- 4) 공기압 시험기

비고

1. 복합기능을 갖춘 측정기나 측정장비를 보유할 경우 해당 보유수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공기압시험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 분석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준설차량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구분		기술인력
가. 공공 하수도 (하수관로는 제 외 한 다) 관리대행	시설용량	
	1) 500 m³/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수질환경기사 1명 다)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2) 화공기사 (3) 토목기사 (4)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2) 10,000 m³/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 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2명 이상(각 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 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구분		기술인력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3) 10,000 m³/일 이상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력 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 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 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 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가)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환경기사 (2) 토목기사 (3)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4)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2명 이상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질환경산업기사 (2) 토목산업기사 (3)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4)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비고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생물공학 기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3] 〈개정 2022. 1. 4.〉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제1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별표 1의4] <개정 2022. 12. 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 1) 유속계
- 2) 수온 측정기
-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 4) 용존산소(DO) 측정기
- 5) 자동시료채수기
- 6) 디지털압력계
- 7) 접지저항계
- 8) 절연저항 측정기
- 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 10) 연막시험용배풍기
- 11) 이동식 유량계
- 1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실험분석장비
- 13)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 14) 부유물질(SS) 실험분석장비
- 15) 총질소(T-N) 실험분석장비
- 16) 총인(T-P) 실험분석장비
- 17) 총대장균군수 실험분석장비
- 18) 생태독성 실험분석장비
- 19)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 20)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 21) 진동측정분석기
- 22) 소음측정기
- 23) 회전계
- 24) 포터블 캘리브레이터
- 25) 전력품질분석기

26) 유량계

나. 기술인력

-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가) 환경, 화공, 기계 또는 전기 관련학과 박사
 - 나) 상하수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또는 산업계측제어 기술사
- 2)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사 각 1명 이상
 - 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또는 생물공학 기사
 - 나)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또는 설비보전 기사
 - 다) 전기 또는 전기공사 기사
 - 라)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 3)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가) 수질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나)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또는 기계정비 산업기사
 - 다) 전기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 라) 토목 산업기사
 - 마) 수질환경 산업기사
- 4)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

2. 하수관로(중계펌프장은 제외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 1) 유속계
- 2) 수온 측정기
-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 4) 용존산소(DO) 측정기
- 5) 자동시료채수기
- 6) 디지털압력계
- 7) 접지저항계
- 8) 절연저항 측정기

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10) 연막시험용배풍기

11) 이동식 유량계

1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실험분석장비

나. 기술인력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상하수도 또는 수질 관련학과 박사

나) 상하수도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2)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

3) 토목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1명 이상

4) 기계 또는 전기 산업기사 1명 이상

5)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

비고

1. 복합측정기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생물공학 기사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비고 외의 부분 제2호나목2)와 같은 목 3)의 토목 및 수질환경 자격 종목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의5] <개정 2022. 12. 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기술진단 대상과 내용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
3.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진단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진단실적을 기술진단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삭제 <2022. 12. 6.>
8.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 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중인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
 - 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한다),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경우

[별표 1의6] <개정 2022. 12. 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3의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7의2. 오수처리시설은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沈澱分離組)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沈澱)·스크린시설로 침전분리조를 대체할 수 있다.
- 7의3.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生物反應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은 0.3kg/m³·일 이하로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단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질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1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2. 12. 6.>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주차공간(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비고 :

-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흡입식 차량 및 주차공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 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11.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별표 3] <개정 2023. 6. 20.>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3호	2,000	5,000	
2.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 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4호	2,000	5,000	10,000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5호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0	5,000	10,000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000	10,000
4.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1,000	3,000	5,000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의4 제2항제3호	2,000	5,000	10,000
6.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3호			5,000
7.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4호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2,500	5,000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500	5,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영 별표 1의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영 별표 1의5 제8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5호	1,000	2,500	5,000
9. 법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6호	5,000 이내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상)	1,500	3,000
10.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가.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나. 그 밖에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4호			3,000
11.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2호	500	1,500	3,000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2호		1,500	3,000
1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5호	500 500 500	1,500 1,500 1,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4. 법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6호			3,000
15.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7호	500	1,500	3,000
1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8호	500	1,500	3,000

비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4] <개정 2024. 3. 19.>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염소이온농도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 (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일반기계기사, 윤활관리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

-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삭제 <2022. 1. 4.>
마. 삭제 <2022. 1. 4.>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22. 12. 6.)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공장 나. 제조시설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형틀 - 성형기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핸드레이업법 - 형틀 - 수지 교반기 - 경화설비 - 절단설비 나) 스프레이업법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스프레이 기계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형틀 - 절단설비 - 와인딩기계 라) 압축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프레스성형기 마) 레이진트랜스몰딩(RTM)성형 또는 진공 성형법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나. 삭제 (2022. 12. 6.) 다.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형틀 - 절단설비 - 성형기 - 수지 투입기 다. 실험실 라. 실험기기 1) 제품실험기기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재료의 인장강도·인장탄성률·수밀성·내약 품성·두께·흡수율의 시험시설 - 소음측정기(송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바큇경도계, 내약품성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내압강도시험기, 칸막이강도시험설비, 접촉재강도시험설비, 수밀성시험설비, 강성시험설비, 재하강도설비, 용량계 및 소음 측정기 - 흡수율,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설 2)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염소이온농도 측정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총 질소(TN), 총 인(TP) 및 대장균 군수(1일 처리용량 50m³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 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품질경영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구분	재질검사대상	성능검사대상
오수처리시설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용량별 재질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및 처리효율
정화조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인원별 재질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별표 7] (개정 2022. 12. 6.)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4) 대장균 군수(群數) 5)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다.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측정기 1대 이상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

-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술인력란 항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물관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전담기술인력
사.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801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중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 기술인력란 항목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위 표 기술인력란 나목에 따른 수질환경산업기사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8] <개정 2023. 6. 20.>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최중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라. 방류수수질기준 중 둘 이상의 항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 마.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된 24시간 평균값 1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2호			
1)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나.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1호			
1)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100	200	300
2)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200	300	400
3)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300	400	500
다.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1호	200	300	400
마.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0조제2항 제1호			
1) 처리용량 1㎥/일 이하		10	20	40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2)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7)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법 제80조제2항 제1호	100	150	250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8) 처리용량 300㎥/일 이상		120	200	300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바.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30	40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법 제80조제4항 제1호 법 제80조제4항 제2호 법 제80조제4항 제2호의2 법 제80조제4항 제3호 법 제80조제4항 제3호의2 법 제80조제2항 제3호	60	70	90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70	80	100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50	70	100
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50	70	100
자.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차.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50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및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300	4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법 제20조의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 진단을 대행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4호				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 제6호	30	40	50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및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50	200	250	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7호	50	70	100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300	400	500	처.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8호	50	70	100
하.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 제1호	30	40	50	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9호	50	70	100
거.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4호	50	70	100	터.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0호	100	100	100
너. 법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4호의2	50	70	100	퍼.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1호	100	100	100
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5호	50	70	100	허.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2호			
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 제2호	30	40	50	1) 처리용량 2㎡/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 제3호	30	40	50	2)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 제4호	30	40	5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서.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 제5호	30	40	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7)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고. 법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3호	50	70	100
노.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4호	50	70	100
도.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5호	50	70	100
로.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3항 제1호	100	200	300
모.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6호	100	100	100
보.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7호	100	10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소.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8호	100	100	100
오.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9호	100	100	100
조.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0호	100	100	100
초.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1호	100	100	100
코.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2호	100	100	100
토.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3호	50	70	100
포.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3항 제2호	100	200	300
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4호	50	70	100
구.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5호	50	70	100
누.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6호	50	70	100
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7호	50	70	100
루. 법 제69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8호	100	100	100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3703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3705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3705
[별표 4]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3706
[별표 5]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3707
[별표 5의2]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제11조 관련)	3708
[별표 5의3]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3708
[별표 5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3709
[별표 6] 삭제 <2014.7.17.>	3710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3710
[별표 8] 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 관련)	3711
[별표 9]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3712
[별표 10]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3712
[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3714
[별표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3714
[별표 13]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3716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 관련)	3717
[별표 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3718
[별표 16]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3721
[별표 17] 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 관련)	3722

[별표 1] (개정 2022. 12. 9.)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부유물질 (SS)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총대장균 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I 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II 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III 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IV 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물질 (SS)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총대장균 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I 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II 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11.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물질 (SS)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총대장균 군수 (개/㎖)	생태 독성 (TU)
	III 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IV 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제2호나목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mg/L 이하와 8mg/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km 이내의 지역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의 지역
-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704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

구분	범위
I 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II 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III 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I 지역 및 II 지역을 제외한다)
IV 지역	I 지역, II 지역 및 III 지역을 제외한 지역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총대장균군수 (개/mL)	
I 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총대장균군수 (개/mL)	
Ⅱ 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5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Ⅲ·Ⅳ 지역	-		-	

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

[별표 2] <개정 2020. 2. 24.>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 /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mg /L)	부유물질(SS) (mg /L)	총대장균군수 (개수/mL)	총질소(T-N) (mg /L)	총인(T-P) (mg /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 /L)	총유기 탄소량(TOC) (mg /L)	부유물질(SS) (mg /L)	총대장균군수 (개수/mL)	총질소(T-N) (mg /L)	총인(T-P) (mg /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별표 3] <개정 2018. 1. 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 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20 이하
			부유물질(mg/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총질소(mg/L)	20 이하
			총인(mg/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11.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저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mg/L 이하와 8mg/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 (mg/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 (mg/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mg/L이하, 부유물질량 10mg/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효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3.1.15>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 (제3조제3항 관련)

- 시료(試料)는 수세식 화장실에 유입되기 전의 세정수와 정화조의 소독실로 유입되기 전의 유출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등
 -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text{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 \frac{\text{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text{유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text{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times 100$$

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

$$\text{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frac{\text{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text{희석배율}}$$

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

$$\text{희석배율} = \frac{\text{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text{유출수의 염소이온농도} - \text{세정수의 염소이온농도}}$$

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1.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일정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 하수가 정체되거나 침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류식하수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공공하수도 하수관로의 안지름이나 안 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 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강우 시에는 배수구역 내의 우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5의2. 하수저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의 경우 하수를 신속하게 유입·유출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도 하수의 유입과 유출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다.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재이용 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는 경우(침수 예방을 위하여 신속하게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유출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하수관로의 방향·경사도·안지름이나 안 폭이 변화하는 곳, 단차(段差)가 생기는

- 곳, 하수관로가 합쳐지는 곳이나 분리되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맨홀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다만,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맨홀의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따른다.
- 다.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로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오수받이는 안지름이나 안 폭이 3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빗물받이의 간격은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10미터 이상 30미터 이하의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10미터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다. 빗물받이의 크기는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맨홀과 물받이에는 주철제(鑄鐵製),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재질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제11조 관련)

1. 측정방법

가. 측정 지점: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하수를 배출하는 우수토실(雨水吐室: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별로 강우유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1곳 이상 선정하여 수량과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측정 횟수: 연 2회 이상

다. 측정 기간: 강우 시작 시점부터 강우 종료 후 하수가 우수토실에서 배출되지 않는 시점까지

라. 측정 항목

1) 수량

2) 수질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나) 총유기탄소량(TOC)

마. 측정기준

1) 수량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르고, 공인기관의 검정·교정을 받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2) 수질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측정결과와 기록 방법: 측정결과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하수도법」 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 19조의4제1항제1호·제 2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해 당 조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9조의2제1항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다.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4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5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6호 법19조의4 제2항제1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7호 본문	등록취소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8호	등록취소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19조의4 제2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5의3] <개정 2023. 1. 5.>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 20조의4제1항제1호·제 2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술진단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그 밖에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2호	경 고	등록취소		
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4호	경 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영 별표 1의5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영 별표 1의5 제8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5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6호	등록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사. 법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6호	해당 임원 교체 임명 전까지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등록취소		
아.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7호	등록취소			

[별표 6] 삭제 <2014.7.17>

[별표 7] <개정 2019. 12. 20.>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우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mm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의 지름 (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mm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의 지름 (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의 지름 (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 수를 늘린다.

4. 배수관의 경사는 배수관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42조 관련)

1. 설치기준

-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 장비의 사용이 어려우면 수거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수집장비는 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라. 저장시설은 분뇨에 의하여 부식·손괴(損壞)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마. 저장시설의 바닥 및 벽은 빗물·토사·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바. 퇴비화 시설에는 반입되는 분뇨를 1개월 이상(통발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의 증발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기준

- 가. 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분뇨를 저장·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장비 등으로부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한)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과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과 장비 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크(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분뇨수집·운반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라.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4호				
1)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5호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허가취소			
바. 법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허가취소			
차. 삭제 <2014.7.17>					
카. 삭제 <2014.7.17>					
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2호	허가취소			
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3호	허가취소			

[별표 11] <개정 2015.12.2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의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 가.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부분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설계는 제조제품의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5. 삭제 <2015.12.22.>
6.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쳤을 때에는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7. 설계·시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의 처리용량 범위에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별표 12] <개정 2019. 12.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

(제55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
 - 가. 오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별표 3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지킬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 2) 영 제24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 3) 구조물 본체의 직경이나 높이는 3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내부에 1.5m마다 보강링을 구조물의 본체와 일체형으로 성형하여야 하며, 보강링의 단면은 안전성이 1보다 작고, 허용 좌굴하중이 단위 폭당 하중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4)의 보강링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 안전성 및 허용 좌굴하중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외의 재질을 사용하려면 같은 수준 이상의 보강기능이 있어야 하며, 부식 등으로 인한 재질의 약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방식처리(防蝕處理) 등을 하여야 한다.
 - 가) 안전성 계산식: $\sigma \div 420\text{kg}/\text{cm}^2 + \sigma 1 \div 700\text{kg}/\text{cm}^2$
 - 나) 허용좌굴하중 계산식: $3EI/r3$

$$\ast \text{응력(변형력)}(\sigma) = Pr \div A$$

$$\text{굴곡응력}(\sigma 1) = 0.84Pr^2/bt^2$$
 P: 단위 폭당 하중(P = 40.73kg/cm)
 r: 반지름
 A: 보강링의 단면적
 b: 보강링의 너비
 t: 보강링의 두께

E: 탄성율(80,000)

I: 보강링의 단면 2차 모멘트($I=bt^3/12$)

나. 정화조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3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 2) 영 제24조에 따른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 3) 구조물 본체의 직경 또는 높이는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은 제외한다).
- 4)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침전 및 소화실(부패실)의 구조 및 규격	성능기준
(1)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하여 직렬로 연결하여야 한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50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2) 총유효용량은 1.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5㎡ 이상을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다만, 처리대상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총유효용량을 1.0㎡ 이상으로 한다.	
(3) 제1실의 유효용량은 2실형에는 총유효용량의 3분의 2, 3실형 및 4실형에는 2분의 1로 하여야 하고, 최종실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되, 그 장치의 아래로부터 오수가 통과하는 구조로 하며, 쇄석층(碎石層) 또는 이에 준하는 여재(濾材) 부분의 부피는 총유효용량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로 하여 이를 해당 유효용량에 가산한다.	
(4) 각 실의 유효수심은 1m 이상 2.7m 이하이어야 하고, 유입관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3분의 1의 깊이로 하며, 유출관 또는 단층벽 하단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2분의 1의 깊이로 하거나, 각 실 간 벽의 같은 깊이에 적당한 수의 폭 3cm의 세로구멍을 6cm 간격으로 설치하되, 부상물이나 스크(scum)의 유출이 방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제1실의 유입관은 "T"자형 관으로 설치하되, 단층벽이나 "T"자형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볼 수 있는 점검뚜껑을 두고, "T"자형 관의 지름은 10cm 이상이어야 한다.	
(6)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

가. 재질 및 재질별 제조 가능한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폴리에틸렌(PE): 정화조 10인용 이하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정화조 5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나. 재질별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제품 포함)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흠,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한국산업규격(KS) M 3604-1·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부품)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조하는 제품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제품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흠,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섬유 함유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라) 다음의 두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각형의 경우에는 높이와 환산지름 [$2 \times \text{가로} \times \text{세로} / (\text{가로} + \text{세로})$]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두께를 산정한다.

지름(mm)	두께(mm)
1,500 이하	7 이상
1,500 초과 1,700 이하	8 이상
1,700 초과 2,200 이하	9 이상
2,200 초과 2,700 이하	10 이상
2,700 초과 2,900 이하	11 이상
2,900 초과	12 이상

비고

1. 맨홀부의 두께는 10mm 이상이어야 한다.
2. 내부 칸막이의 두께는 구조물의 본체 지름이 1,500mm 이하이면 6mm 이상, 1,500mm를 초과하는 것이면 7mm 이상이어야 한다.

11.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은 제58조에 따른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 성적서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표시기준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투경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각각 새겨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몸체의 내외부(내부에는 시설을 사용할 때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맨홀부)에는 보기 쉬운 곳에 내식성 금속재질로 부착하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제품번호:			
1. 상호:	(대표자:)	2. 제조자의 주소(연락처):	()
3. 처리공법:		4. 설계 BOD 유입농도:	mg/L
5. BOD 방류수질:	mg/L	6. 처리용량:	m ³ /일
7. 재질:	(두께: mm이상)		
8. 제조일자:	년 월 일		

비고: 제품번호는 각각의 제품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등록관청-등록번호-생산연도-제조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예시) 경기-제1호-03-0001

정화조			
제품번호:			
1. 상호:	(대표자 :)	2. 제조자의 주소(연락처):	()
3. 처리공법:		4. 처리대상 인원:	명용
5. 재질:	(두께 : mm 이상)	6. 제조일자:	년 월 일

비고: 제품번호는 각각의 제품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등록방법-등록번호-생산연도-제조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예시) 경기-제1호-03-0001

[별표 13] <개정 2013.1.15>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1.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가. 성능검사의 시작

- 1) 성능검사기관은 검사대상시설이 검사신청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2)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검사기관은 성능검사 중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으로 낮아져 성능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중단하고, 검사신청인에게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후 다시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 1) 검사기간 : 성능검사를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날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0일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검사횟수 :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월 1회 실시하되, 마지막 달에는 시료를 3회(아침·점심·저녁) 채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 수질분석

- 1) 시료 채취 : 오수처리시설의 시료는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2) 수질분석 항목
 - 가) 처리시설용량 50m³/일 미만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
 - 나) 처리시설용량 50m³/일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및 총대장균군수
- 3) 수질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라. 성능검사의 결과 판정기준

검사기관은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 결과가 모두 검사신청서에 적힌 처리수수질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마. 서면심사에 의한 성능검사

검사기관이 영 별표 6 비고 제2호에 따라 서면심사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같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제 성능검사 결과,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재질검사

가. 시험편(試驗片)의 제작

시험편은 재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중에서 검사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부터 채취한다.

나. 재질시험방법

-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 제품을 포함한다)은 한국산업규격(KS) M 3604-1·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품의 유리섬유 함유량은 한국산업규격(KS) M ISO 1172(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섬유 함유율 측정방법)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구조물의 두께는 몸체의 상부·측면(좌, 우, 앞, 뒤)·하부와 개별 칸막이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밖의 항목은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 재질검사 결과 판정

검사기관은 재질검사의 결과가 별표 12 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기준에 맞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공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한 구조물 및 부품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중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이 제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두께 및 수밀성 : 전랑
나. 그 밖의 검사항목: 월 1회 또는 300개당 1개 이상(한국산업규격(KS) M 3604-1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격주 1회 또는 150개당 1개 이상, 한국산업규격(KS) M 3604-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100개당 1개 이상)
4. 개인하수처리시설 품질시험 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판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하며, 검사증명서에는 출고일과 품질관리기사의 성명 및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제조 및 판매한 양을 종류별로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판매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된 품질보증서(물체는 5년 이상,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약식 설계도서, 설치방법, 운용요령 등을 포함한 안내책자를 내주어야 한다.
8. 제조·판매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능검사대상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계약하여 방류수수질분석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후 갖추어 두어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한다.

[별표 15] <개정 2023. 1. 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 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8)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등록취소			
9)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10) 삭제 <2014.7.17>					
11)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5호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8)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등록취소			
9)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1호	등록취소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안하수처리시설을 제정한 경우 가)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제정한 경우 나) 등록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정한 경우 다)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정한 경우 라) 기계·장비 등의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정한 경우 마)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정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3호	등록취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7)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등록취소			
8)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9) 삭제 <2014.7.17> 1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16] <개정 2022. 12. 9.>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1.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3.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해당 학력 취득 전 또는 해당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4.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5.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용량이 1천㎡/일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이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 또는 같은 목 4)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7]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30,000원	-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23,000원	-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23,000원	15,000원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23,000원	-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		
제1조(목적) 3732	제1조(목적) 3732	제1조(목적) 3732
제2조(정의) 3732		
제3조(적용 범위) 3733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3733	제2조(적용범위) 3733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개정 2007. 8. 3.〉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3734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해제) 3735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736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3736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3735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3736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736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3735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737	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3738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3736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3739	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3738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3738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3740	제4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3739	제6조(관리카드) 3738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3740	제5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3740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3740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3741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3740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374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 8. 3.〉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3742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3744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3746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3748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3751	제6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3742 제6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3742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3746 제6조의4(사업장 관할) 3748 제6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3751 제6조의6(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3752 제6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3752 제6조의8(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3753 제6조의9(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3754 제6조의10(징수비용의 지급) 3754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3742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3743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3744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3744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3745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3745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746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3746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3747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3747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3747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3748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3749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3750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3751 제8조의16(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3752 제8조의1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37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과징금) 3755		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3755
제8조의7(허가의 제한) 3756		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755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3756	제6조의11(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3757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3756
	제7조 삭제 3757	
	제8조 삭제 3757	
	제9조 삭제 3757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3757	제10조 삭제 3757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3758	제11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3757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 8. 3.>	제11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758	
제11조(주민지원사업) 3758	제12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3758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3759	
	제14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3761	제9조(수질 유지기간) 3758
		제9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3761
		제9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3761
		제10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3761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3763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3762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3763	제15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3763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3764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3764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3765	제16조(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3765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 3765	제1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3765	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376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 8. 3.〉 제13조(수질개선사업) 3766 제14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3767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3768 제15조의2 삭제 3770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3770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3771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 8. 3.〉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3771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3772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3772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3772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3777 제21조(기금의 재원) 3777	제18조(통보 등) 3767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3771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3772 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3772 제22조(자료의 제출) 3773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3774 제24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3774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3775 제25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3775 제26조(강제징수 위탁) 3776 제2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 부담금 등) 3776	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3766 제13조 삭제 3770 제14조 삭제 3770 제15조(관거의 관리) 3770 제16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3770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377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기금의 용도) 3777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3777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3779	제28조(기금의 용도) 3778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3780	제29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3779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3781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3781		
제7장 보칙 (개정 2007. 8. 3.)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3781	제30조(권한의 위임) 3783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3782	제30조의2(업무의 위탁) 3784	
제28조(개선 요청 등) 3782	제3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84	
제28조의2(청문) 3783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3783	제30조의4 삭제 3785	제18조(규제의 재검토) 3785
제29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785		
제8장 별칙 (개정 2007. 8. 3.)		
제30조(별칙) 3786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786	
제31조(양벌규정) 3786	부칙 3787	부칙 3787
제32조(과태료) 3786		
부칙 378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9. 2. 8 법률 제5932호 개정 2001. 1. 16 법률 제6362호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유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3.12.30 법률 제7016호 (자연개발촉진법)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12.29 법률 제7781호 2006. 9.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1.2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2007. 4.11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진흥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14호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원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31 법률 제9314호 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진흥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 5.31 법률 제10335호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6호 (환경법규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원법) 2013. 7.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7.30 법률 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와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1.28 법률 제12369호 2015. 2. 3 법률 제13172호 2015.12.2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 1.27 법률 제13889호	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2호 개정 2009. 5.28 대통령령 제21509호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관광공단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 4. 5 대통령령 제22876호 2011. 5.30 대통령령 제22949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28 대통령령 제25127호 2014. 5. 9 대통령령 제25346호 2014. 7.28 대통령령 제25516호 2016. 7.12 대통령령 제27337호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1.23 대통령령 제28604호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3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7.21 대통령령 제30862호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2호 2023. 5.23 대통령령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72호 개정 2011. 5.31 환경부령 제416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간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5. 9 환경부령 제554호 2014. 7.17 환경부령 제56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14. 7.29 환경부령 제568호 2015. 8. 4 환경부령 제611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26 환경부령 제665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1.17 환경부령 제741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7.17 환경부령 제874호 2020.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연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8. 5 환경부령 제934호 2022. 3.31 환경부령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 4.13 환경부령 제103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12.27 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4호 2019.11.26 법률 제16607호(수도법) 2019.11.26 법률 제16615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5.18 법률 제18173호 2021. 6.15 법률 제18284호(생각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2.12.27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6. 7 법률 제19427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균형발전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 7.18 법률 제19557호 2024. 1.30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07. 8. 3.]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 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 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장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개정 2007. 8. 3.〉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추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3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 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4. 6. 4.> ② 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② 삭제 (2016. 7. 26.)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 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 7.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7. 18.>	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족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 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도로·철도·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 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 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7. 8. 3.]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 수중보(鑿室水中漕)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 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 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	우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 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 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 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 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본조신설 2014. 7. 28.]	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외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2021. 8. 5.>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조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4. 7. 29.] 제7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1. 매도하려는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이용현황, 권리설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2021. 8. 5.>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조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4. 7. 29.]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9., 2021. 8. 5.>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과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토지 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등은 위원회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한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④ 삭제 <2014. 7. 28.>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 2021. 3.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 가. 영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영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가목에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 8. 3.>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제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본조신설 2014. 7. 28.] 제6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 달성·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의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시·광역시·도 경제지점 등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 이용 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오염원 전망 등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 5. 30.]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도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2. 시·도지사가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 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 [본조신설 2011. 5. 31.] [제목개정 2016. 7. 26.]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4. 7. 28., 2016. 7. 12.> [본조신설 2011. 5. 30.]	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여 수질변동을 확인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이거나 수질달성률 기준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하여 수질변동을 확인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거나 수질달성률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0. 5. 31.]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 7. 2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7. 26.>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1. 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오염총량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械)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본조신설 2011. 5. 30.]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부착·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2014. 5. 9., 2021. 8. 5.>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8. 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및 부작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9.>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① 오염총량관리청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④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제6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제목개정 2016. 7. 12.] 제6조의6(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2.> [본조신설 2011. 5. 30.] [제목개정 2016. 7. 12.] 제6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1.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제8조의16(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2.> ④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폐쇄완료의 이행여부 또는 점검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본조신설 2011. 5. 30.] [제목개정 2016. 7. 12.] 제6조의8(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제6조의6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6.> ③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1. 5. 31.] [제목개정 2016. 7. 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본조신설 2010. 5. 31.]	[제목개정 2016. 7. 12.] 제6조의9(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6조의10(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6조의7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제8조의1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 5. 31.] [제목개정 2016. 7. 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6. 1. 27.] 제8조의6(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16. 7. 12., 2021. 3. 9.) [본조신설 2011. 5. 30.]	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8조의6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8조의7(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려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0. 5. 31.]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본조신설 2011.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7. 1. 17.> 1. 재정적 지원의 중단·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1. 7. 21.> [전문개정 2007. 8. 3.]	제6조의11(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장비계획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 [본조신설 2011. 5. 30.] 제7조 삭제 <2011. 5. 30.> 제8조 삭제 <2011. 5. 30.> 제9조 삭제 <2011. 5. 30.> 제10조 삭제 <2011. 5. 30.> 제11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 따라 법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30., 2012. 7. 20.> 1.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 8. 3.)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삭제 <2011. 5. 30.> 4. 삭제 <2011. 5. 30.> 제11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1.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1. 5. 30.] 제12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	제9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과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제목개정 2014. 7. 28.]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환경정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教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8. 3.]	6.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7.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4. 5. 9.] [제목개정 2014. 7. 28.] 제14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28.>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2021. 3. 9.>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	제9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 해당 시·군·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본조신설 2014. 7. 29.] 제9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제10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시·군·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1.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30.>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재심의 전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⑦ 관리청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21. 3. 9.> 제15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 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1. 5. 18.)]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11조의3에서 이동 (2021. 5. 18.)]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7. 17., 2023. 4. 13.>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4. 13.> 1.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배분원칙 2.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별 구체적 사업의 종류 ③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7.> 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7., 20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8. 3.]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07. 8. 3.]	제16조(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제1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그 운영비용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13.) ⑤ 삭제 <2021. 8. 5.>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8. 4.] 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9. 12. 20.>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삭제 <2023. 4. 13.>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② 법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2023. 4. 13.>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 8. 3.)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의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5. 31.>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31.> [전문개정 2007. 8. 3.]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20 이하로 유지될 것 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	제18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11.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승인·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 2016. 12. 27., 2022. 12. 27., 2024. 1.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 4. 15.>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 1. 30.> ④ 삭제 <2024. 1.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삭제 <2024. 1. 30.> [전문개정 2007. 8. 3.] 제15조의2 삭제 <2017. 11. 28.>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8. 3.]		제13조 삭제 <2018. 1. 17.> 제14조 삭제 <2018. 1. 17.> 제15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3에 따라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6. 7. 26.> ② 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 5. 31.> ③ 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1. 5. 31.> 제16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다. <개정 2011. 5. 31.>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등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 8. 3.〉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① 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1. 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그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의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④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관계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1.〉 ⑤ 유역환경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7정 2010. 5. 31., 2014. 1. 28.)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각각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로 한정한다)와 팔당댐 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 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류의 한강 분류 하천구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제22조(자료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 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1.>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도물의 공급량과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와 납부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군수는 제21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2020. 7. 21.>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쓰이는 재원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따른다. 제24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 수요자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2.> 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제24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 실적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①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②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16., 2021. 3.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8. 3.]	나. 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5. 28.] 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2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전용수도 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수단으로 납입하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 5. 31.>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 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 8. 3.]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2015. 2. 3., 2016. 1. 27.>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④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⑤ 제3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 7. 12.>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법 제22조제1호의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 8. 3.]	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매우좋은 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4. 7. 28.> [본조신설 2011. 5. 30.]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28., 2014. 5. 9., 2018. 1. 16., 2019. 1. 8., 2020. 7. 21.>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 사업자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가. 원수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나. 원수 중 지오스민(Geosmin)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다. 원수 중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29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8.> [제목개정 2014. 5. 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8. 3.]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 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31., 2023. 6. 7.>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 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7장 보칙 (개정 2007. 8. 3.)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삭제 (2011. 4. 28.) [전문개정 2007. 8. 3.]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8조(개선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댐관리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댐 방류량을 늘릴 경우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8. 1. 23.>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12.>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3.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의 작성·비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와 협의 2. 삭제 <2016. 7. 12.>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법 제8조의4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명령 5. 법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6. 법 제8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검사·조치 결과의 제출 요구와 개선 등 조치명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10. 법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채납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와 기금에의 납입 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2.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제30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 제3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리청,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6. 1. 27.] 제8장 벌칙 (개정 2007. 8. 3.)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 <2016. 7. 12.>] 제30조의4 삭제 <2021. 3. 9.>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2016년 1월 1일 - 제8조의12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 제8조의13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 제8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4. 삭제 <2018. 1. 17.> [본조신설 2014. 4.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31., 2015. 2. 3.>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31., 2014. 1. 28.>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의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11. 5. 30.> [본조신설 2011. 4.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4. 삭제 <2017. 11. 28.> 5. 삭제 <2017. 11. 28.> 6. 삭제 <2017. 11. 28.> 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31.> ④ 삭제 <2008. 12. 31.> ⑤ 삭제 <2008. 12. 31.> [본조신설 2007. 8. 3.] 부칙 <제5932호, 1999.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8.3>	부칙 <제20482호, 2007.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수립한다. 제3조(일시적 전출자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72호,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 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변구역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안에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자(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6362호, 2001. 1. 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토지보상에관한특별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질오염방지사설의 운영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설 운영비용의 지원은 2009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2009년 1월분부터 부과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6509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1999년 8월 9일)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은 이를 “1999년 8월 9일 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509호, 2009.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 이후 통보되어 2009년 5월 31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물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되는 해당 계획의 제출일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3조(관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6호, 2011.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부터 제8조의2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제2조(기본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⁷²⁾내지 ⁽⁸⁵⁾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6 생략 ⁽⁶⁷⁾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⁶⁸⁾내지 ⁽⁷⁴⁾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016호,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⁶⁰⁾ 까지 생략 ⁽⁶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⁶²⁾ 부터 ⁽⁶⁴⁾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부터 ③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¹⁸⁰⁾ 까지 생략 ⁽¹⁸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	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 관할 시장·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충청북도 관할 시장·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부칙 〈제460호, 2012. 6. 15.〉 (간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3> 생략 <7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조제1항"을 "전자정보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76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충청북도: 2020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의 시행성가를 평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949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제2조(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335호 한강수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 2014.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 2014. 7.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 <제568호, 2014. 7. 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 2015. 8. 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81호, 2005. 12. 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를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6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상속 및 증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 2016.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16, 제8조의17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52)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83호, 2007. 1. 26.>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7호, 2014. 1.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25346호, 2014.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일시적 전출자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 전출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1호, 2018. 1. 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㉞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343호, 2007. 4. 11.> (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⑦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16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7337호, 2016. 7. 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11, 제21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 2020.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934호, 2021.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 2022. 3. 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칙 〈제1031호, 2023.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은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유기탄소량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한 기간으로 본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8604호, 2018. 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3호, 2019.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62호, 2020.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22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614호, 2007. 8.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	제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 3)가)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86번 다음에 186번의2 및 186번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tr> <td>186의2</td><td>「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td><td>오염행위 제한지역</td></tr> <tr> <td>186의3</td><td>「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td><td>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td></tr> </table>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㉖ 및 ㉗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186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186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		
186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186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⑥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1> 까지 생략 <5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14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㉔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9 까지 생략 ⑤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지반시설”로 한다. 〈51〉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立木) 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8〉 부터 〈61〉 까지 생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5〉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335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부터 제8조의8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시·군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오염총량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전의 제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른 시행일까지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의2 및 213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tr> <td>213의2</td><td>「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td><td>건축 등 허가제한지역</td></tr> <tr> <td>213의3</td><td>「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td><td>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td></tr> </table>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가산금·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 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 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82〉 및 〈8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16호,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0>까지 생략 <5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71〉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69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172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1388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5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8조의5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의8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7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4호, 2017. 11. 28.〉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7호, 2019. 11. 26.〉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6615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①(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②(제18173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③(제18284호, 2021. 6.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⑫까지 생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427호, 2023. 6.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9557호, 2023. 7.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	3819
[별표 1의2]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6조의4제1호 관련)	3819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3820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14조제1항 관련)	3822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3822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3823

[별표 1] <신설 2014.7.28> [시행일:2016.1.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 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4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5. 생수 생산업	11202	세병(洗瓶)·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 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 한다.

[별표 1의2] <개정 2021. 3. 9.>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6조의4제1호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2] (개정 2021. 3. 9.)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나뭇목에 따라 산정하여 이에 나뭇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8조의4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 중 큰 양으로 한다.

-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6} - 할당오염부하량
- (2)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6}

-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을 산정할 때 생분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조업시간}$$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 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도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않은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2011년	5,800원	25,000원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총인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를 곱한 값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오염총량초과과징금} = (\text{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times \text{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text{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이란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21. 3. 9.>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14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 2) 학자금·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개정 2021. 3. 9.>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5.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6.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	특별지원사업

비고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의2	500	700	1,000
다.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라.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바. 법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2호	300	400	500
사.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3호	300	400	500
아. 삭제 <2018. 1. 23.>				
자. 삭제 <2018. 1. 23.>				
차. 삭제 <2018. 1. 23.>				
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7호	300	400	500
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8호	300	400	50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3827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제8조 관련)	3828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3829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3829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3830
[별표 6]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3830
[별표 7]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3831
[별표 7의2]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3831
[별표 8] 삭제 <2018. 1. 17.>	3832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3832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한강 또는 한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한강수계 내의 지역과 한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한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분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간석1동·간석2동·간석3동·간석4동
경기도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군, 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시흥시 과림동·목감동
	군포시(대야동· 군포2동은 제외한다)
	의왕시(부곡동은 제외한다)
	용인시 포곡읍·모현면·원삼면 일부(사암리·좌항리·맹리·미평리·가재울리·두창리)·백암면·양지면·중앙동(김광장동·남동)·역삼동(역북동·삼가동)·유림동(유방동·고림동)·동부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구성동(연남동·청덕동)·마북동·보정동·수지구(상현동은 일부 제외한다)
	안성시 일죽면·삼죽면(내장리·덕산3리·배태리·용월리·울곡리만 해당한다)·죽산면(당목리·칠장리·두교리는 제외한다)

구분	범위
	김포시 김포1동·김포2동·김포3동·고촌면·하성면·대곶면(거물대1리·거물대2리·대능3리·대능4리·대능5리·오니산리·울생2리·울생3리·울생4리·초원지1리·초원지2리·초원지3리만 해당한다)·양촌면(학운1리·학운2리·학운3리·학운4리·학운5리·학운6리·대포2리는 제외한다)·월곶면(개곡1리·개곡2리·개곡3리·개곡4리·용강리·조강1리·조강2리만 해당한다)·통진면(가현3리·가현4리·웅정1리·웅정2리·웅정3리는 제외한다)
강원도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강릉시 왕산면(고단리·대기리·송현리만 해당한다)
	고성군 간성읍(흘1리·흘3리만 해당한다)
	삼척시 하장면
	태백시 사조동·화전1동·화전2동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감물면·괴산읍·문광면·불정면·소수면·연풍면·장연면·청천면·칠성면·사리면(수암1리·수암2리·수암3리·이곡1리·이곡2리·이곡3리·이곡4리·화산1리·화산2리·화산3리·화산4리·화산5리만 해당한다)·청안면(문당1리·문당2리·백봉1리·백봉2리·백봉3리·부흥1리·부흥2리·부흥3리·부흥4리·부흥5리·운곡리·장암1리·장암2리·장암3리·장암4리만 해당한다)
	보은군 내북면(대안리·도원리·동산리·법주리·봉황리·성암리·성티리·염둔리·적음리·창리·화전1리·화전2리만 해당한다)·속리산면(갈목리·백현리·북암1리·북암2리·사내1리·사내2리·사내3리·사내4리·사내5리·사내6리·상판리·중판리·하판리만 해당한다)·산외면(봉계1리·봉계2리·아시리·구티리·문암리는 제외한다)
	음성군 감곡면·생곡면·소이면·금왕읍(각회1리·각회2리·구계1리·구계2리·금석1리·금석2리·내곡리·내송1리·무곡1리·무곡2리·무곡3리·무곡4리·백야1리·백야2리·싸봉2리·육령1리·육령2리·정생1리·정생2리·호산1리·호

구분	범위
	산2리만 해당한다)·삼성면(능산1리·능산2리·대정1리·대정2리·용대1리·용대2리만 해당한다)·원남면(구안리·상노리·상당2리·상당리·하노1리·하노2리·하노3리·하당1리·하당2리·대야리만 해당한다)·음성읍(감우리·사정1리·사정2리·석인1리·석인2리·소여1리·소여2리·신천1리·신천2리·신천3리·신천4리·신천5리·용산1리·용산2리·용산3리·용산4리·용산5리·용산6리·읍내1리·읍내2리·읍내3리·읍내4리·읍내5리·읍내6리·읍내7리·읍내8리·평곡1리·평곡2리·평곡3리·평곡4리·평곡5리·한별1리·한별2리만 해당한다)
	청주시 미원면·낭성면(갈산리·관정1리·관정2리·귀래리·무성1리·무성2리·문박리·삼산1리·삼산2리·이목1리·이목2리·인경리·지산1리·지산2리·지산3리·현암리·호정1리·호정2리만 해당한다)·산성동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명전리·석항리 일부·생달리 일부만 해당한다)·가은읍(완장리 일부만 해당한다)
	봉화군 춘양면(우구치리만 해당한다)
	상주시 화북면(운흥리·입석리·중벌리만 해당한다)
	영주시 단산면(마락리만 해당한다)·부석면(남대리만 해당한다)

[별표 2] <개정 2021. 6. 30.>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제8조 관련)

-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이 경우 평가방법은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가. 평균수질 산정법

$$1) \text{ 평균수질} = e^{\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2) \text{ 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cdots}{\text{측정횟수}}$$

$$3) \text{ 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c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달성률 산정법

- 수질달성률 = (목표수질 이하 횟수/측정 횟수) × 100
- 수질달성률 기준: 62.5%

비고 :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3]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bigcirc \text{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bigcirc \text{ 기준배출수질} = e \text{ (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cdot \text{ 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dots}{\text{측정횟수}}$$

$$\cdot \text{ 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_{(a+1)}$$

· a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정수부분, b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_1, X_2, X_3, \dots, X_a, \dots, X_n$ 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_a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_{(a+1)}$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1.5.31>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1. 오염총량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8조의14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bigcirc \text{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실측평균수질}} \times 10^6$$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2014.7.29.>

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8조의4의 제6항 또는 제8항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60일	폐쇄명령
나. 가목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에 조업을 한 경우		조업정지	폐쇄명령		

[별표 6] <개정 2014.7.29.>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 가. I 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 나. II 지역(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 4
- 다. III 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I 지역·II 지역·IV 지역 외의 특별대책지역): 3
- 라. IV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2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I 지역의 면적 × 5) + (II 지역의 면적 × 4) + (III 지역의 면적 × 3) + (IV 지역의 면적 × 2))

비고: “해당 지역”이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 가. 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5를 곱한 금액
- 나. 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3를 곱한 금액
- 다. I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 라. IV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7] <개정 2014.7.29.>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times \{(MA \div TA \times 0.5) + (MP \div TP \times 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6에 따른 I지역, II지역, III지역, IV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별표 7의2] <신설 2015.8.4.>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사업 부문	대상 사업의 범위
친환경기술개발 부문	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나. 오염유발 억제제품의 개발 또는 오염유발 억제제품을 응용·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다.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부문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부문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하는 사업 나. 청정생산기술, 환경설비, 생태산업단지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관련 사업으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부문	가. 수생태계의 회복·보전 등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등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
친환경첨가기술 분야 지원 부문	디지털, IT산업 및 정보통신·문화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발전 사업 중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유도를 지원하는 사업
기타 부문	가. 기존 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또는 관광단지 정비 등과 같이 환경개선과 발생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오염 개선사업 중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나. 한강수질개선에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별표 8] 삭제 <2018. 1. 17.>

[별표 9]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水密)검사(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의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아니하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누수 허용량(L/m)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text{N}/\text{cm}^2$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검사

1) 맨눈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한정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Television)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 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조사의 실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실시한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각종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주기적인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가) 건기 기준(우기 시는 강우 종료 후 강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분석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16. 7. 26.>

제4편 물환경

13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목 차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3839
제2조(기능)	3839
제2조의2(등기 사항)	3839
제3조(회의)	3839
제3조의2(자문위원회)	3839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3840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3840
제3조의5(협의회 구성 등)	3840
제3조의6(협의회 회의 및 운영)	3840
제4조(실무위원회)	3840
제5조(사무국)	3840
제6조(여론의 수집)	3841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3841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3841
제9조(운영세칙)	3841
부칙	3841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9. 4. 9 대통령령 제16242호
 개정 1999. 5.24 대통령령 제16358호 (환경부와고속속기관직제)
 2000. 3.28 대통령령 제16763호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고속속기관직제)
 2005. 4.27 대통령령 제18804호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10. 3. 4 대통령령 제22068호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8호
 2014. 5. 9 대통령령 제25347호
 2017. 1.31 대통령령 제27181호
 2021. 6. 8 대통령령 제31728호 (환경부와 고속속기관 직제)
 2021. 9. 7 대통령령 제31968호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 (환경부와 고속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2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9.>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의 사항의 경우로서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기한까지 협의·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시급히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9.>

⑤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2의2(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31.>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2024. 6. 4.>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특별시·광역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 ⑥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2. 수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1.]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17. 1. 31., 2021. 6. 8.>

1.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
2.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부지사
3.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7개 시·군의 시장·군수 각 1명
4.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지방의회 의장 각 1명
5.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주민대표 각 1명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

1. 환경부차관
 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의 부지사
 3.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4.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5.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중 2명
-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본조신설 2011. 7. 1.]

제3조의6(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

제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8.>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9. 7., 2024. 6. 4.>

1. 원주지방환경청장
 2. 삭제 <2021. 12. 28.>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의 관련 실장 또는 국장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5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1.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회계 또는 전산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

1.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4. 제3조의4에 따른 협의회 위원

[전문개정 2010. 3. 4.]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4.]

부칙 <제16242호, 1999. 4.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58호, 1999. 5. 24.>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 소속”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16763호, 2000.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후 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04호, 2005.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③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68호, 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08호, 2011.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47호, 2014.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8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 및 제3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1728호, 2021.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31968호, 2021.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1호,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 및 ⑯ 생략

부칙 〈제34550호, 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④까지 생략

제5편 물이용

01. 먹는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845
0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3987
0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001
0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031
05.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4047
06. 상수원 관리규칙	4263
07.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4285
08.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4301
09.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4447
10.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규칙	4573

제5편 물이용

01

먹는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854	제1조(목적) 3854	제1조(목적) 3854
제2조(책무) 3854		
제3조(정의) 3854		
제4조(적용범위) 3856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3855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3856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3857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3857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3857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3857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3858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3858
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3860		제2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3860
제3장 샘플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 6. 1.>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3862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3862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 3863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3864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3863	제2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3864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3864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3864	제2조의5(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3864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3865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3865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3865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3866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3867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3866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3866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3867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3868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3868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등) 3868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3869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3869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3870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3870	제7조(환경영향조사) 3870
제13조(환경영향조사) 3870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3871		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3871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3871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3872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3872		
제16조(결격 사유) 3873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3873		
제18조(환경영향심사) 3875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3875	
제4장 영업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3876		제9조(시설기준) 3876
제20조(시설 기준) 3876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3876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3876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3880
제22조(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 관리) 3880		제12조(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 관리) 3880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3881		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3881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3882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3882
제25조(영업의 승계) 3883		제15조(영업의 승계) 3883
제26조(수입신고 등) 3883		제16조(수입신고 등) 3883
제27조(품질관리인) 3884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3885	제17조(품질관리교육) 3885
제28조(품질관리교육) 3885		제18조(교육과정 등) 3886
제29조(건강진단) 3887		제19조(교육계획) 3887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준수 사항) 3888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3888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3888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3888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3888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3889	
	제9조 삭제 3890	제22조(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3890
	제10조 삭제 3890	
	제11조 삭제 3890	
	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3891	제23조(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3890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3891	제24조(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3891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대한 지원) 3891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3892		제24조의2(이의신청 등) 3892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3892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3893	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3892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3893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의 제출) 3893
	제14조 삭제 3894	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3893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3894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3894	
제34조 삭제 3894	제16조 삭제 3894	제28조 삭제 3894
제35조 삭제 3894		제29조 삭제 3894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제36조(기준과 규격) 3895		
제37조(표시기준) 3895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3895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3896
제39조(광고의 제한) 3896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3896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3896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3896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3896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3897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검사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3898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3898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3898		
제42조(출입·검사·수거 등) 3898		제34조(수거 등) 3898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3899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3901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 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3904
		제36조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 3907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3907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3908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3910		
제44조(소비자보호) 3911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3911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3912		제38조(개선기간) 3912
제46조(폐쇄조치 등) 3912		
제47조(폐기처분 등) 3913		
제47조의2(공표명령) 3915	제17조의2(회수·폐기처분 기준) 3914	제38조의2(회수·폐기 절차 등) 3914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3916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3915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3916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3917		제39조(행정처분기준) 3917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3917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3919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3917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3919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청문) 3919		
제51조(과징금 처분) 3919	제18조(과징금의 납부) 3919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3919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3920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3920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3920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3920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3920	
제8장 보칙		
제52조(국고보조) 3921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921		
제54조(자료의 요청) 3921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3922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922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3922
제56조(수수료) 3923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3924	제44조(수수료) 3923
		제45조(규제의 재검토) 3924
제9장 벌칙		
제57조(벌칙) 3925		
제58조(벌칙) 3926		
제58조(벌칙) 3927		
제59조(벌칙) 3928		
제59조(벌칙) 3930		
제60조(양벌규정) 3932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932	
제61조(과태료) 3932	부칙 3933	부칙 3933
부칙 393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07. 4. 11 법률 제 8368호 개정 2007. 8. 3 법률 제 862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 3. 21 법률 제 8952호 2010. 3. 22 법률 제10154호 2010. 3. 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1. 7. 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6. 1 법률 제11463호 2013. 3. 22 법률 제11663호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 21 법률 제12318호 2015. 2. 3 법률 제13164호 2015. 12. 22 법률 제1360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7. 1. 17 법률 제14532호 (문화경보전법) 2018. 6. 12 법률 제15652호 2018. 12. 24 법률 제16079호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40호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2. 20 법률 제20332호	제정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1호 개정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8. 6. 13 대통령령 제20818호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4호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7호 2011. 3. 22 대통령령 제22715호 2012. 7. 4 대통령령 제23932호 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7호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7. 21 대통령령 제25496호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4호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4호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4호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2008. 1. 29 환경부령 제274호 개정 2008. 6. 13 환경부령 제288호 2008. 9. 25 환경부령 제299호 2009. 6. 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 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법령의 재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 3. 23 환경부령 제402호 2011. 12. 30 환경부령 제438호 2012. 6. 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법령의 재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2. 1 환경부령 제501호 2013. 10. 30 환경부령 제522호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 22 환경부령 제566호 2014. 11. 28 환경부령 제578호 2015. 7. 1 환경부령 제606호 2015. 12. 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양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1. 8 환경부령 제635호 2017. 6. 12 환경부령 제703호 2017. 9. 8 환경부령 제712호 2017. 11. 20 환경부령 제719호 2017. 11. 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12. 20 환경부령 제723호 (자력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17. 12. 29 환경부령 제733호 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12. 13 환경부령 제788호 2019. 8. 28 환경부령 제821호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제2조(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3. 22., 2013. 3. 22., 2015. 12. 22., 2018. 12. 24., 2020. 5. 26.>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제1조(목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유온 병행용어 장해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2021. 7.23 환경부령 제931호 2022. 5.30 환경부령 제987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2022.12.19 환경부령 제1013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 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2023. 6. 1 환경부령 제1036호 2023.11.17 환경부령 제1061호 (자연염천 강화 및 자생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3의3.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6의2. “냉·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의3.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 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mg/L이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의2.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정수기품질검사”란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 9의2.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008. 3. 21., 2012. 6. 1., 2013. 3. 22.) ③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 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24.>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8. 12. 24.>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18. 12. 24.> [제목개정 2013. 3. 22.]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 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8368호(2007. 4. 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10월 4일까지 유효함]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0. 3.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본조신설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2.) ②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사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9. 18., 2013. 10. 22., 2017. 10. 17.>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②먹는물 수질 감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3. 23., 2013. 2. 1.)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1.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먹는물공동시설 보강 및 소독 3. 먹는물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④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2012. 6. 1.>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①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30.)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 2013. 2. 1., 2013. 10. 30.>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2.>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 수질검사 결과 3.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⑧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 10. 30., 2014. 7. 22.> 제2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①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 10. 30.> 1. 신고인(설치·관리자)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④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2., 2021. 1. 5.> ⑤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21. 1. 5.> ⑥ 제4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5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2021. 1. 5.> [본조신설 2010. 3. 22.] [제목개정 2013. 3. 22.]		2.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④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30., 2021. 7. 23.> 1.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 냉·난방기 앞 2. 냉·온수기 관리방법 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3. 정수기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 6. 1.〉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샘물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3. 10. 22.]	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1. 3. 23.] [제목개정 2013. 10. 30.]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③ 시·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본조신설 2013. 10. 22.]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0. 30.]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샘플보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플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0. 22.]	제2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청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이유 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의견제출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0.] 제2조의5(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①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시설 중 세병(洗瓶) 및 세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 2019. 12. 20.> ②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같은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7.>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리대상시설의 설치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12. 6. 1.]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2018. 1. 16.>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제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3. 22.>	[본조신설 2013. 10. 30.]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5.>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10. 3. 22.]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 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9. 18., 2011. 3. 22.>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등의 용도 [제목개정 2011. 3. 22.]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플·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 2023. 6. 1.> 1.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2.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 의견 3. 「수도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제목개정 2011. 3. 23.]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명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3.]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샘물등의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21. 1. 5.>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10. 3. 22.]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1. 3. 22.] [제목개정 2021. 7. 13.]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플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플·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제목개정 2021. 7. 23.]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플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3.> [본조신설 2011. 3. 23.] [제목개정 2021. 7. 2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21. 1. 5.]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③ 제9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제목개정 2010. 3. 22.]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②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25.>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② 시·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3. 22.]	2023. 11. 1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 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④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1. 관리구역의 명칭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3. 22.]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23.>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③ 시·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까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0. 5. 26.> 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등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10. 3. 22.]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2012. 6. 15.) [제목개정 2011. 3. 23.] 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정한다.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플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4. 1. 21.>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지하수, 우물 또는 샘 등의 조사자료 2. 잠재오염원 현황자료 3. 기상 및 수문(水文)자료 4. 지형 및 수리지질 조사자료 5. 지구물리 탐사자료 6. 양수(揚水)시험 및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를 말한다) 자료 7. 공내검층(孔內檢層: 관정 내부의 지층검사) 측정자료 8. 환경지질학적 조사자료 9. 원수 및 주변수의 수질 조사자료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날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7. 22.]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3. 23.>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13. 2. 1.>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1. 1. 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역의 실행을 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형의 집행유예를 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23.>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4. 1. 21.>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3. 22.>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영업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1.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4. 삭제 <2014. 1. 21.> 제20조(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5. 10.>	제9조(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가메라 검층(檢層)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原水)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⑥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 3. 22., 2021. 1. 5.>		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6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3. 23., 2021. 7. 23.> 1. 제품명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⑦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21. 1. 5.> ⑧ 시·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⑨ 시·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⑩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 5.>		2. 제조자 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⑥ 법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 2021. 7. 23.>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삭제 <2017. 11. 20.> ⑧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1.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 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营业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21. 1. 5.> 제22조(생물등의 수위·수량·수질 관리) ① 제21조제1항에 따		4.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⑨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 3. 23., 2018. 12. 13., 2019. 12. 20., 2021. 7. 23.> 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諸元: 부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을 포함한다] 2. 구조도면 3. 제품 안내서 4.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재질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후관리계획서 6.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2023. 6. 1.> 제12조(생물등의 수위·수량·수질 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이하 “자동계측기”라 한다)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②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계측기의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③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2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④시·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샘물등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18. 12. 24.>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같은 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제목개정 2013. 3. 22.]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른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3. 10. 30.>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13. 10. 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④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제목개정 2013. 10. 30.] 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5. 2. 3., 2021. 1. 5.〉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2.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일 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5.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 할 때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3.〉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영업의 승계) 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의 승계)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1. 20.]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17. 11. 30.>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산설 2021. 1. 5.〉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산설 2021. 1. 5.〉 ④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 5.〉 ⑤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 5.〉 제27조(품질관리인)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③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		1. 수입 관련 서류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등만 해당한다)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한다) 5.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 2021. 7. 2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22.> ④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품질관리교육)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 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 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 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 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 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7. 10. 17.>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 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 에 종사한 사람 2.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 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수질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7조(품질관리교육)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1. 신규교육: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1회. 다만,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8. 6. 12.> ②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정수기 제조업자가 두는 품질관리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 나.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개인인 정수기 제조업자: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이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품질관리인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18. 12. 13.> ③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3. 23., 2018. 12. 13.> [제목개정 2018. 12. 13.] 제18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3.>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3. 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건강진단)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2.> 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과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2018. 1. 16.> 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플등 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플등 나. 음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플등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플등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3. 22.>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플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목개정 2011. 3. 23.]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3. 22., 2011. 7. 21.>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전문개정 2008. 9. 18.]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1. 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 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전문개정 2009. 12. 30.]	부과 제의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 2013. 10. 30., 2017. 11. 30.> 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경우 :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수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수량 증빙자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③ 제9조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제9조 삭제 (2008. 9. 18.) 제10조 삭제 (2008. 9. 18.) 제11조 삭제 (2008. 9. 18.)	제22조(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등의 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수량 측정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샘플등의 취수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취수량·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25.] [제목개정 2011. 3. 23.] 제23조(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플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플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플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샘플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플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6. 1.>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플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플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 [전문개정 2008. 9. 18.]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플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플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플보전구역을 지정·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3.> [전문개정 2008. 9. 25.] [제목개정 2011. 3. 23.] 제24조(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9. 25.>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국제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21. 1. 5.> ⑪ 환경부장관은 채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2. 6. 1.,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3. 3. 22.]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 1. 30.> [본조신설 2013. 3. 22.] [제목개정 2024. 1. 30.]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재정 사정 2. 해당 시·도의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질·수질 특성 [본조신설 2013. 10. 22.]	제24조의2(이의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심의 결정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0. 30.] 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질개선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담금의 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1. 3. 22.>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8.> 제13조의2(부담금의 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담금 정수유예·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정수실적의 제출) 시·도지사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정수실적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23. 11. 17.> 1. 삭제 <2008. 9. 25.> 2. 삭제 <2008. 9. 25.> [제목개정 2023. 11. 17.] 제27조(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1. 삭제 <2008. 9. 25.> 2. 삭제 <2008. 9. 25.>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34조 삭제 <2014. 1. 21.> 제35조 삭제 <2014. 1. 21.>	다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 [본조신설 2008. 9. 18.] 제14조 삭제 <2008. 9. 18.>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 10. 22.> 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대한 지원 제16조 삭제 <2014. 7. 21.>	제28조 삭제 <2014. 7. 22.> 제29조 삭제 <2014. 7. 22.>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제36조(기준과 규격) ①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는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自家基準)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제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제37조(표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3. 21.]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①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은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에 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 3. 22.>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②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10. 3. 22.] 제39조(광고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0. 5. 26.> ②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3. 22.>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2., 2012. 7. 4.>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4.> ③ 삭제 <2012. 7. 4.>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2. 삭제 <2014. 11. 28.> 3.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2. 1.]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및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3. 23., 2019. 12. 20., 2021. 7. 23.> 1.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2. 정수기의 경우 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사.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2018. 12. 24.> [본조신설 2010. 3. 22.] [제목개정 2014. 1. 21.] 제6장 검사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② 제1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4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3. 23., 2012. 6. 15., 2013. 10. 30.>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5.> 제34조(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압류증을 발급하여야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3. 3. 22.> 1.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이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②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한다. <개정 2011. 3. 23.>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폐쇄·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④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 3. 21., 2015. 2. 3., 2018. 12. 24., 2021. 1. 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지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⑦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 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4. 1. 21., 2021. 1.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9. 25., 2017. 6. 12., 2021. 7. 23.>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5. 7. 1., 2017. 6. 12., 2018. 12. 13.>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1.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8항에 따른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7. 6. 12., 2018. 12. 13.>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2., 2018. 12. 13.>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⑦ 보건소, 시·군·구의 정수관리·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육군에 설치되는 의무 담당 부대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08. 9. 25., 2013. 10. 30., 2018. 12. 13.>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가목(1)·(2), 나목(1)·(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7. 6. 12., 2018. 12. 13.> ⑨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6. 12., 2018. 12. 13.> 1.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 검사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⑩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⑪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⑩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25., 2018. 12. 13.> ⑪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2. 13., 2021. 7. 23.>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21. 7. 23.> 1.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평가 2.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표시사항 분야: 4명 이상 2. 구조·재질 분야: 4명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4명 이상 4.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8. 9. 25., 2011. 3. 23., 2018. 12. 13.>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환경·화학·미생물·위생·기계·재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환경·화학·미생물·위생·기계·재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질관리·기계·화공·금속재료·품질관리·산업위생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국·공립 인증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 9. 25., 2018. 12. 13.>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5., 2018. 12. 13.>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25.>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 그 밖의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2. 13.> ⑧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2. 13.>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⑨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13.> ⑩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3.> ⑪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⑫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21. 1. 5.> 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료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2021. 1. 5.>		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⑫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1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9. 25., 2018. 12. 13.> 제36조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1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7. 23.]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① 검사기관(제35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제외한다)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12., 2018. 12. 13., 2021. 7. 23., 2023. 6. 1.> 1. 신규교육: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개설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신규교육을 감면한다.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 1.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④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 3. 21., 2015.		2. 수처리제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3.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기술인력 과정 4.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 ④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세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 3., 2018. 12. 24., 2021. 1. 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지역의 실행을 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지역형의 집행유예를 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⑦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 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4. 1. 21., 2021. 1. 5., 2024. 2.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제14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⑨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⑩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⑪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⑫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와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21. 1. 5.> 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2021. 1. 5.> ⑭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20.> [시행일: 2025. 2. 21.] 제43조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 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 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경우 2.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 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시행일: 2025. 2. 21.] 제43조의2 제44조(소비자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 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 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 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 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추어 것 가.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나. 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튜빙(tubing: 배 관)·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 기부품 다. 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 기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 제46조(폐쇄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 5.>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제38조(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계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계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폐기처분 등) ①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21. 1. 5.>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2. 삭제 <2014. 1. 21.>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게 내보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14. 1. 21.> ⑥ 제5항에 따른 회수·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3. 22., 2014. 1. 21.>	제17조의2(회수·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본조신설 2011. 3. 22.]	제38조의2(회수·폐기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2.> 1. 회수·폐기 대상 제품 2. 회수·폐기량 3. 이행기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③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방법 2.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3. 그 밖에 회수·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4. 1. 21.,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22.]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7. 2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1.〉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13.〉 [본조신설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본조신설 2011. 3. 22.]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사유 3. 회수계획량(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회수방법 5. 회수 이행기간(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6.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 2021. 1. 5.>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4. 1. 21.>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⑦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서 제출과 회수·폐기 등의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13.> [본조신설 2014. 7. 22.]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 2014. 7. 22., 2021. 7. 23.>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8의2. 삭제 (2014. 1. 21.)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45조, 제47조제1항·제5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③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 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21. 1. 5.〉 1. 제12조의2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 〈2014. 1. 21.〉 3의2.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제51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기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관이 제43조제8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21. 1. 5.>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20. 3. 24.>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22.]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 3. 22., 2023. 12. 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 ⑤ 삭제 <2021. 9. 24.>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 3. 22.>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	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9. 25.>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52조(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21. 1. 5.> -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사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 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제54조(자료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산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3. 22., 2014. 7. 21.>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3. 삭제 <2014. 7. 21.>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2021. 7. 13.> 1. 삭제 <2011. 3. 22.> 2. 삭제 <2011. 3. 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삭제 <2011. 3. 22.> 5. 삭제 <2011. 3. 22.>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4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21. 1. 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2014. 1. 21.>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21. 1. 5.> 1. 제9조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 2.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2021. 7. 13.>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 규격의 인정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13.]	제44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록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6.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제21조제7항·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27.]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22., 2017. 6. 12., 2018. 12. 13., 2021. 7. 23.> -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2014년 7월 22일 - 제4조제2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기준: 2014년 7월 22일 -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사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7월 22일 -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2014년 7월 22일 -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등록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7월 22일 -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자동제측기의 설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4. 1. 21.>		및 운영·관리기준: 2014년 7월 22일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8.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시기·횟수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9.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22일 10. 제2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1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샘플등의 취수량 보고 시 제출서류·제출시기 및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 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12. 제30조에 따른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12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 2019년 1월 1일 13. 제3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지정기준: 2014년 7월 22일 14. 제3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시기·기간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14의2. 제38조의3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 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 2014년 7월 22일 15.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22일 [본조신설 2014. 4. 30.]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1.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삭제 <2014. 1. 21.> 4. 삭제 <2014. 1. 21.>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2021. 1. 5.>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의3.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7의4. 제43조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8.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2021. 1. 5., 2024. 2. 20.>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의3.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 7의4. 제43조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8.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시행일: 2025. 2. 21.] 제58조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2018. 12. 24., 2021. 1. 5.> 1.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등을 개발한 자 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 6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7.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자 10의2. 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3.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품 또는 판매를 한 자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기피한 자 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17. 제46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18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1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2018. 12. 24., 2021. 1. 5., 2024. 2. 20.> 1.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등을 개발한 자 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6.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 6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7.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자 10의2.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3.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작성한 자 17. 제46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18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1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 [시행일: 2025. 2. 21.] 제59조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6. 1.]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 2021. 1. 5.> 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2.]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관리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2.> ④ 삭제 <2010. 3. 22.> ⑤ 삭제 <2010. 3. 22.> ⑥ 삭제 <2010. 3. 22.> 부칙 <제8368호, 2007.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8호 먹는물관리법의 시행일인 1995년 5월 1일 당	부칙 <제20241호, 2007.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274호, 2008.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08.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공중위생법」제14조의2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7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본다. 제5조(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0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8일 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가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과 정수가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16호, 2007. 12. 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818호, 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되는 자는 그 주된 소재지가 소재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신청	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08.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생산 및 작업일지 보관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작성하는 기록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타샘물 개발자에게 부과·징수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3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른 지급비용을 산정하여 2009년 3월 말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 물 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행한다. 부칙 <제21014호, 200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1톤당 수도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을 2008년 1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물 평균요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2008년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판매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을 산정하여 2008년 1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샘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2008년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같은 달 25일까지로 한다. ④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의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 2011.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가허가를 신청하는 자 및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기관에서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기술인력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시정의 굴착심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감시정의 굴착심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629호, 2007. 8.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952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샘플과 수입하는 먹는샘물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54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온수기 설치·관리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플의 양 및 먹는샘물의 수입실적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부칙 <제438호, 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 2013.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중 자동계측기 설치기준의 허용오차범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측기의 교정 및 오차시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자동계측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최초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입신고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먹는샘물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315조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 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칙 〈제566호, 2014. 7. 22.〉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 2014.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 201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보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 2016. 1. 8.〉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 2017.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 제3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기관의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교육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⑰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③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463호, 2012. 6.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27호, 2009. 12. 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15호, 2011.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의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	제4조(시료채취 기술인력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검사기관은 별표 8 및 별표 8의2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별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4호에 따라 기록하여 보관중이거나 기록 중인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는 별표 8의2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차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9 제2호다목)나) 및 같은 목 9)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12호, 2017.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 2017.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지 지위승계 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7항제3호, 제15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1663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제47조제2항제1호, 제47조의2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기 설치·관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수기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318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수”로 한다. 부칙 <제23932호, 2012. 7. 4.>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07호, 2013.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96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84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23호, 2017. 12. 2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사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산가스 주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호(거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한다. 제2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64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 제24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01호, 2015. 12.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474호, 2016. 12. 27.〉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제2조(먹는샘물등의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이 영 시행 이후 취수하는 샘물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29호, 2016. 5.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4호, 2017.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4호, 2018.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53호, 2021. 2. 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889호, 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788호, 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과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품질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먹는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⑰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⑱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㉒부터 〈89〉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2014호, 2021. 9. 24.〉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33858호, 2023. 11. 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거점도신공학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58호, 2024. 2. 2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821호, 2019.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 2021.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 2022. 5. 30.〉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②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13호, 2022. 12. 1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생략 부칙 〈제15652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련영업자 중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4일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제1061호, 2023. 11. 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7840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제21조제8항·제9항,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먹는샘물등·수처리제 등의 수입신고 또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332호, 2024. 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이 법 시행 이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3947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3948

[별표 1] <개정 2013.10.22>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1. 적용기준

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 중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1일 과징금 부과기준

가. 검사기관

기준금액(원/일)	매출금액(백만원/연)
180,000	100 이하
220,000	100 초과 120 이하
260,000	120 초과 140 이하
300,000	140 초과 200 이하
340,000	200 초과 280 이하
380,000	280 초과 380 이하
420,000	380 초과 500 이하
460,000	500 초과 680 이하
500,000	680 초과 840 이하
540,000	840 초과 1,020 이하
580,000	1,020 초과 1,220 이하

기준금액(원/일)	매출금액(백만원/연)
620,000	1,220 초과 1,440 이하
660,000	1,440 초과 1,680 이하
700,000	1,680 초과 1,940 이하
740,000	1,940 초과 2,220 이하
780,000	2,220 초과 2,520 이하
820,000	2,520 초과 2,840 이하
860,000	2,840 초과 3,180 이하
900,000	3,180 초과 3,540 이하
940,000	3,540 초과 3,920 이하
980,000	3,920 초과 4,320 이하
1,020,000	4,320 초과 4,740 이하
1,060,000	4,740 초과 5,000 이하
1,100,000	5,000 초과

나. 먹는물관련영업자

기준 금액 (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포함)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120,000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200,000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280,000	120 초과 200 이하	120 초과 170 이하	150 초과 350 이하
360,000	200 초과 340 이하	170 초과 250 이하	350 초과 700 이하
440,000	340 초과 540 이하	250 초과 360 이하	700 초과 1,200 이하
520,000	540 초과 800 이하	360 초과 500 이하	1,200 초과 1,850 이하
600,000	800 초과 1,120 이하	500 초과 670 이하	1,850 초과 2,650 이하
680,000	1,120 초과 1,500 이하	670 초과 870 이하	2,650 초과 3,600 이하
760,000	1,500 초과 1,940 이하	870 초과 1,100 이하	3,600 초과 4,700 이하
840,000	1,940 초과 2,440 이하	1,100 초과 1,360 이하	4,700 초과 5,950 이하
920,000	2,440 초과 3,000 이하	1,360 초과 1,650 이하	5,950 초과 7,350 이하
1,000,000	3,000 초과 3,620 이하	1,650 초과 1,970 이하	7,350 초과 8,900 이하
1,080,000	3,620 초과 4,300 이하	1,970 초과 2,320 이하	8,900 초과 10,600 이하

기준 금액 (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포함)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1,160,000	4,300 초과 5,040 이하	2,320 초과 2,700 이하	10,600 초과 12,450 이하
1,240,000	5,040 초과 5,840 이하	2,700 초과 3,110 이하	12,450 초과 14,450 이하
1,320,000	5,840 초과 6,700 이하	3,110 초과 3,550 이하	14,450 초과 16,600 이하
1,400,000	6,700 초과 7,620 이하	3,550 초과 4,020 이하	16,600 초과 18,900 이하
1,480,000	7,620 초과 8,600 이하	4,020 초과 4,520 이하	18,900 초과 21,350 이하
1,560,000	8,600 초과 9,640 이하	4,520 초과 5,050 이하	21,350 초과 23,950 이하
1,640,000	9,640 초과 10,740 이하	5,050 초과 6,200 이하	23,950 초과 26,700 이하
1,720,000	10,740 초과 11,900 이하	6,200 초과 6,820 이하	26,700 초과 29,600 이하
1,800,000	11,900 초과 13,120 이하	6,820 초과 7,470 이하	29,600 초과 32,650 이하
1,880,000	13,120 초과 14,400 이하	7,470 초과 8,150 이하	32,650 초과 35,850 이하
1,960,000	14,400 초과 15,740 이하	8,150 초과 8,860 이하	35,850 초과 39,200 이하
2,040,000	15,740 초과 18,600 이하	8,860 초과 9,600 이하	39,200 초과 42,700 이하
2,120,000	18,600 초과 20,000 이하	9,600 초과 10,000 이하	42,700 초과 50,000 이하
2,200,000	20,000 초과	10,000 초과	50,000 초과

[별표 2] <개정 2021. 7.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먹는물관련영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공동사항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7호	50	70	100
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10호	80	90	100
2)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제조업자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5호	50	70	100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6호	50	70	100
3) 정수기 제조업자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5호	50	70	100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6호	50	70	100
다)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2호	150	230	300
4)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2호	150	230	300

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1호	50	70	100
2) 법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관리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2호	50	70	100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7호	50	70	100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10호	80	90	100

다.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1호	50	70	100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7호	50	70	100

0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호	150	230	300
2)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2	50	70	100

마.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3호	50	70	100

바.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4호	50	70	100

3950

사. 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5호	50	70	100

아.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용기 제조업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6호	50	70	100

자. 검사기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7호	50	70	100
2) 법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8호	80	90	100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7호	50	70	100

카.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9호	50	70	100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	3955
[별표 1의2]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3962
[별표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3963
[별표 3]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	3964
[별표 3의2]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	3965
[별표 4] 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	3969
[별표 5]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0조 관련)	3971
[별표 6]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	3972
[별표 7]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	3972
[별표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3975
[별표 8의2] 검사기관 준수사항(제36조의2 관련)	3976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3985
[별표 10]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3985

[별표 1] (개정 2022. 5. 30.)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

1. 샘플 개발

가. 최초 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방법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물 이용실태(수도·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등) (나) 우물 및 샘 현황 (다) 수원 및 하천 현황 (라) 잠재오염원 (마) 10년간 기상(강수량·기온·일조량·증발산량) 및 수문 (바) 지형지질 및 수리지질 특성 (2) 기존 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수리지질도를 작성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지역은 최소한 원수채수지점이 포함된 지하수의 광역분수령(廣域分水嶺)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광역분수령이 원수채수지점에서 5km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원수의 채수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수리지질도의 축척은 광역 1:25,000, 세부 1:5,000 또는 그보다 큰 도면에 작성하며 위의 영향범위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수 유동(流動)과 저장량에 미치는 습곡·단층·불연속면·변질대·파쇄대 등에 대한 위치·규모·방향성 (나) 지질경계·구성암석·구성광물 및 유효공극의 발달상태 (다) 항공사진 판독이나 지질조사로 파악되는 선구조와 지하수 산출상태의 관계 (라) 샘의 발달상태, 하천과 지하수 산출의 상관관계 (마) 지하수의 함양(涵養)지역과 배출지역

조사항목	조사방법
	(3) 세부지질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수 유동경로의 발달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다. 지구물리 탐사의 방법은 다음의 방법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으로 한다. (가) 초저주파탐사나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탐사: 초저주파탐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탐사기로 전자기탐사를 실시하여 자질구조대의 위치·주향·경사 등을 파악하고 그 연장범위를 조사한다. 전자기탐사가 쉽지 아니하거나 탐사결과와 해석이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탄성파탐사로 전자기탐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와 전자기탐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나) 전기비저항탐사: 세부지질조사와 초저주파탐사 결과등을 토대로 전기비저항탐사(수평 및 수직)를 실시한다. (4) 세부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투수성(透水性)과 저수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 시험정 1조를 설치하고 지하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수리지질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수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한다. 시험정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정은 1개 이상의 양수정과 3개 이상의 관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관측정은 양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정으로부터 상류구간에 2개 이상, 하류구간에 1개 이상 설치한다. 상류구간에 설치되는 관측정중 1개는 다른 1개보다 더 먼거리에 설치한다. (나) 광역분수령으로 이루어진 집수구역에 농경지 및 축산분뇨, 생활오수, 산업폐수 발생시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유입여부를 관측할 수 있는 광역관측망을 양수정 상류에 관측정보다 더 먼거리에 1개 이상 설치한다. (다) 관측정의 깊이는 양수정의 최하부 굴착(땅파기) 깊이 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 굴착한다. (라) 최초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에서 추가 양수정 개발시 추가 개발된 양수정과 기존 관측정 간의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하여 상관성을 파악하고, 추가 개발된 양수정의 양수에 따른 기존 관측정의 지하수위 변화로 인해 추가 양수정과 기존 관측정의 상관성이 있을 때에는 기존 관측정을 활용할 수 있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5) 양수정에 대하여 공내검층(空內檢層)을 실시하여 대수층(帶水層)의 분포규모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층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정규검층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검층을 실시한다. (나) 관정의 주변전경과 공내를 연속촬영한다. (6) (1)부터 (5)까지의 조사결과와 다음의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양수시험 ①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양수정(주변 양수정 포함)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降下)를 측정한다. ③ 단계양수시험은 적은 양수율에서 많은 양수율로 변환시키면서 4단계 이상 실시하고, 첫 단계의 양수시험은 1,000분 이상으로 하며, 두 번째 단계부터는 180분 이상으로 한다. ④ 장기양수시험은 단계양수시험과 회복시험에서 산정된 적정채수량으로 양수하면서 양수정에서 실제 수위강하를 확인하고,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수위강하 자료로 수리상수, 영향범위 및 이방성 등을 구한다. ⑤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유계수·비양수량을 결정하고 기상자료·지표수문·지표공극률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함양량을 산출한다. 지하수함양량은 조사일부터 최근 10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⑥ 시험기간은 3일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분·시간 등)로 현장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EC), 산화환원전위(Eh), 용존 산소(Do)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또는 영향권), 호정(戶井) 간 수리간섭(水理干涉) 현상을 규명한다. ⑦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측정시간 간격은 부표와 같이 한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나) 수위회복시험 ①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하여 수위강하량의 95퍼센트 이상 수위를 회복시킨다. ②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나)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1)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 시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 및 5년 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제시한다. (2) (1)의 포획구간 안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제시한다. 다) 환경지질학적 피해 (1) 1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함으로써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강하·지반 침하·경사면안정파괴·식물고사, 그 밖의 재해를 평가·분석하여 제시한다. (2) 환경지질학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기존 자료분석 및 지질구조 조사 (나) 시험 시추에 의한 지층구조 및 연약대(軟弱帶) 파악 (다) 관측공에서의 장기수위(長期水位)·수온 및 전기전도도 관측 (라) 암반 및 토양시료에 대한 지질공학적 분석 (마) 중금속 오염도조사 및 지하수에 용해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등 지질공학적 분석 라)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따로 정하는 수질기준항목과 방법에 따른다. 원수의 수질뿐 아니라 주변의 수원(지표수·생 등)의 수질특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원수의 수질안전성과 수질특성을 규명하고, 지표수 및 주변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가) 수질조사는 월 1회씩 6회 이상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유입경로 및 원인을 분석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은 먹는샘물의 원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샘플을 개발할 때 및 제품에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표기를 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샘플을 개발할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샘플을 개발할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지하수수질기준 중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 조사지역 안의 이용 중인 먹는샘물용, 상수도 등 생활용수용, 농업용 및 공업용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인근 하천수와의 수질특성을 비교·분석한다. (라) 원수의 수질분석 결과 수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변화가 있을 때에는 수질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

비고 : 취수정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천수를 직접 취수하는 방법으로 샘플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방법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환경영향조사를 한다.

- 가)(2)의 수리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 유동(流動)과 용천수 용출에 미치는 습곡·단층·불연속면·변질대·파쇄대 등에 대한 위치·규모·방향성
 - 지질경계·구성암석·구성광물 및 유효공극의 발달상태
 - 항공사진 판독이나 지질조사로 파악되는 선구조와 용천수 산출상태의 관계
 - 샘의 발달상태, 하천과 지하수 산출의 상관관계
 - 지하수의 함양지역과 용천수가 용출되는 배출지역까지의 유출경로 파악
- 가)(3),(4),(5),(6)를 생략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 용천수 산출특성은 가)(1),(2)의 조사결과와 다음 각 목의 조사를 통하여 파악한다.
 - 용천수의 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6개월 이상 수량을 측정하며, 매회 측정시 3회 이상 측정한다.
 - 수량 측정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EC), 산화환원전위(Eh), 용존산소(DO) 등 현장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용천수의 수질변화유무를 파악한다.
 - 자동계측기를 이용하여 용천수위를 6개월 이상 모니터링 한다.
 - 조사지역의 강우량 분석 및 강우강도와 용천수 용출량과의 상관성을 평가한다.

마. 조사지역의 수리상수 자료와 기상자료·지표수문·지표공극률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출한다.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용천수의 용출량의 균일성과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고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3. 나)의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 시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용천수의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5년 이후 주변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지하수 모델링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제시한다.

나. 가.의 영향범위 안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제시한다.

4. 다)(2)의 (나),(다)를 생략하여 조사한다.

2) 평가기준

가) 물 수지분석에 따른 1일 최적 채수량과 영향범위

나) 영향범위의 지표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

다) 원수수질의 적정성

3) 조사서의 작성

가)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내용을 적고, 조사서에 조사서의 작성자 또는 조사업무 수행자와 그 일부를 위탁받은 수행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다) 그 밖에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나.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가) 허가받은 1일 채수한도량을 채수함으로써 발생한 지하수위강하, 지반침하, 경사면안정파괴, 식물고사, 그 밖의 재해 등의 피해 여부를 최근 1년 이상의 관찰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한다.

0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나)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감시정에서 자동으로 측정·기록한 최근 1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 다)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취수정 측정자료를 근거로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 라) 최근 1년 이상의 감시정 및 취수정의 측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수수질의 적정성 및 향후 5년간 수질·수량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한다.
- 마) 최근 1년 이내에 감시정·취수정에 대한 공내 텔레비전·카메라 검증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casing: 굴착면 보호관) 설치상태와 대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최초 조사 시와 비교·분석한다.
- 바)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된 환경영향범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폐수배출시설 설치공장·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골프장·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하고, 새로운 오염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영향 범위 안의 지질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 사) 새로운 오염원의 입지조사 자료, 향후 5년간의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예측 자료를 근거로 1일 적정채수량을 산정하고, 1일 적정채수량을 채수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 아) 최초의 조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2) 연장허가 신청 시의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가목의 2) 및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5년 이상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이 분석한 경우에는 1)의 가)부터 마)까지의 관련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표]

양수정(시험정)과 관측정 수위측정시간 간격

양수시험 경과시간	측정시간간격	측정횟수
1분 초과 ~ 10분 이하	1분 간격	10
10분 초과 ~ 20분 이하	2분 간격	5
20분 초과 ~ 60분 이하	5분 간격	8
60분 초과 ~ 100분 이하	10분 간격	4
100분 초과 ~ 180분 이하	20분 간격	4
180분 초과 ~ 300분 이하	30분 간격	4
300분 초과 ~ 600분 이하	60분 간격	5
600분 초과 ~ 780분 이하	90분 간격	2
780분 초과 ~ 1020분 이하	120분 간격	2
1020분 초과 ~ 1560분 이하	180분 간격	3
1560분 초과 ~ 2520분 이하	240분 간격	4
2520분 초과 ~ 4320분	300분 간격	6

2. 염지하수 개발

가. 최초 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방법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1) 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물 이용실태(수도·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등) (나) 우물 및 샘 현황 (다) 수원 및 하천 현황 (라) 잠재오염원 (마) 10년간 기상(강수량·기온·일조량·증발산량) 및 수문 (바) 지형지질 및 수리지질 특성 (2) 기존 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수리지질도를 작성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지역은 최소한 원수채수지점이 포함된 지하수의 광역분수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광역분수령이 원수채수지점에서 5km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원수의 채수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수리지질도의 축척은

조사항목	조사방법
	광역 1:25,000, 세부 1:5,000 또는 그보다 큰 도면에 작성하며 위의 영향범위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수 유동(流動)과 저장량에 미치는 습곡·단층·불연속면·변질대·파쇄대 등에 대한 위치·규모·방향성 (나) 지질경계·구성암석·구성광물 및 유효공극의 발달상태 (다) 항공사진 판독이나 지질조사로 파악되는 선구조와 지하수 산출상태의 관계 (라) 샘의 발달상태, 하천과 지하수 산출의 상관관계 (마) 지하수의 함양(涵養)지역과 배출지역 (바) 해안으로부터 지하수의 광역분수령까지 2개 이상의 지질단면도를 작성하고 담수와 염수 경계대(transition zone) 표시 (3) 세부지질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수유동경로의 발달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다. 지구물리 탐사의 방법은 다음의 방법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으로 한다. (가) 초저주파탐사나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탐사: 초저주파탐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탐사기로 전자기탐사를 실시하여 지질구조대의 위치·주향·경사 등을 파악하고 그 연장범위를 조사한다. 전자기탐사가 쉽지 아니하거나 탐사결과의 해석이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탄성파탐사로 전자기탐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와 전자기탐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나) 전기비저항탐사: 세부지질조사와 초저주파탐사 결과등을 토대로 전기비저항탐사(수평 및 수직)를 실시하여 염수층 부존상태를 파악한다. (4) 세부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투수성(透水性)과 저수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 시험정 1조를 설치하고 지하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수리지질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수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한다. 시험정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정은 1개 이상의 양수정과 2개 이상의 관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관측정은 양수정을 중심으로 해안 방향으로 1개 이상, 해안 반대방향으로 1개 이상을 설치하여 지하 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 수위와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나) 관측정의 깊이는 양수정의 최하부 굴착 깊이 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 굴착한다. (다) 최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에서 추가 양수정 개발시 추가 개발된 양수정과 기존 관측정 간의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하여 상관성을 파악하고, 추가 개발된 양수정의 양수에 따른 기존 관측정의 지하수 위 변화로 인해 추가 양수정과 기존 관측정이 상관성이 있을 때에는 기존 관측정을 활용할 수 있다. (5) 양수정에 대하여 공내검층(空內檢層)을 실시하여 대수층(帶水層)의 분포규모 및 담수와 염수 경계대 위치를 확인한다. 이 경우 검층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정규검층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검층을 실시한다. (나) 관정의 주변전경과 공내를 연속촬영한다. (다) 고조(high tide)와 저조(low tide)를 포함한 최소 2회 이상의 전기전도도 및 수온 검층을 통해 조석에 따른 담수와 염수 경계면의 시·공간적 변화를 확인한다. (라) 풍수기와 갈수기를 포함한 최소 2회 이상 전기전도도 및 수온 검층을 통해 강우에 따른 담수와 염수 경계면의 시간적·공간적 변화를 확인한다. (6) 염지하수 대수층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수위와 수질에 대한 자동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석 및 강우에 의한 지하수위 및 담수와 염수 경계대 확인을 위해 자동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수위 및 전기전도도, 수온 변화를 관측하고 분석한다. (나) 자동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시 전기전도도와 온도 센서는 담수대에 1개 이상, 염수대에 1개 이상 설치하여 깊이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다. (7) (1)부터 (6)까지의 조사결과와 다음의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양수시험 ①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는 염지하수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 및 담수와 염수 경계대의 변화를 측정한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③ 단계양수시험은 적은 양수율에서 많은 양수율로 변화시키면서 4단계 이상 실시하고, 첫 단계의 양수시간은 1,000분 이상으로 하되, 두 번째 단계부터는 180분 이상으로 한다. ④ 장기양수시험은 단계양수시험과 회복시험에서 선정된 적정채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에서 실제 수위강하를 확인하며,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수위강하 자료로 수리상수, 영향범위 및 이방성을 구한다. ⑤ 지하수 함양량 산정은 조사일로부터 최근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⑥ 장기양수시험 기간은 3일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이용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유계수, 비양수량을 결정하고, 일정시간 단위(분·시간 등)로 현장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한다. ⑦ 모든 양수정에 대한 동시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또는 영향권), 호정(戶井) 간 수리간섭 현상을 규명한다. ⑧ 담수와 염수 경계대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에 각각 1개 이상의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시간에 따른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변화를 측정한다. ⑨ 양수시험을 통하여 대수층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하수 부존량이 풍부하고 많은 양을 양수하더라도 수위강하가 작은 경우, 대상지역 대수층의 투수성이 매우 양호하여 수위강하가 작거나 빨리 안정화되어 양수시험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조석반응법을 이용한 방법 및 비양수량을 이용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대수층의 수리상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⑩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측정시간 간격은 부표와 같이 한다. (나) 수위회복시험 ①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 및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변화를 측정하고 수위강하량의 95퍼센트 이상 수위를 회복시킨다. ②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나)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1)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 시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 및 5년 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의 포획구간을 모델링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제시한다. (2) 적정채수량 조사시에는 양수에 따른 담수와 염수 경계면의 수질 변화 유무를 파악하고, 담수와 염수 점יד대(혼합대)의 두께 변화 유무를 파악하고 두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채수량을 산정한다. (3) 모델링은 담수와 염수의 밀도 차이를 고려한 지하수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밀도류를 모사할 수 있는 수치모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2) (1)의 포획구간 안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제시한다.
다) 환경지질학적 피해	(1) 1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함으로써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강하·지반 침하 등 재해를 평가·분석하여 제시한다. (2) 염지하수 개발로 인해 인근 샘의 유출량 및 수질변화 등을 평가하고, 주변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염지하수 개발로 인해 담수와 염수 상호작용의 수리동력학적 균형이 깨져 해수침투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염지하수 양수후 배출수 등에 따른 주변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출수의 수질을 파악하고 배출되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수, 토양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6개월 이상 현장수질 및 주성분원소등 수질을 파악하고 염도를 포함한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변화유무를 확인하고, 어장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라)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따로 정하는 수질기준항목과 방법에 따른다. 원수의 수질뿐 아니라 주변의 수원(지표수·샘 등)의 수질특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원수의 수질안전성과 수질특성을 규명하고, 지표수 및 주변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한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이 경우 조사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질조사는 월 1회씩 6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염지하수 방사는 수질기준 항목은 분기 1회씩 2회 이상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유입경로 및 원인을 분석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은 먹는염지하수의 원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염지하수를 개발할 때 및 제품에 암반대수층 안의 염지하수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표기를 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염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지하수수질기준 중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 조사지역 안의 이용 중인 먹는염지하수용 등의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인근 하천수와의 수질특성을 비교·분석한다. (라) 원수의 수질분석 결과 수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변화가 있을 때에는 수질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

비고 : 해수의 영향이 없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해수와 관련된 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을 해당 지역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환경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1호의 샘플 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 등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물 수지분석에 따른 1일 최저 채수량과 영향범위

나) 영향범위의 지표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

다) 원수수질의 적정성

3) 조사서의 작성

가)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내용을 적고, 조사서에 조사서의 작성자 또는 조사업무 수행자와 그 일부를 위탁받은 수행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다) 그 밖에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나.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가) 허가받은 1일 채수량도량을 채수량으로써 발생한 지하수위강하, 지반침하, 등 재해 여부를 최근 1년 이상의 관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한다.

나)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감시정에서 자동으로 측정·기록한 최근 1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다)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취수정 측정자료를 근거로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라) 최근 1년 이상의 감시정 및 취수정의 측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수수질의 적정성 및 향후 5년간 수질·수량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한다.

마) 최근 1년 이내에 감시정·취수정에 대한 공내 텔레비전·카메라 검증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와 대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최초 조사 시와 비교·분석한다.

바)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된 환경영향범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폐수배출시설·설치공장·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골프장·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 중 범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하고, 새로운 오염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영향 범위 안의 지질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사) 새로운 오염원의 입지조사 자료, 향후 5년간의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예측 자료를 근거로 1일 적정채수량을 산정하고, 1일 적정채수량을 채수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아) 염지하수 이용 후 배출되는 배출수의 수질과 배출되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수에 대한 현장수질, 주성분원소 분석, 염도를 포함한 토양분석에 대한 최근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

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자) 배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배출수의 수질을 최근 1년 이상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한다.

차) 최초의 조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 연장허가 신청 시의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가목의 2) 및 3)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5년 이상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이 분석한 경우에는 1)의 가)부터 마)까지의 관련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의2] 〈신설 2014.7.22〉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샘플 개발 환경영향조사서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조사서에 제시한 경우

다. 양수정(揚水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지질 조사 및 지구물리 탐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한 경우

라. 양수시험의 수위강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수리상수 및 1일 적정 채수량 등을 산정한 경우

마. 조사지역 분수령을 고려하지 않고 집수구역을 결정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경우

바. 강수량, 기온, 일조량, 증발산량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사. 지하수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을 예측함에 있어 지하수위, 수리상수, 지하수함양량 등의 입력 자료를 조작하여 지하수 모델링을 함으로써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아. 원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표수 및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자. 원수 수질의 변화 원인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조사지역의 수도·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 각종 물 이용실태, 우물 및 샘 현황, 수원 및 하천 현황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경우

- 나. 광역분수령으로 이루어진 집수구역 안의 농경지 및 축산분뇨, 생활오수, 산업폐수 발생시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누락한 경우
- 다. 포획기간 안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8호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 등의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별표 2] <개정 2011.3.2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지질 및 지반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각 1명 이상 ○시추기사, 응용지질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각 1명 이상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명 이상	○사무실 ○지구물리 탐사장비(지구물리 탐사장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시험공 굴착장비(시험공 굴착장비의 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 ○수위 및 수량측정장비

비고

1. 수질관리기술사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수질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수질 분야의 연구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수질환경기사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3. 6. 1.>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시설기준

가. 취수정의 설치

1) 취수공의 설치 및 관리

가) 상부구간 착정 및 케이싱 설치

- (1) 취수공(심정) 굴착 시에는 충적층 부위는 충분한 구경으로 지층을 굴착, 구경 250~300mm의 외부 케이싱을 설치한 후 견고한 암반선까지 더 굴착하여 구경 200~250mm의 내부 케이싱을 설치한다.
- (2) 이때 최초 지층 굴착 구경은 최초 그라우팅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케이싱 구경보다 최소한 100mm 이상 크게 굴착하여야 한다.

나) 그라우팅 실시

- (1) 상부구간 착정 종료 후 상부 오염수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케이싱과 착정경 사이의 공간(Annular space)에 착정공저부에서부터 역순환식 압력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 (2) 이때 그라우팅은 주입제가 지표로 역류될 때까지 시행하며 그라우팅 주입제는 체적상으로 3퍼센트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급결제(急結劑)를 사용할 수 있다.
- (3) 그라우팅 실시 후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는 후속작업을 할 수 없다.

다) 취수정 형성

- (1) 그라우팅이 완전 굳은 후 적정구경(150~250mm)으로 하부 대수층까지 굴착한 후 공내 TV-카메라 검층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와 대수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TV-카메라 검층결과는 비디오표로 촬영하여야 한다.
- (3) 공내검층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중 모터펌프 설치와 공내 수위관측공 설치가 가능한 적정규격의 우물자재(스테인리스 스틸 자재)를 수중 모터 펌프 보호에 충분한 깊이까지 설치한 후 공내의 세척을 실시한다.

2) 채수 및 계량시설

- 가) 양수 모터는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염지하수를 취수할 경우에 그 재질은 에스티에스(STS) 316급 또는 같은 등급 이상의 내식성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 나) 취수정에는 채수량을 자동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수정 보호시설

- 가) 취수정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양수장(Pump-house)에 자물쇠가 달린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취수정 안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외부 케이싱의 상반부는 양수장의 바닥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취수정 자재 등

취수공을 굴착한 후에 공내에 설치할 정호자재는 모두 KS 제품의 304-316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그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염지하수를 취수할 경우에는 수질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감시정의 설치와 관리

가) 감시정의 위치

환경영향조사 결과 취수정의 위치·설계구조와 취수정의 상하류 경사구간이 결정되면 그 상류경사구간에 2개공의 상류경사 감시정과 그 하류경사구간에 최소 1개공 이상의 하류경사 감시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염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염지하수의 유동방향에 따라 상·하류를 정하여 감시정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감시정의 설치

(1) 상류경사 감시정

- (가) 취수정에서 지하수 주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며, 취수정으로 부터 10m 이상 상류에 설치한다.
- (나) 상류경사 감시정의 굴착깊이는 취수정의 최하부 깊이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로 한다.
- (다) 환경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측정이 (가)와 (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상류경사 감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하류경사 감시정

(가) 취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이나 그 대각선 방향에 위치시키며 취수정으로부터 10m 이상 하류에 설치한다.

(나) 하류경사 감시정의 굴착깊이는 취수정의 최하부 깊이지점의 표고이하 지점까지로 한다.

(다) 환경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측정이 (가)와 (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하류경사 감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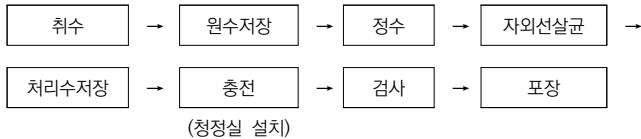
다) 연속자동계측기 설치 및 관리

감시정에는 원수의 수위·전기전도도·온도·수소이온농도(pH)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기록할 수 있는 연속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별표 1 제1호(가목1)의 비고를 적용하여 시험정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취수정을 설치해서는 아니되고, 감시정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수량 자동 계량시설 및 보호시설과 용천수의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기록할 수 있는 연속자동계측기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1) 표준제조공정(다만, 표준공정 이상의 위생적인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의 관리

가) 원수저장탱크

원수저장탱크는 밀폐되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자외선 공기살균기 등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살균·소독시설

살균시설은 2회선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처리수 저장조

처리수 저장조는 밀폐되어야 한다. 다만,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외선 살균 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충전실

충전실은 청정실(Clean Room)로 설치되어야 하며, 자외선 공기살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수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1) 염지하수를 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 배수관은 배출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양에서 배출되는 부분은 파랑, 조류와 같은 해양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염지하수 배출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하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한다.

(3) 염지하수 배출수에 농축수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바) 설비·자재

(1) 각종 설비는 모두 KS제품의 304-316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염지하수를 취수할 경우에 그 재질은 에스티에스(STS) 316급 또는 같은 등급 이상의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2) 먹는샘물등의 생산 배관·자재는 위생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전 설비 및 배관은 내부세척(CIP, Clean In Place) 처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아) 그 밖의 시설

(1) 빈병이나 뚜껑 등을 완전히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회수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원료·포장재료, 그 밖에 먹는샘물등과 직접 접촉하는 부가물들을 다른 재료들과 떨어져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 중 출입구·원수처리장·제조가공장·포장실 및 실험실 등에는 종업원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각각 도관으로 연결된 고정적인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원수 및 처리수 저장탱크의 바닥은 경사면이 되도록 설비하여 잔류물의 세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실 및 장비

1) 검사실

가) 검사실은 제조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검사장비: 다음 장비를 모두 갖추 것. 다만, 가)부터 차)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먹는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고, 가)부터 사)까지의 장비는 법 제43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나) 광전분광광도계

다)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

라) 퍼지&트랩장치

마) 게르마늄 감마선 계측기(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바) 섬광계수기(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사) 베타계수기(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아) 수도이온농도측정기(pH미터)

자) 콜로니 카운터

차) 클린벤치(무균작업실험대)

카) 정제수 제조장치

타) 고압멸균기

파) 저울

하) 건조기

거) 부란기

너) 삭제 <2017. 11. 20.>

더) 가열판

러) 탁도계

머) 교반기

버) 피펫 세척기(1회용 피펫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 항온수욕조(恒溫水欲槽)

어) 잔류염소 비색계

저) 국소배기장치(흡후드)

척) 염분계(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키)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조차

2.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

가. 작업장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제조공정상 부식 방지 등을 위하여 내산성 및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의 특수성으로 제조공정상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집제

원료저장탱크·혼합기·반응기·분쇄기(고체만 해당한다)·여과기

2) 살균·소독제

가) 고도표백분: 혼합기·타정기·반응기·석회유탱크·석회유필터·원심분리기·건조기·집진기·분리탑

나) 액화염소: 전해조·염소가스분리기·건조탑·염소가스압축기·염소가스냉동기
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반응기·냉동기

라) 이산화염소: 원료저장탱크·이산화염소발생장치·반응기

마) 오존: 오존발생장치

바) 과산화수소: 원료저장탱크·가열기·반응기·여과기·압축기·액분리기·순수저장탱크·농축기

3) 부식억제제

원료저장탱크·혼합기·용광로·성형기·건조시설

4) 그 밖의 제제

- 가) 수산화칼슘(소석회): 분쇄기·혼합기·반응기·분급기
- 나) 활성탄: 탄화로·활성로·분쇄기·혼합기·선별기·포장기·집진기
- 다) 황산구리: 반응기·농축기·여과기·냉각기·탈수기·포장기
- 라) 수산화나트륨: 전해조·농축조
- 마) 제오라이트: 분쇄기·건조기·입도분리기·약품처리조·세척조
- 바) 일라이트: 분쇄기·건조기·송풍기·분급기·포장기
- 사) 황산: 원료저장탱크·연소로·촉매탑·황산흡수탑·저장조·중화처리조
- 아) 안정화이산화염소: 원료저장탱크·반응기
- 자) 이산화탄소: 원료저장탱크·압축기·냉각기·수분분리기·건조기·정제탑·응축기·액분리기·저장탱크
- 차) 과망간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가열기·여과기·반응기·농축기
- 카) 티오황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반응기·농축기·탈수기(고체만 해당한다)

나. 검사시설

- 1) 검사실을 갖추고, 기준 및 규격시험에 필요한 장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원자흡광광도계(AAS), 온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등 정밀분석 장비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 2)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가능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하나의 검사실을 둘 수 있다.

3.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나. 먹는샘물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

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다.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나. 먹는샘물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다.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5. 정수기 제조업 시설기준

- 가. 검사실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검사장비
유리잔류염소·색도·탁도·클로로포름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검사실 또는 검사장비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해당 검사실 또는 검사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6. 정수기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가.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나. 정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자동계측기 설치기준

가. 자동계측기는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및 수소이온농도(pH)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구분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pH
허용오차 범위	±0.5% F.S	±2% R.D	±2% F.S	±0.25℃	±0.2

나. 감시정 자동계측기의 설치깊이는 감시정의 굴착깊이와 자연수위, 수위센서의 측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취수정의 최대 수위강하량(안정수위) 보다 아래에 설치하여 센서가 항상 지하수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2. 자동계측기 운영·관리기준

가.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및 수소이온농도(pH) 등을 1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측정·기록·저장하여야 한다.

1) 수위는 지반고(GL)를 기준으로 지하수면까지 측정하고, 수량은 적산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2) 각 항목별 측정단위는 아래를 적용한다.

구분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pH
단위	m	m ³ /h	μS/cm	℃	-

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는 설치 후 매 2년마다 1회 이상「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 자동계측기의 측정항목별 센서, 연결케이블 등 자동계측기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정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

1. 검사의 종류와 대상

가. 서류검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일]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현품의 성상(性狀)·색깔·맛·냄새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 정밀검사

다음의 것은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방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 1) 서류검사나 관능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국내에서 유통 중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것
- 3) 수송 중 위생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검사대상의 수거

가. 검사대상은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표장단위 3곳 이상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필요한 기준에 따른 적정량의 검사대상만 수거하여야 한다.

다. 검사대상 수거는 해당 제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검사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라. 관계 공무원은 검사대상을 수거한 경우에는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시험

가. 수거한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은 해당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다. 다만,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의뢰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송부받은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의뢰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신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불합격품의 처리

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다음의 경우 외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

2) 먹는샘물·수처리제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나. 시·도지사는 부적합 판정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신고자는 불합격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21. 7. 23.>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0조 관련)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공장(공장의 부지를 포함한다)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 일부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한 경우로서 샘물등을 이용하여 음료류를 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삭제 <2017. 12. 29.>

2) 삭제 <2017. 12. 29.>

나. 삭제 <2015.12.22.>

다.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

라.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마.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해야 한다.

바. 삭제 <2014.7.22>

사. 삭제 <2014.7.22>

아.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삭제 <2014.7.22>

차. 삭제 <2014.7.22>

카. 삭제 <2015.12.22.>

타. 삭제 <2015.12.22.>

파.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또는 자외선을

-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역과시설 중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나노필터를 이용하거나 가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된 먹는샘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샘물과 먹는샘물의 무기물질 중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의 함량, 증발잔류물 및 수소이온농도(pH)의 변화가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 3) 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다. 다만,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 중에 자연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包集)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가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염지하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 등의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염지하수에서 추출한 것에 한하여 먹는염지하수에 첨가할 수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염지하수를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하는 경우에 최종 제품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가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먹는샘물등에 음료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생산 품목을 전환할 때는 설비 및 배관에 대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생산 및 작업일지는 설비 및 배관에 대한 세척 실시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4) 배합 및 병입 공정설비는 음료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등에 섞이지 않도록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 음료류 제조에 대한 「식품위생법」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가. 방청제의 원료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해야 한다.
- 다. 삭제 <2015.12.22.>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 가.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다.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해야 한다.
- 라. 삭제 <2015.12.22.>
4.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 가. 수도물을 불순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품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 다.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1) 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2)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 3) 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불
 - 라) 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마) 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불
- 라. 품목(모델)이 단종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마. 필터 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여야 한다.
- 바.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해야 한다.
- 사.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수기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 아. 삭제 <2015.12.22.>

5. 삭제 <2014.7.22>

[별표 6] <개정 2010.3.23>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1.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5개 항목)	매일 1회 이상
	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 총대장균군, 녹농균(4개 항목)	매주 2회 이상 3 ~ 4일 간격으로 실시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형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4개 항목)	매월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반기 1회 이상
2. 샘물·염지하수	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형기성포자형성균(6개 항목)	매주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반기 1회 이상

비고

- 샘물·염지하수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는 미생물항목 6개 항목의 어느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살모넬라·쉬겔라에 대한 검사를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및 샘물·염지하수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 염지하수의 방사능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정 2011.3.23>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

1.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정수기의 외형과 모델이 다르더라도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기능 및 유효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으로 본다)로 정수성능시험을 한다.
2. 자가 품질 검사의 횟수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연간 생산량이 5천대 이하인 경우: 생산량 3천대 단위로 실시
 - 나. 연간 생산량이 5천대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3. 자가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유입수를 조제하여 정수성능을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그 밖에 특별히 정수성능이 있다고 정수기에 표시한 항목
 - 나.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톨루엔, 세제, 카바릴, 경도, 납, 비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대장균군. 다만, 가목에서 검사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한다.
4. 검사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별표 8] <개정 2023. 6.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2명 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2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이화학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3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에서 이화학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가. 시설: 실험실 1) 미생물실험실, 바이러스실험실(전처리실, 세포배양실, 바이러스분석실, 유전자분석실) 및 원생동물실험실(전처리실, 현미경실)은 각각 다른 실험실과 독립되거나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2) 바이러스실험실(세포배양실과 바이러스분석실만 해당한다)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에 따른 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에어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장비 1) 자동저울(0.0001g) 2대 2) 상평저울 1대 3) 정제수제조장치 1대 4) 건조기(Dry oven) 1대 5) 항온건조기 1대 6) 항온수욕조 2대 7) 전기회화로 1대 8) 흡후드(Hume hood) 1대 9) 진탕기(Shaker) 1대 10) 가열판(Hot plate) 2대 11)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3대 12) 회전진발농축기 1대 13) 고압멸균기(Auto clave) 1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배양기(Incubator) 2대
4)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	15)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배양기(BOD incubator) 1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명	16) 무균작업대(Clean bench) 1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명	17) 광학현미경 1대
1)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2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8) 장파장 자외선 조사가 1대(대장균 항목을 효소발색법으로 검사하거나 녹농균항목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미생물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3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9) 여과장치세트(막여과법을 수행할 경우)
3) 전문대학에서 미생물학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	20) 여과펌프(막여과법을 수행할 경우)
	21)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22) 잔류염소측정기 1대
	23) 탁도계 1대
	24) 퍼지-트랩장치 1대
	25) 광전분광광도계 1대
	26)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NPD, FID) 2대
	27)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28)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대
	29)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계(ICP) 1대
	3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31) 바이러스 시료채취기(조절기, 여과기, 배출기, 수소이온농도(pH) 및 잔류염소조정주입기, 전여과기 등)
	32) 이산화탄소(CO2) 배양기 2대
	33) 양수펌프 1대
	34) 도립현미경 1대
	35) 세포 및 바이러스용 무균작업대 각1대
	36) 탁상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7) 현상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4)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	38) 현상용 온도계 1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 학교는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명	39) 열균용 건조기(Hot Air Oven) 1대
마.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개설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40) 온도기록계 1대
바.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41) 고속원심분리기 1대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세포배양-바이러스 시료의 처리 및 동물바이러스 분석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42) 유전자증폭기(PCR) 1대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세포배양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유전자 분석	43) 전기영동장치 1대
	44) 전기영동 이미지 분석장치 1대
	45) 미량원심분리기 1대
	46) 전자레인지 1대
	47) 냉동고(Deep Freezer ; -70℃) 1대
	48) 팔 달린 교반기(Wrist Shaker) 1대
	49) 흡인장치 1대
	50) 볼텍스믹서(Vortex Mixer) 1대
	51) 회전혼합기(rotating mixer) 1대
	52) 리튬시험관용 자기입자농축기 1대
	53) 미세원심분리관용 자기입자농축기 1대
	54) 정량펌프 1대
	55) 형광 미분간섭대비(DIC) 현미경 1대
	56) 교반기 1대
	57) 게르마늄 감마선 계측기
	58) 삼검계수기
	59) 베타계수기
	60)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경험이 6개월 이상인 시료채취자 2명 이상[2)의 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 사. 원생동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분야의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역형광 항체법을 사용한 크립토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경력이 1년 이상인 분석 책임자 1명 이상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분야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면역형광 항체법을 사용한 크립토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경력이 3개월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크립토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시료채취자 1명 이상(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 다만, 원수(原水) 시료채취는 다른 미생물 관련 업무경력자도 할 수 있다.	

2. 수처리제 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명 1) 대학원에서 이화학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2년 이상 먹는물 수질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이화학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3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 먹는물 수질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명	가. 시설: 실험실 나. 장비 1) 자동저울(0.0001g) 2대 2) 상평저울 1대 3) 건조기(Dry oven) 1대 4) 항온건조기 1대 5) 항온수욕조 6) 표준망체(KS 규격품) 7) 이산화탄소 정량장치 8) 전기회로로 1대 9) 흙후드(Hume hood) 1대 10) 진탕기(Shaker) 1대 11) 가열판(Hot plate) 1대 12)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1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14) 광전분광광도계 1대 15)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FID) 2대 16)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17)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계(ICP) 1대 1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3.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나. 정수성능검사시설 및 장비 1) 시험용 원수탱크(500L용량의 FRP탱크 2조 이상) 2) 배관라인 3) 압력계(원수탱크별 각 1조 이상) 4) 유량계(배관라인별 개별세트) 5) 교반장치(원수탱크별 1조) 6) 펌프(원수탱크별 1조)

비고

1. 제1호의 기술인력란 바목 및 사목에서 “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 또는 학력을 인정받기 전의 경력, 학점을 이수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1)부터 59)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먹는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3.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31)부터 46)까지에 해당하는 장비는 바이러스 검사의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 목41) 및 47)부터 56)까지에 해당하는 장비는 원생동물 검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자동전기영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제1호 시설 및 장비란 나목 중 43), 44) 및 46)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또는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검사기관별로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중 공통되는 기술인력과 기능이 같은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6.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염지하수의 방사능 수질기준 항목을 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제1호 시설 및 장비란 나목57)부터 59)까지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제1호의 기술인력란 중 마목의 기술인력은 시료채취 업무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마목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0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8의2] <개정 2023. 6. 1.>

검사기관 준수사항(제36조의2 관련)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먹는물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르고,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검사는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3.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참고용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 나.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1)부터 3)까지의 시료채취(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제외한다)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 1) 도서(島嶼)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내의 먹는물 수질검사
 - 2)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 지역의 먹는물 수질검사
 - 3)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단속, 인가·허가·심사, 민원처리 등에 관한 먹는물 수질검사
- 3의2. 검사기관은 제3조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참고용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에 참고용 자료임을 명시해야 한다.

4. 시료채취 및 검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또는 서류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가. 별지 제41호서식의 시료채취기록부

나. 검사기록부[시험항목, 시험일자, 시험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前處理) 사항, 계산식, 측정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및 분석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정수기 성능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7.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9] <개정 2023. 6. 1.>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고 기간만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의 기간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마.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 시의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한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볍게 할 수 있고,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 마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법 제43조 제8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및 법 제48조제1항제4호·제8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2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조사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3				
가) 조사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조사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4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5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가) 기술능력, 시설 또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11)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나. 삭제 <2014.7.22>

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8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렇지 않다.	법 제43조 제8항 제1호의2	지정취소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43조 제8항제2호	지정취소			
4)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43조 제8항제3호	지정취소			
5)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3조 제8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8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지정된 검사기관(법정검사기관 및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3조 제8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 및 시설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3조 제8항제7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별표 8의2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8항제8호				
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정해진 검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시료의 채취 및 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였을 때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그 밖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1호	허가 또는 등록취소			
2) 삭제 (2014.7.22)					
3)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4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6)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8)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9) 법 제30조,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 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하면서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샘물등의 제조공장에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8) 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명표지를 사용한 경우		허가취소			
(9)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등 또는 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자동계수기로 계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합 및 봉합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0) 삭제 <2015.12.22.>					
(11) 삭제 <2015.12.22.>					
(12)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을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제조한 경우		허가취소			
(13) 오존처리나 기타 화학적처리를 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14) 증명표지가 표시된 병마개를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15)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식품첨가물 외의 물질을 방청제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삭제 <2015.12.22.>					
다)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1) 보관창고에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등 보관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삭제 <2015.12.22.>					
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수도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 행위·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2) 품질검사기록부(제조업자만 해당한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수리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4품목이 단종된 경우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필터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 체계를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6)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후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삭제 <2015.12.22.>					
10)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측기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가)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2)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3)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4)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6)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나) 정수기의 경우					
(1)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3) 유효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4)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5)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6)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2)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
1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4)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 가) 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 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6호의2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6)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7)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8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8)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10호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0)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11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샘물등 및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일반세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11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일반세균을 제외한 각 항목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일반세균이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일반세균을 제외한 각 항목이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4개월
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먹는샘물등의 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용기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그 밖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주성분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주성분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그 밖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2)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 그 밖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3) 법 제45조, 법 제47조제1항·제5항 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도 또는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에 관한 조치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4)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5)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3항	경 고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비고

1. 라목3), 라목9가)(2)·(4)·(5)·(11), 라목9나)(2)·(3), 라목9다)(1)·(3)·(4), 라목9라)(2)·(7), 라목15), 라목16) 및 라목22나)(4) 중 1차 행정처분으로서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2. 라목21가) 및 나) 중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해당 취소정의 취소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라목21다)·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4. 라목22나)(1)·(2) 및 다)(1)·(2)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폐기명령을 할 수 있다.

[별표 10] <개정 2021. 7. 23.>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종별	근거조문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샘플등의 개발 허가·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법 제9조	50,000원	45,000원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법 제15조	50,000원	45,000원
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변경등록	법 제15조	30,000원	27,000원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법 제21조제1항	50,000원	-
5.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변경허가	법 제21조제1항	30,000원	-
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법 제21조제2항	30,000원	-
7.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제2항	20,000원	-
8.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법 제21조제3항	50,000원	-
9.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법 제21조제3항	30,000원	-
10.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법 제21조제6항	30,000원	-
11.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법 제21조제6항	20,000원	-
12.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법 제21조제7항	30,000원	27,000원
13.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7항	20,000원	18,000원

0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3991
제2조(수질기준)	3991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3991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3991
제5조(건강진단)	3992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3992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3993
제8조 삭제	3993
부칙	3993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07.12.26	환경부령 제262호
	2008. 2. 4	환경부령 제276호
	2009. 9. 4	환경부령 제347호
	2010. 8. 4	환경부령 제377호
	2011. 2. 1	환경부령 제395호
	2011.12.30	환경부령 제439호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속분노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1.23	환경부령 제621호
	2016.10.31	환경부령 제677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12.26	환경부령 제792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1. 9.16	환경부령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 부령 일부개정령)
	2023.11.17	환경부령 제106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

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도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 계통(外部受水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다.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도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

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건강진단) ①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1.>

1.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정의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으로 한다.

제6조(수질검사결과와 통보) ①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같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④ 마을상수도사업자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⑤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제목개정 2023. 11. 17.]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① 일반상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일반상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

제8조 삭제 <2016. 12. 30.>

부칙 <제262호, 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라목·마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1 제2호가목·다목·사목, 같은 표 제3호터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가목·다목·사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른다.

제3조(먹는샘물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시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그 수질 기준이 완화된 항목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의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 : 1mg/L 이하”를 “아연 : 3mg/L 이하”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먹는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1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2개 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7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8개 항목)”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호, 2008.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2.1>

부칙 <제347호, 2009.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 2010.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 2011. 2. 1.>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부령 제276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 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 2015.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샘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유효기간 종료일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도래하는 샘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 또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중으로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 또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7호, 2016. 10. 3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시설용량이 50,000톤/일 미만인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92호, 2018. 12. 2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호, 2023. 11. 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3997
[별표 2]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제4조제3항 관련)	3999

[별표 1] <개정 2021. 9. 16.>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마. 아황산원형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불소는 1.5mg/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비소는 0.01mg/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0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라. 셀레늄은 0.01mg/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수은은 0.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시안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크롬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질산성 질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카드뮴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붕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브롬산염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하. 우라늄은 30 μ g/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벤젠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톨루엔은 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에틸벤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파. 크실렌은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0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히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審美的)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mg/L(수돗물의 경우 3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mg/L(수돗물의 경우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별표 2]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제4조제3항 관련)

급수인구(명)	수질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개)
5,000 미만	1
5,000 이상 - 50,000 미만	급수인구 5,000명당 1
50,000 이상 - 100,000 미만	급수인구 7,000명당 1 + 2
100,000 이상 - 500,000 미만	급수인구 8,000명당 1 + 4
500,000 이상 - 1,000,000 미만	급수인구 15,000명당 1 + 33
1,000,000 이상	급수인구 30,000명당 1 + 66

비고 :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

제5편 물이용

0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005 제2조(정의) 400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00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007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 4007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4008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4009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4010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4010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4011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4013 제12조(창업 지원) 4014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40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005 제2조(물산업의 범위) 4006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4007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4008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4008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4010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4011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4011 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4012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4012 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운영) 4012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4013 제13조(창업 지원) 4014	제1조(목적) 4005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4007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4009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4011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401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4016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4015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4015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4019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4015	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4017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4016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4019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4020	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4016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4017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 4019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4020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4021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 4022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4023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4023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4023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4024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4024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4025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4025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4025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4026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4026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4027	제22조(업무의 위탁) 4027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027		
부칙 4028	부칙 4028	부칙 402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8. 6.12 법률 제15654호 2020. 3.31 법률 제17176호 2021. 4.13 법률 제18029호 2021. 6.15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2021. 6. 15.)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 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제정 2018.12.11 대통령령 제29348호 2020. 1.29 대통령령 제30374호 2021.10.14 대통령령 제320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18.12.13 환경부령 제786호 개정 2022. 2.21 환경부령 제97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건설성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② 물산업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15.>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 6. 15.>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산업 분야의 국내의 시장 현황 2. 물산업 분야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물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 물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 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6. 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검증·인증 현황 7. 물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획득·보유 현황 8. 그 밖에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취지·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공유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의 표준화 2. 제1호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사업 3.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제품 성능 시험 여건 조성 4. 그 밖에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산업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의 교류·협력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2. 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 3. 지원 내용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2. 안전성 3. 공급의 안정성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증·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2.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나 제품시험 성적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판매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가, 허가, 인증 또는 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국고 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계약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물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 2.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검증·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 2. 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공동 발굴, 구매 및 홍보 협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기준,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우수제품등의 시범 사용·적용 3.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4. 그 밖에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물순환 이용, 빗물 이용, 대체 수자원, 취수원 다변화 등 안정적 용수공급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술 2. 기후변화에의 대응, 자원 효율성의 향상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3. 안전한 상수원의 확보 및 먹는 물 생산에 관한 기술 4. 관망(管網)관리, 누수관리, 급수설비 관리 등에 관한 기술 5. 환경친화적 상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기술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관리기술 7. 물·에너지·자원 등의 순환활용 및 연계처리에 관한 기술 8. 물산업 시장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기술 9. 하천 생태계 개선, 하천의 건천화(乾川化) 방지, 홍수 조절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관한 기술 10. 도시 침수 예방 등 물관리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시범사업의 대상 및 선정기준 3.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범사업 성과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범대상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 실적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경영 컨설팅 2. 물관리기술 이전 3. 물관리기술·제품의 수요 등에 관한 시장정보 제공 4. 마케팅 및 제품의 판로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공법 또는 제품(부품·장치·기기·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장치·기기·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의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을 말한다.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는 해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혁신형 물기업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제15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해당 혁신형 물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사업실적 2.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3. 고용 창출 실적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 기준 등 혁신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물관리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 제품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물관리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 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단의 단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물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물관리에 관한 기술,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구성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구성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구성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대행 또는 재대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구성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할 경우 5.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⑧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구성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구성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단의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제9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2. 2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3.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4. 그 밖에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대학·물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시설·지구로 본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대학·물기업 간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실증화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도 및 도시재생의 효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과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은 전문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변경,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기관 2.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4.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5. 물산업 관련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6.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찰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정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대료, 시설 이용료 등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매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13.) 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3.> 1.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조사·연구 및 시험·분석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증진 2.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 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4. 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원 2. 협의회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지정을 위한 검증·평가 3의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개선 지원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6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5654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물산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의회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의회가 승계한다. 제3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로 본다. 부칙 〈제17176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9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3호, 2021. 6. 15.〉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9348호, 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4호, 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0호, 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 2018. 12. 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호, 2022.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및 ③ 생략		

제5편 물이용

0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 차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035
제2조(정의)	4035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035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403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036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4036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의 제안)	4036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4036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4037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4037
제11조(행위의 제한)	4037
제12조(실태조사)	4037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4038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4038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4038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038
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4038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4038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4039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039
제21조(품질인증)	4039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039
제23조(기술개발)	4039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4039
제25조(조례의 제정)	4040

제4장 보 칙

제26조(국고 보조)	4040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4040
제28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4040
제2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4040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4040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4040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4040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4041

제5장 벌 칙

제34조(과태료)	4041
부칙	404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3.10.24 법률 제197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體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나.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 다.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 라. 강수의 침투·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 마. 하수 재이용,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 마. 「지하수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정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정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물순환 촉진 정책
3. 제8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물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
 3. 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적일 것
 4.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
 5. 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③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관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총괄적인 사업수행계획
 - 가. 사업의 내용·기간
 - 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다.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기대효과

4. 제11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자료를 기초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2.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같은 법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5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한하천유역치수계획

5.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6.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7.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 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실태와 물순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물순환 시설의 설치·정비 사업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본다.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정비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순환 시설을 설치·정비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사업의 명칭과 목적·필요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사업 시행기간
4. 물순환 시설별 설치계획 및 운영·관리계획의 개요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물순환 촉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8.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의·인가·신고·면허·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총괄
4. 물순환 촉진사업의 중간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②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물순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품질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 ④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술개발)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순환 촉진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①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조사·연구·홍보·자문 및 간행물의 발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국고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물순환 촉진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은 물순환 촉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2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승인 내용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 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 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협회

제5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9758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최초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4045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제17조제1항 관련)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5.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11.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및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에 관한 협의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근현대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로 한정한다)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신고
27.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0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제5편 물이용

05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058	제1조(목적) 4058	제1조(목적) 4058
제2조(책무) 4059		
제3조(정의) 4059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 4059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4060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4061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4061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4063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4063	제5조 삭제 4064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4064	
	제7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4065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4065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4066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4068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4068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4069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4069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4069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4070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4072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4073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4075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4075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4077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4077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변경 공고) 4077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4078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4078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4078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4080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4081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4081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4082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4082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4082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4083	제16조의2(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4083	
제9조(주민지원사업) 4083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4083	
제10조(재원 등) 4084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4084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4084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4084	
	제21조 삭제 4085	
	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4085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4085	제23조(비용부담기준) 4085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4085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4086	제24조(위생안전기준) 4086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4086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4087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4086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4088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4088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4088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4089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4088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4089	제24조의4(수거등의 권고 절차) 4090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4090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4090	제24조의5(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4091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4091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4091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4091	
	제24조의8(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4092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4092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4093	제24조의10(자료 제출) 4093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4093	제24조의11(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4093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4094	제25조 삭제 4094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4094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4095	제2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4095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4095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4096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4095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4096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4096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4097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4097	제7조 삭제 4097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4097	제27조(인가신청) 4097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4097
제18조(시설 기준 등) 4098	제28조(인가의 고시) 4098	
	제29조(시설기준) 4098	제9조(시설기준) 4099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4099
	제30조 삭제 4099	제10조 삭제 4099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4099	제31조(수질검사) 4099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4100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4100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4100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4100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4103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4101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4103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4104
	제34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 4103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4105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4103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 4103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4106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4104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4105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4105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4108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4106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4107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4107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4109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4107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4109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4112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4111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4113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4112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4112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4113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4113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4113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4115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4115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4115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4115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117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4117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4117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4117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4118	제44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4118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4118
		제17조의3(수수료) 4119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4119	제45조 삭제 4119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4119
제26조(수질기준) 4120	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4120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4121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4121
	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4121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4121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4122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4122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4122
제28조(정수처리기준) 4123	제48조 삭제 4123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4123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4125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4125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4126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4126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4126	제4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4126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4127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4127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412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4128		제20조(수질검사기관) 4127
제32조(건강진단) 4129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4128
제33조(위생상의 조치) 4129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4128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4130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4129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 위생조치 등) 4130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4131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4131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4131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4131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4133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4135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4136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4136		제23조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4138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4136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4138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4138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4141	제24조(긴급정지) 4140
제36조(교육) 4138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4141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4141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4140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4142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4141
제38조(공급규정) 4141		
제39조(급수 의무) 4142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4142	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4142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4142	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4143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4143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4143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4143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4144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4144 제45조(소화전) 4145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4145 제47조(마을상수도) 4147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4147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4148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4148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4149 제50조(준용 규정) 4149		
제4장 전용수도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4149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4149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4149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4149 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4150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4150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4149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4150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4151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4151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4152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4152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4152 제58조(감독) 4153	제60조(업무 등) 4152 제61조(협회의 감독) 4153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4153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4153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 4153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4154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4154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4154		
제7장 감독		
제62조(지휘·감독) 4155	제62조(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4155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4155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4158		
제64조(개선 명령 등) 4160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4161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4161		
제8장 보칙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4162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4162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위탁) 4162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4162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4162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4163		
제71조(원인자부담금) 4163	제65조(원인자부담금) 4163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4164		
제73조(기술 연구·개발 등) 4164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4164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4164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4164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4165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4165
		제30조(자체기술진단) 4167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416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4168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 4168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4169 제75조(국고 보조 등) 4169 제76조(수도사업용 땅의 수물민에 대한 지원) 4169 제77조(국유지의 매각·임대) 4170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4170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4170 제79조(청문) 4173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174 제9장 벌칙 제81조(벌칙) 4175 제82조(벌칙) 4176 제83조(벌칙) 4176 제83조(벌칙) 4178 제84조(벌칙) 4179 제85조(벌칙) 4180 제86조(양벌규정) 4181 제87조(과태료) 4181 제87조(과태료) 4184 부칙 4188	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4169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4170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174 제68조(규제의 재검토) 4175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181 부칙 4188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4167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4168 제32조(규제의 재검토) 4175 부칙 4188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정 2007. 4.11 법률 제 8370호 개정 2007. 5.17 법률 제 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12.27 법률 제 8805호 2007.12.27 법률 제 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법률 제 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 8976호 (정보법) 2009. 1.30 법률 제 9401호 (국유재산법) 2009. 6. 9 법률 제 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권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 2010. 5.25 법률 제10317호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 6. 8 법률 제1035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7.28 법률 제10976호 2011. 8. 4 법률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11.14 법률 제11085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12.30 법률 제12141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3.24 법률 제12518호 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5. 2. 3 법률 제13166호 2015.12. 1 법률 제13529호 2016. 1.27 법률 제13878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12.12 법률 제15193호 2018. 6. 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8.12.24 법률 제16082호 2019.11.26 법률 제16607호 2020. 3.31 법률 제17178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8.17 법률 제18419호 2022. 1.11 법률 제18750호 2022.11.15 법률 제19045호 (건축법) 2022.12.27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8.16 법률 제19662호 2024. 1.16 법률 제20036호 2024. 1.23 법률 제20118호	제정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3호 개정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 3 대통령령 제20521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 5.21 대통령령 제2078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 6.20 대통령령 제20846호 2008.12. 3 대통령령 제21148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육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7.16 대통령령 제2162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17 대통령령 제21829호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 2011. 6. 8 대통령령 제2296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6호 2012. 1.26 대통령령 제23557호 2012. 5.14 대통령령 제23784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 8. 3 대통령령 제2402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건축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5.31 대통령령 제24560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4.15 대통령령 제25309호 2014. 6.30 대통령령 제25430호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5호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2007. 9.11 환경부령 제244호 개정 2007.12.26 환경부령 제262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민환경과 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6.27 환경부령 제291호 2010.11.29 환경부령 제396호 2011. 5.31 환경부령 제416호 (환경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 6. 9 환경부령 제41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1.27 환경부령 제445호 2012. 5.17 환경부령 제456호 2012. 6.29 환경부령 제462호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 1.29 환경부령 제5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 1 환경부령 제561호 2014.12. 1 환경부령 제579호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 3.25 환경부령 제596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6. 3. 3 환경부령 제642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1.29 환경부령 제747호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 6.27 환경부령 제768호 2019. 6.25 환경부령 제813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영역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5.27 환경부령 제870호 2020.11.27 환경부령 제893호 2021. 4. 1 환경부령 제910호 2022. 2.17 환경부령 제975호 2022. 7.12 환경부령 제994호 2023. 1. 3 환경부령 제1015호 2023. 8.28 환경부령 제1052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2024. 1.30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 3.19 법률 제20385호 (환경보정 조성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6. 7.12 대통령령 제27335호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부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 4.11 대통령령 제27985호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8.16 대통령령 제2824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6.12 대통령령 제28965호 2018.12.11 대통령령 제29352호 2019. 6.18 대통령령 제29874호 2019.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20. 8.11 대통령령 제30929호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5호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5호 2021. 3.30 대통령령 제31581호 2022. 1.21 대통령령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2.15 대통령령 제32439호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22. 6.14 대통령령 제32697호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11 대통령령 제32794호 2023. 5.23 대통령령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 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도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도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도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도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9. 11. 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여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써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14.]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②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과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 5. 25.)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飲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 500미터 미만인 것 다. 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문개정 2014. 6. 30.]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16. 삭제 (2010. 6. 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4., 2020. 3. 31., 2022. 1. 11.>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교체 계획 11. 삭제 (2010. 6. 8.)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계획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	제5조 삭제 (2022. 7. 11.)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2. 7. 11.)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세척·갱생·교체 등 9. 삭제 (2011. 6. 8.)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⑥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 11.>]	10.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 7. 11.] 제7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0. 11. 26.,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2. 7. 11.>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1. 삭제 <2022. 1. 11.> 2. 삭제 <2022. 1. 11.> ② 삭제 <2022. 1. 11.>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개정 2022. 7. 11.> 1.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4. 14.,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2. 1. 11.>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2. 1. 11.> 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2020. 3. 31., 2022. 1. 11.>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도물의 증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도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삭제 <2018. 6. 8.> ⑨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 11.>]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④ 제3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2. 7. 1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 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 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에 소속된 시험·분석·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 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⑥ 환경부장관은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26.]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4. 3., 2010. 11. 26., 2013. 5. 31.>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3. 5. 31.>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4. 11. 28., 2017. 4. 11., 2020. 11. 24., 2022. 6. 14.>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騒音圈)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자.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임목(立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26., 2012. 1. 26., 2012. 5. 14.>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 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2024. 2. 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 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분석·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시행일: 2025. 8. 7.] 제7조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산설 2013. 12. 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 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본조산설 2010. 11. 26.]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산설 2014. 7. 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 7. 1.>]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본조산설 2021. 4. 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1. 4. 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4., 2018. 1. 17., 2019. 6. 25., 2019. 12. 20.>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문개정 2014. 11. 28.]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30.> [본조신설 2010. 5. 25.]		대상이 아닌 공장 다.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마.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바.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전문개정 2014. 12. 1.] [제목개정 2020. 11. 27.] [제2조의2에서 이동 <2021. 4. 1.>]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 1. 17., 2019. 6. 25., 2023. 1. 3.>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만,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취수·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가.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전문개정 2014. 12. 1.] [제목개정 2020. 11. 27.]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②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이나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6.>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업·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의2(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1.]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원 등)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 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2. 1. 26.> 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3조(비용부담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초소·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 4.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 11. 26.>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 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12조의2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누구든지 수도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도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11. 26.]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2.>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9. 11. 26.>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19. 11. 26.>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2019. 11. 26.>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및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 11. 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11. 26.]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및 수수료 등 [전문개정 2010. 5. 25.]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수입·공급·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30., 2016. 1. 27., 2017. 12. 12.> 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본조신설 2010. 5. 25.]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1. 27.]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20. 11. 27.>]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험실 평면도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일 것 2.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보존, 검사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중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5로 이동 <2019. 11. 26.>]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③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중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0. 11. 24.>]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②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본조신설 2020. 11. 2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중정 제14조의4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9. 11. 26.)]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24조의4(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 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11. 24.>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상표·모델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5. 수거등 권고의 이행 절차 6. 수락 거부 시의 조치 계획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 여부 및 수거등의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의 이행기한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6. 7. 12.]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1. 2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9. 11. 26.>]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5(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5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1. 제품등의 명칭·상표·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본조신설 2016. 7. 12.] [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19. 11. 26.>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경우 2.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상표·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6. 7. 12.] [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8(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6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②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20. 11. 24.>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9. 11. 26.>]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14조의5에서 이동 <2019. 11. 26.>]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본조신설 2016. 7. 12.] [제2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10(자료 제출) 법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 2. 제품등의 제조·수입·공급·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3. 제품등의 제조 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 현황(제품등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20. 11. 24.>] 제24조의11(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제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법 제14조의5제3항 또는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신청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14조의6에서 이동 <2019. 11. 26.>]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8. 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8. 6. 12.] [제24조의10에서 이동 <2020. 11. 24.>] 제25조 삭제 <2020. 11. 24.>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제2의5와 같다. <개정 2020. 11. 27.> [본조신설 2019. 6. 25.]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도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2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4. 6. 30.]	[제3조의3에서 이동 <2020. 11. 27.>]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 12. 1., 2020. 11. 27.> 1.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상호 나. 대표자 다. 사업장 소재지 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1. 27.> [본조신설 2014. 7. 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변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2. 삭제 <2018. 6. 8.>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 26., 2012. 1. 26., 2013. 3. 23., 2018. 6. 8.>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제7조 삭제 <2011. 6. 9.>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7. 1.>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 2021. 4. 1.>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 물이 흐르는 방향의 직선거리에 대한 수위 차이)(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인가신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④ 삭제 <2018. 6. 8.> 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8.>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 조서와 지번·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③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6., 2012. 1. 26.>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0. 11. 26.>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설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 삭제 (2010. 5. 25.) ③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다.	1.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추 것 2. 갈수기(渇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추 것 3.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추 것 4.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 것 5.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추 것 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추 것 ②수도시설의 위치와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수도시설은 수압·토압·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오염되거나 쉼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삭제 (2010. 11. 26.)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8. 6. 8.>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 제10조 삭제 (2010. 11. 29.)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 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도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도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도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도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급수설비의 검사 예정일 2. 급수설비의 검사 내용 3. 준비서류 등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①법 제2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6. 30.> ②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 6. 30., 2017. 8.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본조신설 2014. 7. 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4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2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⑦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0. 3. 3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종사한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시설용량이 1일 1천 톤 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그 수도가 소독설비 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6. 30.> 제34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3. 30.] [중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1. 3. 30.>]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2.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20. 3. 31.]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정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34조의2에서 이동 <2021. 3. 30.>]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상수도관망의 노후 정도 3.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상수도관망도, 관의 제원(諸元) 및 법 제74조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등 상수도관망시설의 현황 3.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요청 사유 4.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 발생현황 5. 정수장, 배수장 및 상수도관망의 수질측정 결과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인력·장비 등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30.]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연도별 세척·갱생 또는 교체 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본조신설 2021. 4. 1.]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영 별표 2의3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2. 상호 또는 명칭 3. 대표자 성명 4.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줘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1. 4. 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별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4.> 1. 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 28조·제28조의2·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11. 14.>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 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 5. 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순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 목표에 관한 사항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0. 11. 26., 2012. 5. 14., 2021. 3. 30.>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6.>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2020. 11. 24.>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⑤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홈페이 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①위탁심의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1. 26.>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 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0. 11. 26.> ③ 삭제 <2010. 11. 26.> ④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 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6.>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11. 26.]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를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 11. 14.]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19. 11. 26., 2020. 5. 26.> 1. 미성년자 또는 파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1. 3., 2022. 7. 11.>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8. 1. 3.>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08. 1. 3.>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만 면제한다. ⑥ 자격시험의 출제·채점·응시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 2012. 5. 17., 2018. 6. 27.>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 11. 29., 2012. 5. 17., 2018. 6. 2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6. 27., 2010. 11. 29.>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⑤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⑥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2급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 3., 2022. 7. 11.>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7.>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2008. 6. 27.> ② 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8. 17.] 제24조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환경부장관은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잘못으로 수도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8. 17.] 제25조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파견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④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본조신설 2021. 3. 30.]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한다)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⑦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본조신설 2020. 3. 31.]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제45조 삭제 <2010. 11. 26.>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5로 이동 <2021. 4. 1.>]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자격증 교부: 10,000원 2. 자격증 재교부: 10,000원 [본조신설 2021. 4. 1.]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6으로 이동 <2021. 4. 1.>]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4. 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과실로 수도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6조(수질기준)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 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30.>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	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6. 30., 2023. 11. 16.> [제목개정 2023. 11. 16.]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7. 12.>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7. 12.> 1. 조치계획의 보완필요사항 2. 조치계획의 보완기한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2.> [본조신설 2020. 11. 27.]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1. 4. 1.>]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환경부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한 사고 대응,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수립 및 이행의 지원 2. 사고의 대응·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사고의 원인,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민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에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0. 11. 24.]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정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수처 유출부에서 분원성(氾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7조의3에서 이동 <2021. 4. 1.>]]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17.> 1.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수질기준(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오염의 발생일시·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1. 11. 14.]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6.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7.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 이상인 경우 8.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 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mg/L를 초과하는 경우 11.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5. 14.] 제48조 삭제 <2012. 5. 14.>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7.>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17.>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 2019. 6. 25.>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卵囊)을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할 것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광역상수도 2. 지방상수도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7. 1., 2019. 6. 25., 2022. 7. 12.> 1. 인증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나.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 수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수질이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이 경우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위치 및 측정지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配水池)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지 2)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 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항목·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 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⑤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9. 6. 25., 2022. 7. 12.>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2. 5. 17.]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항목·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22. 7. 12.>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4.]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⑤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 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 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 2.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1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한다. <신설 2022. 1. 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본조신설 2020. 3. 31.] 제30조(수도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도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1. 수도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도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도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④제1항에 따른 수도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면접·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중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제49조의3(수도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도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도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도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1. 26.]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 9. 29.>]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제21조(필수 수질검사사실) 영 제4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7. 12.> 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 원수의 수질 정보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원인·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도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2.>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 7. 12.> [본조신설 2012. 5. 1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음식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 7. 12.]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만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7., 2019. 6. 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전문개정 2017. 4. 11.]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2. 5. 17.] [제목개정 2019. 6. 25.]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17.]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17.]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 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2. 11. 15.>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계산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7.> ⑤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4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4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그 밖에 안전한 수도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법 제33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갯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문개정 2016. 7. 12.]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16.> 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4. 1. 16.>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2. 11. 15., 2024. 1. 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4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그 밖에 안전한 수도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제목개정 2024. 1. 16.] [시행일: 2024. 7. 17.] 제33조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것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춘 것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33조의2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33조의3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③ 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		별표 7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11. 27.>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7., 2020. 11. 27.> 1. 대표자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청소감독원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⑦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19. 11. 26.> ④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26.>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21.>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본조신설 2012. 5. 17.] 제23조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년마다 8시간의 교육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년마다 35시간의 교육 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요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년마다 35시간의 교육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③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1. 2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3. 30., 2023. 11. 21.> ⑤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2. 7. 20., 2023. 5. 23., 2023. 11. 21.> 1.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⑥제5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1.>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⑦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1.> ⑧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11. 21.>	제24조(긴급정지) ①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정지의 일시·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와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도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도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도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2. 8. 3., 2014. 6. 30., 2018. 6. 12.>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7., 2012. 5. 17., 2013. 3. 23., 2018. 6. 8.>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와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4. 7. 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도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의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도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도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이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도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본조신설 2010. 11. 26.] 제53조의3(수도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도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4. 6. 30.] 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④ 삭제 <2011. 7. 28.>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도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도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이 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도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24. 3. 19.> ④ 삭제 <2011. 7. 28.> [시행일: 2025. 1. 1.] 제41조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제33조,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④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1. 26.>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공기관·군부대·학교·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3. 삭제 <2010. 11. 26.>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동의·면허·승인·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7. 28., 2011. 11. 14., 2014. 1. 14., 2014. 6. 3., 2021. 7. 20., 2022. 12. 27., 2024. 1.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 4. 15.)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 ②인가관청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을 면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4. 1. 30.> [제목개정 2024. 1. 30.]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 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11. 27.>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환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1. 8. 4.>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2022. 1. 11.>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도지사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		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 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나. 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본조신설 2012. 5. 17.]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4. 7. 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전문개정 2011. 7. 28.]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2. 30.> 제4장 전용수도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②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②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5. 25., 2013. 12. 30.>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 6. 20.]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물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9. 11. 26.)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시장·군수(광역시·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6. 30.>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삭제 <2017. 4. 11.> 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 4. 수도 관계 시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교육 및 연수 6. 수도 관계 국제 교류 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8조(감독)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제61조(협회의 감독) ①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4. 14.>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 3. 30.> ② 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장 감독 제62조(지휘·감독)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도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0. 5. 26.>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도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20. 3. 31.>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8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제62조(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5. 14.>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도물을 공급한 경우 5.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9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65조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7. 12. 27.]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0. 5. 26.>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 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도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20. 3. 31., 2024. 1. 1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8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도물을 공급한 경우 5.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15. 제38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9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65조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2024. 7. 17.] 제63조 제64조(개선 명령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인기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인기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도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수도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기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인기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인기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도 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②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 주소와 현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 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용자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도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73조(기술 연구·개발 등) ①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1항에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21. 3. 30.) [본조신설 2020. 11. 24.]	다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1. 27.>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가.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나.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다. 제31조의3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 계획의 수립·시행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6. 27.]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5. 17., 2019. 6. 25., 2020. 11. 27.>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19. 11. 26.>]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		후 30일 이내 [본조신설 2014. 7. 1.]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8.>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8. 28.> 1.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 항목 2.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항목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28.> 1. 보완필요사항 2. 보완기간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본조신설 2020. 11. 27.]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74조의2에서 이동 <2019. 11. 26.>]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18. 6. 12.]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담수물관리자”나 “담수탁관리에 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 6. 15.> 제77조(국유지의 매각·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도관로 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주차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본조신설 2022. 1. 11.]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3. 3. 23., 2018. 6. 8.>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1. 26., 2012. 1. 26., 2012. 5. 14., 2016. 7. 12., 2018. 6. 12., 2020. 11. 24.>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 중지 3. 법 제14조의5 및 법 제14조의6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3의2.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3의3. 법 제14조의8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의 해제 접수 및 해제 결정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4의2. 법 제8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11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1. 24., 2021. 3. 30., 2022. 7. 11.)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군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은 제외한다.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 관리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및 보완 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인가·변경인가의 고시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인가 전 협의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협의 5의2.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의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설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관리기술포럼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7.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공업용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및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그 인가·변경인가의 고시 9. 법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0.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 11.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12. 법 제87조제4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③ 삭제 <2020. 11. 24.> ④ 삭제 <2020. 11. 24.>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1. 24., 2022. 7. 1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4.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실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전산망의 구축·운영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설치·운영 7. 법 제43조에 따른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 및 연구 8.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 및 연구 9.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 10.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1. 24., 2021. 3. 30.>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1의2.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도물 먹는 실태조사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관리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8. 1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 6. 20., 2010. 11. 26., 2020. 8. 11.> [제목개정 2020. 8. 1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5. 25., 2019. 11. 26.>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9장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8., 2014. 3. 24.>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리사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0. 11. 24.] 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7. 12. 12., 2020. 11. 24., 2022. 3. 8.> 1.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2014년 7월 1일 2.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2014년 7월 1일 3. 제24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2022년 1월 1일 3의2. 제24조의3제3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25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기준: 2014년 7월 1일 5. 제52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2014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3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제4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31조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장비와 기술인력: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37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9. 11. 2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3. 12. 30., 2014. 3. 24., 2017. 12. 12., 2020. 3. 31., 2022. 1. 11.>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자 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4. 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5. 제24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5의2. 제24조제5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9.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0.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3. 12. 30., 2014. 3. 24., 2017. 12. 12., 2020. 3. 31., 2022. 1. 11., 2024. 1. 16.>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자 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들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4. 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5. 제24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5의2. 제24조제5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9.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0.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시행일: 2024. 7. 17.] 제83조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3. 삭제 <2011. 7. 28.> 4.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2019. 11. 26.> 1. 제19조제2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1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2. 삭제 <2011. 7. 28.>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 제28조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29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삭제 <2010. 5. 25.> 7. 제32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2조제2항(제23조제3항과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게 한 일반수도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9. 제39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10. 삭제 (2010. 5. 25.) 11. 제52조(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12.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8. 17.> 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12.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12. 5. 14.]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24., 2019. 11. 26., 2021. 8. 17.)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들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1. 삭제 <2016. 1. 27.)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 삭제 <2021. 8. 17.)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4의2.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2020. 3. 31.>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0. 6. 8.> 3의2. 삭제 <2011. 7. 28.> 3의3. 삭제 <2011. 7. 28.> 3의4. 삭제 <2011. 7. 28.>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6. 1. 27., 2018. 6. 8.> ⑥ 삭제 <2010. 5. 25.> ⑦ 삭제 <2010. 5. 25.> [법률 제8370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2007년 9월 27일까지 유효함]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8. 17.> 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12. 24., 2019. 11. 26., 2021. 8. 17.>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1. 삭제 <2016. 1. 27.>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 삭제 <2021. 8. 17.>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4의2.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2020. 3. 31., 2024. 1. 16.>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0. 6. 8.> 3의2. 삭제 <2011. 7. 28.> 3의3. 삭제 <2011. 7. 28.> 3의4. 삭제 <2011. 7. 28.>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5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6. 1. 27., 2018. 6. 8.> ⑥ 삭제 <2010. 5. 25.>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⑦ 삭제 (2010. 5. 25.) [시행일: 2024. 7. 17.] 제87조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 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23호, 2007.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월 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 2007.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14호 수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20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호, 2007. 12. 26.>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⑯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521호, 2008.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 : 1mg/ℓ 이하”를 “아연 : 3mg/L 이하”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 2008. 6. 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을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89호, 2008. 5. 21.> (산림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386호, 2010.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의 준수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6호, 2011.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부칙 <제417호, 2011. 6. 9.>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골재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 국회의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수도협회 회가 인증한 제품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46호, 2008. 6. 20.〉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8호, 2008. 12. 3.〉 (집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445호, 2012. 1. 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 2012.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 제7호가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취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취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3 제7호나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정수장: 2012년 12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 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 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부칙 <제21214호, 2008. 12. 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9호,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갹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1829호, 2009.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정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3. 별표 3 제7호다목 및 라목의 시설: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462호, 2012.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43호, 2014. 1. 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도 설치의 인가 ⑩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03호, 2010. 1.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⑤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설비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급수설비의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9호, 2014.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⑯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⑰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⑱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⑲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⑳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부터 ㉕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06호, 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제30조, 제48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부담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원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운영 중인 취수시설 등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로서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제1호 단	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㉑부터 ㉒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6호, 2015. 3. 25.〉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 2016.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㉖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㉗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㉘수도권산공환경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㉙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㉚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㉛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	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취수 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른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 등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서의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개발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010년 11월 26일 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로서 2010년 11월 26일 이후 그 지정·개발이 완료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하며, 이하 “기존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이라 한다) 외의 공장을 신설하는 행위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㉑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제747호, 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4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호”로 한다. ㉔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 한다. 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㉖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㉗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㉘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조”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	2.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3.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4.15]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 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4.15]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2967호, 2011. 6.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68호, 2018.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소감독원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3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저수조를 청소한 경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여러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3호, 2020. 11. 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㉔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3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㉕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㉖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13호, 2011. 11.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10호, 2021. 4. 1.〉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4호, 202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8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2호 중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015호, 2023.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㉗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㉘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㉙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㉚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㉛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부칙 〈제23416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57호, 2012. 1. 26.〉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84호, 2012. 5. 14.〉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20호, 2012. 8.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1052호, 2023.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㉓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㉕주한미군기지가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㉖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㉗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㉘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229호, 2012. 12. 12.〉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보호관찰소, 갯생보호소”를 “갯생보호시설”로 한다.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0제17호”를 “수도법” 제30제19호”로 한다. ㉔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㉕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부칙 <제24560호, 2013. 5. 3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09호, 2014. 4.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	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등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증설 또는 업종변경 절차에 이미 착수한 공장의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거나 그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25430호, 2014. 6. 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325)까지 생략 ③(326)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③(327)부터 ④(418)까지 생략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785호, 2014.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35호, 2016.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85호, 2017.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805호, 2007.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9호, 2007. 12. 27.>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⑰ 부터 ④③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43호, 2017. 8. 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⑩까지 생략 ②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⑥까지 생략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⑯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⑰ 부터 ㉓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7> 까지 생략 <50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제5항·제8항 전단 및 후단·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948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과”를 “환경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사업 또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4.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5.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8965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⑦ 부터 <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잠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774호, 20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⑦ 부터 ④ 까지 생략	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제3조(위생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등의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52호, 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4호, 2019. 6. 18.>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929호, 2020.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75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㉞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㉞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17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53조, 제66조제1항, 제79조제1호,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87조제2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적용한다. 부칙 〈제31185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49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9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31581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table><tr><th>등급</th><th>자격요건</th></tr><tr><td>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td><td>「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td></tr><tr><td>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td><td>「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td></tr></table>	등급	자격요건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급	자격요건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위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⑤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359호, 2010. 6.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2022년 3월 31일 이전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22년 4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또는 2급 과정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1호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⑥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439호, 2022. 2. 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맹간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증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⑤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976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94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22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제14조제3항제9호 중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1호 중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마을상수도는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지정한 소규모급수시설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20호,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⑯부터 ㉔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085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정보전원”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3858호, 2023. 11. 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83호, 2023. 1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 주기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3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 주기 만료일까지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3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 주기 만료일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제5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3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 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 남은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0〉까지 생략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 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제 2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4항 중 “국토해양 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㉔부터 ㉔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141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 생략 부칙 〈제12518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8호,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258〉까지 생략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생략 부칙 〈제13166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차산자의 결정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차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29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8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3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2호”로 본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⑥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93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설치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082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7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제6항, 제21조제8항, 제2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2항 및 제87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기술진단을 대상으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7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7178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항, 제5조제2항, 제29조의2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4조의4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제74조의3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제17조 중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8제1항의 개정 부분: 2020년 11월 27일 4.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18284호, 2021. 6. 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전단 및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419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50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8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무상사용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일반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0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12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9045호, 2022. 11. 15.〉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662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은 공포 후 3년간 실시한다. 부칙 〈제20036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의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8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수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231호, 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생략 부칙 〈제20385호, 2024. 3. 19.〉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수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 관련)	4229
[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4229
[별표 1의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4231
[별표 1의4]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4232
[별표 1의5] 물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4232
[별표 2] 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 관련)	4233
[별표 2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4233
[별표 2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4234
[별표 2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	4234
[별표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4235
[별표 3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4236
[별표 3의3] 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4236
[별표 3의4] 기술인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4237
[별표 4] 삭제 <2020. 11. 24.>	4238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4238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별표 1의2] <개정 2023. 11. 21.>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항목	기준	항목	기준
가. 카드뮴	0.0005mg/L 이하	저.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mg/L 이하
나. 수은	0.0001mg/L 이하	커. 1,1,1-트리클로로에탄	0.01mg/L 이하
다. 셀레늄	0.001mg/L 이하	터. 페놀류	0.0005mg/L 이하
라. 납	0.001mg/L 이하	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 이하
마. 비소	0.001mg/L 이하	허. 맛	이상 없을 것
바. 6가 크로뮴 [chromium(6 ⁺)]	0.005mg/L 이하	고. 디클로로메탄	0.002mg/L 이하
사. 시안	0.001mg/L 이하	노.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mg/L 이하
아. 니켈	0.007mg/L 이하	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mg/L 이하
자.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1mg/L 이하	로. 냄새	이상 없을 것
차. 불소	0.15mg/L 이하	모. 색도	0.5도 이하
카. 사염화탄소	0.0002mg/L 이하	보. 탁도	0.2NTU 이하
타. 1,2-디클로로에탄	0.0004mg/L 이하	소. 잔류염소의 감량	0.7mg/L 이하
파. 1,1-디클로로에틸렌	0.003mg/L 이하	오.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1mg/L 이하
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mg/L 이하	조. 아민류	0.01mg/L 이하
거.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mg/L 이하	초. 2,4-톨루엔디아민	0.002mg/L 이하
너. 벤젠	0.001mg/L 이하	코. 2,6-톨루엔디아민	0.001mg/L 이하
더. 아연	0.3mg/L 이하	토. 포름알데히드	0.008mg/L 이하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러. 철	0.03mg/L 이하	포. 아세트산비닐	0.01mg/L 이하
머. 구리	0.1mg/L 이하	호. 스티렌	0.002mg/L 이하
버. 나트륨	20mg/L 이하	구. 1,2-부타디엔	0.001mg/L 이하
서. 망간	0.03mg/L 이하	누. 1,3-부타디엔	0.001mg/L 이하
여. 염소이온	25mg/L 이하	두. N,N-디메틸아닐린	0.01mg/L 이하
저. 증발잔류물	50mg/L 이하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니켈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니켈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시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여.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불소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니켈, 휘발성유기화합물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비고

1. 위 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별표 1의3] 〈신설 2020. 11. 24.〉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가. 책임연구원급 2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7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연구원급 2명: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설: 실험실 나. 장비 1) 일반항목[무게, 온도, 탁도 및 색도(色度)]의 측정에 필요한 장비 2) 전처리(前處理)에 필요한 장비 3)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영양유기물질의 측정·분석에 필요한 장비 4) 금속류 등 유해영양유기물질의 측정·분석에 필요한 장비

※ 비고

1. “이화학분야”란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세부 요건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 또는 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4] <개정 2023. 11. 21.>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1.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검사기관은 시료의 시험·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시료의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검사기록부에 시험·검사의 항목, 일자, 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 사항, 계산식, 측정결과[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검사기록부의 작성을 마친 후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자기테이프·자기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5. 검사기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6. 검사기관은 매년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별표 1의5] <개정 2020. 11. 24.>

물질안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구 분	등 록 기 준
가. 시설	사무실
나. 장비	다음 1)부터 4)까지의 장비를 각각 갖추 것 1) 관로탐지기: 금속 및 비금속 각 1대 이상 2) 수압계: 연속식 4대 이상 3) 유량계: 연속식 1대 이상 4) 누수탐지기(전자식): 청음식 2대 이상 및 다지점 상관식 1세트 이상
다. 기술능력	다음 1)부터 4)까지의 기술능력을 각각 갖추 것. 다만, 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2)·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2)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으며, 3)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4)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

구 분	등 록 기 준
가. 시설	사무실
나. 기술능력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비고: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중직무분야) 중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 분야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적용시기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10만㎥ 이상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2009년 7월 1일부터
5천㎥ 이상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5백㎥ 이상 5천㎥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1일부터

[별표 2의2] <신설 2021. 3. 30.>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배치기준
1. 600km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2. 600km 이상 1,000km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1,000km 이상 1,500km 미만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4. 1,500km 이상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별표 2의3] 〈신설 2021. 3. 30.〉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1. 공통 기준

가. 기술인력

-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나. 시설: 사무실

2. 업무의 구분에 따른 장비 기준

구분	상수도관망의 세척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장비	가. 세척장비 1조(組) 이상 나. 유량계 2대 이상 다. 수압계 2대 이상 라. 탁도계 및 잔류염소측정기 각 2대 이상 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또는 관내시경 장비 1조 이상 바. 밸브개폐기 4대 이상	가. 청음식 누수탐지기 2대 이상 나. 다지점 상관식 누수탐지장비 1조 이상 다. 유량계 1대 이상 라. 수압계 1대 이상 마. 밸브개폐기 4대 이상	가. 관로탐지기 1대 이상 나. 금속탐지기 1대 이상 다. 산소농도측정기 2대 이상 라. 밸브개폐기 4대 이상

비고

제1호가목3)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별표 2의4] 〈신설 2021. 3. 30.〉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를 한 날부터 3년간 기록·보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가. 세척일시 및 위치

나. 세척구간의 관 제원(諸元)

다. 세척방법 및 세척에 소요된 수량(水量)

라. 세척 이후의 관 상태 및 세척 단계별 수질 측정값 등 세척 결과

마. 세척 배출수의 처리방법 및 결과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가. 누수탐사 일시 및 원인

나. 누수발생구간의 관 제원

다. 누수탐사 수행 내용

라. 누수복구의 방법 및 복구 결과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가. 점검·정비 대상 및 일시

나. 점검·정비 내용 및 방법

다. 점검·정비 결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등급	응시자격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급	응시자격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별표 3의2] 〈신설 2021. 3. 30.〉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등급	자격요건
1.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1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2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3의3] 〈개정 2022. 1. 21.〉

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text{보상금} = \text{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times (\text{입체이용저해율} + \text{추가보정률}) \times \text{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이란 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은 수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4] <개정 2021. 3. 30.>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제65조의2 관련)

1. 장비기준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 ~ 10NTU) 2대

나. 개별장비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수량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대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1조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대
	수압계	연속식	2대
	유량계	연속식	2대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mm	1조
	건조기	항온항습	1대
	펄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대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대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1조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대
	침강실험장치	-	1대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μ m	1대
	부유물질 분석장치	-	1조

05. 수도법 시행령 별표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수량
상수도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깨측정기	초음파식	1대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mm 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mm 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관 내시경	-	1조

2. 기술진단의 실시 방법

가. 수도시설의 규모 또는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별 진단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별표 4] 삭제 <2020. 11. 24.>

[별표 5] <개정 2022. 2.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1호	30	50	1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7조제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1호	500	700	1,000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87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2호	200	250	300
마.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2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2호	300	400	500
사.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87조제2항 제3호	300	400	500
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3호	500	700	1,000
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2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4호	300	400	500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3호의2	300	300	3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3호의3	300	300	300
파.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4호	100	200	300
하. 법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4호의2	300	300	300
거.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4호의3	300	300	300
너.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4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5호	200	250	300
러.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5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머.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6호	50	70	100
버.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7호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30	40	50
2) 저수조청소업자		50	70	100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0	70	100
서.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8호	50	70	100
여.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6호	200	250	300
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7호	300	300	3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9호	100	100	100
커.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8호	100	200	300
터. 법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 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9호	100	200	300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4243
[별표 2]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2제2호 관련)	4244
[별표 2의2]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4244
[별표 2의3]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4245
[별표 2의4]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4246
[별표 2의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4248
[별표 2의6]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4249
[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4249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4252
[별표 3의3]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	4253
[별표 3의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	4253
[별표 4] 삭제 <2010.11.29.>	4254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4254
[별표 5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4255
[별표 5의3]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4256
[별표 5의4]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4256
[별표 6] 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 관련)	4257
[별표 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4258
[별표 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4259
[별표 7의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4260
[별표 7의3]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4260
[별표 8]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4261

[별표 1] <개정 2022. 2. 17.>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 가. 수도꼭지
 -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나. 변기
 -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평균사용수량} = \frac{(\text{소변용 사용수량}) \times 2 + (\text{대변용 사용수량})}{3}$$

[별표 2] 〈개정 2023. 1. 3.〉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

(제2조의2제2호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
곡물 도정업	10611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곡물 제분업	10612	제분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분시설의 용적이 3㎥ 미만이며, 동력이 7.5kW 미만이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kg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9	제조과정에서 물과 액상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빵튀기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떡류 제조업	10711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빵류 제조업	10712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13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장류 제조업	10743	산분해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커피 가공업	10791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차류 가공업	10792	건조된 상태의 차류를 생산하거나 단순 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1차 가공된 홍삼을 이용하여 농축 또는 추출 등 2차 가공하는 경우 또는 농축된 인삼액을 단순 희석하여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물리적·화학적 처리공정이 없는 단순 조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세척 및 도장 작업이 없는 간판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의2] 〈신설 2020. 11. 27.〉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증취소인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인증취소
다.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인증취소		
라.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4호	인증취소		
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인증취소	

[별표 2의3] <신설 2020. 11. 27.>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1.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001g) 1대
2.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1g) 1대
3. 정제수 제조장치(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최소저항 18 MΩ·cm-1 이상 제조) 1대
4. 저온 항온기(Low temperature incubator) 1대
5. 항온 건조기(Dry Oven) 1대
6. 로터리 증발기(Rotary evaporator) 1대
7. 흡후드(Fume hood) 1대
8. 진탕기(Shaker) 1대
9. 가열판(Hot plate) 1대
10.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11. 현상용 온도계(Thermometer) 1대
12. 휴대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pH meter) 1대
13. 탁상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Table top pH meter) 1대
14. 잔류염소측정기(Chlorin colorimeter) 1대
15. 탁도계(turbidimeter, 단위: NTU) 1대
16. 색도계(colorimeter, 단위: 도) 1대
17.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대
18. 광전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光電分光光度計) 1대
19.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ECD, FID) 각 1대
2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21. 이온크로마토그래프(Ion chromatograph) 1대
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23.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24.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OES) 1대

25.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ICP-MS) 1대

26. 분할흐름분석기(SFA) 또는 흐름주입분석기(FIA) 1대

비고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장비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의4] 〈신설 2020. 11. 27.〉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제3호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지정취소			
3) 시료의 시험·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시료의 시험·검사 등을 실시하고 시험·검사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6)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매년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2의5] 〈개정 2022. 2. 17.〉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꼭지. 다만, 샤워용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 이하인 것을 단일등급인 우수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최대토수유량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나. 변기

1)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3) 소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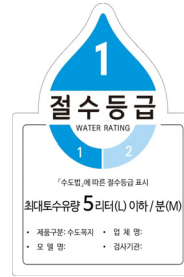
2. 절수등급의 표시

가. 절수등급 표시를 위한 절수설비의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측정한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표시정보

- 1) 절수등급
- 2)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
- 3) 제품구분, 업체명, 모델명 및 검사기관

(예시 1) 1등급
(수도꼭지)



(예시 2) 우수등급
[수도꼭지(샤워용)]



(예시 3) 1등급
(변기)



다. 표시방법

- 1) 배색 비율은 청색(C100+M29+Y0+K13)을 원칙으로 하되, 청색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색 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2)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꼭지 등 설비 표면에 절수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3)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비고

제2호가목에 따라 측정한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 표시를 한 수도꼭지 모델(이하 "기준모델"이라 한다)과 같은 용도로서 1분당 최대토수유량이 기준모델과 같거나 적은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기준모델의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도꼭지 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 나. 위반행위를 하여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은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지원중단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을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 1) 등록취소는 6개월 이내의 지원중단(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으로 감경할 수 있다.
 - 2) 지원중단은 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중단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호	등록취소
나. 물질안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3 제2호	6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법 제15조의3 제3호	3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 이 없는 경우	법 제15조의3 제4호	등록취소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취수시설

- 가. 지표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연중 계획된 1일 최대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 2)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또는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에 취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홍수(洪水)·세굴(洗掘: 강물에 의하여 강바닥이나 강둑이 패는 일)·유목(流木) 또는 유사(流砂)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및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보(洑) 또는 수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 또는 수문 등이 홍수 시 유수(流水)의 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5) 계획취수량을 원활하게 취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스크린·침사지(沈沙池) 또는 배사문(排沙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지하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가목(1) 및 2)의 사항
- 2) 수질오염 및 염수침투의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수인 경우에는 대수층(帶水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복류수(伏流水)인 경우에는 장래 유로(流路)변화 또는 하상(河床)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천정비계획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집수매거(集水埋渠)는 노출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고, 막힐 우려가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 4) 외부로부터의 오염, 독극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저수시설

- 가. 저수시설은 갈수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저수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05.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 나. 저수용량, 설치장소의 지형 및 지질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위치 및 형식이어야 한다.
- 다. 지진 및 강풍에 따른 파랑(波浪)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로(餘水路)와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기(曝氣)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바. 저수시설은 움직이거나 뒤집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 가. 송수시설은 이송과정에서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수로(管水路)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나.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지형 및 지세에 따라 여수로·접합정(接合井)·배수(排水)설비·제수밸브·제수문(制水門)·공기밸브 및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관내에 부압(負壓)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용하는 수압에 적합한 수격(水擊)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펌프는 최대 용량의 펌프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계획된 1일 최대도수량 및 송수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정수시설

- 가.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정수시설은 상수도시설의 규모, 원수의 수질 및 그 변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정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수시설에는 탁도, 수소이온농도(pH), 그 밖의 수질, 수위 및 수량 측정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정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농도와 접촉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제의 주입설비는 최대용량의 주입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소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소독제로 액화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여과지(濾過池)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일 이하로 한다.
 - 2) 여과사(濾過沙)의 유효경(有效徑)은 0.3~0.45mm, 균등계수(均等係數)는 2.0 이하, 모래층두께는 70~90cm로 한다.
 - 3) 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통침전지를 설치할 수 있다.
- 다. 급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급속여과지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시간 이상으로 한다.
 - 2) 급속여과지는 여과층에 축적된 탁질(濁質) 등을 역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라.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용량이 5,000m³/일 이상인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막모듈의 종류 및 계열구성, 전처리 여부, 공정구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2009년 6월 30일부터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 원수의 수질 및 수온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2)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적절한 통수성 및 내압성을 갖추어야 한다.
 - 3) 원수의 수질에 따라 약품 주입, 혼화설비, 응집지, 침전지 등의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배수시설

- 가.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배수시설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압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설비(이하 “배수지등”이라 한다)와 적절한 관경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배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구역으로 배수구역을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라.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最少動水壓)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정수압은 740kPa(7.55kgf/㎠)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내는 대기압(大氣壓)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수지등은 수요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용량(계획하는 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 분 이상)이어야 하며, 저류용량 500㎥ 이상인 배수지는 비상시 또는 청소시 등에도 배수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배수관은 부압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상수도 관로의 필요한 위치에 수량·수질측정 및 점검·보수 등 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돗물이 장기간 적체되는 배수관에는 주기적으로 수돗물을 배수할 수 있는 제수밸브와 배수(排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배수관은 단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연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가.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고장 등에 따른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취수펌프 및 송수펌프는 가장 큰 용량의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비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호 교대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펌프 및 가압펌프는 수요변동과 사용조건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정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대수 및 형식이어야 한다.

05.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라. 전선로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시설용량을 고려하고, 계측제어설비는 고장과 사고에 대비한 예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재해나 비상사태 시에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밸브 등 재해대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도시설에는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가.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상수원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표수의 취수장·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천 등이 유입되지 않는 같은 수계 상류에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원수를 사용하는 취수장의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온도,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개정 2022. 7. 1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6. 저수조는 만수 시 최대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제5호에 따라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7.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8.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10.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1.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2.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3.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4.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를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5.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별표 3의3] <신설 2021. 4. 1.>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

(제12조의2제4항 관련)

1. 수질측정 방법

가. 수질측정항목

- 1) 일반세균
- 2) 총 대장균군
- 3)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 4) 암모니아성 질소
- 5) 동
- 6) 아연
- 7) 철
- 8) 망간
- 9) 염소이온
- 10) 잔류염소
- 11) 탁도

나. 시료는 해당 관리지역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하되,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 수질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를 것

2. 검사주기: 제1호에 따른 수질측정 방법으로 월 2회 이상 실시할 것

[별표 3의4] <신설 2021. 4.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이상
나.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다.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라.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1)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바.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21조의5 제1항제6호	등록취소	

[별표 4] 삭제 <2010.11.29>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항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잘못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가.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나.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다.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2년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별표 5의2] <신설 2021. 4.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5조의3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의3 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도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25조의3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1년6개월	자격정지 3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이상
3) 그 밖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라. 법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25조의3 제1항제4호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별표 5의3] <개정 2021. 4. 1.>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

(제18조의2제5항 관련)

1. 탁도 등의 기준

- 가. 탁도: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3NTU(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0.5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일 것
- 나. 불활성화비(병원성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 이상일 것

2.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

가. 탁도

- 1) 검사 주기: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 2) 검사 방법: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만,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여과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나. 불활성화비

- 1) 검사 항목: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 2) 검사 주기
 - 가) 잔류소독제농도: 연속측정장치로 측정
 - 나)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 1일 1회 이상
- 3) 검사 방법: 정수지 유출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바이러스, 크립토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의 불활성화비 계산 방법과 제거율 계산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4] <개정 2021. 4. 1.>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1.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I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수·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항목·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정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바이러스가 100개체/100ℓ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에 분기별 1회 검사할 것
 -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2. 크립토포리디움 난포낭 등의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I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나. 조사 시기·항목·방법
- 1) 원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같은 원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추가로 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정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이 10개체/10ℓ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 2회 이상 검사할 것
-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3. 조사 결과의 보고
- 가. 수도사업자는 매반기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유량계는 해당 정수장의 수도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유량 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를 원격전송(TM)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pm 2\%$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량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계량기(이 별표 6에서는 유량계로 본다)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실을 박식식 또는 흡판식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고장 시 수리하거나 다른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침수될 수 있는 곳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 유량계 검출기(Sensor)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 직경의 3배 이상의 거리,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 정전 시 최소 24시간 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 여부, 유량계 접합부 등에서의 누수 여부 및 유량계실 침수상태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

[별표 6의2] 〈신설 2012.5.17〉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관 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별표 7] <개정 2019. 12. 20.>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기초조사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관 종류, 관경(관지름), 배관길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누출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 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검사항목 및 기준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mg/L 이하 - 납: 0.01mg/L 이하 - 구리: 1mg/L 이하 - 아연: 3mg/L 이하

2. 전문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현장 조사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05.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분류	항목	검사방법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비고

-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7의2] 〈개정 2016. 12. 30.〉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추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 창고
장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운반차량: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cm² 이상):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m²/hr): 1대 이상 - 조영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 누전차단기: 1대 이상

[별표 7의3]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저수조청소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사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 속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사업장 폐쇄명령			

[별표 8] <개정 2023. 8. 28.>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1. 정수장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	인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2명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명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명

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격요건	인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 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명

05.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명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명

비고

1. 각 목의 기술인력 자격요건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제5편 물이용

06

상수원 관리규칙

목 차

상수원 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267
제2조(정의)	4267
제3조(수원의 구분)	4267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4267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4268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4268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4269
제8조(지적고시 등)	4269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4269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4269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4269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4269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4270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4272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4272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4273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4273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4274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4274
제18조(표지의 설치)	4274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4274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4274
제21조(지도·점검)	4274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4274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4275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4275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4275

제5장 보칙

제26조(보호구역의 범위)	4275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4275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4275
제29조(보고)	4276
제30조(협조)	4276
제31조(규제의 재검토)	4276
부칙	4276

상수원 관리규칙

제정	2007. 9.11	환경부령 제245호
개정	2007.11.12	환경부령 제255호
	2008. 2. 5	환경부령 제277호
	2011. 2.16	환경부령 제398호
	2013. 7.26	환경부령 제514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 1	환경부령 제661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7.31	환경부령 제70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8.20	환경부령 제7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 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0.20	환경부령 제945호
	2022. 5. 6	환경부령 제966호
	2022. 7.12	환경부령 제994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0>

1. “유거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전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원거주민(原居民)”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라.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증여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이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 이후로 한정한다.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2. 16., 2019. 12. 20>

1. 하천수 :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漕)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은 포함한다]
2. 복류수(伏流水) : 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 :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滿水位區域)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은 포함한다)
4. 지하수 : 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표층지하수 : 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나. 심층지하수 : 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은 포함한다)
5. 해수(海水) : 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6. 강변여과수 :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1. 축사·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상수원 관리규칙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9. 12. 20.>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용,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호소수의 경우 : 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4. 그 구역의 지목별·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5. 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6. 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

②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르면 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 관리규칙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31.>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도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도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보호구역지정 추진 경위서
3. 미협의 사유서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적고지 등) ①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2. 16.>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 전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22. 7. 12.>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5. 6.>

1. 사업계획서

2.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②보호구역에서 영 제14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1. 보호구역의 관리청에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가.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나. 소방선, 방재선 및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다.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3.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2. 16.]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상수원 관리규칙

가. 원거주민

나.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양 또는 주낙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거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 7. 1.>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3. 7. 26., 2016. 7. 1., 2019. 12. 20., 2021. 10. 20., 2022. 5. 6.>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

-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설치되는 중계탑 등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박물관·미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의 교육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바.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地)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증축

-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상수원 관리규칙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층층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잠실(蠶室) :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나.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 :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저장시설 및 발효퇴비장 :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 : 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차. 곤충사육장 :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통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 :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주차장

차. 보건소, 보건진료소

카. 지구대, 파출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

타.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 :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상수원 관리규칙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중전의 용도와 규모와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 2) 마을회관, 경로당
-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나. 공익시설·공동시설과 공공시설

-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택의 대지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환경부령 제98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전에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부지 또는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인접 부지에 설치할 것
나.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대지의 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것
라. 화장실 등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수배출시설의 연면적은 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마.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른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각각 설치·운영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9. 12. 20., 2021. 10. 20.>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인·어린이 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거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상수원 관리규칙

한다. <개정 2018. 8. 20., 2021. 10. 20.>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0. 20.>

④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도시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시·도시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도시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 시·군·구는 시·도로 본다.

[본조신설 2011. 2. 16.]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8. 8. 20., 2021. 10. 20.>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나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주택으로서의 용도변경(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서의 용도변경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재변경할 수 없다.

마. 농가용 부대창고 또는 부속건축물의 주택으로서의 용도변경. 이 경우 용도변경한 면적과 기존주택의 연면적의 합계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연면적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가목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종교법인(나목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목욕장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용원·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창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상수원 관리규칙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마. 방앗간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사무실 또는 소매점으로서의 용도변경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표지의 설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1. 안내판

가. 보호구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그 밖의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 :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일반인의 출입이 드문 곳 : 1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그 지역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 표주

가. 보호구역의 경계를 따라 평지는 15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의 간격, 산지는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취락지역은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 철도, 하천 등을 횡단하면 그 시설의 양측 횡단지점에 설치한다.

③관리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흘러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취수구에 그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점검)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상수원 관리규칙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구 현황
2. 폐수배출시설 현황
3.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4. 제2호와 제3호의 시설 외에 오수·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
5. 용도지역별·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 취수 현황

④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1. 생활하수관리계획
2. 산업시설관리계획
3. 축산시설관리계획
4. 가두리양식장정비계획
5. 그 밖의 오염원관리계획
6. 재원조달계획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 2. 16.>

1. 하천수 및 호소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2.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3. 해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
 4. 지하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 ② 삭제 <2021. 10. 20.>

[제목개정 2021. 10. 20.]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0.>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0. 20.]

제5장 보칙

제26조(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21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

1. 자연마를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상수원 관리규칙

2.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 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제29조(보고) ①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2.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장 사본
3. 공고문 사본
- ②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와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제245호, 2007.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 비고 2.의 개정규정은 2007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1994년 9 월24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11조제6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994년 9월 24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12월 2 일 전에 종전(환경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수원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호, 2007. 11. 12.>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구분란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하천수·복류수의 측정항목란 및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호소수의 측정항목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안티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 2008.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수원 관리규칙

부칙 〈제398호, 2011.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 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6호 및 제15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 2016. 7.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708호, 2017. 7. 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 2018.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 뒷면란의 (금지행위)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물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45호, 2021.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6호, 2022.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 2022. 7. 12.〉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 계획”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상수원 관리규칙 별표

[별표 1]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4281
[별표 2]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 관련)	4281
[별표 3] 삭제 <2011.2.16.>	4281
[별표 4] 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 관련)	4282
[별표 5] 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4282
[별표 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5조제1항 관련)	4284

[별표 1] <개정 2021. 10. 20.>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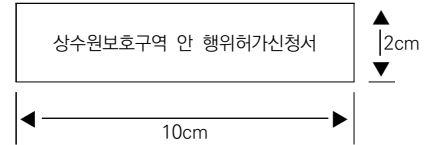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점		
	-3	0	+3
1. 수질등급	상수원수 Ⅰ 등급	상수원수 Ⅱ 등급	상수원수 Ⅲ 등급
2. 취수량	1일 3천톤 미만	1일 3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일 1만톤 이상
3. 취수비율 (호소수의 경우)	0.1 미만 (0.01 미만)	0.1 이상 0.5 미만 (0.01 이상 0.02 미만)	0.5 이상 (0.02 이상)
4.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비고

1. 수질등급의 판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 경관,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

[별표 2]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 관련)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군·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

[별표 3] 삭제 <2011.2.16>

[별표 4]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제17조 관련)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시설·장비명	확보기준
1. 오막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름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름제거포	기름 0.5톤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 톤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취수량·수심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 등이 다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2륜자 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무전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망원경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9. 방송시설 또는 장비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인원의 확보기준

$$\text{관리인원수} = 1.85 \times \sqrt{A} \times \alpha \times \beta$$

비고 : 1. 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 는 수원특성계수, β 는 지역특성계수를 말하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가. 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의 경우 1.25, 지하수의 경우 0.75로 한다.

나. 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2.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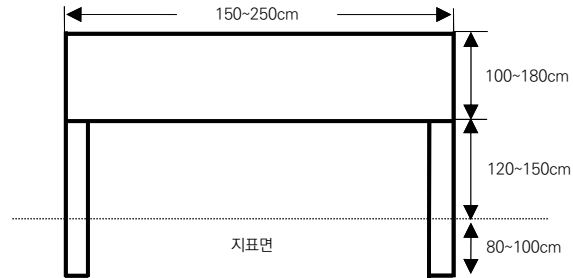
[별표 5] <개정 2020. 12. 1.>

안내판

(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안내판

가. 규격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또는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신고 및 문의처)

○○도·시·군·구 ○○○과

전화번호: ○○○-○○○○

입니다.

2) 뒷면

알림

1. 이 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금지행위)

-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2)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3)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7)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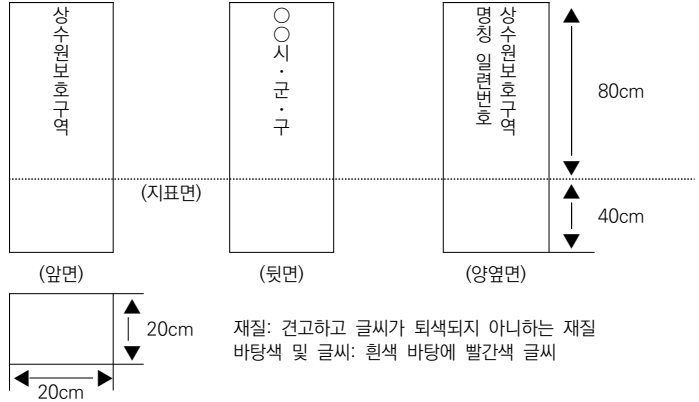
-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3) 토지의 굴착(땅파기)·성토(흙쌓기),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표주



[별표 6] <개정 2013.7.2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관 역 및 지 방 상 수 도	하천수, 복류수, 강변 여과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분기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호소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분기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지하수	반기 마다 1회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해 수	분기 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매년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크롬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마 을 상 수 도 · 전 응 상 수 도 및 수 규 모 급 수 시 설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	반기 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호소수	2년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반기 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지하수	2년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반기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해수	반기 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2년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크롬

비고

1. 채수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 및 지하수항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5편 물이용

07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4289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4289
제3조(학교·연구기관 등의 범위)	4289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	4289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4289
제6조(공장심사)	4290
제7조(제품시험)	4290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4290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4290
제10조(인증서의 반납)	4290
제11조 11조의5로 이동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4290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4290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4290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4291
제12조(인증서 재발급)	4291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4291
제14조 삭제	
제15조(수수료)	4291

제3장 삭제

제16조 삭제

제3장의2 수거 등의 조치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4291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4291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4292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4292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4292
제18조(규제의 재검토)	4292
부칙	429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2011. 5.25 환경부령 제413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 1 환경부령 제562호
 2016. 7.27 환경부령 제670호
 2017.12.20 환경부령 제72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노들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18. 6.12 환경부령 제765호
 2019. 8.28 환경부령 제822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8.12 환경부령 제879호
 2020.11.27 환경부령 제894호
 2021. 9.16 환경부령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

제3조(학교·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표준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9. 12. 20., 2020. 8. 12.>

1. 「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2.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재원(諸元: 자재와 제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5. 제조·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6.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1.>

1. 공장심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이하 “위생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3. 인증심의: 인증의 합격여부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② 인증원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정, 수수료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③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2.>

제6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27.>

② 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 2020. 8. 12.>

1.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제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 ③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품시험) 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신설 2020. 8. 12.>

② 인증원은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전문개정 2018. 6. 12.]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1.>

③ 인증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4. 7. 1., 2020. 8. 12.>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1. 인증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조·검사 설비에 관한 명세서
4.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5. 인증제품의 물질정보 명세서
6.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인증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7. 1.>

④ 삭제 <2020. 8. 12.>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11조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8. 6. 12.>]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①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8. 12.>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2년의 주기 내에 있는 인증제품을 일괄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7. 1.]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8. 6. 12., 2020. 8. 12.>

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수시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8. 6. 12.>
- ③ 인증원은 수시검사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8.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11조에서 이동 <2018. 6. 12.>]

제12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인증원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② 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제품명
2. 종류, 등급, 호칭, 용도

3. 인증일

4.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결과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14조 삭제 <2020. 8. 12.>

제15조(수수료)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인증서 재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② 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제3장 삭제 <2020. 11. 27.>

제16조 삭제 <2020. 11. 27.>

제3장의2 수거 등의 조치 <신설 2016. 7. 27.>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7.]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27.]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0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제12조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현황
4.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개제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3. 제11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2014년 7월 1일

[전문개정 2014. 7. 1.]

부칙 <제413호, 201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6월 9일까지는 제3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수취관류는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축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인증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을 받은 수도권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9월 1일
2. 2012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0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11월 1일
3.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인증일부터 2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한 인증제품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기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변경신청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제품의 재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0호, 2016. 7. 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723호, 2017. 12. 2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19년 7월 13일까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제조된 제품등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2호, 2019.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호, 2020.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 2020. 11. 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4296
[별표 2] 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	4296
[별표 3] 인증표시(제8조 관련)	4297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4298
[별표 5] 삭제	

[별표 1] <개정 2014.7.1>

[별표 2] <개정 2014.7.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

구 분	인증대상
1. 수도관	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2. 기계 및 계측·제어용 자재 및 제품	가. 밸브류 나. 펌프류 다. 수도꼭지류 라. 유량계류 마. 수도미터류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가.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나. 그 밖에 음용(飲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재와 제품

1. 삭제 <2014.7.1>
2. 자재관리
 - 가. 자재표준 등 자재품질 보증에 관한 사내표준의 마련
 - 나. 적정 자재의 사용 여부 및 사내표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실시,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운반 및 보관에 관한 관리
3. 공정관리
 - 가. 회사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관리사항을 포함한다)의 마련 및 이행
 - 나. 공정별 작업표준의 제정·준수 및 작업 현장에의 비치·게시, 작업자의 작업표준 이해 및 실시, 부적합품의 관리상태
 - 다.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 이행, 공정관리자의 공정관리 규정의 마련 및 작업표준 숙지 및 실시
4. 제품의 품질 관리
 - 가. 제품 품질 및 검사방법의 적합성, 품질보증을 위한 제품의 표시사항 등의 합리적 기준 마련
 - 나. 제품검사의 실시 및 검사기록 보존, 주요 품질항목에 대한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 통계적 분석의 실시, 통계분석 결과의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
 - 다. 품질시험·검사자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 숙지 상태, 사내표준에 맞는 시험·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5. 제조설비의 관리
 - 가. 사내표준에 따른 제조설비의 보유 및 점검 기록부 비치, 안전수칙(운전 시

- 유의 사항, 인수 인계사항, 주요 확인사항)의 일상관리 상태
- 나. 설비관리에 대한 규정 및 기준(설비관리자, 점검 항목, 점검 기준,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이상 시 조치 및 교체 절차, 설비 표준과 방법 등)의 설정, 이력·제원카드, 관리대장의 비치 및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기록
- 다. 제조설비의 점검기준(운할관리) 설정 여부, 제조설비의 주기적 점검 및 제조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한 노력

6. 검사설비의 관리

- 가. 사내표준에 따른 검사설비의 자체 보유, 외부설비 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마련
- 나. 검사설비 설치장소의 적정성, 검사설비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규정의 설정
- 다. 시험·검사설비의 정밀도·정확도 유지를 위한 소급성 체계 규정

[별표 3] <개정 2020. 11. 27.>

인증표시(제8조 관련)

1. 인증표지 기준 및 제도법

- 가. 인증표지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에 인증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전기준”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 나. 가목의 인증표지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와 형상 및 모양에 따라 제도하여 사용한다.
- 다. 가목과 나목의 표시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를 “KC”마크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표시할 수 있다.
- 1) 인증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외형특성으로 인하여 인증표지 위·아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이란 글자를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 2) 인증표지 위·아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로 인해 인증제품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



그림 1.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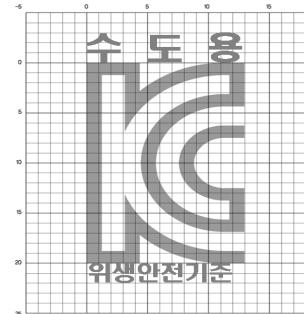


그림 2. 인증표지 비율

2. 표시사항

- 가. 제품에는 제1호에 따른 인증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전부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인증제품의 제조자와 공급자·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나목의 항목에 공급자·판매자를 추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제품등의 표면에 붙이는 방법 또는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21. 9. 16.>

수수료(제15조 관련)

1. 인증신청수수료

- 가.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생산자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25만원으로 한다.
- 나.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다. 신규인증(제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포함한다), 정기검사, 인증의 변경신청 시 인증신청 수수료는 모두 같다.

2. 공장심사 수수료

가. 출장비

- 1) 금액: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한다.

나. 심사수당

- 1) 금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산업공장부분의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 3) 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前)처리 비용

품 목		수수료(원)	비 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분류에 따른 전처리 비용	관류, 밸브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및 기타 수도용 제품 등	300,000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류)	774,000	
	표충용 재료(용제 포함)	3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험(試片) 제작상태
	표충용 재료(용제 미포함)	1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제작상태

비고 : 분석을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컨디셔닝을 생략한 경우(세척, 용출시험만 시행)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나. 시험분석 비용

분석 항목	수수료(원)	분석 항목	수수료(원)
카드뮴	30,000	색도	10,000
수은	23,000	탁도	10,000
셀레늄	30,000	잔류염소의 감량	15,000
납	30,000	2,4 톨루엔디아민	59,000
비소	30,000	2,6 톨루엔디아민	59,000
니켈	30,000	폼알데하이드	70,000
6가 크로뮴 [chromium(6+)]	20,000	사염화탄소	60,000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20,000	아세트산비닐	45,000
시안	27,000	스티렌	45,000
플루오린(불소)	30,000	1,2-부타디엔	45,000
아연	20,000	1,3-부타디엔	45,000

분석 항목	수수료(원)	분석 항목	수수료(원)
철	20,000	N,N-디메틸아닐린	45,000
구리	20,000	1,2-디클로로에탄	45,000
소듐(나트륨)	20,000	1,1-디클로로에틸렌	45,000
망간	20,000	1,1,2-트리클로로에탄	45,000
염소이온	2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45,000
중발잔류물	15,000	벤젠	45,000
음이온계면활성제	31,000	에피클로로히드린	45,000
페놀류	93,000	디클로로메탄	45,00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5,000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45,000
맛	5,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5,000
냄새	5,000	1,1,1-트리클로로에탄	45,000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인증서 재발급 및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

가.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나.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별표 5] 삭제 <개정 2020. 11. 27.>

제5편 물이용

08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4310	제1조(목적) 4310	제1조(목적) 4310
제2조(정의) 4310		
제2조(정의) 4311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431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31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31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314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개정 2011. 5. 30.〉		
제5조(지하수의 조사) 4314	제2조(지하수의 조사) 4314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4314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4315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4315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4316	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4316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4317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4317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15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4318
	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4318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318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4319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4319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4319	제7조(공고사항) 4320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4319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4322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4323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4324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4323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4324	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4325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4324		제10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4325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4328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4326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4328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4326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329	제9조의2(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4327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4331	제10조 삭제 4327	
제9조(준공신고) 4332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4327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4327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4333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4327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4335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4328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4337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 4328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4337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329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4329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4338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4331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4331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4339	제14조(준공신고) 4332	제14조(준공신고) 4332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4340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4333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4333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4341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4337	제16조(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4337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4341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4338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4337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4340	제18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4338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4342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4340
	제15조의2(지하수 수위변동 정밀조사) 4342	제20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4340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4342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4341
	제17조 삭제 4343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4343	제18조 삭제 4343	제22조(시정명령·조치 이행의 통보 등) 4343
제3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개정 2011. 5. 30.〉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4343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4344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4344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4348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4346	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4346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4349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4348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4350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4349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4352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4350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4349
제15조(원상복구 등) 4353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4352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4350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4353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4355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 4353	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4353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4357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4355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4356	제28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4356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4357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4356
		제30조(지하수 정화기준) 4357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 4359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4359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4358
		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4358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4360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4360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4358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4361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4361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4359
	제28조(지하수 장애 발생 시 조치) 4361	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4359
제18조 삭제 4362		제3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4360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362		제37조(측정망의 설치 등) 4361
제19조 삭제 4362		
제20조(수질검사 등) 4362	제29조(수질검사 등) 4362	제38조(수질검사 등) 4362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4363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출입조사 등) 4365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4365	제39조(검사기관) 4364
제21조(출입조사 등) 4366		제40조(수질검사 결과통보서) 4364
		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4365
		제42조(출입·조사 공무원증) 4366
제4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施工業)		
<개정 2011. 5. 30.>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4367	제3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4367	
	제33조 삭제 4368	
제23조(결격사유) 4369	제3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4368	제43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4367
제2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4369	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4369	제4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4369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4370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4371	
	제3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4371	제4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4370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4372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4372		제46조(지도·감독 등) 4372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개정 2011. 5. 30.>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4373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4373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4374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4375	제4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4373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4375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4376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4376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4378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4377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4375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4376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신설 2006. 5. 31.〉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4378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4379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4380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4380	
제6장 보칙 〈개정 2011. 5. 30.〉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4381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4382	
제32조(손실보상) 4382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4382 제51조(토지출입증) 4382
제33조(수수료) 4383		
제34조(보고·조사 등) 4384	제42조(교육 등) 4384	제52조(수수료) 4383 제53조(보고·조사 등) 4384
제34조의2(교육 등) 4384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4386	제43조(권한의 위임) 4387	제5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 4386 제55조(규제의 재검토) 4386
제35조(청문) 4387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4388	
제36조(권한의 위임) 4387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388	
제36조의2(대집행) 4387		
제7장 벌칙 〈개정 2011. 5. 30.〉		
제37조(벌칙) 4389		
제37조의2(벌칙) 4389		
제37조의3(벌칙) 4390		
제37조의3(벌칙) 4391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양벌규정) 4392		
제38조의2 삭제 4392		
제39조(과태료) 4392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392	
제39조(과태료) 4393		
제40조(과태료) 4393		
제40조(과태료) 4395		
제40조의2(과태료) 4396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4396		
부칙 4396	부칙 4396	부칙 4396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정 1993.12.10 법률 제4599호 개정 1997.1.13 법률 제5286호 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1999.3.31 법률 제5955호 2001.1.16 법률 제6368호 2002.2.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2.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2005.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5.31 법률 제7569호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3.24 법률 제7924호 2006.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5.17 법률 제8466호 (수질환경보전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3.28 법률 제9058호 2009.5.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0.3.22 법률 제10154호 (먹는물관리법) 2010.3.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1.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5.30 법률 제10763호 2012.1.17 법률 제11192호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5.22 법률 제11803호 2013.6.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8.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5.1.6 법률 제12990호 2015.6.22 법률 제13383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재정수법) 2017.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4.18 법률 제14801호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2.21 법률 제15403호 2018.6.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20.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8 법률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0.12.31 법률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1.1.5 법률 제17850호	제정 1994.7.23 대통령령 제14340호 개정 1997.8.8 대통령령 제15451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법시행령 등의개정령) 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1999.5.10 대통령령 제16297호 1999.8.6 대통령령 제16512호 (간접산업기본법시행령) 2001.3.27 대통령령 제17175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2001.12.19 대통령령 제17433호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8호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7.9.6 대통령령 제2024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2007.9.10 대통령령 제20256호 (광업법 시행령) 2007.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25 대통령령 제20877호 2008.10.8 대통령령 제2107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30 대통령령 제21465호 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대통령령 제21566호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6호 (광업법 시행령) 2011.1.17 대통령령 제22626호 (에너지산업진흥법 시행령) 2011.4.4 대통령령 제22828호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0호 2012.6.8 대통령령 제23846호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9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7호 2014.12.9 대통령령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6.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별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22.5.30 환경부령 제 987호 2023.4.17 환경부령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7.24 환경부령 제1047호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2023. 1. 3 법률 제19170호 2024. 1.23 법률 제20120호 2024. 2. 6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별재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돌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0.16 대통령령 제2923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건설품질 진흥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병령왕어 장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아려운 병령왕어 장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8.31 대통령령 제31961호 (한국경제개발공단법 시행령) 2022. 1. 6 대통령령 제32326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 2.17 대통령령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11. 1 대통령령 제32977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1. 3.>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1의2. “유출지하수”란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란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1. 3., 2024. 1. 23.〉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1의2. “유출지하수”란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4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란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제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7. “지하수열”이란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5. 1. 24.] 제2조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지하수를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지하수열 등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1. 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지하수를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5. 1. 24.] 제3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개정 2011. 5. 30.〉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2021. 1. 5.〉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試錐調査)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1.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5. 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2022. 1. 6.>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18. 10. 16.> 1. 지하수의 수위 분포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3. 지하수개발·이용 실태 4. 그 밖에 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2. 1. 6.> 1. 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2. 통보해야 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로	제3조(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1. 8. 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하수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⑦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2. 1.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보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 지하수의 위치·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 지하수의 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지름·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항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2018. 6. 8.>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중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2. 1. 6.>] 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자료 3. 그 밖에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련된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제6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나 인가한 날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1. 1. 5.]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	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의2에서 이동 <2022. 1. 6.>]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측연보의 발행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3. 1. 3.>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3의2.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삭제 <2022. 1. 6.>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삭제 <2018. 6. 8.>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먹는열지하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 6. 8.> 1. 지하수의 조사계획 및 관측망 설치·운영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계획 ⑦ 삭제 <2018. 6. 8.> ⑧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6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8.]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3. 1. 3., 2024. 1. 23.>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3의2.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 3의3.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삭제 <2018. 6. 8.>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먹는열지하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23., 2018. 6. 8.)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5. 1. 24.] 제6조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6. 8.>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7.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계획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삭제 <2018. 6. 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30., 2013. 5. 2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水源) 고갈이나 지반이 내려앉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3.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대수층(帶水層)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11. 12. 30.]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6.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영 제8조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이란 별표 1의 안내문을 말한다. 제10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4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어업용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전문개정 2011. 12. 30.]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의 실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30.]	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吐出管)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흩러든 오염물질 및 잔재물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먹는물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資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⑤ 삭제 (2011. 5. 30.)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1. 1. 5.) ⑦ 삭제 (2013. 5. 22.)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1. 5. 30.]	제9조의2(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0조 삭제 (2001. 12. 19.)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 능력(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항목	것 ②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이하 “지하수영향조사서”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수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10. 30.> ②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법 제7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	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1., 2018. 6. 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영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란 별표 2의 표준도를 말한다. 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상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10. 30.)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수능력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1. 삭제 (2014. 11. 11.) 2.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1. 5.) 1. 삭제 (2013. 10. 30.)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	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①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를 확인한 경우 2.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준공신고)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준공신고) ① 삭제 (1999. 5. 10.)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4. 11. 11., 2022. 1. 6.>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설 설치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나. 양수설비 명세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능력 다. 오염방지 시설 설치내용 중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grouting) 두께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준공신고)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내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현장사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이 제출하는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등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3. 1. 3.> 1.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개정 2011. 12. 30., 2022. 1. 6.>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제목개정 1999. 5. 10.]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 12. 30.]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말한다. <개정 2023. 7. 24.>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또는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8., 2021. 1. 5., 2023. 1.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2023. 1. 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2023. 1. 3.> ⑦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4.>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4.>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1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7. 24.>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3. 1. 3., 2024. 1. 23.> 1.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4.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2021. 1. 5., 2023. 1. 3., 2024. 1. 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전년도에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⑬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전년도에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유출지하수 배수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2023. 1. 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2023. 1. 3.> ⑦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⑩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5. 1. 24.] 제9조의2		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⑮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3. 7. 24.>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22. 1. 6.>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索)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제16조(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행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위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6.> ④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2. 1. 6.> 1. 전정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③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사후관리의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4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⑤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본조신설 2012. 1. 17.]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역 1의2.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1의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본조신설 2012. 6. 8.]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2013. 3. 23., 2018. 6. 8.) [본조신설 2012. 1. 17.]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7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2021. 1. 5.>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 그 밖에 물 공급이 취약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9.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7호·제8호 및 제8호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불량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淨水處理)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1. 11.> [전문개정 2011. 12. 30.] 제15조의2(지하수 수위변동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주변 환경조사 2. 지하수의 수위·수질 조사 3. 지하수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분석 4.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6. 8.] [제목개정 2022. 1. 6.]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7조 삭제 <1999. 5. 10.> 제18조 삭제 <1999. 5. 10.>	제22조(시정명령·조치 이행의 통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3. 5. 22.] 제3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개정 2011. 5. 30.)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 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1.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거나 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 2.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가 부족된 지층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이 줄어드는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③ 삭제 <2005. 11. 30.>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8. 6. 8.> ⑩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④ 법 제1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0. 30.>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01. 12. 19.]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목적이나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해당 지역의 지반·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도지사는 영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변경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반·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지적고시를 해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지적도로 지적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해당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 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⑥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⑧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30.> ⑨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⑩ 제8항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22. 11. 1.>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22. 11. 1.> ③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1.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 ⑤ 시·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⑥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7. 1. 17.>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경미한 사항"이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 [전문개정 2011. 12. 30.]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18. 1. 16.>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행위허가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7. 1. 17., 2024. 2. 6.>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流動路)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 매립장,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採鑛), 토석(土石)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이용행위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 금지되는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전문개정 2011. 12. 30.]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서·유가증권을 말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발·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5. 8. 7.] 제13조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3.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에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⑤ 영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5년의 예치기간 경과 후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2. 30.>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⑥ 삭제 <2001. 12. 19.>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义务的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고, 보증서·유가증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그 보증서·유가증권으로 반환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	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야 하는 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2.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통지(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통지를 말한다) 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1. 굴착시설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오염물질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어업용수를 개발·이용 시 제4호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 삭제 <2012. 6. 8.> 3. 삭제 <2012. 6. 8.>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 모양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 삭제 <2012. 6. 8.>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 6. 8.> ④ 삭제 <2012. 6. 8.>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1.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삭제 <2022. 1. 6.>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8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사유 2.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관정) 설치 또는 지하수 정화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지하수를 정화해야 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0조(지하수 정화기준) 법 제1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오염 관측정(觀測井)을 설치하여 수질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 ②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측정 2. 오염물질의 제거 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 일시·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할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및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내용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질측정기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명령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목록에 작성하고 측정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 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공사의 규모·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제3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6조의4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2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 측정시설(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측정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이 포함된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보조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2021. 1. 5.> 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측정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⑤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 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 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28조(지하수 장애 발생 시 조치) ① 환경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제37조(측정망의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⑥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18. 6. 8., 2021. 1. 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망의 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7. 4. 18.,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1. 1. 5.] 제18조 삭제 <2021. 1. 5.>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9조 삭제 <2001. 1. 16.>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가능량, 수질 특성, 개발·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지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6.>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 5.>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38조(수질검사 등) 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12. 30.]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 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를 말한다. 다만, 「민방위기 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공업용수 3.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 ②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먹는물: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3년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별표 9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수질 검사 접수·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 전까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封緘)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검사기관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⑦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島嶼)·산간 지역 등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39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 합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의학연구소 제40조(수질검사 결과통보세)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③ 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출입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먹는물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먹는물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것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것 [전문개정 2011. 12. 30.]	시·군·구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0조에 따른 수질 검사 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이용상황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출입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이용상황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자료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제42조(출입·조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5. 1. 24.] 제21조 제4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施工業) <개정 2011. 5. 30.>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43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②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 사전문기관인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4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⑥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33조 삭제 (1999. 5. 10.) 제3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원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 5. 30.] 제2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도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1. 1. 5.> ②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 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전문개정 2011. 12. 30.] 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4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1. 1. 5.>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3.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시작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 삭제 <1999. 5. 1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이용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지하수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하수개발·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제목개정 2011. 12. 30.]	제46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개정 2011. 5. 30.>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무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자연과학(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6. 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⑥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5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전문개정 2011. 12. 30.]	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수 없다. <개정 2017. 4. 18.> -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지하수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6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3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②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⑥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란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 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⑦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 4. 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신설 2005. 5. 31.)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7. 12. 29.> [전문개정 2001. 12. 19.]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 1. 5.>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22. 1. 6.>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한 용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013. 10. 30.) 1.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11. 12. 30.]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의3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6장 보칙 <개정 2011. 5. 30.> 제31조(타인 토지예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 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11., 2016. 12. 30.)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1. 6.> 1.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 6.> [전문개정 2011. 12. 30.]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포함한다)·제16조의4·제17조에 따른 조사·정화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竹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나 죽목·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居所(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2조(손실보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토지への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竹木),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구역·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출입·사용의 목적·시기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51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 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제1항 각 호의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		제52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34조(보고·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4조의2(교육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제42조(교육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	제53조(보고·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조사 일시·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별지 제59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인력 3.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12. 30.]	제5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 1. 제10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 제1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3. 제15조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4.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5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사업의 등록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 5. 30.] 제36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른 오염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에 대한 협의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의 요청 3.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로부터의 동의 취득 요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실태 조사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전문개정 2012. 6. 8.]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제14조의3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2. 제25조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전문개정 2016. 12. 30.]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11. 11.]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장 벌칙 〈개정 2011. 5. 30.〉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폐쇄·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 1.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 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9. 제26조(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전문개정 2011. 5. 30.]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 2024. 1. 23.> 1.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9. 제26조(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사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5. 1. 24.] 제37조의3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8조의2 삭제 (2001. 1. 16.)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1. 12. 30.]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전문개정 2021. 1. 5.]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3.>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전문개정 2021. 1. 5.] [시행일: 2025. 1. 24.] 제39조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한 자 [전문개정 2021. 1. 5.]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3.)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21. 1. 5.] [시행일: 2025. 1. 24.] 제40조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1. 1. 5.]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9조·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제5286호, 1997. 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충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51호, 1997. 8.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3조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오염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	부칙 <987호, 2022.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부령 제140호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영업실적 등 보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등록한지 2년이 경과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짝수 연도 등록자: 2022년 12월 31일 2. 홀수 연도 등록자: 2023년 12월 31일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중 “지하수법 제10조”를 각각 “지하수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중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9조·제13조·제16조 및 제17조”를 “지하수법 제7조·제8조·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55호, 1999.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영양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하수영양조사기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수영양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권자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등 각종 행위 또는 신고 등 시·도지사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98호, 19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3호,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6297호, 1999. 5.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하수의	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5조(케이싱덮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케이싱덮개에 관한 설치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지점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밀폐식 상부보호공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476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4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770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68호, 2001.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본다. ③(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유출지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지하굴착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조제2항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준란중 “지하수법 제19조”를 “지하수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6655호, 2002. 2. 4.>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이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굴착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표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12호,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7175호, 2001. 3. 2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9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770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④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433호, 2001.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부칙 <제18594호, 2004. 12.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③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158호, 200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 2023.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한 후 설치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별표 제1호나 목·라목·바목·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제7569호, 2005.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를 하고 있거나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또는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 또는 제29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지하수개발·이용사업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칙 <제7849호, 20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F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제1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한 검사주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의 기산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날로 한다. 제5조(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9463호, 2006. 4. 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③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주도지역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로 한다. ④내지 ④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924호, 2006.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④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제39조의2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④내지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41호, 2007. 9. 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56호, 2007. 9. 10.〉 (광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 내지 ㉩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46호, 2007. 5. 17.〉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5〉 까지 생략 〈60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조 본문·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4항 후단·5항 본문·제6항, 제12조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항 본문·제6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한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것”으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5항,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제6항 전단·제8항, 제18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및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5제2항 중 제26조의2제6항 중 “건설교통 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58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17호, 2009. 5. 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별표 2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제1호나목·제2호다목·제2호마목·제3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5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 제13조제1항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다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⑯ 및 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4호, 2010. 3. 22.〉 (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제5호·제6항제6호·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877호, 2008. 6. 25.〉 이 영은 2008년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78호, 2008. 10. 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1465호, 2009.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763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7조의2, 제14조제1항,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4항제9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협의에 대한 경과 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의 관리청에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협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④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④ 부터 ④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66호, 2009. 6. 2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③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320조제2항 중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8호”로, “제41조제1항”을 “제41조”로 한다. 부칙 〈제11192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1〉까지 생략 〈63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3항·제4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③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②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③ 부터 ④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556호, 2010. 12. 28.〉 (광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⑥ 생략 부칙 〈제22626호, 2011.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7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7조제7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03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28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470호,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6호, 2012.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부터 ㉓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법률 제118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4>부터 <258>까지 생략	제4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4조의5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사업자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미만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측정장비의 소유자와 1년 미만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생략 부칙 〈제12990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⑤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	따른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및 제42조제6항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세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㉔부터 ㉖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부터 ㉖까지 생략 ㉖부터 ㉘까지 생략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㉘부터 ㉚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01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정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㉔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제24819호, 2013. 10. 3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17호, 201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36호, 2014. 12.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03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부칙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521호, 2017. 12. 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①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및 제17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및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894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232호, 2018. 10.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자”를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술자 중”을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으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제17618호, 2020. 12. 8.〉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를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61호, 2021. 8. 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326호, 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지하수 관측시설”을 “지하수측정시설”로 한다. 부칙 〈제32447호, 2022. 2.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제17850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하여 토지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출지하수 감소대책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977호, 2022. 11. 1.>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한다. 제390조제2항 중 “제5항·제6항·제7항, 제5조의2제4항”을 “제5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제4항”으로,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을 “제9조제1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의3제1항”으로, “제3항·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제4항·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으로, “제12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7조제1항·제6항”으로, “제24조제1항·제3항”을 “제2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9170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0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호, 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㉔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4421
[별표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	4422
[별표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	4423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	4424
[별표 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4425
[별표 6]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4426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4427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1. 수문지질 (水文地質) 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2) 하천의 현황 3)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 허가신청량 이 신규 개발 가능 량 이내일 것
2.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帶水性試驗)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 특성을 파악한다. 1) 단계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 3단계 이상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양수정(揚水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 허가신청량이 1 일 적정 취수량 이내일 것 ○ 영향 범위 내 기 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어 영향을 받 는 경우 이에 대 한 대책을 마련 할 것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가) 단계대수성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나)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할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흡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인 수리전도도(水理傳導度), 투수량 계수, 저류(貯留) 계수, 비양수량(比揚水量) 등을 조사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치고 동시에 펌프 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할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1분 간격 나)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5분 간격 다)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15분 간격 라)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1시간 간격 마)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2시간 간격 나. 각각의 대수성과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1일 적정 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다. 이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 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의 영향 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분석·제시한다. 라. 산정된 영향 범위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제시한다.	
3.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해야 하며, 수질 검사의 방법과 항목은 제31조를 준용한다.	○ 사용 용도에 따른 수질의 적정성

비고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갈음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의 조사방법은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복시험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8. 6. 8.>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

1. 작성지침

- 가.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논리적으로 작성한다.
-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작성(鑿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환경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2. 작성내용

- 가. 서론
 -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 2) 조사 결과의 요약
 - 3) 지하수개발·이용 방안
- 나.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 가능한 원수의 양
 - 1) 수문(水文) 및 수리지질(水理地質)현황 조사
 - 가)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 나) 하천의 현황
 - 다)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 2)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개발 가능량 조사
 - 3) 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
- 다.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 1)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 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기술
 - 2) 5년 이후의 영향 범위 분석성과를 기술
 - 3) 지하수 개발 시 주변 잠재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를 기술
 - 4)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마.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바. 그 밖의 사항

- 1) 그 밖의 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지 않는 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 2)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정의 지질주상도(地質柱狀圖)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

[별표 3] <개정 2011.12.30>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

1. 상류의 주요 지하수함양원(地下水涵養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가.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며 지하수의 수직흐름이 지배적인 지역으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나. 지하수가 함양되는 지역 중에서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가. 대수층이 오염되는 경우 대체할 용수원이 없는 지역
나. 대수층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는 지역
3.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50미터 이내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질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
가. 관정의 취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역
나. 지하수의 개발·이용량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다.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구조물·시설 및 지반에 변형이 발생되는 지역
5.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
가. 인체유해오염시설이 있는 지역
나. 오염유발시설이 밀집한 지역
다. 폐광 및 폐기물처리 지역
라.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지역
마.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화학약품저장탱크가 있는 지역

6. 해안염수침입 지역

가.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단위면적당 취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대용량의 지하수 시설이 있는 지역

나. 대수층의 수리 특성상 투수성(透水性)이 높아 바닷물이 침입하기 쉬운 지역

7.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별표 4] <개정 2022. 2. 1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boring)·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그 사실 여부를 확인 받은 사람

2. 자본금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라.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 및 장비

- 가. 측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측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8. 12. 11.>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지하수·굴착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 가.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 시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 라.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6] (개정 2018. 12. 11.)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상하수도·수질관리·토양환경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토양환경 기사, 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 3명 이상

2. 자본금

-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법인의 자본금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 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각각의 금액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가목의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 라.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 시설 및 장비

- 가.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 시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는 측정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 라. 측정 장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을 직접 취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마.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제1호	200	300	400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	100	200	300
1) 제13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용도의 변경신고(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100	200	300
2) 제13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 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4호	50	10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	50	100	200	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9조제5호	100	200	400
사.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법 제39조제2호	200	300	400	거.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9호	50	100	200
아.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6호	50	100	200	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6호	200	300	400
자.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의2제1호	10	20	30	더.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의2제2호	10	20	30
차.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3호	200	300	400	러.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0호	50	100	200
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7호	50	100	150	머.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7호	200	300	400
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8호	50	100	200	버. 지하수개발·이용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8호	500	500	500
파.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4호	500	5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1호	100	200	300
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0조제12호	100	200	300
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리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3호	30	50	70
처.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4호	30	50	70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	4433
[별표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	4433
[별표 2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제15조제15항 관련)	4437
[별표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	4438
[별표 4]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9조 관련)	4438
[별표 5]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	4439
[별표 6]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	4440
[별표 7]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	4441
[별표 8]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제33조제1항 관련)	4442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	4444
[별표 10] 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4445

[별표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mm
토출관 안쪽 지름	mm	용도(세부 용도)	
동력장치 (설치 깊이)	(HP m)	양수능력	m³/일
소유자명		시공업체명	
관할 관청(연락처)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위와 같이 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 지하수의 미래는 밝습니다〉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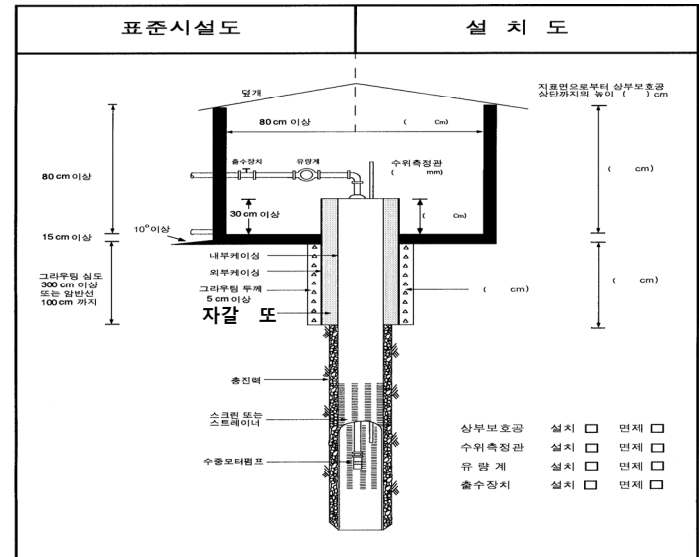
1. 안내문의 크기는 300mm(가로)×200mm(세로) 이상으로 하고, 비·바람 등 외부 충격에 쉽게 변색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2. 안내문은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별표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

1. 가형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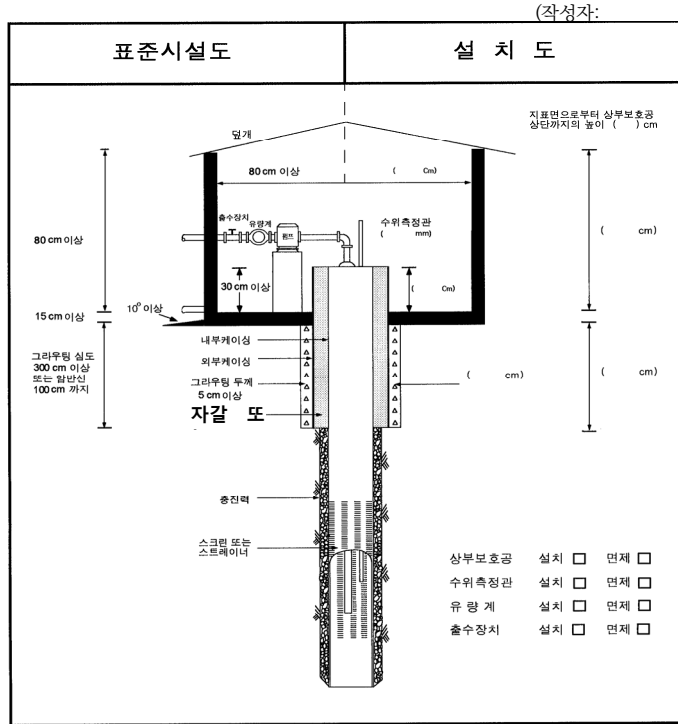
(작성자:)



비고

1. “가형 표준도”란 스크린(screen) 또는 스트레이너(strainer: 기기 등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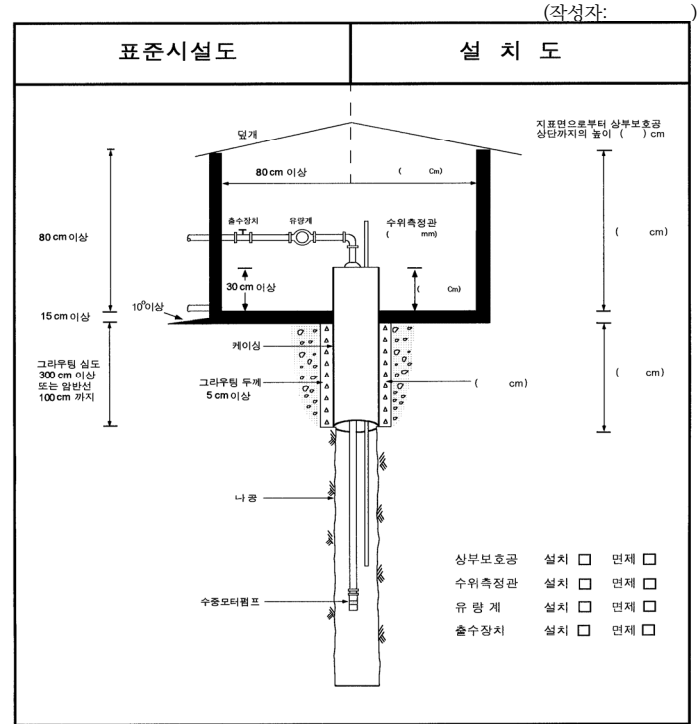
2. 나형 표준도



비고

1. “나형 표준도”란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3. 다형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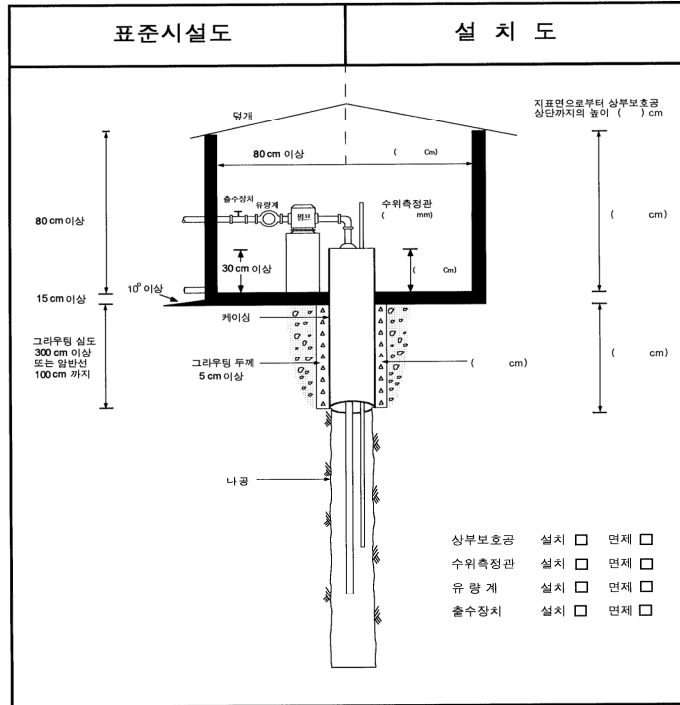


비고

1. “다형 표준도”란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4. 라형 표준도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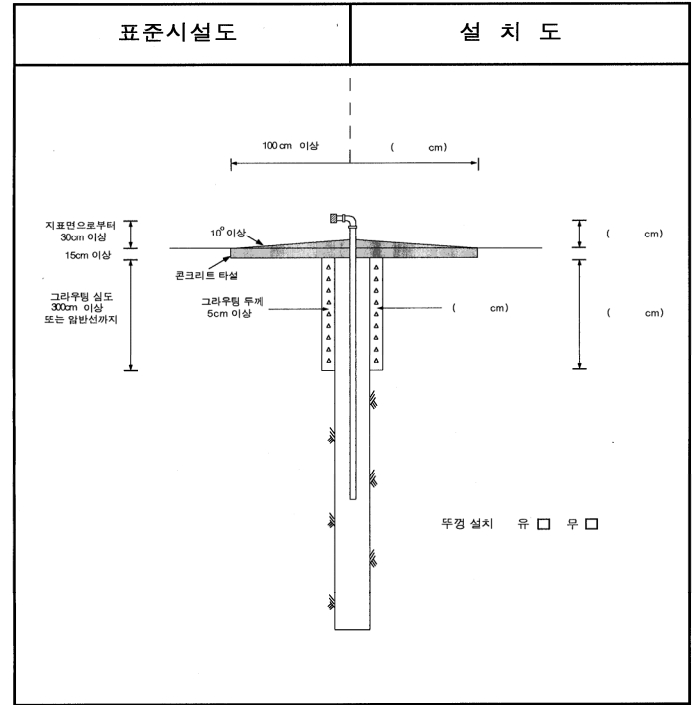
비고

1. "라형 표준도"란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08.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5. 마형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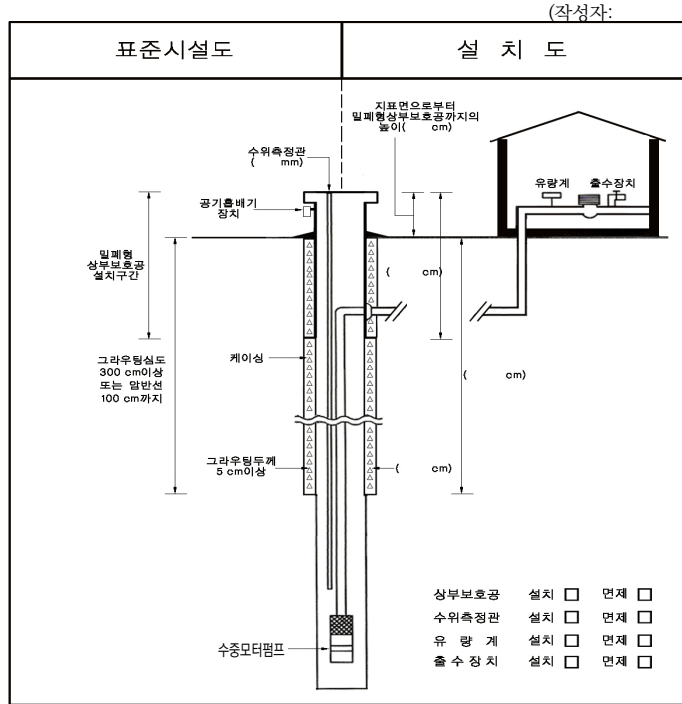
(작성자:)



비고

1. "마형 표준도"란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출관의 끝부분에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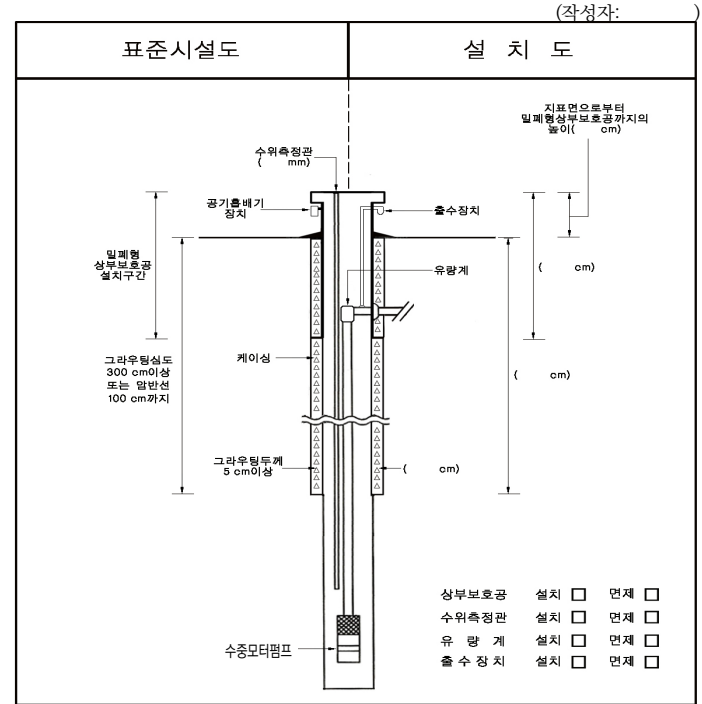
6. 바형 표준도



비고

1. “바형 표준도”란 밀폐형으로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별도의 인접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인접시설의 설치규격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3. 설치도에 지표면으로부터 밀폐형상부보호공까지의 높이와 알반션을 표시해야 한다.
4.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은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填)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7. 사형 표준도



비고

1. “사형 표준도”란 밀폐형으로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상부보호공에 내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설치도에 지표면으로부터 밀폐형 상부보호공까지의 높이와 알반션을 표시해야 한다.
3.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은 그라우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제15조제15항 관련)

1. 시설기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영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용도에 맞게 다음 1)·2)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용도·구조, 유출지하수 발생량,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공통 시설

가) 집수시설: 유출지하수를 모으는 시설

나) 탁수처리시설: 침전시설 등 유출지하수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다) 저류시설: 유출지하수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

라) 송수시설: 펌프·관로 등 유출지하수를 이용장소 또는 저류시설로 운반하는 시설

2) 용도별 시설

가) 소방용·청소용·조경용: 물 분사시설

나) 공원용: 물 분사시설 및 지하수 함양시설(도시 물 순환 촉진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투수 블록·포장재, 인공실개천 등을 말한다)

다) 공사용: 급수시설

라) 냉난방용: 히트펌프

마)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해당 용도에 적합한 시설

나. 도로 먼지 저감용 살수장치(쿨링로드) 또는 폭염 저감용 물안개 분무장치(쿨링포그) 등 유출지하수 이용과정에서 사람이 섭취·흡입하거나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여과시설, 소독시설 등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청소 등 관리에 용이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 내 다른 용도의 배관과 색을 다르게 하는 등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펌프(집수시설에 모인 유출지하수를 이용장소 또는 저류시설로 보내기 위한 펌프를 말한다)는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비펌프를

포함하여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는 정확한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연속 측정할 수 있도록 계측장치(제어장치를 포함한다)를 부착해야 한다.

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안내문의 크기는 500mm(가로)×400mm(세로)로 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변색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 다만 안내문의 부착 위치 및 크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안내문			
용도 및 종류		집수시설 용량	m³
저류시설 용량	m³	이용계획량	m³/일
준공일자	년 월 일	관리자 (연락처)	
이 시설은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입니다.			

2. 관리기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 보수, 위생 및 안전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오수 등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 이용되는 유출지하수가 용도에 적합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질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가목에 따른 청소 및 점검 등의 결과와 매월의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기록하고, 기록한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마.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도면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보관해야 한다.

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운영이 중지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고

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외에 다른 법령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별표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

(제18조제5항 관련)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 가.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 나.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 다.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 라.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청소할 것
- 마.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바.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끌어올리기 전과 같은 상태로 설치할 것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의 주변을 정리할 것
- 나. 상부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 다. 동력기동장치와 수증모터 간 동력전선이 절연상태(전기 또는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것

비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후관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그 범위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9조 관련)

1. 시설의 설치기준

- 가.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 1) 지하수 함양(涵養, 지표로부터 침투한 물이 대수층(帶水層)으로 공급되는 것)이 쉽고 지형경사가 완만한 지역
 - 2) 대수층(帶水層, 지하수로 포화된 투수성이 좋은 지층·지층군 또는 지층의 일부) 하부에 불투수성 지반이 있고, 차수벽(遮水壁) 등의 설치로 지하수 저류효과가 좋은 지역
 - 3) 차수벽 등의 설치로 상류지역 습지화되거나 하류지역 건천화(乾川化)되는 등의 위험이 낮은 지역
 - 4) 유출지하수 발생 지역의 경우 활용하려는 용도에 적합한 수량과 수질이 확보된 지역
- 나. 계획취수량은 수문순환(지구상의 물의 연속적인 순환 이동과정)계가 파괴되지 않고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적정개발가능량(지하수의 함양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며 지하수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이용이 가능한 지하수개발량)에 손실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다. 취수시설은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수원고갈, 지반침하, 시설물 안전, 생태계 영향, 하천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라. 탁수 등 수질이 불량한 물이 취수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라우팅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마. 취수시설에는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것
- 바. 유공관은 모래나 침전물(슬러지)에 의한 막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사. 유출지하수 발생 지역의 경우 적산유량계 등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발생량 및 이용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것

2. 시설의 관리기준

- 가. 지하수 함양시설 또는 지하수댐 취수시설 인근과 상하류에 관측공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것
- 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하 차수벽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공사를 실시할 것
- 다. 정기적으로 취수시설을 확인하여 양수량 감소 등 효율이 떨어진 경우에는 효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라. 주변지역의 잠재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수질을 확인하는 등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마. 유출지하수는 강우량 및 주변 지역 지하시설물 개발 정도 등에 따라 수량과 수질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이 현재의 이용 용도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별표 5]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의 설치기준(제20 관련)

1. 지중시설

- 가. 지상의 열교환기를 순환하는 지하수를 재주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주입정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데 필요한 설치자재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 다. 지중시설의 굴착지름은 전 구간을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재주입 순환통로 등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정비 및 청소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할 것

2. 상부보호시설

- 가.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의 지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상부보호시설의 크기는 가로·세로(원형인 경우에는 안지름을 말한다) 각 15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상부보호시설의 바닥부가 지표면 아래로 80센티미터 이상 매설되도록 할 것
- 나. 상부보호시설의 덮개는 지표면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거나 지형 여건상 지표면과 동일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상부보호시설은 내부식성(耐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 훼손·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덮개는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할 것

3.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

- 가.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적정 수량을 상시 확보할 것
- 나. 열교환기 내에 물리적, 화학적 침전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거나 정수설비 또는 침전물 제거를 위한 별도 장치를 설치할 것
- 다. 집수정에서 열교환기로 유출지하수를 공급하는 펌프는 비상시를 대비해 예비용 펌프를 갖추어 설치할 것

비고: “지중시설”이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수 취수정을 말한다.

[별표 6]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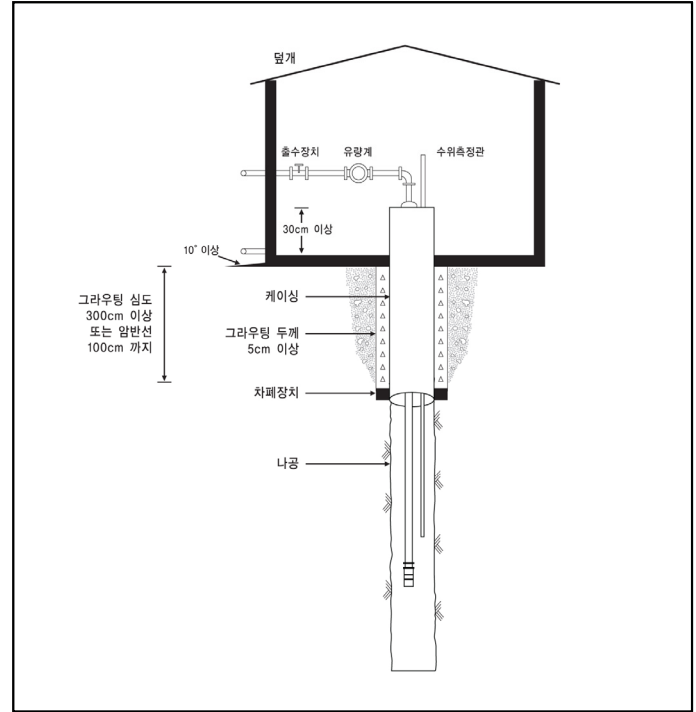
1.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사항

- 1) 시설은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2) 시설은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3) 시설은 견고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 4) 케이싱(지표 하부보호벽)의 하단부는 지표면 아래 3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하며, 암반층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연암층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아래로 1m 이상 깊게 설치해야 한다.
- 5) 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두께는 5cm 이상 되어야 하며, 차수용(遮水用) 재료를 사용하되, 케이싱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케이싱의 하단부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다만, 개발목표 깊이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한 후 차수용 재료를 케이싱의 하단부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 6)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에 설치하는 양수시설물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일반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 및 구조도

- 1)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보호 및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크기로서 지표면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해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 2) 상부보호공의 덮개는 외부 오염물질·지표수 등의 유입을 막고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3) 케이싱의 윗부분은 지표면 위로 30cm 이상 높게 설치하고, 덮개를 씌워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케이싱의 덮개에는 방충망을 갖춘 공기출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 차폐장치는 개발목표 깊이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밀폐식으로 설치하는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

- 1) 시설의 덮개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가) 상부보호공 몸체에 대한 수밀(水密)시험 결과 $5\text{kg}/\text{cm}^2$ 이상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상부보호공 내부의 양수파이프 거치부에 대한 인장하중시험 결과 $5,000\text{kg}$ 의 하중, $10\text{mm}/\text{min}$ 속도로 수직인장을 가할 때에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상부보호공 내부의 급수배관 연결부분은 조립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시험 결과 $20\text{kg}/\text{cm}^2$ 에서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자동개폐 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4) 내·외부 급수배관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않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가. 영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량·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mm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케이싱의 하단부는 제1호가목4) 및 5)에 따른다.

[별표 7]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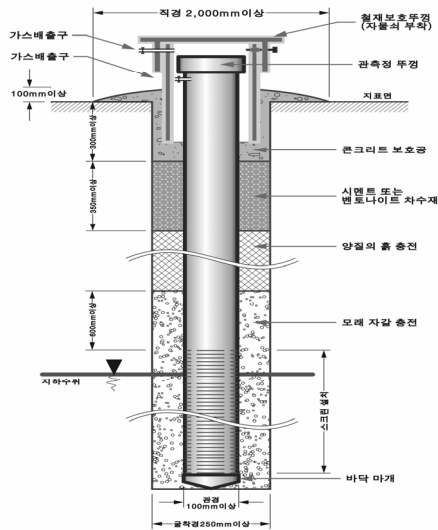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지하수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제외한다.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제33조제1항 관련)

1.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2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설치구조도



비고

- 관측정의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테프론(teflon: 우수한 내약품성, 내열성, 소수성(疏水性)을 가진 합성섬유의 일종)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보호관은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표면 위로 두께 100mm 이상, 반지름 1,000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관측정 수

설치지점	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분석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2개 이상

비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性狀)을 고려하여 관측정의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측정의 수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 및 나)의 지점에는 관측정을 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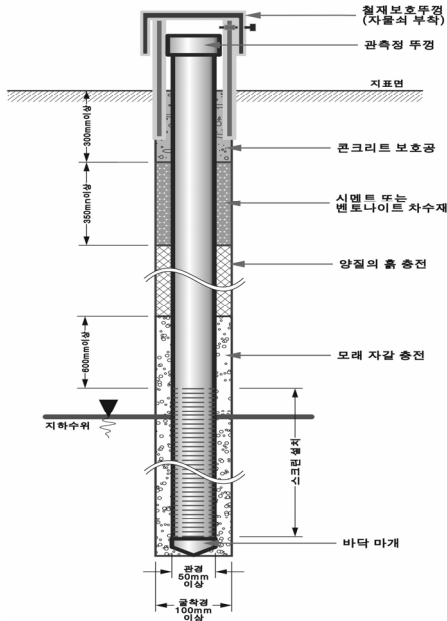
나.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 측정주기: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 측정방법
 -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별표 9 제2호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항목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험항목 중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항목
 -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별표 7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설치구조도



비고

1. 관측정의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테프론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2. 관측정은 오염된 토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깊이까지 설치해야 한다.
3. 관측정은 설치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지중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오염물질이 관측정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장사진 및 시공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관측정 수

설치지점	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분석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비고

1.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을 고려하여 가) 또는 나)의 지점에 관측정을 설치하는 대신 해당 부지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수질측정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관측정을 설치해야 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설치가 어렵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기한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수질측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측정을 설치한 곳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

나.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1) 측정주기

- 가)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나) 또는 다)에 따라 측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실시하여 관측정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질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가)에 따른 측정 결과가 계속하여 제30조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반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 다) 가)에 따른 측정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없이 토양정밀조사만 실시한 경우에는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측정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측정방법

가)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수소이온농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되,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

1.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항목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일반 오염 물질 (4개)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균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특정 유해 물질 (16개)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다. 해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0]

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경우: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6.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7.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8.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9.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10.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비고: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제5편 물이용

09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1. 4. 5.)		
제1조(목적) 4456	제1조(목적) 4456	제1조(목적) 4456
제2조(정의) 4456	제2조 삭제 4456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4456
	제3조 삭제 4456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456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4456
제3조(적용 제외) 4457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4457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4457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4458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4458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4458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458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4458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4459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 4459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4460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4459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4461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4461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4461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4462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4462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화비용 부담) 4463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4462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4463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463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4464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4465
제9조(손실보상) 4465	제5조(손실보상) 4465	제7조(재결신청서) 4466
제10조 삭제 4466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4466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4466	제7조의2 삭제 4466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4467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4468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4469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4470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운영) 4471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4472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4473		
제10조의7(분담금) 4473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4473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4473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4473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4473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4474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4475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 4. 5.>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4475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4476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4476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4476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4476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4476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4477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4477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4478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4478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4478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4479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4480
제13조(토양오염검사) 4480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 4480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4480
		제13조(누출검사 등) 4481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4482	제14조(검사항목) 4482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4482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4483
		제16조(검사결과와 통보 등) 4484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4484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 4484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4485	제8조의3(시정명령 등) 4485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4485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4485	
	제9조의2(조치명령 등) 4486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4487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4486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4487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4487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4487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4488	
		제19조(반출정화대상) 4488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4489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4491		
제15조의5(위해성평가) 4491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4492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4491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4494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4496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4495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4496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4496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4498	제19조의7(검증의 절차·방법 등) 4497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4498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4498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4498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 4. 5.〉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4500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4500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4500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4500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4500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4501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4501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4501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4501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4502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4502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4502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4502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기관) 4503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4503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4503
	제14조(대책지역의 관찰조정) 4503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4504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4504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4504
제21조(행위제한) 4504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4504	
제21조(행위제한) 4504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4505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4506		
제23조 삭제 4506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 3. 28., 2004. 12. 31.〉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 4506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4507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4507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4507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4508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4508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4508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4509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4509 제23조의5(접입 금지) 4509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4509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4511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4513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4513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4513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4515 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4515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4516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4517 제4장 보칙 <개정 2011. 4. 5.> 제24조(대집행) 4517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4518 제26조(국고보조 등) 4519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4519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4521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4521 제26조의5(청문) 4521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4521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4511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4513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4521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4523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4511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4512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4513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4516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4517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4517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4518 제34조(출입 검사 등) 4519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4521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4521 제37조(규제의 재검토) 4523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장 벌칙 ‹개정 2011. 4. 5.› 제28조(벌칙) 4524 제29조(벌칙) 4524 제30조(벌칙) 4525 제31조(양벌규정) 4527 제32조(과태료) 4527 제32조(과태료) 4529 부칙 4531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527 부칙 4531	부칙 453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 1995. 1. 5 법률 제4906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 2. 8 법률 제5878호 2001. 3.28 법률 제6452호 2002. 1.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 2. 4 법률 제6666호 (공익사업유일특성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6호 (환경정책기본법) 2003. 5.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2004.12.31 법률 제7291호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6. 9.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6.10. 4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한·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5.17 법률 제8469호 2010. 3.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 5.25 법률 제10314호 2011. 4. 5 법률 제10551호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 6. 1 법률 제11464호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4. 3.24 법률 제12522호 2015. 2. 3 법률 제13169호 2015.12. 1 법률 제13533호 2015.12. 1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토양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2호 2018. 6.12 법률 제15658호 2019.11.26 법률 제16613호 2022.12.13 법률 제19090호 2024. 2. 6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8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8호 2001.12.19 대통령령 제17432호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1. 9 대통령령 제18213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인원천지위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 등중개정령) 2005. 6.30 대통령령 제18910호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시한·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0. 8 대통령령 제2107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6.16 대통령령 제21542호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 9.30 대통령령 제23196호 2012. 1.25 대통령령 제2352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5.31 대통령령 제24566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5. 3.24 대통령령 제26160호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정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별재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2018.11.20 대통령령 제29292호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20. 7.14 대통령령 제30848호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5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1996. 1. 4 환경부령 제16호 개정 1999. 2.27 환경부령 제70호 2001.12.31 환경부령 제121호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 6.30 환경부령 제176호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12.30 환경부령 제19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006. 3. 7 환경부령 제200호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 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한·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1.13 환경부령 제256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 7.30 환경부령 제294호 2009. 6.25 환경부령 제333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기술의 재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1. 3.31 환경부령 제411호 2011.10. 6 환경부령 제427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공공규제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5.31 환경부령 제509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 3.24 환경부령 제597호 2015.11.30 환경부령 제622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양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6. 4.28 환경부령 제648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공규제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11.27 환경부령 제776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1. 4. 5.>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構造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2조 삭제 <2001. 12. 19.> 제3조 삭제 <2001. 12. 19.>	2020. 7. 14 환경부령 제873호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2. 1. 21 환경부령 제969호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용도, 오염물질의 종류·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6., 2021. 9. 16.> [전문개정 2005. 6.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 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3.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4.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5.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6.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4에서 이동 (2005. 6. 30.)]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 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6. 4. 28.]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전문개정 2001. 12. 31.]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발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6. 25.,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1. 10. 6.]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4. 5.]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 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 토지 이용 현황 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 강우특성 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 토양 침식량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 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정화책임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본조신설 2011. 4. 5.]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본조신설 2011. 10. 6.]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토지·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제2호 및 제4호에만 적용한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②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 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4. 5.]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9조(손실보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손실보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임목·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의正本(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0조 삭제 <2006. 10. 4.>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	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5. 12. 30.>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 삭제 <2001. 12. 19.>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	제7조(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 삭제 <2015. 3. 24.>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6. 12. 27.>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4. 3. 24.> ③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토양환경평가 항목: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2. 토양환경평가 절차: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3. 토양환경평가 방법: 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현황,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1. 4. 5.]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성 여부 조사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4. 3. 24.]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 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익을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중전 제5조의3은 제5조의8로 이동 (2015. 3. 24.)]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전문개정 2014. 3. 24.] [2014. 3. 24. 법률 제12522호에 의하여 2012. 8.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를 전문개정함.]	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0.> 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0.>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3. 24.]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설치자·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1. 20.>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1. 4. 5.] 제10조의7(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6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4. 5.]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2.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 4. 5.>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 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0.> 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 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본조신설 2015. 3. 24.]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 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3. 24.,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 2022. 12. 13.)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3.)	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본조신설 2005. 6. 30.] [제5조의3에서 이동 (2015. 3. 24.)]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2. 1. 25., 2018. 11. 2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6. 30.) [제목개정 2001. 12. 31., 2005. 6. 30.]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16. 4. 28.)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 6. 30.]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7. 11. 28., 2022. 12. 13.>	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전문개정 2001. 12. 19.] [제목개정 2005. 6. 30.]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6. 30.> [제목개정 2001. 12. 31., 2005. 6. 30.]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27.]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②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5. 12. 30., 2008. 7. 30., 2011. 10. 6., 2014. 12. 24., 2018. 11. 27.>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전문개정 2011. 4. 5.]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1. 9. 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 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 12. 19., 2013. 5. 31.> [제목개정 2001. 12. 19., 2005. 6. 30.]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관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본조신설 2001. 12. 31.]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유지·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유지·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31.]	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5. 3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9. 30.> 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①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5. 3. 24.>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 [전문개정 2001. 12. 31.]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7. 30., 2009. 6. 25., 2014. 12. 24.>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한 날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6. 25.> [전문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8. 7. 30.] 제13조(누출검사 등)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1. 12. 31.] 제14조(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6. 3. 7.> [전문개정 2001. 12. 31.]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전문개정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4의2.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개정 2018. 11. 20.〉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 [본조신설 2005. 6. 30.]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 11. 28.>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1. 10. 6.] 제16조(검사결과와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8. 11. 27.> [전문개정 2001. 12. 31.]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31.]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 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를 말한다. 이하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1. 4. 5.]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 2021. 1. 5.>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 [전문개정 2009. 6. 16.]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 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6. 1., 2014. 3. 24.>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4. 3. 24.>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4. 3. 24.>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④ 삭제 <2004. 12. 31.> ⑤ 삭제 <2004. 12. 31.>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1. 3. 28.]	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8. 11. 20.]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8. 11. 20.> [본조신설 2001. 12. 19.]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1. 4. 5.]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야 한다. <개정 2015. 3. 24.> [본조신설 2005. 6. 30.]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산설 2005. 6. 30.>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19.] [제목개정 2005. 6. 30.]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 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본조산설 2005. 6. 30.] [제목개정 2015. 3. 24.]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7.>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정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정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 1.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⑥ 제5항에 따라 적정정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11. 28.) ⑦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6. 1.) 1.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2.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 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정화책임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5. 6. 30.]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2012. 6. 1., 2017. 11. 28.〉 ⑨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8. 11. 27.〉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 ④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4. 5.]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정화책임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 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1. 27.>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8. 11.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5. 31., 2018. 11. 27.> [본조신설 2005. 6. 30.]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7.> 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충탄화수소 2. 중금속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2의2. 불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11. 20.>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1. 20.〉 [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8. 11. 20.]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	11. 27.)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 11. 27.〉 ⑤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 2. 현장조사 방법 3.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4. 독성평가 자료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화책임자가 위해성 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		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 -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⑧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⑨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1. 10. 6.]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6으로 이동 (2011. 10. 6.)]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 위해성평가의 항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위해성평가 결과의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 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 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 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 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본조신설 2011. 10. 6.] [중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7로 이동 <2011. 10. 6.>]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② 정화책임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정화책임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급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 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6. 30.]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1. 9. 3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4. 3. 24.)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토양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5.]		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25.,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서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0. 6., 2015. 3. 24.>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4.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 [전문개정 2008. 7. 30.] [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 10. 6.>] 제19조의7(검증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 <개정 2008. 7. 30., 2013. 5. 3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인 토지를 토양 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에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양관리단지의 토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① 토양오염이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 위치·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9. 30.]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 9. 30.]	[본조신설 2005. 6. 30.] [제19조의4에서 이동 <2011. 10. 6.>]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생한 해당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정화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 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 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사항 ② 토양오염정화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화방법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정화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다. 이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정화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 4. 5.〉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 6. 30.〉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2.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8. 11. 20.〉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 12. 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01. 12. 3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도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 집합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전문개정 2001. 12. 19.]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 [본조신설 2005. 6. 30.]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01. 12. 31.>]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 12. 31., 2005. 6. 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01. 12. 3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정화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 6. 30.]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7.>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01. 12. 3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15. 3. 24.>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중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01. 12. 31.>]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8. 11. 27.> [전문개정 2008. 7.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시·군·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족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25., 2013. 6. 4., 2017. 1. 17.> 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5.>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방법·기간·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 [종전 제23조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4. 12. 31.>]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 3. 28., 2004. 12. 31.>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9. 30., 2017. 1. 6., 2018. 11. 20., 2023. 11. 16.)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6. 1.>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도지사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5. 31.> ②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16.> [본조신설 2005. 6. 30.]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5. 6. 30.>]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6. 7. 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7. 30., 2009. 6. 25., 2011. 10. 6.> ③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01. 12. 31.>]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1.> 1. 지방환경관서 2. 국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 9., 2005. 6. 30., 2005. 7. 22., 2008. 10. 8., 2009. 6. 16., 2013. 5. 31., 2018. 11. 20.>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2009. 6. 16.> [본조신설 2001. 12. 19.]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5. 6. 30.>]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3. 5. 31.> [본조신설 2001. 12. 31.]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11. 10. 6., 2013. 5. 31.>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본조신설 2001. 12. 31.]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 3. 24.> ②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3. 24.>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2. 6. 1.]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19. 11.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본조신설 2001. 12. 3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1.> ②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폐쇄·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5. 31.> [본조신설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정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공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전문개정 2020. 7. 14.]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①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공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 5. 31.>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1. 9. 30.]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1.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3.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5.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9.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②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양도하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본조신설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4장 보칙 <개정 2011. 4. 5.>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08. 7. 30., 2009. 6. 30., 2013. 5. 31., 2016. 12. 30.>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09. 6. 30.> [본조신설 2005. 6. 30.]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05. 6. 30.>]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③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6. 30.> [본조신설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전문개정 2011. 4. 5.]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4. 5.]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2015. 3. 24.>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1.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9. 6. 25.] [제28조에서 이동 (2001. 12. 31.)] 제34조(출입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8정 2012. 6. 1., 2019. 11. 26.) 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19. 11. 26.)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4. 5.]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 4. 5.]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한다. <개정 2001. 12. 19., 2002. 8. 8., 2005. 6.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 6. 30.> ② 삭제 <2009. 6. 25.> [본조신설 2001. 12. 31.] [제32조에서 이동 <2005. 6.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0., 2011. 9. 30.,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0.)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 측정 2. 법 제5조제4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처리 5의3. 삭제 (2013. 5. 31.)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4. 3. 24.> [전문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2. 6. 1.]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0.>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 협의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13. 5. 31.]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장 벌칙 <개정 2011. 4. 5.>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4. 5.]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23. 4. 17.> 1. 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대상: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 <2017. 11. 30.> 3. 삭제 <2023. 4. 17.> 4.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 4. 17.>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주기·시간: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4. 3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 4. 5.]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1. 4. 5., 2012. 6. 1., 2014. 3. 24., 2022. 12. 13.>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7.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8의2.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한 자 9.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1.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자 1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1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접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4. 12. 31.] 제31조(양법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2017. 11. 28.>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 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09. 6. 16.]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5의4.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2017. 11. 28.>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 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 2024. 2.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5의4.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 5. 25.] [시행일: 2025. 8. 7.] 제32조 부칙 〈제4906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78호, 1999. 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2호, 2001.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부칙 〈제14848호, 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8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432호, 2001. 12. 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부칙 〈제16호, 1996. 1. 4.〉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 1999. 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21호, 200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부칙 〈제6627호, 2002. 1. 26.〉 (민사집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8213호, 2004. 1. 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토양오염조사기관(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⑦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 내지 (55)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 생략 <64>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 내지 <85>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제6846호, 2002. 12. 30.>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부 칙 <제18910호, 200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76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 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부 칙 <제190호, 2005. 12. 3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⑥생략 부칙 <제6893호, 2003. 5. 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②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291호, 200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제3항, 제15조의6, 제23조의2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제23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①생략 ②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078호, 2008. 10. 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로 하고, 동호 가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00호, 2006. 3. 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호, 2006. 7.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다. 제5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정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 <제21542호, 2009.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토양정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6호, 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3제1항의 개정	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⑭ 부터 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호, 2007. 1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 2008.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21>생략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⑤내지 ⑥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3529호, 2012. 1. 2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566호, 2013. 5. 31.>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160호,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제19조의2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별표 3,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유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도검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8년 또는 9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6년 또는 7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1년 또는 12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5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3년 또는 14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6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가축분뇨”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로 한다. ⑥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038호, 2006. 10.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 및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2조(정화책임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767호, 2017. 1. 6.> (광산안전법 시행령)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11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 2011.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⑥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292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9호, 2007. 5.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48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14호, 2010. 5.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51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의4제1항·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858호, 2023. 11. 16.> (지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tr><td>2. 유해화학 물질의 제조 및 저장 시설</td><td>「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td></tr></table> ⑭부터 ㉔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7호,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2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해화학 물질의 제조 및 저장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2. 유해화학 물질의 제조 및 저장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1461호, 2012. 6.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1464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토양의 반출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토양정화업의 등록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제5호, 별표 3 비고 제6호 및 별표 7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76호, 2018. 11. 27.>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2 제2호, 별표 3의 1,2-다클로로에탄란, 별표 5 제2호, 별표 7의 1,2-다클로로에탄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부터 ㉔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522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9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33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 2020. 7. 1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21. 9. 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3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3534호, 2015. 12.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2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 제4조의5, 제10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3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5658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의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미나미타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제1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부칙 〈제16613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90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제2항”을 “제1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0231호, 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4549
[별표 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4553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4554

[별표 1] (개정 2019. 7. 9.)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 결합플라스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1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8	자가동력사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1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0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기술인력	해당 분야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비고

-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 누출검사가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가기관

가.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2)부터 5)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
 - 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
- 2) 자기탐상(磁氣探傷) 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浸透探傷) 시험설비
- 3)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 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 4)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 5) 산소농도측정기

나.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소방 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나목2)란 및 3)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비파괴검사기사로 하여야 한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8.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9.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3. 토양환경평가기관

가. 장비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1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1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장비	

※비고

1.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1명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토양환경평가 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체가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위해성평가기관

가. 장비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 결합플라스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1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1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비고

1.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독성학,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비고

1.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5. 위해성평가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다.

6.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0. 7. 1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 벽면·지붕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지하수위측정기

※ 비고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나. 기사 1명 이상	
다. 산업기사 2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비고

-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 제3호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3호가목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8. 11.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의2	100	150	200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마. 법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3호	50	100	200
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4호	50	70	100
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5호	100	150	20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아.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5호의2	100	150	200
자. 법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5호의3	100	15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 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5호의4	100	150	200
타.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 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6호			
1)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7호	100	150	200
하.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8호	150	170	200
거.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9호	50	100	200
너. 법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더.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1호	50	100	200
러. 법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1호의2	50	100	200
머. 법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서.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3호	100	150	20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 관련)	4559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 관련)	4559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4560
[별표 3의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4561
[별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4562
[별표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4562
[별표 6]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4563
[별표 6의2]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4563
[별표 6의3]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4564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4566
[별표 8]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 관련)	4567
[별표 9] 삭제 <2005.6.30.>	4567
[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 관련)	4567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4568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 관련)	4569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4569

[별표 1] <개정 2022. 1. 2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24.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개정 2018. 11. 2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결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별표 3] (개정 2022. 1. 21.)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
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납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0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불소	400	400	800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12. 시안	2	2	120
13. 페놀	4	4	20
14. 벤젠	1	1	3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21. 벤조(a)피렌	0.7	2	7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 비고

-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설치기준

구 분	시 설 명	세 부 기 준
저장시설 부문	이중벽 탱크	- 강철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강철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FRP + FRP 또는 강철 + 강철의 이중 구조
	탱크 전용실	-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춘 구조
	넘침(Over Flow) 방지장치	- 유류 등 저장물질이 90% 이상 주입될 시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
	탱크 집유통 (集油桶, sump)	- 외부의 토압(土壓)에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 - 방수,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누유(漏油)감지 및 경보장치	- 누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누유 시 램프 점등 및 경보가 울리는 구조
주유·이송 부문	이중 배관	- 주 배관은 내관 및 외관의 이중 구조로 하여 누출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연결부위가 없는 구조로 시공
	주유기 집유통	- 방수 및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기 타	유수분리시설	- 콘크리트와 같이 내유성이 있고 차량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4단 이상의 구조로 시공

2. 유지·관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운영관리자 지정		- 시설 운영관리자 1명 이상 지정·운영
정기 점검	탱크부/ 계측구	- 저장탱크의 급격한 재고 증감여부 및 주요원인 파악 - 탱크 내부 누유여부(누유감지센서 활용) 확인 - 주유소 지반 침하 및 바닥 균열여부 확인
	맨홀부	- 맨홀뚜껑 상태, 맨홀 상부 수분 및 유류 등 저장물질 존재여부 확인 - 탱크섬프, 배관 관통부 봉인(sealing) 상태 점검
	주유기	- 주유기 섬프 내, 주유기 하단 및 배관 누유상태 점검 - 주유기 본체와 호스, 호스와 노즐 연결 부위의 누유확인 및 균열, 마모 등을 점검(주유기와 주유배관 연결부 누유여부 확인) - 체크밸브(check valve)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배관이음쇠 (Quick coupling)	- 뚜껑의 설치 상태 확인(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아 두는지 여부) - 배관이음쇠의 풀림이나 변형 등의 손상여부 확인
	주입박스	- 주입 종료 시 유출여부 확인 - 주입구 박스 봉인(sealing) 상태 및 파손여부 점검 - 주입절차 준수 확인
	유수분리조	- 유수분리조 내 기름띠 확인 - 유수분리조 내 유류 및 슬러지 등 이물질 침전상태 점검 및 청소 - 유수분리조 변형 및 파손상태 확인
	기름도랑 (trench)	- 기름도랑 내 각종 오염물질 및 이물질 점검 및 청소 - 기름도랑의 변형 및 파손 상태 확인

※ 비고: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라목의 지역(나목 또는 다목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다음 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 지역은 제외한다)

[별표 5] <개정 2018. 11. 2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아·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3.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비교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2.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별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가.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만, 개별 저장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나.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저장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 다.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초과시설과 그 미만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리터 초과시설은 개별 저장시설별로 각각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50만리터 미만 저장시설은 그 용량합계가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출우려가 높은 저장시설에서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 채취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시료채취는 주변지역 내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철강슬래그가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된 지역의 경우 사용된 대상물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그 밖에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1.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는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운반자”라 한다)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기 전에 오염토양 인계정보 및 운반자 인계인수 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계정보를 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정화처리자는 정화를 완료한 토양을 사용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정화토양 사용정보 및 정화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의3] 〈개정 2021. 9. 16.〉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직접인건비

-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2) 오염토양의 양에 따라 1년간 투입되는 다음 표의 등급별 기술자 인원으로 산정한다.

오염토양의 양(㎡)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원(인·일/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00 미만	1	3	4	2
1,000 이상 ~ 3,000 미만	3	11	14	6
3,000 이상 ~ 5,000 미만	4.5	14	17	10
5,000 이상 ~ 10,000 미만	6	22	26	18
10,000 이상 ~ 20,000 미만	8	34	35	20
20,000 이상 ~ 50,000 미만	15	45	58	29
50,000 이상 ~ 100,000 미만	28	81	89	58

- 3)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 4) 직접인건비는 1년의 정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화기간에 따라서 다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 정화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율 1.0 적용
 - 나) 정화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요율 1.3 적용
 - 다) 정화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요율 1.6 적용

라) 정화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연장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 5) 오염토양의 양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양을 10만㎡로 나누고, 각각의 오염토양의 양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직접경비

-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시료채취·분석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2)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비
 - 가) 별표 11 제1호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에 따른다.
 - 나)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에 따라 지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점수에 지점별 시료수를 곱하여 완료검증 시료수량을 산정한다.
- (1)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면적(㎡)	지점수(점)	격자간격(m)
500 미만	5 이상	10 ~ 14 이내
500 이상 ~ 1,000 미만	6 이상	13 ~ 17 이내
1,000 이상 ~ 2,000 미만	7 이상	18 ~ 22 이내
2,000 이상 ~ 3,000 미만	9 이상	20 ~ 24 이내
3,000 이상 ~ 4,000 미만	11 이상	21 ~ 25 이내
4,000 이상 ~ 5,000 미만	13 이상	21 ~ 25 이내
5,000 이상 ~ 6,000 미만	15 이상	22 ~ 26 이내
6,000 이상 ~ 7,000 미만	17 이상	22 ~ 26 이내
7,000 이상 ~ 8,000 미만	19 이상	22 ~ 26 이내
8,000 이상 ~ 9,000 미만	20 이상	23 ~ 27 이내
9,000 이상 ~ 10,000 미만	21 이상	24 ~ 28 이내
10,000 이상 ~ 15,000 미만	25 이상	27 ~ 31 이내
15,000 이상 ~ 20,000 미만	30 이상	29 ~ 33 이내
20,000 이상 ~ 25,000 미만	35 이상	30 ~ 34 이내

면적(㎡)	지점수(점)	격자간격(m)
25,000 이상 ~ 30,000 미만	40 이상	30 ~ 34 이내
30,000 이상 ~ 35,000 미만	45 이상	31 ~ 35 이내
35,000 이상 ~ 40,000 미만	50 이상	31 ~ 35 이내
40,000 이상 ~ 45,000 미만	52 이상	33 ~ 37 이내
45,000 이상 ~ 50,000 미만	55 이상	34 ~ 38 이내

비고

(가) 오염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5만㎡로 나누고, 각각의 면적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료는 채취지점의 깊이 1m 간격으로 1개씩 채취하며,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깊이까지 채취한다.

(다) 굴착(땅파기)처리하는 경우 굴착 전의 오염분포에 따라서 지점 및 시료수를 산정한다.

(라) 지하수 시료수는 오염지역의 지하수 현황에 따라서 별도 산정한다.

(2) 과정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완료검증 시료수의 20% 이상을 과정검증의 시료수로 산정하고, 정화방법의 특성 및 기간을 고려·배분하여 검증한다.

다) 총 시료수량은 완료검증 시료수량에 과정검증 시료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3)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4) 보고서 인쇄비: 보고서 인쇄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2.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가.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검증기관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증수수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검증신청을 취하한 경우

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검증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별표 7] (개정 2022. 1. 21.)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12	30	180
2. 구리	450	1,500	6,000
3. 비소	75	150	600
4. 수은	12	30	60
5. 납	600	1,200	2,100
6. 6가크롬	15	45	120
7. 아연	900	1,800	5,000
8. 니켈	300	600	1,500
9. 불소	800	800	2,000
10. 유기인화합물	-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12. 시안	5	5	300
13. 페놀	10	10	50
14. 벤젠	3	3	9
15. 톨루엔	60	60	180
16. 에틸벤젠	150	150	1,020
17. 크실렌	45	45	13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21. 벤조(a)피렌	2	6	21
22.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23. 다이옥신(뮤란을 포함한다)	500	1,000	3,000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

- 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별표 8] (신설 2001.12.31)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1. 지정목적
2. 지정일자 : 년 월 일
3.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4. 토양보전대책지역 내역
 - 가. 주소
 - 나. 면적
 - 다. 약도

비고

1.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글자는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약도는 표지판 설치 위치에서 방향 및 지점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삭제 (2005.6.30)

[별표 10] (개정 2015.11.3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1.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를 위한 시추장비 등의 운전은 기술요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요원은 시료채취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는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실시하여야 하며, 누출검사자는 누출측정결과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토양정화의 검증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적은 당해 연도말까지의 검사결과 통보문을 의미한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일지, 검사결과기록부, 시약소모대장, 검사신청접수 및 결과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영업소소재지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토양시료의 분석은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도급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 전부를 다시 하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11] <개정 2022. 1. 2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원)	비고
카드뮴·구리·납		44,200	항목당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니켈		44,200	항목당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유류	벤젠	40,600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62,7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26,900	항목당
벤조(a)피렌		114,000	
다이옥신		2,568,500	
시료채취비		91,900/공	

※ 비고: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누출검사수수료

검사항목			단위	검사수수료 (단위: 원)
탱크부	간접방식	10만리터 이하	탱크1기	441,000
		10만리터 초과 30만리터 이하	"	646,000
		30만리터 초과 100만리터 이하	"	1,498,000
		100만리터 초과 160만리터 이하	"	1,690,000
		160만리터 초과 320만리터 이하	"	1,921,000
		320만리터 초과 480만리터 이하	"	2,161,000
		480만 리터 초과	"	2,386,000
	직접방식	비파괴검사	m당	9,200
배관부	간접방식	기본수수료	라인당	110,000
		체적수수료	m ³ 당	22,500

비고

- 배관부의 누출검사수수료는 배관 1라인(시점 및 종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수수료와 체적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1개의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 1개를 초과하는 탱크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25퍼센트
 - 1개를 초과하는 배관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30퍼센트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1의2] <개정 2016. 12. 30.>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반입정화시설 또는 정화현장 입구에는 오염토양 정화 또는 반입정화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오염토양의 양, 정화공법, 정화기간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정화현장에 오염토양의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화일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화검증을 위한 정화현장 방문, 시료의 채취 등 검증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2] <개정 2018. 11. 27.>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관련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법 제11조제4항,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5) 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6)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마) 삭제 <2013.5.31> 바) 삭제 <2013.5.31>					
7)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2호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9)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	지정취소			
10) 법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3) 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3호	지정취소			
14)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1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6) 법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10 제3항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3)의2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8) 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 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7호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마) 삭제 <2013.5.31>					
바) 삭제 <2013.5.31>					
11) 법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제5편 물이용

10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규칙

목 차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4579 제2조(가등록) 4579 제3조(예고등록) 4579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4579 제5조(가등록과 부가등록의 순위) 4580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4580 제7조(등록필의 통지) 4580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4580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4580 제10조(등록부의 간인) 4581 제11조(신청서 편철부) 4581 제12조(등록부의 보존) 4581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4581 제14조(등록부의 멸실) 4582 제15조(등록부의 폐쇄) 4582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4580 제2조(숫자 등의 기재) 4581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4581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4581 제5조(등록수수료) 4582 제6조(간인) 4582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4582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09. 12. 31.>	
제16조(신청)	4583
제17조(등록신청인)	4583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4583
제19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4583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4583
제21조(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4584
제22조(채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4584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4584
제24조(가등록)	4584
제25조(예고등록)	4584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4585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4585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4586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4586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4586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4586
제32조(등록확인증의 멸실)	4586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4586
제34조(신청서의 접수)	4586
제35조(등록의 순서)	4586
제36조(신청의 각하)	4586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4587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9조(등록신청서)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제11조(신청서의 조사)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장권의 변경등록)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8조(번호의 기재) 4587	
제39조(가등록의 기재) 4587	
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4587	
제41조(권리변경의 등록) 4588	
제42조(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4588	
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4588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4588	
제45조(경정등록) 4588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4588
제46조(회복등록) 4588	제15조(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4588
제47조(별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4589	
제48조(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4589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4589
제49조(편철확인증) 4589	
제50조(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4589	
제51조(등록확인증의 발급) 4589	
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4590	
제2절 시설관리권 <개정 1990. 9. 4.>	
제53조(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4590	
제54조(분할) 4590	
제55조(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4591	
제56조(분할합병 등록) 4591	
제57조(합병 등록) 4591	
제58조(합병 등록) 4592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9조(등록신청) 4592	
제60조(저당권의 설정·이전 등록) 4592	
제61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4592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4592
제62조(공동담보 등) 4593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63조(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4593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4593	
제65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4593	
제66조(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4593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4593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4593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4594	
제70조(가등록의 말소) 4594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4594	
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4594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4594	
제74조(말소의 방법) 4595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4595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4595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4595	
제77조(직권말소) 4595	
제5장 삭제 (2009. 12. 31.)	
제78조 삭제 4595	
부칙 4595	부칙 4595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정 1979. 4. 14 대통령령 제9426호 개정 1988. 6. 17 대통령령 제12464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1990. 9. 4 대통령령 제1309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가색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8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4호	제정 1979. 5. 7 건 설 부 령 제222호 개정 1990. 11. 2 건 설 부 령 제470호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청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0. 1. 15 국토해양부령 제212호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 6. 8 환 경 부 령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8. 10 환 경 부 령 제93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다른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録)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録)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録)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등록필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 1. 시설관리권의 이전·소멸 2. 저당권의 설정·이전·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① 삭제 <2020. 9. 29.> 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 9. 29.> 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환경부장관이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직위·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직인으로 간인(開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신청서 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신청서 편철부(編綴簿)를 비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전문개정 2010. 1. 15.] [제목개정 2021. 8. 10.] 제2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했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로운 등록부에 옮겨 적었을 때에는 이전 등록부는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수료에 관하여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0. 1. 15.] 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0. 1. 15.]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간인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10. 1. 15.]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09. 12. 31.〉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19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설관리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전문개정 2009. 12. 31.]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① 종중(宗中)·문중(門中) 또는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 12. 31.] 제21조(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 공사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押留)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록을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7조제3항,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24조(가등록) ①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법원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경우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민법」 제276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전문개정 2010. 1. 15.] 제9조(등록신청서) 수도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저장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장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장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 4.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② 제1항제2호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2018. 6. 8.> 1.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시설(생활용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관리권의 설정 목적 3. 시설관리권이 설정된 내역 4.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5.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신청연월일 8.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1.]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①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분(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시설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을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32조(등록확인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 접수대장과 서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35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6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영 제33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적은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 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힌 시설관리권 또는 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8조(번호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적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 여백에 본등기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1조(권리변경의 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2조(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의 부분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제33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환경부로부터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45조(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6조(회복등록) 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회복의 신청을 받아 등록을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적고, 말소된 등록과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을 할 경우에는 허가 연월일과 등록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15조(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부분(副本)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별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 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종전 등록의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의 등록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 구 순위번호란에 종전 등록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종전 등록의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에 접수한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編綴簿)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9조(편철확인증) ①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함으로써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0조(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48조제1항에 열거된 서면에 따라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마지막 부분에 제1항의 서면에 따라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등록확인증을 발급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불일치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전문개정 2010. 1. 15.]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첩록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① 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추가용지를 가철(假綴)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 용지의 두 번째 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 등록을 옮겨 적거나 전사(轉寫: 옮겨 베끼)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전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절 시설관리권 <개정 1990. 9. 4.> 제53조(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4조(분할) 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그 분할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옮겨 적은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적은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시설관리권 또는 저장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저장권에 관한 등록 중에 갑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장권에 대한 등록을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⑤ 신청서에 저장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 12. 31.] 제55조(시설관리권이 저장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하는 경우에 을 시설관리권이 저장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장권에 관한 등록에 을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신청서에 저장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해당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6조(분할합병 등록) 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장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란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저장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를 갈음하여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 사항의 등록이 있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7조(합병 등록) ① 갑 시설관리권을 을 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②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갑 시설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8조(합병 등록) ① 제57조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서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그 등록이 갑 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장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인다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56조제4항을 준용하고,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절 저장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9조(등록신청) ① 저장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적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저장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 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저당권의 설정·이전 등록) ① 저장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장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장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1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장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장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장권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장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2조(공동담보 등) ①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추가 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는 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3조(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였을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적힌 다른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5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6조(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저장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이 저장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전문개정 2010. 1. 15.]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債權證書), 채권과 최후 1년분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저장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0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1심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소의 취하(取下)가 있을 때 3.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4.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09. 12. 31.] 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장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4조(말소의 방법) ①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7조(작성말소)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장 삭제 <2009. 12. 31.> 제78조 삭제 <2009. 12. 31.> 부칙 <제9426호, 1979. 4.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64호, 1988. 6. 17.>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힌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 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부칙 <제222호, 1979.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 1990.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 2004. 11. 29.>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⑮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⑯ 내지 ⑰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3097호, 1990. 9. 4.)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등록필의 통지) 건설부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당해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관리권의 이전·소멸 2. 저장권의 설정·이전·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장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쟁 제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하여 이를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 2010.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은 이 규칙에 따른 수도시설 및 수도시설관리권으로 본다. 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신설한다. ① 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수도시설관리권·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등록부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로 한다. ② 등록부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5호·제20조제1항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31조중 “공업용수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6조제3호·제37조제1항·제47조제3항·제2절제목·제53조 내지 제58조·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및 제68조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부칙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9〉생략 〈90〉수도시설관리권 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3조 및 제4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및 제71조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13조, 제16조제3항, 제34조 제2항 및 제78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91〉 내지 〈205〉 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증개정령)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수신인란 및 같은 면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939호, 2021.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8>생략 <139>수도시설관리권 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0> 내지 <241>생략 부칙 <제20120호, 2007. 6. 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수도시설관리권 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및 제71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7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72〉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제21968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은 이 영에 따른 수도시설 및 수도시설관리권으로 본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6〉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074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 집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 마 루

전산사무관 노 원 택

곽 현 아

환 경 법 전 (중권)

2024년 6월 일 인쇄

2024년 6월 일 발행

발행처 : 환 경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 201-6396

인쇄처 :

비매품